

# 치안전망 2017

www.psi.go.kr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 「치안전망 2017」을 발간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2016년의 정월이 참으로 엇그제 같은데, 벌써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이듬해 치안을 전망하는 책을 발간하는 연말연시가 다가왔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 북한의 핵도발 위협을 둘러싼 한반도 주변국들의 긴박한 합종연횡의 외교 전략 등 국제 정세는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했고, 국내 상황 또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대형 이슈들이 많아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경찰 조직과 치안활동에도 크고 작은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활력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소위 '현장 활력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성과평가, 감찰행정,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비효율적 업무절차와 불합리한 제도를 혁파했으며 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점검하여 간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신뢰와 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노력들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한해는 주요 치안지표들이 대폭 개선되는 등 안정된 치안 기조를 보였습니다.

5대범죄 검거율 등 주요 치안지표가 크게 개선된 가운데 주요 강력사건도 미제 없이 신속히 해결하였습니다. 보행자 안전과 대형사고 예방 중심의 교통대책을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교통질서 준수율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테러나 재해·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소위 ‘갑질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하였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사·단속·예방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치안 과학기술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2017년도 치안 R&D 예산은 전년대비 90% 증액된 97억 원을 확보하였고, 산업 통상자원부 R&D 사업에 15개 신규 과제를 반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7년 새해에도 활발한 경찰 활동으로 이러한 안정적 치안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경찰 활동의 주요 분야별 지표를 중심으로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한 단기예측 결과들을 수록하고 있는 「치안전망 2017」이 그 과정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치안전망 2017」 작성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신 경찰청 각 국·관 담당자들과 해마다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유관기관·학계·언론계 등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망서 발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소속 연구관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 12. 31

치안정책연구소장 **진 교 훈**

## 목 차

### 제1장

## 2016년 치안활동의 회고

1. 對여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력 집중 투입, 체감치안 확보 ..... 2
2. 아동학대 등 집중점검 및 4대악 전담체계 정착으로 재범률 등 안정화 추세 유지 ..... 3
3.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수사활동 전개, 민생치안 안정적 유지 ..... 5
4. 교통사망사고 대폭 감소 및 난폭·보복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6
5. 적극적 치안협력 외교 및 국제범죄 대응 등으로 글로벌 치안역량 강화 ..... 7
6. 치안종합성과평가·인사제도 개선 등 현장 활력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 ..... 8
7. 전반적인 치안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체감안전도 향상에는 미흡 ..... 9

### 제2장

## 치안환경 변화의 개관

- I. 치안환경의 변화요인 ..... 12
- II. 인구 구조의 변동 ..... 14
- III. 사회·문화의 변화 ..... 16
- IV. 경제환경 변화 ..... 23
- V. 재난·재해 변화 ..... 27
- VI. 국내·외 안보정세 변화 ..... 36

### 제3장

## 2017년 분야별 치안전망

- 제1절 2017년 치안정세 개괄 전망** ..... 45
- I. 범죄수사 분야 ..... 46
  - II. 생활안전 분야 ..... 49
  - III. 교통안전 분야 ..... 51
  - IV. 사회안전 분야 ..... 53
  - V. 안보·외사 분야 ..... 54
- 제2절 범죄수사 분야 전망** ..... 57
- I. 2017년 범죄 발생 전망 ..... 58
  - II. 5대 범죄의 변화와 전망 ..... 70
  - III. 보이스피싱 범죄 전망 ..... 83
  - IV. 유사수신 등 불법 자금용 전망 ..... 91
  - V. 과학수사 환경의 변화와 전망 ..... 96
  - VI. 사이버범죄 전망 ..... 106



<b>제3절 생활안전 분야 전망</b> .....	119
I. 112신고 추이와 전망 .....	120
II. 성폭력범죄 전망 .....	125
III. 학교폭력 전망 .....	131
<b>제4절 교통안전 분야 전망</b> .....	141
I. 교통 환경의 변화와 전망 .....	142
II. 교통사고의 진단과 전망 .....	145
<b>제5절 사회안정 분야 전망</b> .....	155
I. 집회시위 전망 .....	156
II. 테러 위협 전망 .....	159
<b>제6절 안보·외사 분야 전망</b> .....	167
I. 북한의 대남전략 전망 .....	168
II.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활동 전망 .....	192
III. 탈북민 관련 전망 .....	201
IV. 외사 분야 전망 .....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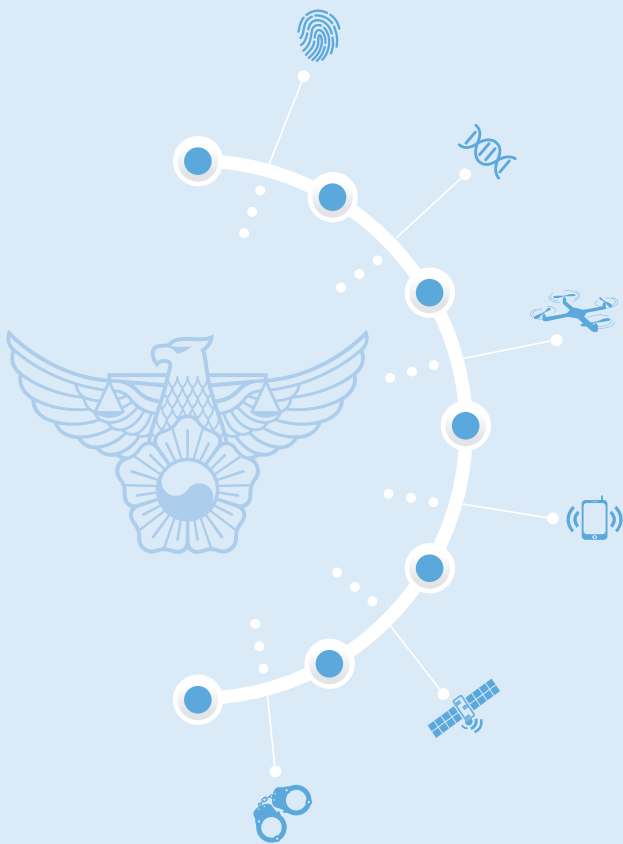
제4장

2017년  
경찰의  
대응

I. 범죄별 맞춤형 대응역량 강화 .....	232
II. 112신고의 효율적 대응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 .....	236
III. 교통 환경 변화와 경찰의 대응 .....	238
IV. 사회안정 확보 .....	241
V. 단호한 법 집행으로 굳건한 안보 유지 .....	243

# 치안전망 2017

P O L I C E S C I E N C E I N S T I T U T E



## 제1장

# 2016년 치안활동의 회고

1. 對여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력 집중 투입, 체감치안 확보 .....	2
2. 아동학대 등 집중점검 및 4대악 전담체계 정착으로 재범률 등 안정화 추세 유지 .....	3
3.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수사활동 전개, 민생치안 안정적 유지.....	5
4. 교통사망사고 대폭 감소 및 난폭·보복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6
5. 적극적 치안협력 외교 및 국제범죄 대응 등으로 글로벌 치안역량 강화 .....	7
6. 치안종합성과평가·인사제도 개선 등 현장 활력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 .....	8
7. 전반적인 치안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체감안전도 향상에는 미흡.....	9

2016년은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에 대한 경찰의 활동이 집중된 한 해였다. 특히 對여성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였으며, 아동학대 및 4대 사회악에 대한 전담 체계를 정착시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찰은 현장중심 정책수립, 인력증원 등을 바탕으로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수사 활동을 전개한 결과, 치안지표 전반이 호전되는 등 민생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 교통안전 핵심과제인 ‘보행자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국민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치안 협력 외교 및 국제범죄 대응으로 글로벌 치안 역량도 강화하였다.

## 1. 對여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력 집중 투입, 체감치안 확보

2016년은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한 해였다. 이에 경찰에서는 높아진 국민의 우려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하였다. 경찰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sup>1)</sup>을 전개하는 등 기초 치안 강화를 통해 여성의 체감안전도를 높이는 한편 범죄예방 업무를 더욱 체계·전문화하였으며,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확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스마트 국민제보’ 앱 내에 ‘여성 불안신고 코너’를 신설하고, 범죄통계시스템·GeoPros 등을 활용한 여성범죄 빈발 지역과 요인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범죄예방진단팀(CPO)」<sup>2)</sup> 신설을 통해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를 기반으로 한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을 체계·전문화하여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1) 문제지향적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 : 범죄·무질서의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이 불안과 위협을 느끼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종합·근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선제적 경찰 활동.

2) 범죄예방진단팀(CPO, Crime Prevention Officer) : 지역·시설의 취약요인을 분석 후,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민간과 협업을 통해 시설·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전문팀(CPTED 전문인력으로 구성).

또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활성화했다.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하여 범죄 취약지역·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시설개선, 안전인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였으며, IT 시대에 발맞춰 ‘신변보호 스마트워치’를 확대 운영하는 등 신변위해 우려 여성에 대한 보호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경찰은 적극적 예방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경직법 등의 제·개정을 추진하여 경찰에게 범죄 위험시설에 대한 개선 요청, 위험인물에 대한 예방적 보호·강제조치 권한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여가부 등과 협조하여 데이트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강화를 규정하는 법률 제·개정도 추진하였다.

## 2. 아동학대 등 집중점검 및 4대악 전담체계 정착으로 재범률 등 안정화 추세 유지

경찰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기결석 초등학생과 중학생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학대 범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학대전담경찰관(APO)<sup>3)</sup>을 배치하여, 가정폭력·아동(노인)학대 범죄의 ‘예방-사후지원’의 전담체계를 구축하였다.

성·학교폭력 등 분야에서는 성폭력 수사·교육확대, 관서간 공조강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일제점검 등으로 성폭력 미검률과 재범률 지표를 향상시켰으며, 학교폭력은 시기·유형별 맞춤형 예방활동으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4대 사회악 전담체계가 정착되었으며, 재범률 등이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성폭력 분야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전수 점검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여 성폭력 발생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미검·재범률 개선으로 연결되었다. 가정폭력 역시 전년대비 가정폭력 신고 및 검거는 증가하였으나,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으로 재범률을 대폭 감축시켰다. 아동학대는 점검 상시화 및 신고활성화 정책으로 신고·검거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학교폭력은 신학기초 집중관리기간(3~4월) 및 학교 밖 청소년 일제 발굴 기간 운영 등 선제적 예방·선도활동으로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였다.

3) 학대전담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 : 아동학대에 대한 상시점검 및 보호와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

〈표 1-1〉 성폭력 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조 치(명)	
					구 속	불구속
2011	21,912	18,499	84.4%	20,189	2,614	17,575
2012	22,933	19,386	84.5%	21,259	2,492	18,767
2013	28,786	25,591	88.9%	24,835	2,651	22,184
2014	29,517	28,034	95.0%	25,306	2,292	23,014
2015	30,651	29,539	96.4%	27,166	2,159	25,007
2015. 9	22,926	22,223	96.9%	19,652	1,689	17,963
2016. 9	21,084	20,347	96.5%	21,210	1,509	19,701
전년대비(%)	-8.0	-8.4	-0.4P	7.9	-10.7	9.7

출처 : 경찰청(2016)

〈표 1-2〉 학교폭력 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연도)	계	유형별				조치별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구속	불구속	소년부송치	기타
2011	21,957	14,837	3,902	444	2,774	103	16,228	1,473	4,153
2012	23,877	14,637	5,912	509	2,819	333	15,615	2,657	5,272
2013	17,385	11,048	2,603	1,067	2,667	294	11,016	1,824	4,251
2014	13,268	8,974	1,582	1,295	1,417	167	8,586	1,191	3,324
2015	12,495	9,188	1,153	1,253	901	93	9,157	1,059	2,186
2015. 9	8,900	6,508	840	905	647	72	6,498	783	1,547
2016. 9	9,214	6,751	840	989	634	52	7,083	781	1,298
전년대비(%)	3.5	3.7	0.0	9.3	-2.0	-27.8	9.0	-0.3	-16.1

출처 : 경찰청(2016)

〈표 1-3〉 가정폭력 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 건, 명)

구분(연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구속	불구속
2010	7,359	7,992	60	7,932
2011	6,848	7,272	51	7,221
2012	8,762	9,345	73	9,272
2013	16,785	18,000	262	17,738
2014	17,557	18,666	250	18,416
2015	40,822	47,549	606	46,943
2015. 9	29,633	34,243	485	33,758
2016. 9	35,004	40,834	406	40,428
전년대비(%)	18.1	19.2	16.3	19.8

출처 : 경찰청(2016)

### 3.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수사활동 전개, 민생치안 안정적 유지

경찰은 현장중심 정책수립과 인력증원 등을 바탕으로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수사 활동을 전개하여 치안지표 전반이 호전되는 등 민생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강력사건은 수사력을 집중·투입하여 신속히 해결하는 등 국민 불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민생범죄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핵심 치안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 국민 불안의 주된 요인인 5대 범죄 검거율을 향상(5%p)시켰으며,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 사범인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대폭 감소(65.1%)하였다.

〈표 1-4〉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 건)

구 분(연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발생	발생	발생	발생	발생	발생
	검거	검거	검거	검거	검거	검거
	(검거율)	(검거율)	(검거율)	(검거율)	(검거율)	(검거율)
2011	617,910	1,204	3,994	19,491	281,359	311,862
	383,538	1,154	3,385	16,399	112,849	249,751
	(62.1%)	(95.8%)	(84.8%)	(84.1%)	(40.1%)	(80.1%)
2012	624,956	984	2,586	19,619	290,055	311,712
	382,248	960	2,239	16,581	106,060	256,408
	(61.2%)	(97.6%)	(86.6%)	(84.5%)	(36.6%)	(82.3%)
2013	606,362	918	1,978	22,292	287,704	293,470
	383,357	903	1,856	19,755	118,074	242,769
	(63.2%)	(98.4%)	(93.8%)	(88.6%)	(41.0%)	(82.7%)
2014	579,057	907	1,586	21,045	266,059	289,460
	384,034	895	1,546	20,026	119,354	242,213
	(66.3%)	(98.7%)	(97.5%)	(95.2%)	(44.9%)	(83.7%)
2015	574,021	919	1,445	21,280	245,121	305,256
	411,328	899	1,456	20,519	126,703	261,751
	(71.7%)	(97.8%)	(100.8%)	(96.4%)	(51.7%)	(85.7%)
2015. 9	420,795	705	1,112	15,631	181,342	222,005
	308,908	694	1,123	15,186	98,514	193,391
	73.4%	98.4%	101.0%	97.2%	54.3%	87.1%
2016. 9	396,547	698	877	16,136	149,851	228,985
	310,769	700	899	15,628	90,666	202,876
	78.4%	100.3%	102.5%	96.9%	60.5%	88.6%
대비 (%)	-5.8	-1.0	-21.1	3.2	-17.4	3.1
	0.6	0.9	-19.9	2.9	-8.0	4.9
	5.0	1.8	1.5	-0.3	6.2	1.5

출처 : 경찰청(2016)

〈표 1-5〉 전화금융사기 발생 및 검거현황

구 분(연도)	발생건수(건)	피해액(억 원)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2011	8,244	1,019	7,336	12,853
2012	5,709	595	5,023	11,065
2013	4,765	552	2,386	4,336
2014	7,635	974	4,183	6,247
2015	7,239	1,070	11,537	16,183
2015. 9	6,383	925	9,599	13,480
2016. 9	2,228	353	3,095	4,482
대비(%)	-65.1%	-61.8%	-67.8%	-66.8%

출처 : 경찰청(2016)

생활범죄수사·경제범죄수사팀 등 현장 수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여 생활범죄 검거율, 피해품 회수 건수 등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국정·정상화과제 등 테마별 맞춤형 기획수사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였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을 근절하고, 저금리 기조에 편승하여 투자심리를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유사수신·다단계 등) 척결에 지능범죄 수사 역량을 집중하였다.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 해소를 위한 ‘3대 부패비리’도 강력 단속하였다. 이외에 강력 범죄로 확산 가능한 마약류 사범, 각종 범죄의 원천인 대포물건을 근절하는 한편 해양범죄 사범 단속도 소홀함이 없이 수행하였다.

한편, 지능형 수사 자료 분석, 빅데이터 기반 범죄분석 프로그램 개발,<sup>4)</sup> 범죄통계 전문 관리를 비롯한 범죄분석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미래지향적 수사 전략 및 조직정비를 실시하여 급변하는 수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 4. 교통사망사고 대폭 감소 및 난폭·보복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교통안전 핵심과제인 ‘보행자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전체 사망사고를 9.9% 감소시키는 등 국민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다.

4) 침입절도, 성폭행, 마약, 보이스피싱 4종에 대한 분석 프로그램 개발.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위한 ‘암행순찰차’를 도입하여 압체·난폭운전 등 고비난·고위험 행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가 암행순찰차를 운영하지 않는 구간에 비해 대폭 감소하는 등 우수한 사고예방 효과를 거두었다.

대검찰청과 공동으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방조범 처벌 등 고강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로 위의 흉기인 ‘음주운전’ 단속·처벌을 강화하였다. 경찰의 이러한 노력으로 음주 교통사고 사망은 41%, 부상은 22%나 각각 감소하였다.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기간 운영(2. 15~3. 31) 및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난폭·보복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한편,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시설 개선, 카시트 미착용 단속 및 처벌 강화, 찾아가는 보행 안전교육 실시 등 맞춤형 어린이 안전대책을 지속 추진하였다.

## 5. 적극적 치안협력 외교 및 국제범죄 대응 등으로 글로벌 치안역량 강화

경찰은 적극적 치안외교로 UAE 등 4개국과 치안협력 MOU를 체결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치안협력 네트워크를 구축(23개국 → 25개국)하였으며, 밀입국 등 불법 입국사범,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산업기술 유출사범 기획수사 등 주요 외사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필리핀 경찰에 파견하는 한국 경찰관인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을 증원(2명 → 6명)하고, 경찰 주재관 및 해외 경찰과 송환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피사범 송환인원을 대폭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필리핀·베트남은 코리안데스크 설치 이후 국외도피사범 송환 인원이 194% 증가(16명 → 47명)하여 불법필벌 기초를 확립하였다. 필리핀·태국 내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합동수사팀을 파견, 현지경찰과 협력해 피의자 6명을 검거하는 등 국제범죄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였다.

한편, ‘외사치안 안전구역 체감안전도 측정모델 개발’ 등 외사치안 안전구역 관리 강화, 체류외국인 대상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 및 협력치안 활성화 등 적극적인 다문화 치안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안정 확보에도 기여하였다.

‘외국인 강력·폭력범죄 100일 집중단속(2016. 7~10)’을 실시하여 체류외국인의 범죄를 확립해 외국인 범죄조직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였다.

## 6. 치안종합성과평가·인사제도 개선 등 현장 활력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

2006년에 도입된 성과평가는 매년 개선되어 경찰 조직운영의 필수 요소로 정착되었다.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내부적으로 ‘업무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등 치안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평가체계의 고도화·환류 강화로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이 커져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치안종합성과평가 평가항목을 단순하게 정비하고, 성과과제와 지표를 대폭 감소·재편하는 등 경찰 기본업무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간소화하였다.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감안전도 표본수를 확대하고 성과지표 정성평가단을 다원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현장 경찰관들이 활력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특별승진 및 포상제도를 개선하여 특진심사를 연(年) 1회만 실시하고, 특진비율을 현행 20% → 10% 이내로 축소하되, 특별승급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특진 최종심사권을 현장을 잘 아는 지방청에 위임하고 지방청 심사의 사후평가·환류를 통해 특진제도의 공정성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및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정책도 추진하였다. 일반직공무원은 경찰청 실정에 맞는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규칙(훈령)을 제정하고 직급 조정 및 전문직위수당 등으로 사기를 고양하였다. 무기계약직은 표창 확대, 특별승급 도입, 지방청간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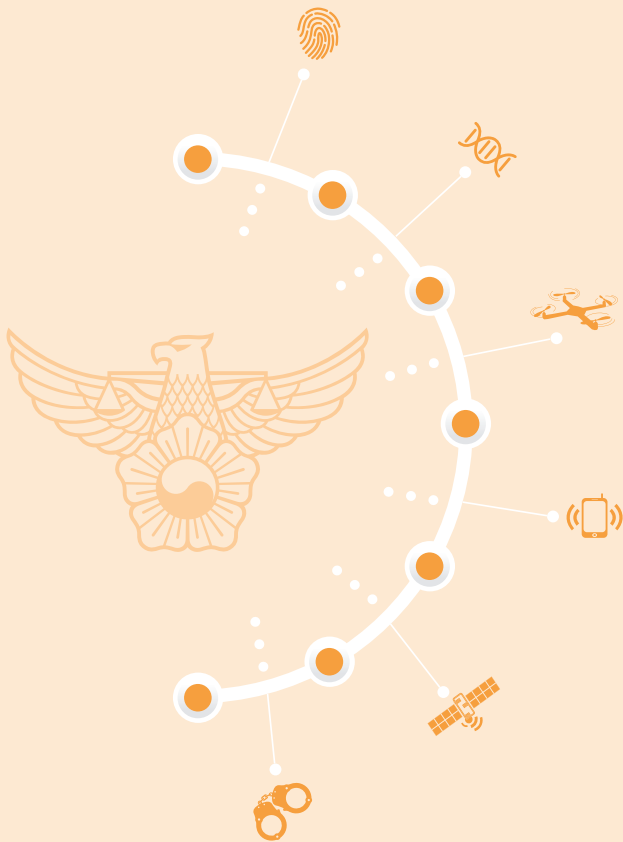
## 7. 전반적인 치안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체감안전도 향상에는 미흡

2016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5년 전보다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2%로 나타났다. 5년 후, 우리 사회의 안전 상태에 대해서는 15.4%가 안전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위험해 질 것이라는 사람은 38.5%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하여 45.5%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범죄발생(67.1%), 신종질병(62%), 정보보안(52%)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우리 사회는 범죄발생(29.7%)이 가장 큰 불안요인이며, 그 다음은 국가 안보(19.3%), 경제적 위협(15.5%) 순으로 ‘범죄발생’ 요인은 2년 전보다 10.2%p 증가하였다.

결국, 경찰 내부의 치안 관련 지표는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나 이러한 경찰의 활동과 노력이 국민의 체감안전도 향상과 연결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치안전망 2017

P O L I C E   S C I E N C E   I N S T I T U T E



## 제2장

# 치안환경 변화의 개관

I. 치안환경의 변화요인 .....	12
II. 인구 구조의 변동 .....	14
III. 사회·문화의 변화 .....	16
IV. 경제환경 변화 .....	23
V. 재난·재해 변화 .....	27
VI. 국내·외 안보정세 변화.....	36

## I. 치안환경의 변화요인

치안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사회·기술·환경·인구·정치·경제·자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sup>5)</sup> 2017년 우리나라의 치안환경은 과거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예측가능성이 낮은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안환경의 변화요인들 중 특히 정치와 경제상황은 상대적으로 2017년도 치안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정치적 요인으로는 2017년 상반기에 진행될 대통령 탄핵정국과 대통령선거 실시 등과 관련하여 정치성향·계층·지역별 갈등 표출로 인한 치안상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제관계 측면에서는 북한의 핵무장, 사드배치, 위안부 문제 등이 2016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국내 정치문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금리인상 움직임, 수출 및 내수 감소,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등이 국가 경제는 물론 생활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의 상승, 실업률 증가, 생산력 저하 등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인구의 변화와 지진,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도 치안환경의 부담요인이 될 전망이다.

한편, 치안환경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으로는 과학치안의 구현을 현실화하는 각종 기술의 발전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를 들 수 있다. 기술적 요인으로는 치안현장의 드론 활용의 확대, 지능형 CCTV를 활용한 방법모니터링 시스템의 본격적인 구축,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과학치안을 부분적으로 실현하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범죄예방전문경찰관(CPO)제도의 정착을 통해 공동체 치안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이광형 외, 경찰미래비전 2045, 경찰청, 2015. 31쪽.

이를 종합하면 2017년도 치안환경의 변화는 국가적으로 치안에 부담이 되는 요인들이 많으나, 지역적으로는 시민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 2017년 치안환경의 변화요인

요인	긍정적 요소	부정적 요소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위문화 정착</li> <li>■ 범죄예방인식 확산</li> <li>■ 공동체치안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갈등 증대</li> <li>■ 법질서 문란행위 증가</li> <li>■ 위험인식 증대</li> </ul>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론기술 현장 적용</li> <li>■ 지능형 CCTV구축 확대</li> <li>■ 인공지능 치안현장 적용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범죄 증가</li> <li>■ 범죄의 다양화</li> <li>■ 범죄의 광역화</li> </ul>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li> <li>■ 국제적 협력체계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 등 재난위험 증가</li> <li>■ 대기오염 등 생활환경 악화</li> </ul>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 1인당 담당인구 감소</li> <li>■ 범죄율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사회 범죄 증가</li> <li>■ 고령 인구 증가</li> <li>■ 경제활동인구 감소</li> </ul>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부패에 대한 견제 강화</li> <li>■ 법질서 준수 문화의 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핵정국과 대행체제의 불안정성</li> <li>■ 집회관리에 과도한 경력소요</li> <li>■ 선거사범 증가</li> </ul>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정책 비중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불안 증가</li> <li>■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li> <li>■ 생계형 범죄 증가</li> </ul>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에너지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및 자원 부족</li> <li>■ 에너지 수입 증가</li> </ul>

## II. 인구 구조의 변동

2017년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있어 중요한 변화의 시기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2015)의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전체인구의 14%로 진입하고, 유소년 인구의 감소로 인해 유소년 인구 1백 명당 고령인구가 104.1명이 되는 인구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여 생산가능 인구 5.2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2-2〉 2017년 인구 고령화 관련 지표

65세 이상 인구 (명)	고령자비중 (%)	총부양비 (%)	노년부양비 (%)	노령화지수 (명)	고령자1명당 생산가능인구 (명)
7,118,704	14.0	37.7	19.2	104.1	5.2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2015 고령자통계,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2016. 11. 28 검색)

2016년 9월 기준 전국의 총 인구 수는 5166만 4244명이고, 남자는 2581만 5202명으로 49.97%, 여자는 2584만 9042명으로 50.03%의 분포를 차지하였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93만 6921명으로 전체 인구의 13.43%를 차지하였다. 이는 통계청의 전망치였던 13.5%에 근접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2017년 고령자의 비중은 이러한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14%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의 수는 2016년 9월까지 31만 7400여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3만 6300여명 대비 5.6% 감소하였다. 시·도별 출생률을 살펴보면 세종시가 전년대비 25%, 제주가 2.4%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그 밖의 15개 시도는 모두 감소하였다. 2017년에도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 전국 출생률 변화추이

(단위 : 천 명)

시도	2014	2015		2016	
	전체	전체	1~9월	1~9월	전년대비 증감률(%)
전국	435.4	438.4	336.3	317.4	-5.6
서울	83.7	83.0	63.9	59.4	-7.0
부산	26.2	26.6	20.4	19.4	-4.9
대구	19.4	19.4	15.0	14.3	-4.7

시도	2014	2015		2016	
	전체	전체	1~9월	1~9월	전년대비 증감률(%)
인천	25.8	25.5	19.5	18.4	-5.6
광주	12.7	12.4	9.6	8.9	-7.3
대전	14.0	13.8	10.6	9.7	-8.5
울산	11.6	11.7	9.0	8.4	-6.7
세종	1.3	2.7	2.0	2.5	25.0
경기	112.2	113.5	87.1	82.6	-5.2
강원	10.7	10.9	8.3	7.8	-6.0
충북	13.4	13.6	10.3	10.0	-2.9
충남	18.2	18.6	14.3	13.5	-5.6
전북	14.2	15.1	11.6	10.9	-6.0
전남	14.8	15.1	11.6	10.9	-6.0
경북	22.1	22.3	17.1	16.1	-5.8
경남	29.8	29.5	22.6	21.2	-6.2
제주	5.5	5.6	4.2	4.3	2.4

출처 : 통계청, 2016년 9월 인구동향, 2016. 2쪽.

2017년 전체 가구 수는 1918만 7300여 가구이며, 이 중 1인 가구는 539만 8200여 가구로 28.1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26.49%, 2015년 27.05%, 2016년 27.60% 등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는 외국인의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다가 하반기에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절반(49~51%)을 차지하는 중국 국적의 체류 외국인이 국내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한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일시적인 금지 조치에 따라 2017년 상반기까지는 중국인들의 국내 입국 및 거주에 영향을 미치겠으나 하반기부터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2017년도 치안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요인으로 고령화 사회로의 본격적인 진입, 출산율의 감소 현상 지속, 1인 가구의 증가, 체류 외국인 비율의 소폭 감소 후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동에 대한 전망은 경제요인 및 치안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 Ⅲ. 사회·문화의 변화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 공식이 과거의 경향을 벗어나고 있다. 고성장이 일반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저성장·저소비·고물가·고실업·저금리 등이 특징인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 저출산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생산연령 인구가 많아 누려왔던 인구 보너스(Bonus)<sup>6)</sup> 효과는 사라지고 반대로 생산연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도 위축되는 인구 오너스(Onus)<sup>7)</sup>의 시기로 이동하고 있다. 침체된 경제상황은 저성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에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sup>8)</sup>

이러한 가운데 2017년의 사회·문화 트렌드에 관하여 많은 학자와 연구자, 기업 등이 앞다투어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령사회 진입, 사회양극화의 심화, 가족 해체와 공동체 붕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적 기반, 세대적 갈등 심화 등이 있다.

#### 1.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인구 구조의 변동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확실해 보인다. 이와 같이 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전체인구 가운데 고령인구가 38.2%에 이르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가져올 문제로는 첫째, 연금·보험·의료 및 기타 사회복지 등의 확충으로 인한 정부의 급격한 지출 증가이다. 고령화로 인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둘째, 고령인구의 증가는 미래정치 지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경에는 전체 유권자 가운데 고령인구가 절반을 넘어서면서 정치권은 청년세대나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기 보다는 고령세대의 이해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령집단의 정치 세력화 및 사회 전반의 보수화가 진행

6) 인구보너스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연령 인구(15~64세)의 비중이 증가하여 노동력과 소비가 늘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7) 인구오너스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연령 인구의 비중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8)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7, 이론, 2016. 36쪽.

될 수 있으며, 일자리와 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 문제가 전면으로 부상할 수 있다.

셋째, 노인빈곤·노인자살·노인범죄 등에 대한 사회 문제도 커다란 사회적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sup>9)</sup> 고령화 사회는 출산을 감소로 인하여 전체인구가 감소되며 노인인구가 증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인범죄 및 노인범죄 피해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년층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범죄는 ‘살인’인데, 이는 빈곤과 질병으로 인한 배우자 부양이 긴장을 유발하여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경찰활동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우선 이해하고 노인범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 2. 사회양극화 심화

2015년 사회조사 중 가구주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의식은 ‘상층’이 2.4%, ‘중간층’이 53.0%, 하층은 44.6%로 나타났으며, 2013년 사회조사에 비하여 ‘중간층’이 1.6%p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상(17.9%)’보다 ‘중하(35.1%)’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4〉 가구주의 계층의식 변화

(단위: %)

년도	계	상	상상	상하	중	중상	중하	하	하상	하하
2013	100.0	1.9	0.4	1.5	51.4	17.7	33.7	46.7	26.3	20.4
2015	100.0	2.4	0.5	1.9	53.0	17.9	35.1	44.6	25.1	19.5

출처 : 통계청, 2016 사회조사, 2016, 27쪽.

삶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핵심 원인은 양극화이다. 고용 기간이 불안정하거나 낮은 임금을 받고 각종 사회보험의 적용에서도 제외되는 근로조건이 불안정한 이들이 상당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집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근로자의 32%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151.1만 원으로 정규직의 53.3%에 그치고 있다.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 가입률은 40%대에 머물러 있어 80%대에 이르는 정규직에 비해

9) 환경BUSINESS MONEY, 대전망 2017, 한국경제신문사, 2016, 58쪽.

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sup>10)</sup>

이와 같이, 사회 양극화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 기회와 취업 기회의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기회균등의 가능성 또한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극화가 심해지면 개인은 사회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이 팽배해지며, 경제 및 사회적 계층구조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된다. 이로 인하여 소액절도·강도와 같은 ‘생계형 범죄’와 우발적인 ‘충동범죄’나 대상을 따지지 않는 ‘묻지마 범죄’ 같은 무동기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

경찰은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 범집행을, 충동범죄나 묻지마 범죄와 같은 예방하기 어려운 범죄에 대해서는 문제해결 중심의 예방순찰과 검문검색 강화 등 경찰의 현장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3. 가족해체와 공동체 붕괴 가속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3년도에 발표한 우리사회 ‘가족해체’에 따른 연간 사회적 비용의 크기는 위자료·양육비 등 이혼의 사회적 비용 4조 7558억 원, 가정 폭력의 사회적 비용 2조 3931억 원, 노인 부양을 포함한 1인 가구 지원비 2조 8272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족해체와 관련하여 주요 요인 중 하나인 혼인건수는 2005년 31만 4300건에서 2015년 30만 2800건으로 감소했고, 인구 1000명 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수준인 5.9건으로 추락했다.<sup>11)</sup>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2.6세, 여자 30.0세였다. 이는 2006년 혼인통계에서 확인된 남성 30.9세, 여성 27.8세였던 초혼연령에 비해 높아진 것을 보여준다. 또한 15~49세 기혼여성의 절반가량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저소득 가정일수록 결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가족 가치관의 변화는 이혼율의 증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독거노인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6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중 68.4%는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들은 ‘따로 사는 것이

10)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앞의 책, 37쪽.

11) 환경BUSINESS MONEY, 앞의 책, 134쪽.

편해서(32.5%)와 ‘독립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26.6%)’를 자녀와 떨어져서 사는 주된 이유로 응답하였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마지막 안전망으로 작동하였던 가족의 구조가 변화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심리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sup>12)</sup>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동체의 복원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도시화에 따라 전통적 촌락 공동체가 급속히 와해되었지만, 새로운 형태 및 가치를 지닌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노동시간, 불안정한 삶은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나아가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호혜, 교류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다. 그 결과 유대의 범위가 좁아지고 공존의 가치관이 약해지면서 한국사회의 미래 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다.<sup>13)</sup>

이와 같이 가족해체와 공동체 붕괴는 2017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가족해체와 공동체 붕괴에 따른 공황과 심리적 상처는 잠복기를 거쳐 결국 이혼·가출·자살 등 현대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학교폭력, 패륜범죄, 가정폭력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4. 낮아진 사회이동성

사회이동성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계층적 위치가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이 속해있는 계층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본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그 위치가 바뀔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계층이동성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본인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1.8%로 2013년 보다 6.4%p 낮아졌다. 한편 다음 세대인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세대보다 높은 31%로 나타났지만 2013년 보다는 8.9%p가 감소하여 감소폭이 본인세대보다 더 큼을 알 수 있다.<sup>14)</sup>

소득계층과 직업계층이 세대에서 세대로 세습되는 확률이 높아지면서 교육참여 의지도 구분되기 시작했다.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은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진다. 교육과정이 높아질수록 교육비용은 증가하는데다 대학 교육을 마친 이후에도 취업 재수와 직업 탐색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찌감치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경향이, 즉 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소위 청년 니트(NEET)<sup>15)</sup>족

12) 통계청, 2016 사회조사, 2016. 15쪽.

13)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앞의 책, 38쪽.

14) 통계청, 위의 책, 2016. 28쪽.

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행하는 금·흙수저 또는 3·5포 세대라는 말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sup>16)</sup>

이와 같이 사회이동성의 저하는 계층의 고착화로 이어지고, 저학력의 젊은 세대는 빈곤과 좌절로 인하여 사회적 소외와 배제를 느끼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사회이동성 관련 연구에서는 취업 경쟁에서 밀리고 빈곤과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저학력 청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주변화한 이들이 희망이나 비전을 찾지 못하면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이러한 낮은 사회이동성이 2017년에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적절한 수단으로 성취하지 못하였을 때 느끼게 되는 아노미(Anomie)현상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는 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5. 세대 간 갈등심화

브렉시트(Brexit),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후폭풍 가운데 하나가 세대 간 갈등 문제이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세대별로 극명하게 갈렸던 만큼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로 영국의 24세 이하 젊은 세대들은 찬반투표에서 75%가 유럽연합 잔류를 선택했고, 반면 65세 이상 노년 세대에서는 61%가 탈퇴를 지지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새로운 미래의 영국에서 더 오래 살아가야 할 세대는 바로 젊은 이들이다. 결국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노년 세대가 선택한 미래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세대 간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sup>17)</sup>

우리 사회에서도 이념·지역·계층 갈등에 이어 세대 갈등이 점점 더 주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인한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고령층의 증가는 생산력을 떨어뜨리고 반대로 늘어난 복지수요는 국가재정의 부담 요인이 되면서 세대 간 분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저성장의 장기화는 일자리를 둘러싸고 모든 세대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15~19세 청년실업률의 경우, 2016년 6월 기준 10.3%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가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9.1%에 달해 34개 국가 중 1위였다.<sup>18)</sup>

15) NEET족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교육, 구직, 훈련 등을 단념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16)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앞의 책, 40쪽.

17)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위의 책, 42-43쪽.

2017년에는 세대 간 갈등의 심화로 인하여 청년층과 노년층에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여 분노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 분노범죄는 가정불화(구성원 세대 간 갈등)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세대 간 단절이나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화나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폭력과 같은 분노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경찰은 가정불화 혹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하여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경찰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6. 다문화 확산

우리 사회는 해외이주와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해외여행자 비율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결혼이민자가 31만 명을 넘어 서고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6년 1월 기준으로 180만 명을 넘어섰다. 2045년까지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세계화 등으로 인력시장은 글로벌화되었고, 다양한 인종적·국가적 교류는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2016년 현재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며, 인종 차별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국제교류 측면에서 이미 다민족·다문화적 사회형태를 띠고 있지만, 아직 제도·정책적 측면에서 다문화 사회의 여러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이란 다인종 혹은 다민족 국가 내부의 문화들에 대한 관용과 보호, 그리고 이들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태도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단일 민족 강조와 타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궁극적으로 우리 문화가 다른 문화와 결합해 새로운 문화로 진화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sup>18)</sup>

다문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는 2017년에는 저성장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 외국인과 이민자들의 일탈, 다문화에 대한 편견 등이 범죄 유발적 조건으로 작용될 것이다. 외국인 및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은 외국인 범죄를 유발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외국인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차별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외국인과 이민자들은 그들만의 공동체문화를 강

18)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앞의 책, 43쪽.

19) 위의 책, 164쪽.

화하면서 점점 기존 공동체사회와 분리되는 악순환을 겪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국인 및 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및 활동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 7. 사회문화 위기

우리나라는 매일 4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수년째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 병리현상이다. 우리나라의 하루 자살자 규모는 이라크전 당시 하루 민간인 사망자 수보다 더 많다.

이외에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혼율, OECD 회원국들 가운데 늘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행복지수와 삶의 지수(특히 고교생들의 행복지수가 일본, 중국의 1/3로 청소년 행복지수도 수년째 최하위권이다) 등이 대표적인 사회병리 현상들이다. 한마디로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다. 2014년 미국 갤럽조사 발표에 따르면, 세계 웰빙 지수에서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145개 국가 중 117위였다.<sup>20)</sup>

행복지수와 같은 삶의 만족도, 자살자 규모, 신뢰지수 등을 통하여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불신이 기본 바탕에 있고 장기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계층구조, 분단체제에서 이념대립, 일부 사회지도층의 부도덕한 행위 등은 국민들의 정신문화와 인성 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신문, 방송, 문화매체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쉽게 확산되는 적대와 증오, 반목과 질서, 폭력적인 담론들은 국민들을 불신 문화의 틀 안에 가두고 있다. 사회규범, 가치, 법제도, 질서를 무시하거나 이를 파괴하고 윤리와 도덕을 부정하는 사례도 도처에 나타나는 등 사회 문화의 위기 현상이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sup>21)</sup>

경찰은 미래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사회·문화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경찰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계층 구조나 이념 대립 등으로 인한 사회규범, 법제도, 질서의 무시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인식할 것이며, 경찰이 사회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20)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앞의 책, 70쪽.

21) 위의 책, 69-70쪽.

## IV. 경제환경 변화

### 1. 세계 경제 상황의 완만한 개선

산업연구원의 「2017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2017년 세계 경제는 전년에 비해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유럽과 일본도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중국은 과잉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 등으로 성장 둔화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 신정부 등장, 기준금리 인상, 영국의 브렉시트 여파,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IMF, OECD 등 주요 기관들은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3.2%에서 3.6%의 세계 경제 성장을 전망하였다. 특히 OECD는 세계 교역, 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경제 회복세가 미약하지만 주요국들의 재정 확대 및 원자재 가격의 안정으로 금년보다는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sup>22)</sup>

〈표 2-5〉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실질GDP 기준)

(단위 : %)

기관/연도	2015	2016	2017
IMF(2016.10)	3.2	3.1	3.4
OECD(2016.9)	3.1	2.9	3.3
World Bank(2016.6)	3.1	3.1	3.6
Global Insight(2016.9)	3.2	3.0	3.4

\* ( )는 2016년 각 기관의 발표시점  
출처 : 각 기관의 경제전망 발표자료

### 2.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

2017년 국내 경제는 전년보다 둔화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자국이익 최우선주의’ 및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시장 규제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이 국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경제성장률은 기관별로 오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2.2%에서 3.0%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기관 중에서는 정부(기획재정부)가 가장 높은

22) OECD, Economic Outlook, 2016, 11

3.0%의 경제성장률을 제시하였으며, 한국경제연구원이 2.2%로 가장 낮은 성장률을 전망하였다. 기관별로는 정부(기획재정부) 3.0%, 한국은행 2.8%, 한국개발연구원 2.7%, 한국금융연구원 2.5%, 산업연구원 2.5%, 한국경제연구원 2.2%의 성장을 예상하였다.

〈표 2-6〉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실질GDP 기준)

(단위: %)

연도	정부	한국은행 (2016.10)	한국개발 연구원 (2016.5)	한국금융 연구원 (2016.10)	산업 연구원 (2016.11)	한국경제 연구원 (2016.9)	IMF (2016.10)	OECD (2016.11)
2016	2.8	2.7	2.6	2.7	2.7	2.3	2.7	2.7
2017	3.0	2.8	2.7	2.5	2.5	2.2	3.0	2.6

\* ( )는 2016년 각 기관의 발표시점  
출처 : 각 기관의 경제전망 발표자료

해외 주요 기관들 중 OECD는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하였다. 이는 3.3%를 예상한 세계 경제성장률에 비해 0.7%p 낮은 수치이다. OECD는 지난 6월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발표한 3.0%p에 비해 0.4%p를 하향조정하였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OECD는 기업투자 확대, 민간소비 개선 등은 국내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봤으나 글로벌 교역 회복 지연 가능성, 휴대폰 산업 관련 문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구조조정, 청탁금지법 등을 국내 성장률을 내리는 요인으로 보았다.<sup>23)</sup>

한편 2017년에는 민간소비 또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소득여건 개선의 미흡 등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금년의 2.4%보다 낮은 2.2%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sup>24)</sup> 특히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1월 소비자 심리지수(CCSI)<sup>25)</sup>는 95.8로 전월보다 6.1포인트 급락하였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인 2009년 4월 이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6개 주요지수, 즉 현재 생활형편, 생활형편 전망, 가계수입 전망, 소비지출 전망, 현재 경기판단, 향후 경기전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활용되는 지수이다.

종합적으로 2017년 국외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기준금리 인상, 중국 경제성장 저하, 영국 브렉시트 여파와 국내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건설 경기 침체, 내수부진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7년은 처음으로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산가능 인구

23) “OECD Economic Outlook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 11. 28

24)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16. 10. 12쪽.

25)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 100보다 높으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가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그림 2-1] 2008~2016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출처 : 한국은행

의 감소는 국내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소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sup>26)</sup>

### 3. 높은 실업률과 빈부격차

연구결과에 따르면 높은 실업률과 빈곤, 경기침체, 빈부격차는 치안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실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경제 범죄를 저지르거나 폭력, 문지마 범죄, 테러 등을 저지를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2012년 7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일반인·경찰·경찰관련 교수 등 2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5가지 요인 중 소득불균형을 일차적으로 지목하였다.<sup>27)</sup>

2015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연구보고서에서도 소득불평등도가 높을수록 사회문제와 사회적 위험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격차, 소득 불평등, 경기침체 등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겠지만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주요 환경적 요인 중 하나인 것이다.

통계청이 2016년 11월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3.4%로 10월 기준으로는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sup>28)</sup> 이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및 제조업

26) LG경제연구원, “2017년 경제전망”, 2016. 10

27) “소득불균형이 범죄증가 최대요인”, 내일신문, 2012. 9. 13

28) “제조업궤 ‘고용 불안’ 심화…10월 실업률 11년만에 최고”, 머니투데이, 2016. 11. 9

부진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10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8.5%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외에도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취업준비생의 수치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65만 2000여 명을 기록하였다.<sup>29)</sup>

이러한 통계를 분석하면 최근 국내 실업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청년실업이 심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상 실업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수치가 점차 증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다면 청년 실업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3/4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경기불황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하위 20%를 나타내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1만 7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9% 감소, 상위 20%를 의미하는 소득 5분위는 854만 5000원으로 2.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up>30)</sup> 두 집단 간의 소득 격차가 4.81배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현재 국내 고용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내야 할 청년들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5년 발생한 횡령 사건의 경우 전년에 비해 1만여 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 경제기관에서 전망하는 바와 같이, 2017년에도 우리 경제의 회복은 어렵다고 예상되므로 경찰은 특히 경제 관련 범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2-7〉 주요 경제 범죄 발생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사 기	횡 령	배 임	부수법 위반 (신용·경매 등)
2011	262,200	223,470	26,767	4,725	7,238
2012	277,115	235,408	31,234	4,220	6,253
2013	313,846	269,082	34,892	4,572	5,300
2014	284,342	238,643	37,029	4,419	4,251
2015	301,625	247,418	46,814	4,243	3,150

출처 : 경찰청(2016)

29) “청년실업률 고공행진에 취업준비생 65만명, 역대 최대”, 헤럴드경제, 2016. 11. 14

30) “2016년 3/4분기 가계동향”, 통계청, 보도자료, 2016. 11. 18

## V. 재난·재해 변화

### 1. 재난과 재해의 개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자연재해가 대응단계에서의 불가항력적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 ‘재해’라는 용어를, 기존 재난관리법에서는 인위재난 대응관계에서의 통제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속적 진행개념인 ‘재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일부 개정이 되면서 자연재해와 인위재난 모두 재난의 정의에 포함시켰다.

재난·재해 유형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재난은 “기상현상·지각변동·천체활동·우주기상과 같은 자연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라고 정의한다. 그 범위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폭풍해일, 지진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우박, 폭염, 한파, 산사태, 산불, 화산폭발, 우주재해이다.

사회재난은 “인위적 요소에 의해 발생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하여 그 피해가 국가 기반체계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재난”을 의미하며, 인적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된다. 인적재난은 “발생 원인이 기술적인 실수나 관리 부주의 등 인위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기술적인 재난”이고, 사회적 재난은 “파급효과에 있어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의 확산 등 그 피해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재난”이다. 사회재난의 범위는 감염병·가축 전염병의 유행, 폭발물사고, 가스사고, 방시능사고, 교통사고, 건축물 붕괴, 에너지 기반시설 파괴, 정보통신 기반시설 파괴, 교통수송 기반시설 파괴, 보건의료시설 파괴, 폐기물처리시설 파괴, 용수기반시설 파괴, 화재, 환경오염사고, 사이버테러까지 포함한다.

### 2.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위험성 상존

기후변화는 지구촌의 안녕과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두려운 대량 살상무기’에 비유되기도 한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작성한 「세계위험보고서(the Global Report)」에서도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위험요인으로 기후변화 대응 실패를 꼽았다. 기후변화는 물 부족이나 식량난, 경기둔화, 사회통합의 약화, 치안 불안과 같은 사안보다 훨씬 큰 위험요인이라는 것이다.<sup>31)</sup>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한파, 폭설 등의 기상재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환경·경제·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 지구적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며 생물 다양성 감소, 질병, 홍수 등의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sup>3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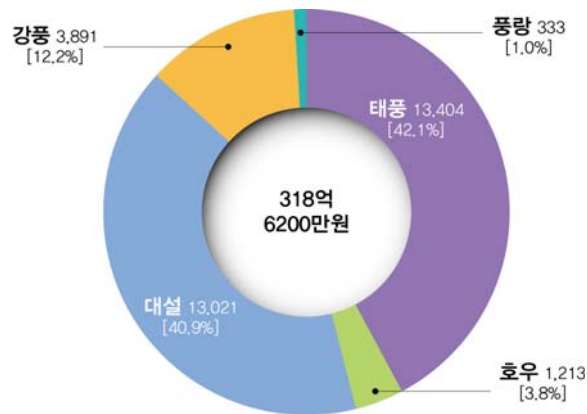
〈표 2-8〉 2015년 원인별 자연재해 피해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피해액	31,862	13,404	1,213	13,021	3,891	333
비율(%)	100.0	42.1	3.8	40.9	12.2	1.0

[그림 2-2] 2015년 원인별 자연재해 피해현황

(단위: 백만 원)



출처 : 국민안전처, 재해연감 2016

2015년 우리나라 자연재해는 호우 7회, 강풍 7회, 대설 2회, 태풍 1회, 풍랑 1회로 피해액은 318억 62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복구비용은 381억 원에 달하며, 관련 국가 재정부담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질 것이다.

31)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7, 이콘, 2016, 52쪽.

32)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 2015, 1쪽.

〈표 2-9〉 2015년 자원별 자연재해 복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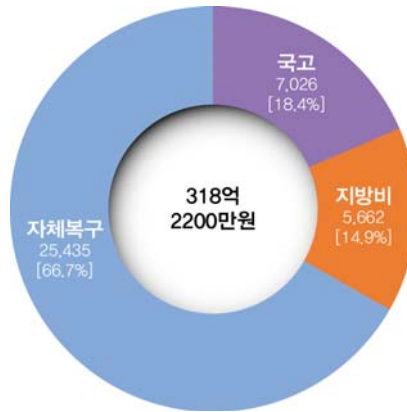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국고	지방비	자체복구
복구비	38,122	7,026	5,662	25,435
비율(%)	100.0	18.4	14.9	66.7

출처 : 국민안전처, 재해연감 2016

〔그림 2-3〕 2015년 자원별 자연재해 복구현황

(단위: 백만 원)



출처 : 국민안전처, 재해연감 2016

〈표 2-10〉 최근 10년간 피해액과 복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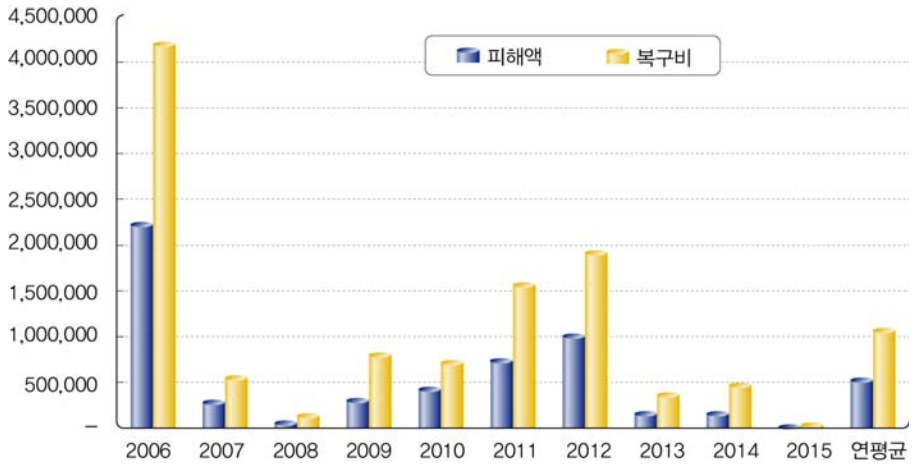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구분/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피해액	2,237,301	285,846	66,620	313,139	430,836
복구비	4,203,916	555,998	154,380	810,633	722,202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751,331	1,023,320	164,355	172,795	31,862	547,741
1,564,748	1,928,972	369,083	486,718	38,122	1,083,477

출처 : 국민안전처, 재해연감 2016

[그림 2-4] 최근 10년간 피해액과 복구비

(단위: 백만 원)



출처 : 국민안전처, 재해연감 2016

이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한 관측은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온 및 강수량이 해마다 증가하여 자연재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2099년에는 전 지구의 평균기온이 1.8~3.7℃ 상승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평균 3.0~5.9℃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위험성이 더욱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해수면 상승, 질병의 확산 등을 초래해 미래 우리 생태계와 사회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sup>33)</sup>

우리나라는 최근 지진의 영향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016년 9월 12일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은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MI) 5.8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여진이 2016년 12월 17일까지 총 552회나 발생하였다.

국내지진의 10년 간 발생추이는 <표 2-11>과 같다.<sup>34)</sup> 201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의 총 횟수는 평균 60회 정도이나, 2016년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하여 총 횟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님을 알 수 있고, 관계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33)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앞의 책, 53쪽.

34) 규모 3.0이하 함은 실내의 일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지진이며, 유감지진은 사람이 지진동을 체감한 지진을 의미하고 총 횟수는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발생 횟수를 말한다.

〈표 2-11〉 최근 10년간 국내지진 발생추이

(단위 : 건)

연도	규모 3이상	유감횟수	총횟수
2006	7	7	50
2007	2	5	42
2008	10	7	46
2009	10	10	60
2010	5	5	42
2011	14	7	52
2012	9	4	56
2013	18	15	93
2014	8	11	49
2015	5	7	44

출처 : 기상청, [http://www.kma.go.kr/weather/earthquake\\_volcano/domestictrend.jsp](http://www.kma.go.kr/weather/earthquake_volcano/domestictrend.jsp)(2016. 12. 19 검색)

### 3. 사회재난 위험의 증가

최근 한국 사회는 자연재해 외에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 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 발생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사회재난이란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와 고의적으로 자행되는 범죄성 재해, 그리고 산업의 발달에 따라 부수되는 공해 피해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재난을 총칭한다.

사회의 안전수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와 더불어 주관적 지표의 파악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사회 전반에 대해 느끼는 안전감의 추세를 통해 삶의 질 수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안전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해야 이들에 대한 국가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 2-12〉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회재난 발생현황이며 이는 객관적 지표에 해당한다. 사고유형으로는 도로교통, 화재, 산불, 철도, 폭발, 해양, 가스, 유·도선, 환경오염, 공단 내 시설, 광산, 전기(감전), 승강기, 보일러, 항공기, 수난, 등산, 추락, 농기계, 자전거, 레저, 놀이시설 등에서 일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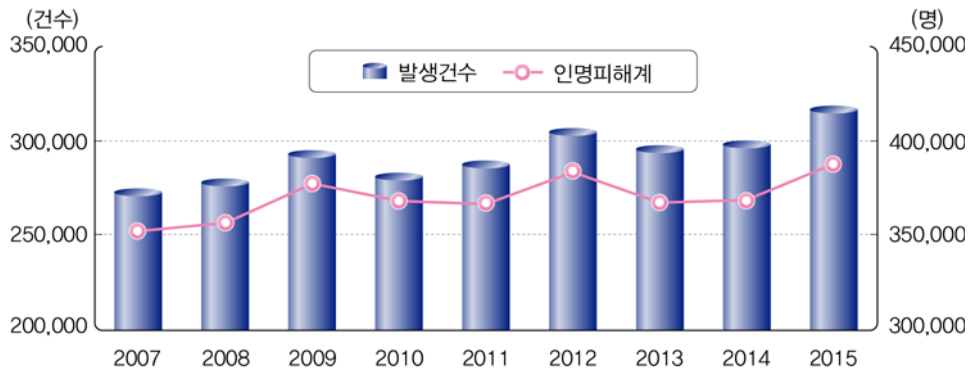
〈표 2-12〉 사회재난 발생현황

(단위 : 건,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발생건수	277,303	292,287	280,607	286,851	303,707	294,707	294,337	315,736
인명피해	계	355,832	376,835	366,911	365,947	383,129	366,610	386,356
	사망	7,414	7,257	6,758	6,709	7,322	7,147	6,434
	부상	348,418	369,578	360,153	359,191	375,807	359,444	379,922

출처 :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2016

[그림 2-5] 사회재난 발생현황



출처 :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2016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발생건수는 2014년 29만 4000여 건에서 2015년 31만 5000여 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망자 수는 6400명, 부상자 수는 38만 여명에 달한다. 이는 「치안전망 2016」에서 전망한 것과 같이 사회재난의 증가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안전인식’ 조사는 사회 안전에 대한 주관적 지표이다. 이 조사는 사회 전반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성별 및 연령 집단별 사회안전인식도는 〈표 2-13〉과 같다.<sup>35)</sup>

35) 2008년과 2010년은 15세 이상이 대상이었고,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이 그 대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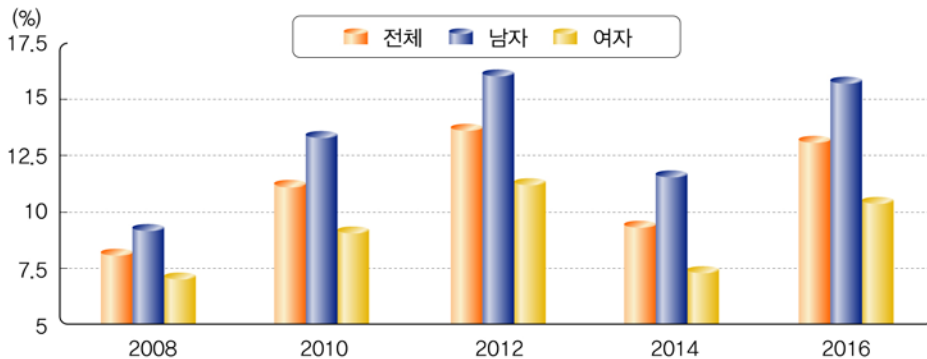
〈표 2-13〉 성별 및 연령 집단별 사회안전인식도

(단위 : %)

구분/연도		2008	2010	2012	2014		2016	
전체		8.2	11.3	13.7	9.5	-31%	13.2	39%
성	남자	9.3	13.4	16.2	11.7	-28%	15.9	36%
	여자	7.2	9.2	11.3	7.4	-35%	10.6	43%
연령별	20세 미만	8.1	11.5	16.1	14.4	-11%	17.6	22%
	20~29세	8.8	11.4	14.2	10.6	-25%	13.5	27%
	30~39세	6.9	9.3	12	7.6	-37%	11.6	53%
	40~49세	8.5	12.7	13.9	8.1	-42%	12.2	51%
	50~59세	8.2	11.9	13.8	8.5	-38%	12.9	52%
	60세 이상	8.9	11.3	13.5	10.2	-24%	13.6	33%
	65세 이상	9.2	11.3	13.5	10.4	-23%	13.4	29%

출처 : 통계청, 2016 사회조사

[그림 2-6] 성별 사회안전인식도



출처 : 통계청, 2016 사회조사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8년 8.2%에서 2016년 13.2%로 증가하였다. 반면, 사회 전반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같은 기간 동안 51.4%에서 45.5%로 감소하였다. 국민들의 안전감은 증가하고 불안감은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으나, 여전히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보다 약 3.4배 많다. 사회안전인식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가장 낮고 최근 들어 10대와 20대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아진다.

〈표 2-14〉 사회위험종류별 안전인식도

(단위 : %)

위험종류/연도	2008	2010	2012	2014	2016
국가안보	24.6	14.9	22.0	14.9	19.8
자연재해	17.3	18.8	23.3	15.1	20.8
교통사고	5.7	8.0	9.4	7.3	10.2
화재	9.9	16.6	17.7	14.2	19.1
범죄위험	-	8.2	9.1	8.9	9.2

출처 : 통계청, 2016 사회조사

위의 〈표 2-14〉와 같이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을 국가안보,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및 범죄의 위험종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자연재해와 국가안보에 대한 안전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교통사고와 범죄에 대한 안전인식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2016년에 교통사고와 범죄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각각 10.2%와 9.2%에 불과하다. 국민의 안전인식을 반영하여 교통사고와 범죄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 수립 및 경찰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는 첫째, 시설물의 노후화·고층화·대형화로 인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둘째, 세계화·도시화·기술화 등으로 인한 신종재난의 증가도 전망된다. 그 예로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과 같은 국경을 초월하는 재난과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금융사기, 사이버 테러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전기, 가스, 원자력) 시설의 밀집에 따른 복합재난 및 산업화에 따른 특수재난(유해화학물질, 대규모 정전) 증가가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선박·기차 등 고위험 내재적 이동수단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등산·해양스포츠·축제 등 위험이 내재된 활동의 증가로 사회재난의 가능성이 날로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자연재해·사회재난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며, 이를 완벽하게 예방하거나 차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연재해의 경우 미리 예측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사회재난은 시민들의 협조 아래 각 기관들이 협력하여 조치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sup>36)</sup>

36)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전망, 2015. 52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도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 Ⅵ. 국내·외 안보정세 변화

### 1. 세계 안보정세 변화

2016년 국제 정세는 혼돈과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한 해였다. 영국이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3년 만에 탈퇴를 결정했고, 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를 꺾고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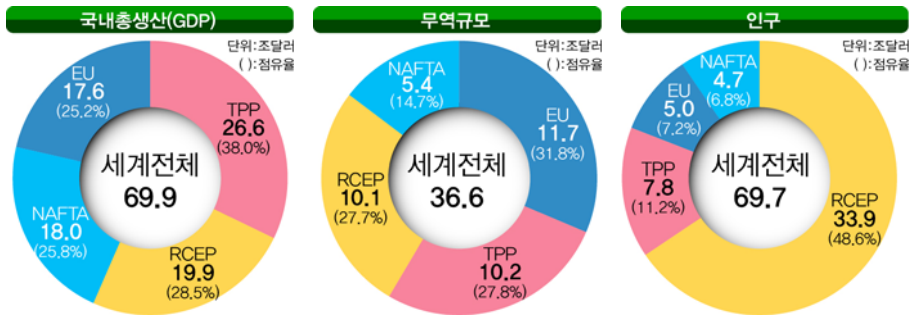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는 EU의 존립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체코 등에서도 EU 탈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기존의 국제주의적 현실주의를 비판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세계경찰이 아니며, 국익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선회할 것”임을 예고했다. 일례로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앞으로 미·중 간 경제무역 전쟁을 예고했다.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는 반면,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한층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두 나라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자칫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중 간의 갈등구도는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 불확실성도 아울러 증대시키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상교통로(SLOC) 확보와 해양영토관할권 분쟁, 그리고 유럽판 나토(NATO) 체제를 연상케 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확대는 각국의 군비확충에 따른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력의 상승에 따라 미국에 신형대국관계(A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hip)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당분간 중국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장관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엑손모빌 최고경영자 출신인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을 지명했다. 러시아는 이를 반기고 있기에 향후 미·러 관계는 협력관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기] 세계 경제무역협정 규모 비교



출처 : “중국 눈치 보다가 큰 것 놓쳤다.” 오피니언뉴스, 2015. 10. 6

따라서 2017년 세계정세는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전통적 강대국과 신흥발전국 사이에서 어떠한 양·다자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따라 국제질서는 근본에서부터 요동칠 개연성이 있다.

한편 세계 각지에서 영토, 종교, 인종 문제 등 전통적 갈등요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관련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국지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 초국가적이고 비전통적 위협, 즉 폭력적 극단주의, 난민,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등도 중요한 안보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가 유럽 등에서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테러를 잇달아 저지르면서 세계를 경악시킨 바 있다. IS의 테러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별도의 전선 없이 자행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대규모 무슬림 공동체가 존재하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파리테러와 유사한 테러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에서 2017년에는 IS와 같은 초국가적 테러단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응징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동북아 안보정세 변화

2017년 동북아 지역체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미·중간의 갈등구도에도 불구하고 냉전종식 후 유지되어온 지역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관계를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주석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은 육상과 해상 교통로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관련 국가들과의 정치·군사·외교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난사군도(南沙群島)에서 벌어지는 미·중 간의 군사적 대치이다.

[그림 2-8] 시진핑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중국은 어떠한 상황에도 기존의 한반도 정책 3원칙인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황교안 국무총리와의 회담(2016. 6. 29)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의 핵보유 병진노선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른 한반도의 급격한 정세변화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에도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비예측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부담’을 최소화시키되, 지정학적 특성을 이용한 ‘전략적 자산’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관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은 기존의 ‘당 對 당’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對 국가’의 관계, 이른바 정상국가 간의 외교관계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제1~3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은 사전 통보를 받았으나, 4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전혀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학계의 통설이다. 특히, 5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젊은 지도자 김정운의 도발에 대해 중국의 인내는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 유사한 도발이 발생될 경우 북한 정권교체에 대한 중국내 엘리트들의 요구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체제 개편에 따라 북중 접경을 관할하게 된 북부전구(北部戰區)에 4개 집단군을 배치하기로 확정했다. 옛 선양(瀋陽) 군구의 제16, 39, 40 집단군과 지난(濟南)군구의 제26 집단군이 북부전구에 배속되었다. 이들 4개 집단

군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을 관할하는 동시에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에 전향적인 4개당(자민당 121석, 공명당 25석, 일본유신회 12석, 마음중시당 3석)이 161석을 획득함에 따라 개헌에 동의하는 무소속 4명을 포함하여 개헌 추진 세력이라 할 165석을 확보했다. 참의원에서 헌법 개정에 필요한 2/3 이상의 의석 기반이 갖추어진 것이다.

2018년 9월로 예정된 아베 총리의 임기를 고려해 볼 때, 2017년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고, 2018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중참의원 2/3 이상 가결 이후 국민투표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4~5차 핵실험은 이명박 정부시절 체결이 시도되었다가 무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과 더불어 한국 내 고고도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배치를 불러 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중국과도 2012년에 제안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다시 제안, 중국의 대응을 기다리는 중이다.

2017년 동북아는 전통적 동맹구도인 한·미·일 對 북·중·러의 삼각 동맹구도들 사이에 두고, 동맹체제의 이탈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는 한층 더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한편,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가진 각국은 북한문제와 관련 3자·5자·6자회담 등 다양한 형태의 협상 가능성을 모색하는 동시에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일본과의 역사문제 해결 등 각 사안별 이슈에 따라 협력과 갈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국내 안보정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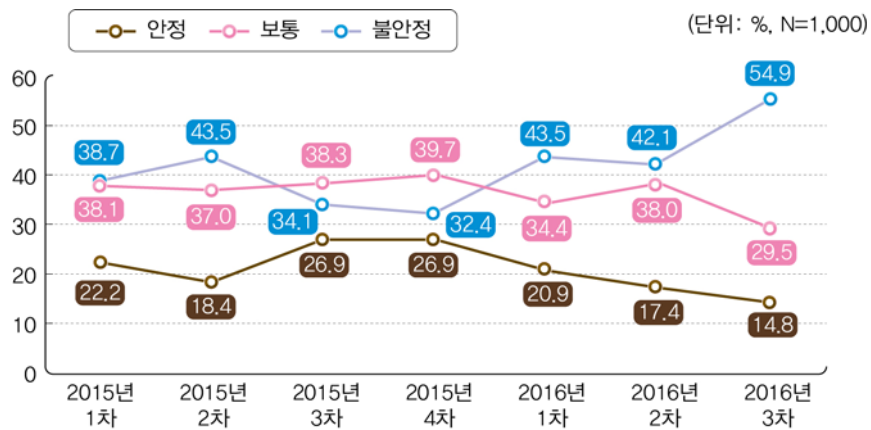
2016년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차례의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실험을 단행했다. 남·북한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체제의 내부결속의 필요성과 대외협상력 제고 및 유일지배체제의 구축에 따른 의도된 행동이다.

2016년 새해 벽두에 기습적으로 이뤄진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은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었다. 그동안 남북한은 2015년까지 643회의 각종 분야별 남북회담을 개최해 왔고, 그 과정에서 합의서도

239건이나 채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각종 도발은 남북관계가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휴전체제에 살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었다.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 정책을 조선노동당의 일관된 영도원칙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한 제7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은 김정일이 추구했던 선군중심 노선을 버리고, 선당중심으로 권력을 이동시켰다. 아울러 핵·경제 병진노선이 향후 확고한 대내외 정책임을 선언했다. 즉 핵개발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이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대외적 고립을 초래하였다.

[그림 2-9] 향후 남북관계 전망<sup>3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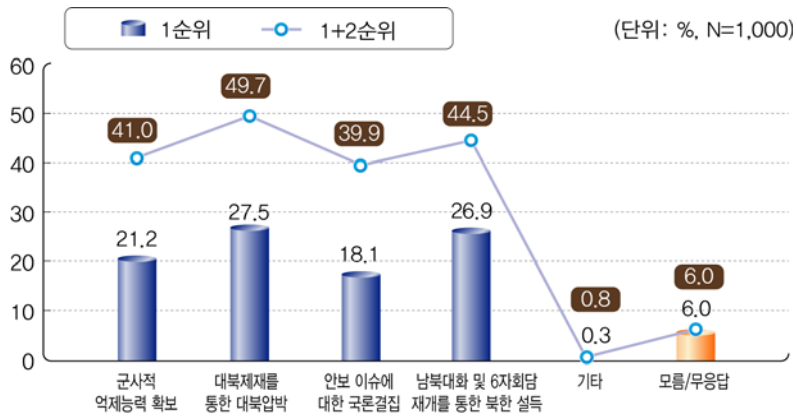


출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www.nuac.go.k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국민통일여론조사(2016. 9. 23~9. 2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대해서 ‘안정적이다’는 응답이 14.8%,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54.9%로 조사되었다. 2016년 2차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무수단 미사일 발사 등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안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악화가 국민의 안보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7)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비례총화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며, 표본오차 95%이고 신뢰수준은 ±3.1%이다.

[그림 2-10] 안보위협에 따른 정부의 추진 과제



출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www.nuac.go.kr)

북핵 등 안보위협 대응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한 대북압박’이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북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한 설득’이 44.5%, 자체 핵개발 등 ‘군사적 억제능력 확보’가 41%, 안보이슈에 대한 ‘분열현상 극복을 위한 국론결집’ 39.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에도 북한의 각종 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확고한 안보의식과 국가관의 정립이 요구된다.

# 치안전망 2017

P O L I C E   S C I E N C E   I N S T I T U T E



## 제3장

# 2017년 분야별 치안전망

제1절 2017년 치안정세 개괄 전망.....	45
제2절 범죄수사 분야 전망 .....	57
제3절 생활안전 분야 전망 .....	119
제4절 교통안전 분야 전망 .....	141
제5절 사회안정 분야 전망 .....	155
제6절 안보·외사 분야 전망 .....	167





## 제1절 2017년 치안정세 개괄 전망

I. 범죄수사 분야	46
II. 생활안전 분야	49
III. 교통안전 분야	51
IV. 사회안전 분야	53
V. 안보·외사 분야	54

## I. 범죄수사 분야

### 1.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예년 수준 유지, 5대 범죄 발생은 소폭 감소

2008년과 2009년 200만 건 이상을 기록했던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다음해 급감한 후 180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범죄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교통범죄, 지능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를 중심으로 2017년 범죄발생을 예측해보면, 교통사고 범죄 및 교통사고 이외의 범죄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범죄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신종수법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집중적인 대응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폭력범죄는 최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절도범죄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 속에 감소폭이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범죄 유형별로 변화추세에 일관성이 없어서 전체범죄의 발생수준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최근의 변화추세로 보아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력범죄 및 절도범죄와 함께 5대 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의 경우 발생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피해가 심각한 범죄유형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살인은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속에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강도 역시 감소의 폭은 작아졌지만 2009년 이후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 2014년부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2017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5대 범죄 전체로 봤을 때 강도와 절도 등 재산범죄의 뚜렷한 감소로 인해서 2017년 소폭 감소가 예상된다.

### 2. 보이스피싱 상당 폭 감소,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투자사기 피해 증가

경찰청은 2016년에도 2015년에 이어 '3대 악성 사기' 중 하나로 규정한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연중 상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2016년에는 전년 동기대비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대폭 감소하였다. 2016년 들어 가시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억제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에도 예방홍보 및 제도 개선, 강력한 단속과 국제공조 등 종합적인 분야별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보이스포싱은 상당 폭 근절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저금리와 저성장 환경에서 서민들의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하는 유사수신과 불법다단계 등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금융기법 발달에 힘입어 P2P 금융, 크라우드 펀딩, 비트코인 등을 위장한 신종 유사수신이 늘고 있고 그 수법도 교묘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불법다단계 업체가 해외에 근거를 둔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하며 보석광산 개발,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마치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 3. 첨단 과학수사장비와 기법의 도입으로 과학수사 역량 강화

경찰청은 국민의 높아진 과학수사에 대한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하여 첨단장비의 도입과 과학수사 인력의 증원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학수사 기법·장비의 도입으로 과학수사의 기술 발전은 비약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장기 미제 사건의 해결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계속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확대 수행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빅데이터 기법 범죄분석 모형, 겹친 지문 식별기술 장비, 시체섭식곤충활용 법과학 분석 기법 등의 연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7년에는 지문 발견을 위한 법광원 개발과 법보행분석 분야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 사물인터넷(IoT) 등에 대한 보안위협 증가, 신종 금융사기범죄 수법 등장

2017년에는 더 많은 IoT 기기가 보급되면서 IoT 기기에 대한 보안위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안이 취약한 가정이나 소형 사무실의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된 네트워크 카메라, 스마트 TV, NAS(Network-Attached Storage) 등 IoT 기기에 대한 해킹피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17년에는 다양한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공공기관 DDoS 공격 등 공격 대상과 수법이 더욱 지능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6년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악성코드도 증가하였다. 특히 모바일 랜섬웨어가 등장하여 사용자를 위협하고 있다. 향후에도 랜섬웨어 추적에 대한 우회기술의 개발 및 가상화폐(비트코인)의 사용 확대에 따라 랜섬웨어 추적 및 수사가 어려운 여건에 있다. 반면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는 쉬워 랜섬웨어의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7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나 선거 예측 등으로 일반인들을 현혹하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악성코드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침체된 경제와 대외무역 상황을 악용하여 보안의식 및 보안역량이 낮은 중소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이메일 무역사기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할 우려가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예방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이버 금융범죄는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K뱅크)의 출범과 운영 과정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및 대출심사 등 보안 취약점을 노린 새로운 금융범죄가 등장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이용에 따라 거래상의 편의성은 기대되나, 신분도용에 의한 계좌개설 및 대여 또는 유사 문자에 의한 스미싱(악성코드 설치) 등 피해 발생 우려 또한 높다. 따라서 해외의 범죄 사례 및 예상 범죄 유형에 대한 연구와 수사 매뉴얼 준비 등 세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II. 생활안전 분야

### 1. 전체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현상 유지되거나 소폭 감소, 아동 대상 강간·강제추행 범죄 소폭 증가세 지속

성폭력범죄는 강간과 추행 범죄 유형 외에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등을 포함한다. 강간·추행 등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성폭력범죄는 경찰 공식범죄통계상의 강간·추행범죄 발생추이와 최근 범죄피해조사의 동 범죄피해율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최근의 감소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강간·추행 등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성폭력범죄의 감소세는 경찰 등 형사사법기간의 성폭력범죄 검거율 향상과 재범률 억제를 통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간·추행 범죄 유형 외에 비접촉성 성범죄를 포함한 전체 성폭력범죄는 2016년의 발생건수 감소가 추세적 전환점이 될지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간·추행 범죄 추이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현상 유지 내지는 소폭 감소가 예상된다.

아동 대상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지난 5년 동안 범죄 발생건수와 발생비에서 소폭 이나마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추세가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는 최근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추이에 따라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학교폭력 감소하고 집단화와 폭력성 개선될 것이나, 저연령화가 지속되고 학생간 성폭력 증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응답률 감소 추이와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인원 감소 추이, 학교폭력 피해 신고의식 제고 지표에 근거하여 최근 학교폭력은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부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집단가해 경험률 감소 추이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당 가해학생수 감소 추이에 근거하여 최근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은 개선되는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폭력의 폭력성과 관련해서도 신체폭행

피해 건수 등 관련 지표들이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학교전담경찰관 증원을 통해 학교 내 폭력서클에 대한 경찰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어서 폭력성 개선 추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학교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피해자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추이에 근거하여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학교폭력 유형 중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성폭력 심의건수 증가 추이, 경찰의 학교폭력 범죄통계상 성폭력 사건 증가추이, 경찰 범죄통계상 18세 이하 미성년 학생 성폭속범죄(비접촉형 성범죄) 인원 증가추이에 근거하여 학생 간 성폭력범죄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Ⅲ. 교통안전 분야

#### 1. 고령화, 자율주행 등 교통환경 변화

고령화, 1인 가족화 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대수,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늘고 있어 교통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이를 처리할 도로 연장 증가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증가에 그치고 있어서 도로용량 증가에 의한 교통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7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운행하는 자동차의 실질증가율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운전면허 소지자도 전년대비 증가하여 교통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급격한 기술의 진보를 보이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응하여 자율주행을 실제로 도로에 적용할 수 있는 교통제어 시스템 및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2017년에는 이러한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사고예방을 위한 C-ITS 기술 및 자율주행 관련 첨단교통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비혼잡 교통신호 제어기법 도입, 고속도로 운영관리 효율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연계 강화, 고령자 및 중증환자 운전면허 관리, 도로교통법 현실화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기술의 상호의존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 고령층 교통사고는 증가

2017년 교통사고는 전체적으로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모두 감소하는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역시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 더불어 2017년에는 4000명 선이 붕괴되어 3990명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7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체적으로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모두 급격히 감소하는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2016년 9월까지 음주사고는 전년대비 발생 건수 21%, 사망자 41%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교통안전 기술 개발, 교통경찰의 단속활동 및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 근절홍보 등 정부와 경찰의 노력이 국민인식 변화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고령층 사망자 수는 2006년에서 2012년까지 급격한 주기적 변동을 보이다가, 2013년부터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고령층 사망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와의 관련성이 깊으며, 2017년에도 고령층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IV. 사회안정 분야

### 1. 불법 폭력집회 낮은 수준 유지 전망

2016년 9월 기준, 불법 폭력집회 발생 건수는 14건으로 전년 동기(17건)대비 약 18% 감소하였다. 최근의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고려할 때, 2016년 전체 건수도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집회 참가자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평화적인 집회를 통해 그들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경찰 또한 과거와는 달리 강경한 집회시위 관리 방침에서 벗어난 것도 집회 참가자와의 갈등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과 집회 참가자가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성숙한 집회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적·준법 집회시위 문화는 2017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국내 테러 가능성과 테러위험 지속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가 2014년 발표한 세계 테러리즘 지수(Global Terrorism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테러 위험(risk)지수는 일본(121위)보다 낮은 124위로 뉴질랜드, 핀란드, 폴란드 등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국내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복합적 형태의 신종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점차 사회가 개인화되고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테러의 발생 원인도 다양해지고 있다. 2017년에는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이 개인에 의한 테러는 점차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여성혐오와 무동기 범죄와 같은 테러 가능성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는 사회에서 소외된 개인들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나 증오의 표출 등의 이유로 표현적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수년간 국내 체류외국인 중 수 명이 ISIL(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에 가담하였고 테러 단체 지지 외국인 50여명이 국내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ISIL이 전 세계 추종자들에게 국내 주한미군 시설 두 곳과 우리 국민 한 명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테러위험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ISIL 추종세력 확산, ISIL과 알 카에다 간 경쟁 격화, 무슬림과 非무슬림간 대립 조짐 등으로 테러정세가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V. 안보·외사 분야

### 1. 선행후경 전략에 기초, 제7차 핵실험과 각종 군사적 도발 예고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2016. 5. 6)를 통해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를 ‘선행후경(先核後經)’ 노선으로 변경하고, ‘선군(先軍)’ 중심의 국가체계를 ‘선당(先黨)’ 중심으로 개편했다. 36년 만에 당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식승계 절차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앞으로 자신이 이끌어 갈 북한의 미래방향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북한의 각종 군사적 도발은 우리 정부의 정권교체기에 도발을 감행하는 특징을 보여준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시에도 예외 없이 제3차 핵실험(2013. 2. 12)을 단행했다. 따라서 2017년 초에 제7차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미국에서는 트럼프 공화당 신 행정부가 들어설 예정이고, 한국에서는 대선이 있는 해이다. 북한은 한국을 대상으로는 평화공세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측되며, 미국에게는 양자대화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안정화되고, 한반도 정책이 정초되는 7월 이전까지 미국은 북한의 각종 접촉이나 대화 제의를 무시할 것이다. 반면 한국 대선에 영향을 주고자 민간차원의 회담과 적극적인 평화공세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견된다.

### 2. 2017년 대선을 전후한 대남 사이버 심리전 본격화

북한은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차원에서 대선과 총선 등 한국의 주요 선거 시기마다 다양한 선거투쟁 전술을 구사해 왔다. 2017년 대선국면을 전후해 북한은 반제민전의 ‘구국전선’을 비롯한 직영 및 친북 웹사이트 등 대남 선전매체를 총동원해 투쟁 지침과 구호를 하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남사이버공작 기관은 사이버 공간을 ‘선거혁명의 해방구’이자 ‘남조선혁명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것이다.

조평통, 반제민전, 조국전선 등의 대남혁명 전위 조직은 사이버 선전 매체를 이용해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공안기관 폐지’, ‘연방제통일’ 등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선점해 대남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다양한 흑색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언비어를 생산·유포해 남남갈등(계층·지역 간 갈등), 이념 간 갈등 등을 조장하는 사이버심리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 3. 북한 주민의 지속적인 탈북, 탈북민의 범죄 등 치안수요 증가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었던 2000년 이전에는 당장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탈북’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재북 당시 소득과 생활수준이 중·상류층인 자들이 자유와 김정은 체제의 불안과 불만,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 등에 의한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한 ‘이주형 탈북’을 선택하고 있다. 2016년 중국의 북한 식당종업원 및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 등 북한 중산층과 엘리트층의 ‘이주형 탈북’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국, 2017년에도 북한 주민들 중 중·상층이 ‘보다 나은 삶’과 ‘자유’를 찾는 ‘이주형 탈북’은 지속될 것이다. 이외에도 계속되는 김정은 체제의 공포 정치, 내부 혼란 등의 사회 불안정에 따른 집단탈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7년에도 탈북민의 사회일탈, 위장 탈북민 간첩, 재입북, 해외 위장 망명 등에 의한 치안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4. 국내체류 외국인의 200만 명 증가와 이에 따른 외국인 범죄의 변화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최초로 2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여행객의 증가와 국가간의 비자면제 협정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물론 치안정책의 정착과 관련 제도의 변화에 따라 강도, 도박, 지능범죄의 경우는 감소 추세에 있다.

2016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는 밀반입 수법, 유통 경로 등 점차 다양화, 조직화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한 적발이 어려워 마약류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마약 단속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단속, 국제 공조 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제2절 범죄수사 분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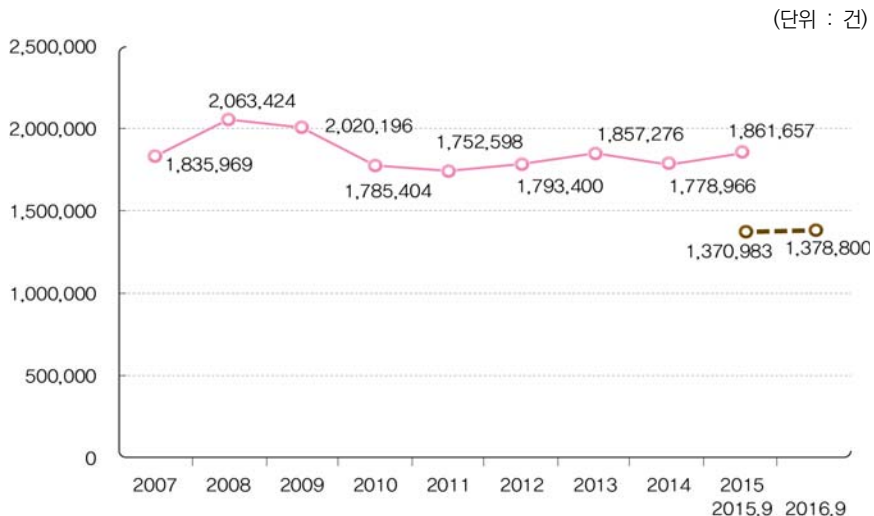
I. 2017년 범죄 발생 전망 .....	58
II. 5대 범죄의 변화와 전망 .....	70
III. 보이스피싱 범죄 전망 .....	83
IV.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전망 .....	91
V. 과학수사 환경의 변화와 전망 .....	96
VI. 사이버범죄 전망 .....	106

## I. 2017년 범죄 발생 전망

거시적 관점에서 범죄 발생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최근 5년에서 10년간의 범죄 발생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2017년의 범죄 발생을 예측하여 경찰의 대응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전체 범죄 발생 추세를 개관한 다음, 주요 범죄유형별 증감 추세를 예측하였다. 이어 고령자,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발생 추세와 지역별 범죄발생비의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범죄의 발생 건수는 아래의 [그림 3-2-1]과 같다.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2008년과 2009년에 200만 건 이상을 기록한 이후 최근에는 180만 건을 전후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에는 9월말 기준 137만 8800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7817건이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0.6%가 증가한 것으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7년에도 전체 범죄는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2-1] 최근 10년간 전체 범죄 발생 추이



출처 : 경찰청(2016)

전체 범죄 발생 건수의 변화는 교통범죄의 증감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2008년과 2009년의 범죄 발생 건수의 급증에도 교통범죄의 발생 건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교통범죄를 제외하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체 범죄건수에서 교통범죄의 건수를 뺀 건수는 120만여 건으로 일정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교통범죄의 증감이 전체 범죄의 발생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표 3-2-1〉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752,598	1,793,400	1,857,276	1,778,966	1,861,657
교통범죄	536,167	542,784	573,453	573,493	596,665
교통범죄 이외의 범죄	1,216,431	1,250,616	1,283,823	1,205,473	1,264,992

출처 : 경찰청(2016)

전체 범죄의 증감에 관한 예측을 위해서는 교통범죄를 비롯한 주요 범죄 유형에 대한 예측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 교통범죄의 소폭 증가와 폭력범죄의 현상유지가 예견되는 반면, 절도범죄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지능범죄도 감소가 예견되고 있어서 전체 범죄의 증감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전체 범죄건수의 변화양상을 보았을 때, 2017년에도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의 범죄 발생건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 교통·지능·폭력·절도는 높은 비중 유지될 전망

경찰청에서는 2007년 범죄통계부터 전체 범죄를 모두 15개의 유형별<sup>38)</sup>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각 유형별 범죄의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3-2-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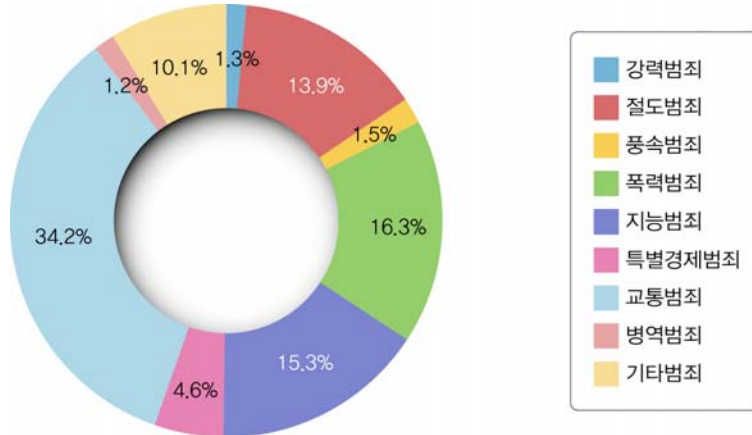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는 교통범죄<sup>39)</sup>이며, 전체 범죄의 34.2%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는 폭력범죄(폭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손괴, 공갈, 협박

38) 경찰청은 범죄통계 집계에 있어 기존에는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이분하여 작성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총 15개의 위반행위 속성(범죄행위의 내용적 특징) 및 법익침해 유형(범죄행위의 결과적 특징)으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 새로운 분류법에 의한 범죄통계 집계는 2007년 통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었으며, 여기서는 통계분석의 통일성을 위해 새로운 분류법이 적용된 2007년 이후의 통계만을 사용하였다. 15개의 범죄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특별경제범죄, 마약범죄, 보건의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노동범죄, 안보범죄, 선거범죄, 병역범죄, 기타범죄이다.

39) 교통범죄의 내용은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동위험행위, 교통방해의죄, 도로법 위반 등 교통사고 이외의 범죄들도 모두 포함된다.

등) 16.3%, 지능범죄(사기, 횡령, 배임, 문서·인장·통화 위조 등) 15.3%, 절도범죄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절도 범죄) 13.9%의 순으로 나타나 전 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보이고 있다.

[그림 3-2-2] 최근 범죄 유형별 구성비(2007 ~ 2015년)



\* 구성 비율이 낮은 범죄(1% 미만) 유형은 그림에서 제외  
출처 : 경찰청(2016)

<표 3-2-2> 최근 10년간 범죄유형별 발생 건수

(단위 : 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9	2016.9
계	1,835,969	2,063,424	2,020,196	1,785,404	1,752,598	1,793,400	1,857,276	1,778,966	1,861,657	1,370,983	1,378,800
강력범죄	20,713	22,938	25,322	25,834	26,705	25,152	26,962	25,277	25,334	18,727	18,793
절도범죄	212,346	223,204	256,419	269,439	281,362	290,460	288,343	266,222	245,853	181,456	149,507
폭력범죄	294,791	305,435	315,850	292,492	311,948	312,579	294,187	290,073	305,947	222,504	229,258
지능범죄	233,195	260,052	282,044	268,307	279,802	295,101	329,439	298,652	316,121	232,891	229,292
풍속범죄	23,469	25,887	47,069	31,205	28,866	24,801	27,474	25,070	24,491	18,198	19,291
특별 경제범죄	63,984	134,415	133,843	61,578	68,026	78,155	71,019	72,908	86,329	66,507	49,529
마약범죄	6,043	5,105	6,081	4,233	4,160	4,268	4,598	4,825	6,411	4,877	5,887
보건범죄	15,172	16,038	18,630	12,988	14,083	16,800	20,383	14,657	14,602	10,869	10,952
환경범죄	7,784	6,665	5,349	3,998	2,648	3,128	4,135	2,536	2,961	2,244	3,456
교통범죄	749,387	845,003	690,111	623,053	536,167	542,784	573,453	573,493	596,665	435,340	454,014
노동범죄	2,132	2,488	2,526	1,266	1,836	1,391	1,721	1,308	1,145	827	1,490
안보범죄	81	66	56	103	132	109	135	84	121	89	55
선거범죄	662	1,581	180	2,417	212	1,262	398	1,874	760	728	999
병역범죄	27,602	23,675	22,541	20,828	20,587	23,143	26,173	21,549	18,726	13,581	11,580
기타범죄	178,608	190,872	214,175	167,663	176,064	174,267	188,855	180,437	216,197	162,145	194,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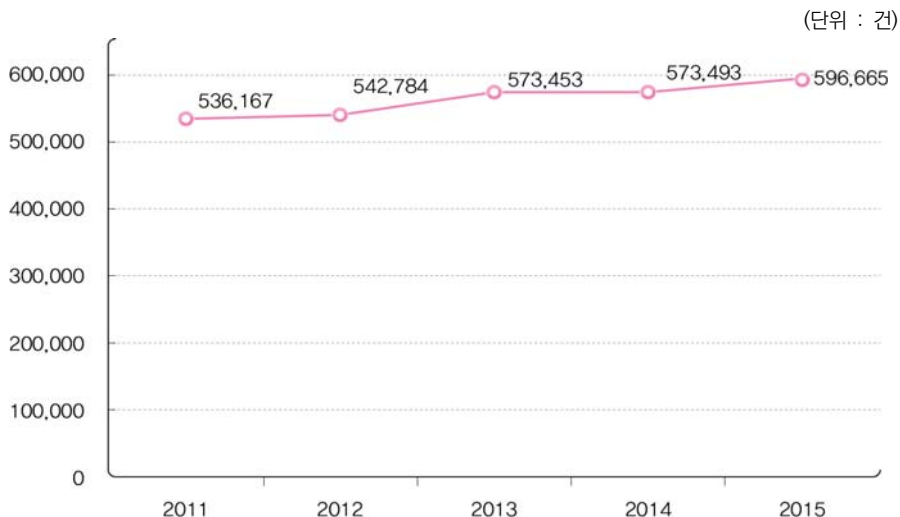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2016)

## 2. 교통범죄의 소폭 증가와 마약범죄의 급증 예상

교통범죄는 2008년 84만 5003건이 발생하여 정점을 기록한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여 2011년에는 53만 6167건을 기록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5년간의 변화를 보면 교통범죄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완만한 상승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통범죄를 교통사고 범죄와 교통사고 이외의 범죄로 구분했을 때, 두 가지 유형 모두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교통사고범죄<sup>40)</sup>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등 경찰의 단속의지에 영향을 받는 교통사고 이외의 범죄 유형과는 달리 실제 발생 현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교통범죄 발생의 전제가 되는 차량과 운전자 수를 고려했을 때, 우선 차량 등록대수가 2011년 1843만 7373대에서 2015년 2098만 9885대로 증가하였고,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2011년 2725만 1153명에서 2015년 3029만 362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 비해서는 차량 수 대비 교통사고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교통사고 범죄 건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교통범죄는 소폭이나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3-2-3] 교통범죄의 발생 추이



출처 : 경찰청(2016)

40) 교통사고범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인피교통사고)과 도로교통법(물피교통사고) 상의 교통사고 건수 이외에도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물피교통사고미조치, 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의 죄가 포함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건수에 비해 교통사고 '범죄' 건수가 더 높게 집계된다.

〈표 3-2-3〉 교통범죄 사고구분별 발생 건수 및 구성비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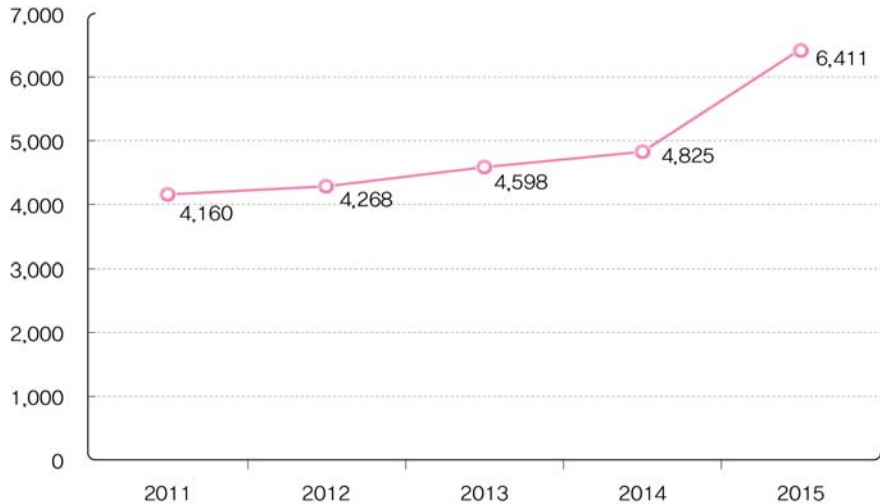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536,167	542,784	573,453	573,493	596,665
(%)	(100.0)	(100.0)	(100.0)	(100.0)	(100.0)
교통사고범죄	264,372	297,226	298,083	313,617	338,212
(%)	(49.3)	(54.8)	(52.0)	(54.7)	(56.7)
교통사고 외 범죄	271,795	245,558	275,370	259,876	258,453
(%)	(50.7)	(45.2)	(48.0)	(45.3)	(43.3)

출처 : 경찰청(2016)

전체 범죄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마약류<sup>41)</sup>의 소비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마약범죄의 발생건수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와 함께 마약류를 공급하는 공급책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추구와 현실도피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마약 사용을 부추기는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한 다양한 경로의 마약 공급으로 인해서 마약범죄는 한동안 상승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4] 마약범죄의 발생 추이

(단위 : 명)



출처 : 경찰청(2016)

41) 마약류에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다. 마약의 종류에는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등의 천연 마약과 메사돈, 페치딘 등의 합성마약이 있으며, 대마의 종류에는 대마초, 해쉬쉬, 해쉬쉬오일 등이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 YABA, 엑스터시(MDMA) 등의 흥분제, 바르비탈류, 펜플루라민 등의 억제제, LSD와 같은 환각제가 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은 알약 형태로 대량 유통이 되는 등 마약류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부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거나 ‘데이트 강간 약(date-rape drug)’ 등으로도 알려지면서 유흥업소 및 클럽 등지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유형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고 마약이라는 거부감이 적어 확산 속도가 빠르며, 향후 더 강도 높은 마약으로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표 3-2-4〉 최근 6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 9	2016. 9	전년대비
계 (공급사범)	5,477 (2,061)	5,105 (2,187)	5,459 (2,254)	5,699 (2,318)	7,302 (2,786)	5,539 (2,007)	6,907 (2,626)	24.7%
마약사범	660	501	596	578	1,023	986	1,286	30.4%
대마사범	819	673	665	700	723	552	666	20.7%
향정사범	3,998	3,931	4,198	4,421	5,556	4,001	4,955	23.8%

출처 : 경찰청(2016)

### 3. 지능범죄의 소폭 감소 전망

사기, 횡령, 배임, 문서·인장·통화 위조 등으로 대표되는 지능범죄<sup>42)</sup>는 2007년 23만 3195건이 발생한 이래로 장기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2013년 32만 9439건을 기록했다가 2014년 29만 8652건으로 한 차례 감소했다. 이러한 범죄유형은 2015년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6년 9월에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기죄의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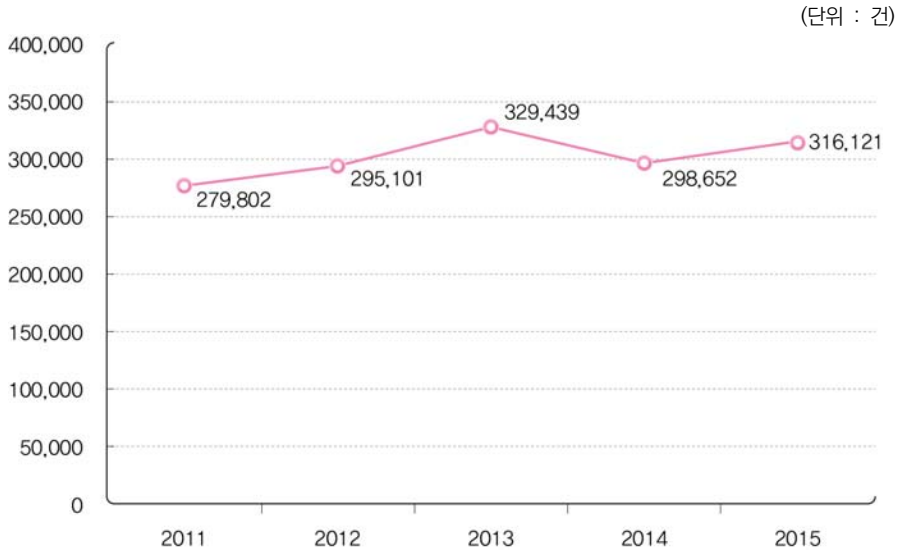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는 침체국면에 있으며, 국내적으로 실업률과 가계부채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동기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랜섬웨어<sup>43)</sup> 등 전자금융사기 형태의 지능범죄 수법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정보기술과 첨단기기에 취약한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어 지능범죄의 증가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능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기죄의 감소와 지능범죄 전담팀의 편성 및

42) 지능범죄에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등 공무원의 지위와 관련된 범죄들도 있지만 이 유형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43) 악성코드(malware)의 일종으로, 이에 감염된 컴퓨터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악성 코드 제작자에게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인터넷 두산백과).

사이버안전국의 기능 강화 등 경찰의 지속적인 대응노력으로 인해서 전체 지능범죄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5] 지능범죄의 발생 추이



출처 : 경찰청(2016)

〈표 3-2-5〉 최근 6년간 주요 지능범죄의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 9	2016. 9	전년대비
사기	223,470	235,408	269,082	238,643	247,418	184,234	178,168	-3.3%
횡령	26,767	31,234	34,892	37,029	46,814	32,615	35,680	9.4%
배임	4,725	4,220	4,572	4,419	4,243	3,032	3,199	5.5%

출처 : 경찰청(2016)

#### 4. 51세 이상 범죄자의 꾸준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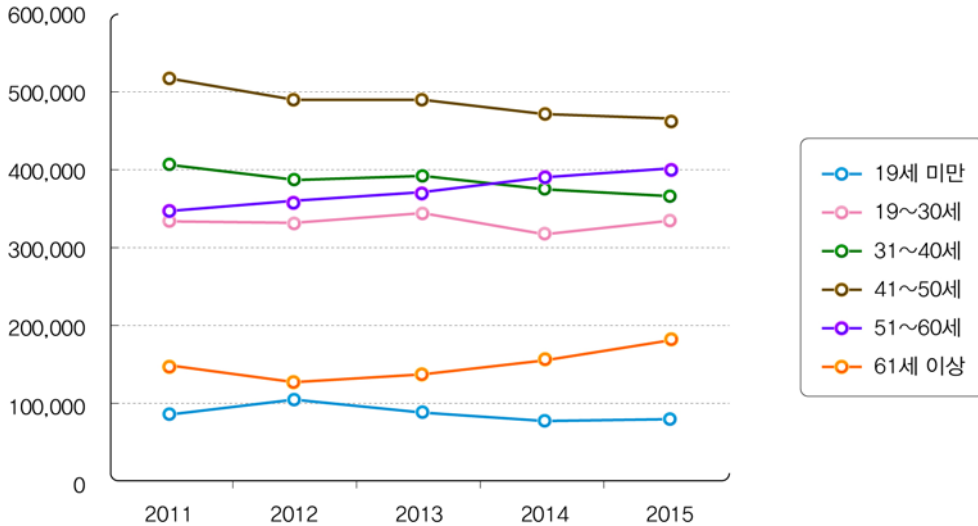
인구 구조의 큰 변화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출산율은 저하되면서 범죄자의 연령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범죄자들을 크게 6개의 연령대별로 구분했을 때 50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51세 이상의 범죄자, 즉 51~60세, 그리고 61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범죄자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에 51세 이상의 범죄자는 전체의 18.4%로 나타났지만, 계속 증가하여 2015년에는 28.8%, 2016년의 경우 9월 기준 30.5%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적인 인구 통계적 관점에서 ‘노인’의 분류 기준이 되는 65세 이상의 노인 범죄자는 2008년에 7만 7125명으로 총 범죄자 중 3.3%를 차지하였는데, 2015년에는 10만 1281명으로 총 범죄자의 5.1%로 나타나 그 비중이 상승했다.

[그림 3-2-6] 범죄자 연령대별 인원수 변화 추이

(단위 : 명)



출처 : 경찰청(2016)

<표 3-2-6> 최근 6년간 연령대별 범죄자 수<sup>44)</sup>(2011~2016.9)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 9	2016. 9
계(명)	1,729,048	1,723,815	1,741,303	1,712,435	1,771,390	1,306,134	1,375,965
19세 미만	85,118	104,532	88,549	77,280	79,342	59,707	56,122
19~30세	313,329	313,062	320,280	299,645	319,669	237,107	249,811
31~40세	384,848	367,318	374,193	356,845	355,459	262,852	278,627
41~50세	489,424	468,728	465,070	451,195	451,239	333,181	341,156
51~60세	334,533	344,604	357,329	374,514	392,989	288,000	305,952
61세 이상	121,771	125,012	134,507	150,902	170,604	123,809	141,692
미 상	25	559	1,375	2,054	2,088	1,478	2,605

출처 : 경찰청(2016)

44) 이 통계는 전체 발생 인원 중 기초중지자, 성별불상자, 법인을 제외한 숫자이다.

고령 범죄자 비율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인구의 고령화에 동반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sup>45)</sup>로 진입하였고 ‘고령사회’<sup>46)</sup>의 기준에 거의 도달해 있다(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13.1%). 이러한 고령화 추세와 노인범죄자 증가는 우리 사회만의 현상이 아니며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 주요 국가에서도 노인범죄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sup>47)</sup>

그러나 <표 3-2-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노인범죄의 증가가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인구의 고령화만이 노인범죄 증가의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조기 은퇴의 증가와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내적 불만이 증가한 반면, 기대수명의 증가와 함께 과거에 비해 연령대비 건강상태가 양호해지면서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적·신체적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범죄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복지와 같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과거 고령자들이 누리던 지위와 위신 등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고 있어 억제요인이 감소하는 것이 노인범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고령인구의 범죄비율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2-7>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2011~2016. 9)

(단위 : 명)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 9	2016. 9
계(명)	50,734,284	50,948,272	51,141,463	51,327,916	51,529,338	51,482,816	51,664,244
19세 미만	10,631,826	10,405,854	10,139,946	9,872,342	9,633,308	9,693,511	9,446,603
19~30세	8,295,920	8,161,177	8,052,758	8,012,311	8,037,713	8,024,797	8,055,001
31~40세	8,362,361	8,245,732	8,164,372	8,011,538	7,810,694	7,856,703	7,697,105
41~50세	8,824,812	8,826,349	8,821,048	8,906,117	8,920,640	8,935,623	8,881,231
51~60세	7,036,736	7,496,216	7,761,839	7,995,944	8,193,526	8,141,723	8,256,595
61세 이상	7,582,629	7,812,944	8,201,500	8,529,664	8,933,457	8,830,459	9,327,709
65세 이상	5,700,972	5,980,060	6,250,986	6,520,607	6,775,101	6,721,014	6,936,921

출처 : 통계청(2016)

45) UN 기준에 따르면, 국가 전체의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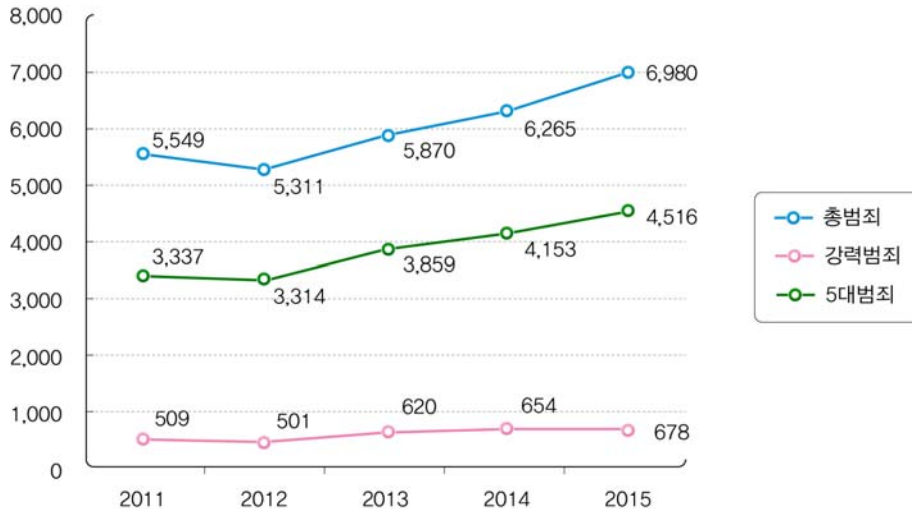
46) 국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를 초과한 경우가 ‘고령사회’에 해당된다.

47) 김상원, 김은주, “일본과 한국의 노인범죄 추세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8. 297-299쪽.

## 5.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증가

‘등산로 문지마 칼부림’, ‘강남역 문지마 살인’, ‘오패산 총기사건’ 등 2016년 한 해에만도 정신장애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들이 수차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전체 범죄 발생 건수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발생 비율이나, 전체 정신질환자 중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높지 않다. 하지만 ‘문지마 범죄’ 등을 경험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증가한 상황이다. 실제로 점진적으로 정신장애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범죄 발생 추세로 보았을 때,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한동안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7] 범죄 유형별 정신질환자 유발 건수 추이



출처 : 경찰청(2016)

<표 3-2-8> 최근 6년간 정신질환자 범죄유발 건수와 재범률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 9	2016. 9	전년대비
총 범죄	5,549	5,311	5,870	6,265	6,980	5,282	6,239	18.1%
강력범죄	509	501	620	654	678	493	541	9.7%
5대 범죄	3,337	3,314	3,859	4,153	4,516	3,425	3,982	16.3%
재범률	65.9%	65.3%	65.7%	65.9%	65.6%	63.6%	63.6%	0.1%p

\* 정신질환자 현황 : 368만 명 추산(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보건복지부)

출처 : 경찰청(2016)

## 6. 제주의 범죄 발생비 급증 및 광주의 감소 전망

경력배치 등 범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역별 범죄발생 전망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난 5년간의 지역별 범죄발생 현황을 보면 대체로 지역 인구수 및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범죄발생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역 인구가 많은 경기도, 서울, 부산, 경남, 인천 등지의 범죄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발생 수준이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인구 대비 범죄발생 건수를 의미하는 발생비<sup>48)</sup>가 높은 지역들이 있다.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 광역시의 발생비가 높은 편이며 광주를 제외하고는 발생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도 단위의 지역들은 대부분 2014년에 발생비의 정점을 찍은 후 2015년에는 감소하고 있어 광역시들과는 대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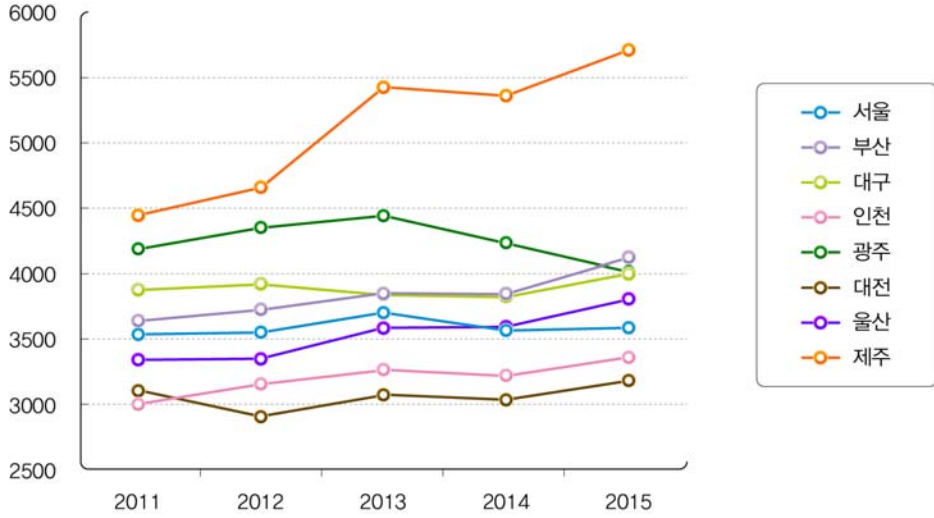
제주도의 경우 발생비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 인구 대비 범죄발생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이 관광지로서 뿐만 아니라 투자처로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의 발생비 증가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의 경우 이에 대비되어 가장 뚜렷하게 발생비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다. 광주의 경우 2013년까지 제주도에 이어 발생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였으나 이러한 치안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5대 범죄 감소를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 광역순찰대의 예방적인 순찰활동, 등산로와 지하철 순찰대 등 선제적인 치안활동을 펼치는 등 개선된 치안전략을 적용해왔다. 광주의 발생비 감소는 이 지역의 치안정책의 변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감소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48) 발생비 = (발생건수 \* 100,000) / 해당년도 추계인구수

[그림 3-2-8] 서울특별시, 광역시(+제주)의 범죄발생비 변화 추이

(단위 : 건)



출처 : 경찰청(2016)

<표 3-2-9> 최근 5년간 지역별 범죄발생비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3,571.3	3,591.3	3,713.2	3,599.3	3,616.2
부산	3,657.1	3,826.5	3,900.6	3,920.2	4,138.2
대구	3,893.1	3,965.1	3,902.0	3,892.6	4,028.8
인천	3,019.3	3,227.4	3,370.8	3,296.0	3,461.9
광주	4,236.8	4,456.8	4,489.7	4,275.9	4,037.8
대전	3,117.5	2,943.4	3,148.0	3,077.2	3,229.5
울산	3,335.8	3,346.6	3,619.1	3,616.8	3,901.1
경기	3,130.4	3,224.5	3,311.8	3,292.9	3,474.7
강원	3,686.9	3,943.2	3,903.4	3,579.0	3,779.7
충북	3,135.4	3,270.0	3,354.5	3,262.3	3,440.8
충남*	2,990.9	3,148.7	3,237.4	3,215.1	3,210.1
전북	3,255.6	3,452.9	3,331.7	3,152.0	3,188.8
전남	3,602.5	3,575.6	3,741.1	3,594.1	3,793.4
경북	3,433.5	3,524.5	3,716.9	3,368.3	3,477.7
경남	3,726.9	3,455.2	3,582.6	3,429.6	3,617.5
제주	4,469.6	4,693.8	5,482.0	5,378.7	5,759.2

\* 세종자치시의 경우 충남지역에 포함

출처 : 경찰청(2016)

## II. 5대 범죄의 변화와 전망

최근 10년(2007~2016. 9)간 5대 범죄의 발생 현황을 보면, 2007년 이후 5대 범죄의 전체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별 범죄유형별로 발생 건수 변화의 차이가 있지만, 5대 범죄에서 폭력범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절도의 경우, 2015년의 전년대비 감소폭과 2016년 9월의 전년 동기대비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2017년 전체 5대 범죄는 예년에 비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2-10〉 최근 10년간 5대 범죄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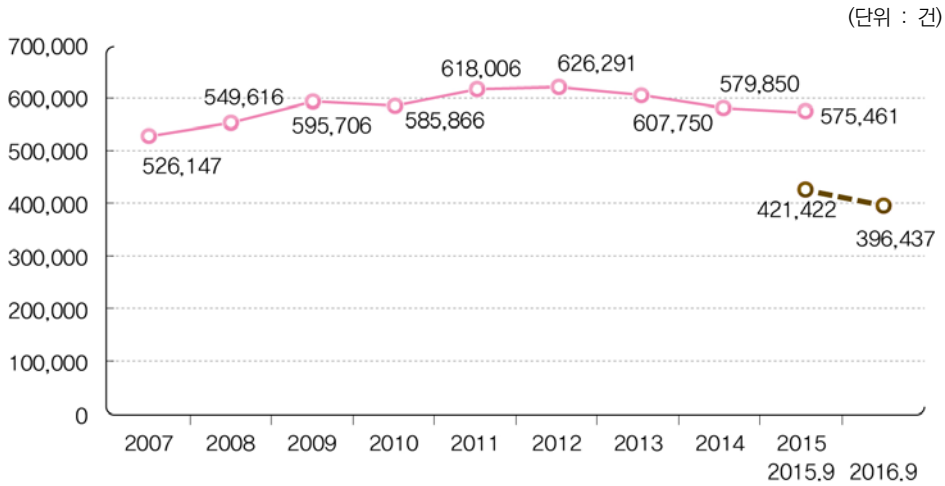
(단위 : 건)

연도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계
2007	1,113	4,456	13,441	212,346	294,791	526,147
2008	1,111	4,842	15,024	223,204	305,435	549,616
2009	1,374	6,370	15,693	256,419	315,850	595,706
2010	1,252	4,425	18,258	269,439	292,492	585,866
2011	1,204	3,994	19,498	281,362	311,948	618,006
2012	995	2,587	19,670	290,460	312,579	626,291
2013	930	1,980	22,310	288,343	294,187	607,750
2014	914	1,586	21,055	266,222	290,073	579,850
2015	929	1,446	21,286	245,853	305,947	575,461
2015. 9	712	1,113	15,637	181,456	222,504	421,422
2016. 9	701	876	16,095	149,507	229,258	396,437
전년대비	-1.5%	-21.3%	2.9%	-17.6%	3.0%	-5.9%

출처 : 경찰청(2016)

5대 범죄 중에서도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서 강도와 절도 등의 재산범죄의 감소폭이 매우 크다. 카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평소에 현금 등을 소지하거나 큰 금액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범행으로 인한 비용에 비해서 기대 가능한 이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들어 사이버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신종금융사기 수법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단, 단속의 강화와 국민의식의 증대로 인해 2016년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폭 감소하였다.) 재산범죄자들이 범죄수단을 전환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림 3-2-9] 최근 10년간 5대 범죄 전체 발생 추이



출처 : 경찰청(2016)

5대 범죄 전체에 있어서 10년간의 변화추세는 앞서 확인된 바와 같이 2007년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장기간의 변화추세를 고려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변화를 예측하기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발생수준에 있어서는 부정확한 예측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별 범죄에 있어서는 1년 후의 범죄 발생 수준을 예측하기 위해서 최근 5년 간, 2016년 9월까지를 포함하여 6년간의 추세를 활용하여 변화를 예측하였다. 특히 2016년 9월과 2015년 9월까지의 동기 간 범죄 발생 건수를 비교하여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 2017년의 5대 범죄 발생을 예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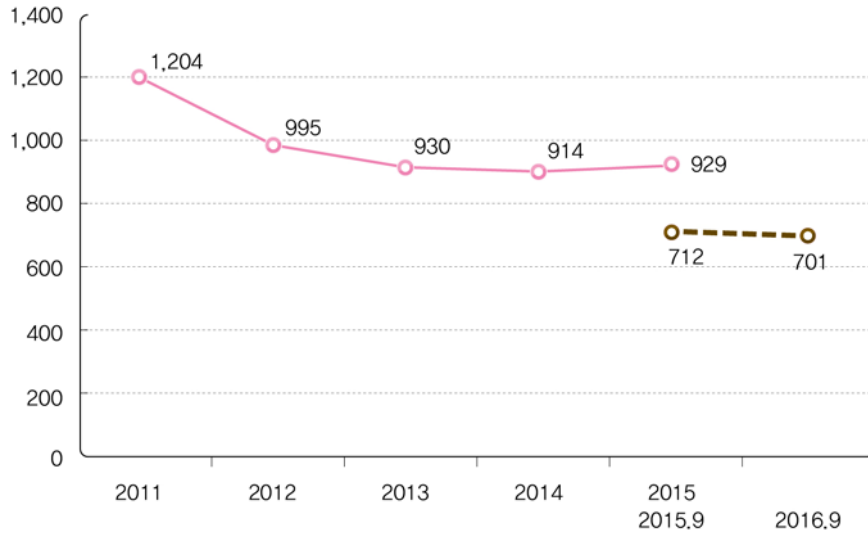
5대 범죄의 개별 유형별 범죄 발생 예측에 있어서는 범죄통계에 근거한 발생 추세를 기본으로 하되, 2017년의 범죄를 예측할 수 있는 외적 변수에 관한 자료들, 그리고 5대 범죄의 발생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추가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 1. 살인범죄 발생 건수 유지와 사회적 약자의 피해 증가

최근 6년간 살인범죄 발생 건수는 2011년 급격히 감소하다가 900건 정도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907건을 기록한 다음 2015년에 929건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6년 9월 기준 2015년의 동기 705건 대비 7건이 감소하여 2017년에도 이러한 추세를 이어간다면 소폭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10] 살인범죄 발생 추이

(단위 : 건)



출처 : 경찰청(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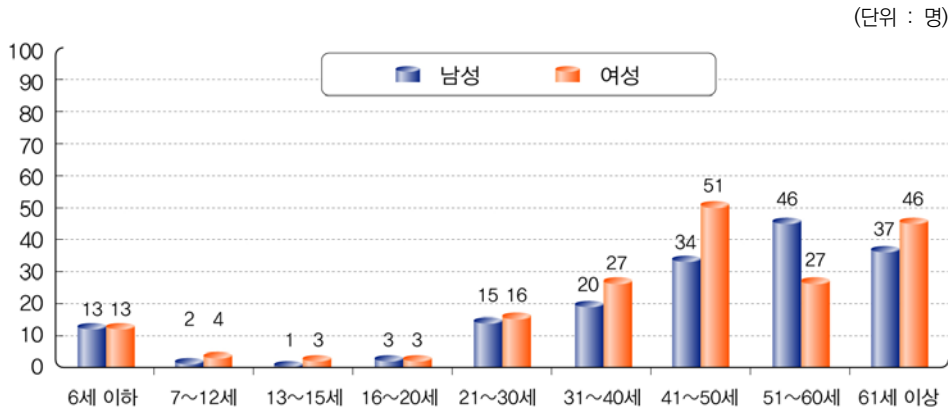
2015년을 기준으로 살인범죄(기수)는 친족(30.1%), 친구·애인(14.1%), 또는 직장 동료(4.4%) 등에 의해서 발생하며, 최근 들어 이웃·지인 간(11.3%)의 살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몇 년 새 빈발한 층간소음, 보복운전 등의 분노·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범죄들도 가정불화 및 현실 불만의 동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사회전반에서 낮아진 삶의 만족도와 경제적 빈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증가와 현실 불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현실 불만과 가정불화 등 개인적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분노·충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는 대상은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살인의 피해자 중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세 이하 아동의 경우 2015년 7.9%까지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61세 이상의 피해자도 23.5%를 차지하고 있다.

살인사건 피해자의 남녀 비율에 있어서도 여성의 비율이 2015년 기준 52.3%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남녀 비율이 비슷한 것은 범죄조직의 활동으로 인한 남성 사망률이 낮은 국가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성 피해자 비율이 51.0%를 차지했던 2008년 무렵에 미국 22.5%(2010), 영국 33.9% (2009), 프랑스 34.3%(2008), 호주 27.5%(2009) 등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관심이 요구된다.<sup>49)</sup>

이처럼 살인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보면,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살인범죄의 예방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11] 살인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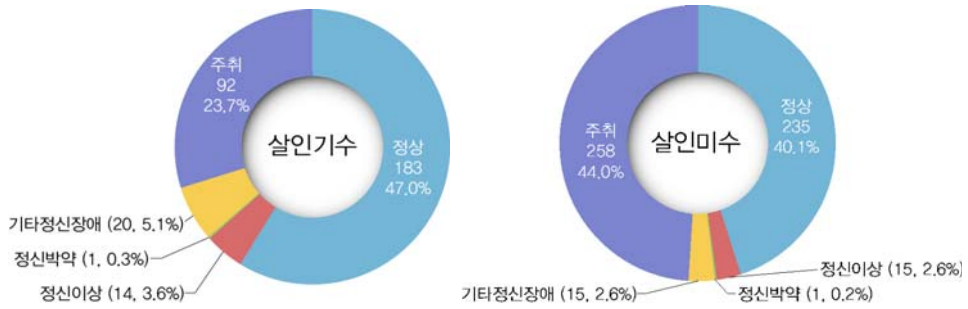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 2015 범죄통계, 2016

살인 범죄자 중에서 정신이상이나 정신박약 등 정신장애를 겪고 있었던 범죄자는 살인기수의 경우 8.9%(정신이상 4.0%, 정신박약 0.4%, 기타 정신장애<sup>50)</sup> 4.5%)에 이르며, 이는 전체 범죄 평균 0.6%나 다른 5대 범죄 평균 1.2%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사회적 현실은 정신질환 자체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중요한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9)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Percentage of male and female homicide victims, latest year”에서 발췌  
<http://www.undoc.org/gsh/en/data.html>

50) 범죄통계 상의 정신장애는 정신이상(정신분열병자), 정신박약(의사가 박약하거나 불안정한 백치, 저능자), 기타 정신장애(조울병자, 성격이상자(난폭자, 변태성욕자 등))로 구분하고 있다. 최근 정신분열병은 조현병, 조울병은 양극성장애로 용어가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림 3-2-12] 살인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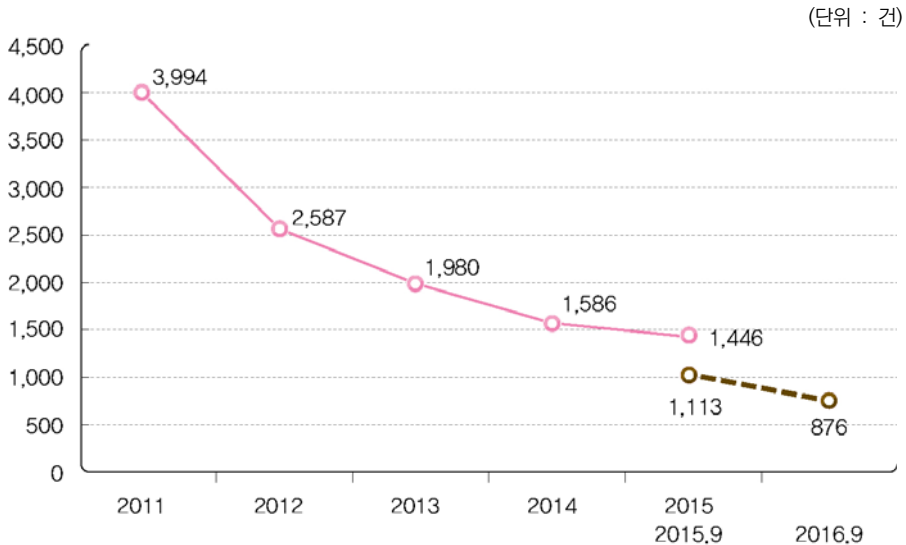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 2015 범죄통계, 2016

## 2. 강도범죄의 소폭 감소와 마취·약취유인 강도의 비율 증가

강도범죄의 발생 건수 역시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5대 범죄 중에서도 가장 극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도범죄의 꾸준한 감소 추세, 그리고 2016년 9월까지의 발생 건수와 전년 동기간의 발생 비율을 비교해봤을 때 21.1%가 감소한 점을 고려한다면 강도의 발생은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감소 추세의 둔화와 과거의 강도 발생 건수를 고려했을 때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13] 강도범죄 발생 추이



출처 : 경찰청(2016)

강도범죄 수법 상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연도별로 수법별 구성비율<sup>51)</sup>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범죄유형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비침입강도 중에서 노상강도의 비율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CCTV의 설치가 증가하면서 노상범죄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마취강도나 약취유인강도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은 건수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주로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파장이 클 뿐만 아니라 심각한 범죄나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형이므로 변화 추이에 관심을 요한다.

〈표 3-2-11〉 최근 5년간 강도범죄의 범죄수법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3,564 (100.0)	2,402 (100.0)	1,822 (100.0)	1,547 (100.0)	1,446 (100.0)
침입강도	일반강도 (%)		426 (12.0)	313 (13.0)	275 (15.1)	243 (15.7)	205 (14.2)
	감금강도 (%)		35 (1.0)	23 (1.0)	25 (1.4)	23 (1.5)	16 (1.1)
	인질강도 (%)		38 (1.1)	29 (1.2)	25 (1.4)	11 (0.7)	14 (1.0)
	기타 침입강도(%)		841 (23.6)	662 (27.6)	508 (27.9)	416 (26.9)	372 (25.7)
비침입강도	차내·운전자 상대 강도(%)		204 (5.7)	112 (4.7)	77 (4.2)	74 (4.8)	70 (4.8)
	노상강도 (%)		681 (19.1)	479 (19.9)	285 (15.6)	226 (14.6)	185 (12.8)
	차량이용강도 (%)		41 (1.2)	20 (0.8)	16 (0.9)	29 (1.9)	17 (1.2)
	마취강도 (%)		38 (1.1)	20 (0.8)	35 (1.9)	21 (1.4)	37 (2.6)
	약취유인강도 (%)		121 (3.4)	70 (2.9)	61 (3.3)	76 (4.9)	112 (7.7)
	기타 비침입강도(%)		1,095 (30.7)	654 (27.2)	507 (27.8)	414 (26.8)	407 (28.1)
해상강도 (%)		0 (0.0)	0 (0.0)	0 (0.0)	1 (0.1)	0 (0.0)	
강도강간 (%)		44 (1.2)	20 (0.8)	8 (0.4)	13 (0.8)	11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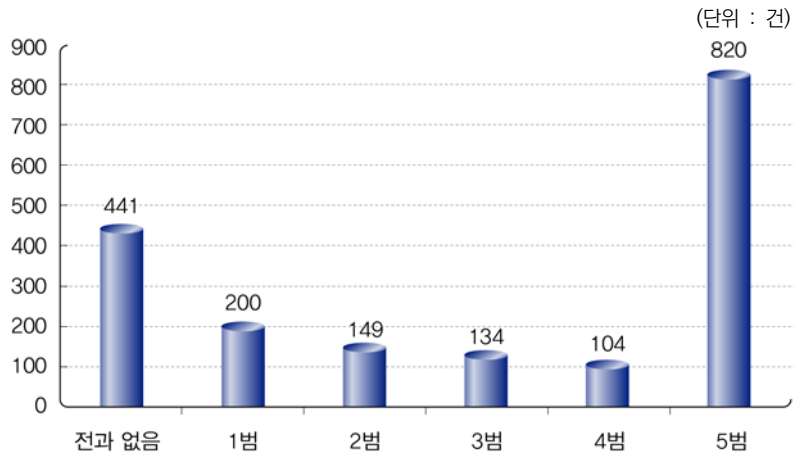
\* 연도별로 미상 또는 결측치의 편차가 커서 이를 제외하고 유형별 비율을 계산하였음(2011년: 430건, 2012년: 185건, 2013년: 158건, 2014년: 39건, 2015년: 0건)

출처 : 경찰청(2012~2016)

51) 강도범죄는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건수보다 구성비율의 비교를 통해 수법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강도범죄의 경우 같은 재산범죄인 절도와 비교했을 때 발생건수가 많지 않은 반면, 전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과 5범 이상의 비율은 무려 41%에 달하고 있어, 많은 경우에 범행 경험이 있는 전과자들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전과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직전의 범행과 강도와의 동종 여부를 확인해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동종인 경우가 28.0%, 이종인 경우가 72.0%로 나타나고 있어서 강도의 검거율 증가가 반드시 강도의 감소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 예상되는 비용 대비 이익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강도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림 3-2-14] 강도범죄자 전과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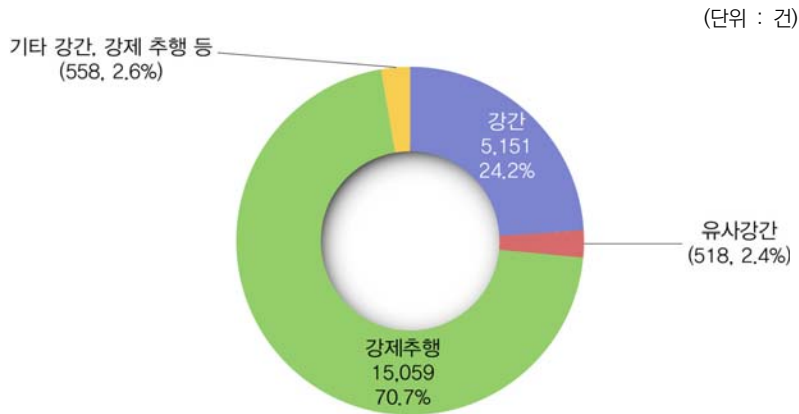
\* 미상은 제외

출처 : 경찰청, 2015 범죄통계, 2016

### 3. 강간·강제추행 발생건수 유지

강간·강제추행범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성격이 다른 몇 가지 유형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강간(유사강간 포함)과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체 강간·강제추행범죄 중 강제추행이 7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강간이 24.2%, 유사강간이나 기타 강간·강제추행범죄는 각각 2.4%와 2.6%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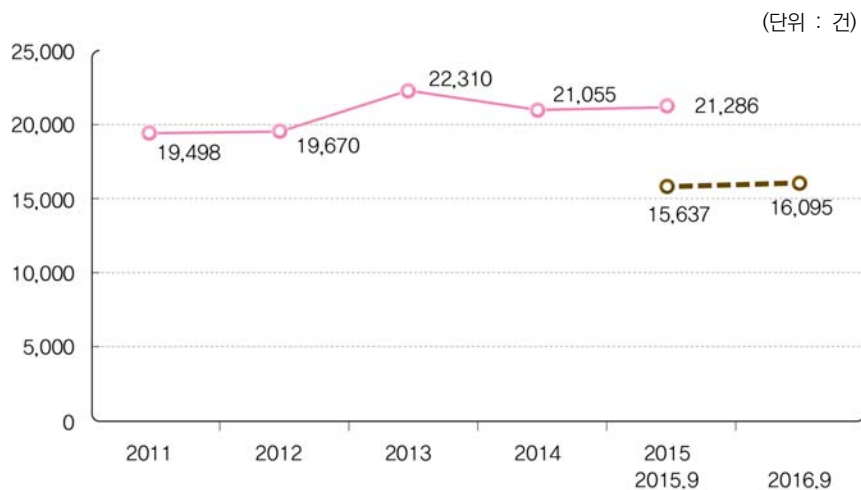
[그림 3-2-15] 강간·강제추행의 유형별 분포



출처 : 경찰청, 2015 범죄통계, 2016

2012년 12월에 형법,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고 2013년 6월부터 개정 내용이 전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강간·강제추행범죄는 2013년 2만 2310건이 발생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해인 2014년 2만 1055건이 발생하면서 한 차례 감소한 이후 2016년 9월 기준 1만 6095건이 발생하여, 2015년 동기간 대비 2.9%가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강간·강제추행범죄의 발생건수는 2017년에도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2-16] 강간·강제추행범죄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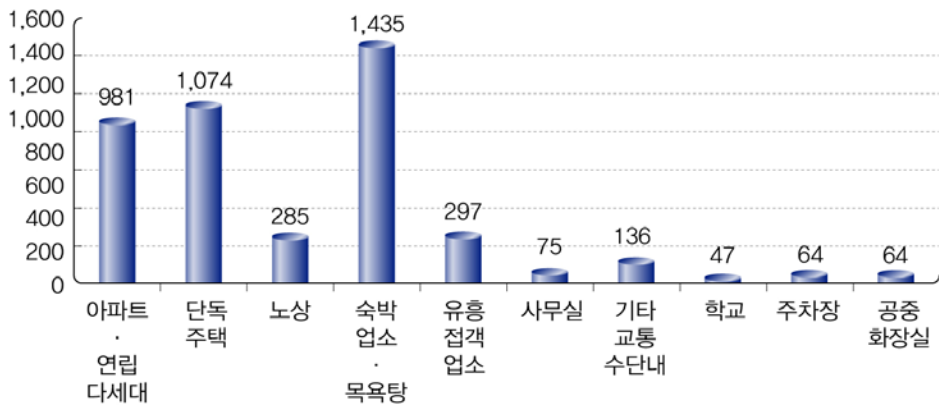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2016)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 발생 특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발생 장소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강간의 경우 주로 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사적인 주거공간이나 숙박업소·목욕탕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거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 강제추행의 경우 사적인 공간보다는 노상이나 유흥접객업소 등 타인과의 접촉이 많은 다양한 공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어 주요 발생 장소와 발생 시간대 중심의 순찰 확대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림 3-2-17] 강간범죄의 주요 발생 장소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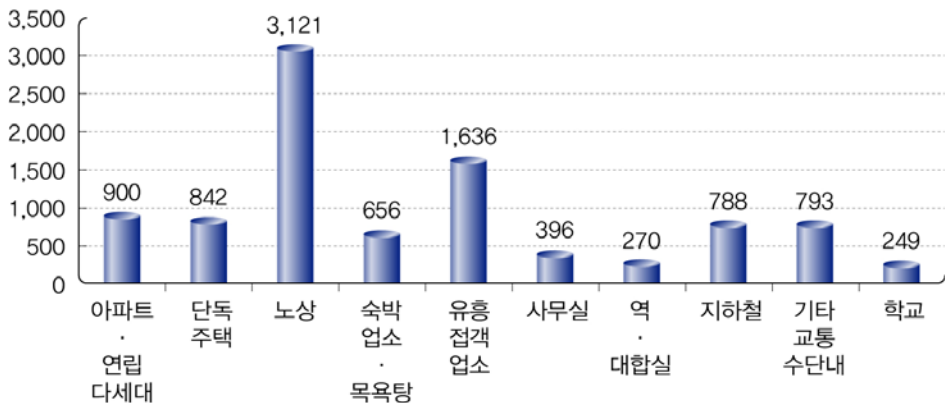


\* 미상·기타장소 제외 상위 10위 발생 장소

출처 : 경찰청, 2015 범죄통계, 2016

[그림 3-2-18] 강제추행범죄의 주요 발생 장소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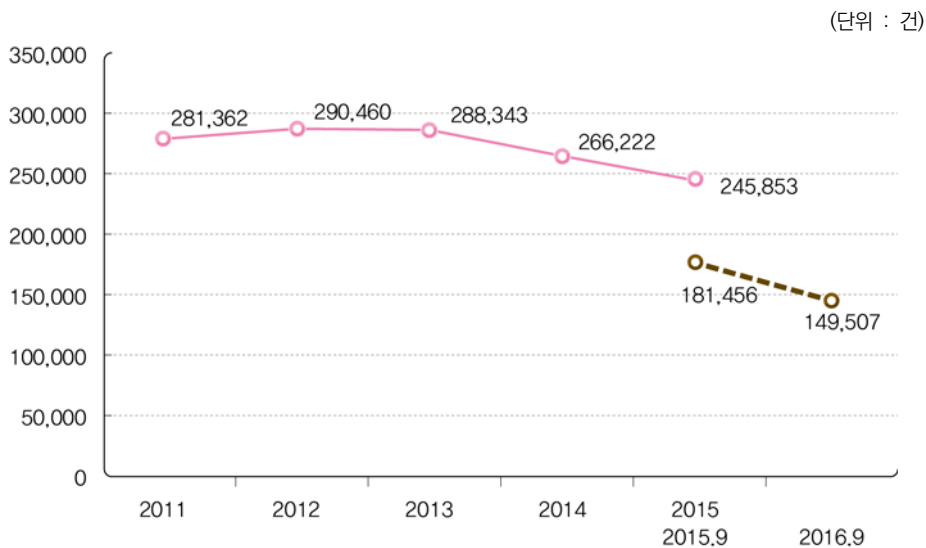
\* 미상·기타장소 제외 상위 10위 발생 장소

출처 : 경찰청, 2015 범죄통계, 2016

#### 4. 절도범죄의 지속적 감소 속에 비침입절도의 비율 증가

절도범죄는 비교적 장기간 증가 추세가 이어지던 끝에 2012년 29만 460건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수년 간 감소의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9월 기준 14만 9507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무려 17.6%가 감소하여, 2017년에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19] 절도범죄 발생 추이



출처 : 경찰청(2016)

절도범죄의 발생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유형별 변화의 추세를 확인해보면 최근에 절도수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침입절도는 발생 건수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발생 비율에 있어서도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침입 절도의 경우 특히 기타 유형이 발생 건수에 있어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소매치기, 낄치기, 들치기 등의 수법에 비해서 신종 절도수법들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에 대한 절도가 한때 성행하였으나 지금은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는 반면, 자전거의 경우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경우 주차시설 등에 CCTV 설치가 증가하고 경로 추적 기술 등이 발달하여 적발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자전거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하고 외형 변형 등의 경우에 추적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2-12〉 최근 5년간 절도범죄의 범죄수법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261,923 (100.0)	274,583 (100.0)	273,024 (100.0)	260,511 (100.0)	245,823 (100.0)
침입 절도	반집 절도 (%)		34,957 (13.3)	32,724 (11.9)	30,337 (11.1)	23,753 (9.1)	17,919 (7.3)
	사무실 절도 (%)		5,228 (2.0)	4,265 (1.6)	3,380 (1.2)	3,615 (1.4)	2,825 (1.1)
	공장 절도 (%)		1,791 (0.7)	1,347 (0.5)	1,096 (0.4)	1,393 (0.5)	819 (0.3)
	상점 절도 (%)		15,328 (5.9)	16,425 (6.0)	17,120 (6.3)	17,875 (6.9)	14,830 (6.0)
	숙박업소 절도(%)		1,892 (0.7)	1,566 (0.6)	1,436 (0.5)	1,079 (0.4)	963 (0.4)
	기타 침입절도(%)		43,103 (16.5)	36,295 (13.2)	35,911 (13.2)	34,605 (13.3)	29,904 (12.2)
비침입 절도	소매치기 절도(%)		2,381 (0.9)	1,941 (0.7)	1,819 (0.7)	1,454 (0.6)	1,401 (0.6)
	날치기 절도 (%)		2,518 (1.0)	1,918 (0.7)	1,248 (0.5)	746 (0.3)	384 (0.2)
	기타 치기절도(%)		3,766 (1.4)	4,276 (1.6)	4,674 (1.7)	4,409 (1.7)	5,327 (2.2)
	들치기 절도 (%)		18,056 (6.9)	26,656 (9.7)	26,439 (9.7)	23,128 (8.9)	22,809 (9.3)
	속임수 절도 (%)		3,596 (1.4)	5,600 (2.0)	4,442 (1.6)	2,967 (1.1)	2,572 (1.0)
	기타 비침입절도 (%)		56,334 (21.5)	80,172 (29.2)	92,459 (33.9)	94,644 (36.3)	99,645 (40.5)
기타	차량 절도 (%)		11,186 (4.3)	8,926 (3.3)	7,045 (2.6)	5,636 (2.2)	4,608 (1.9)
	오토바이 절도(%)		23,316 (8.9)	22,001 (8.0)	17,669 (6.5)	13,365 (5.1)	9,627 (3.9)
	자전거 절도 (%)		10,969 (4.2)	16,047 (5.8)	15,774 (5.8)	22,357 (8.6)	22,538 (9.2)
	축산물 절도 (%)		393 (0.2)	436 (0.2)	473 (0.2)	571 (0.2)	580 (0.2)
	기타 절도 (%)		27,109 (10.3)	13,988 (5.1)	11,702 (4.3)	8,914 (3.4)	9,072 (3.7)

\* 연도별로 미상 또는 결측치의 편차가 커서 이를 제외하고 유형별 비율을 계산하였음(2011년: 19,439건, 2012년: 15,877건, 2013년: 15,319건, 2014년: 5,711건, 2015년: 30건)

출처 : 경찰청(2012~2016)

절도의 경우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절도의 경우 검거율이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5대 범죄 중 나머지 범죄들의 경우 검거율이 85.7~ 100.8<sup>52)</sup>에 이르고 있으나 절도의 검거율은 51.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수치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2011년에는 40.1%, 2012년에는 36.6%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도에 대한 검거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2-20] 5대 범죄의 검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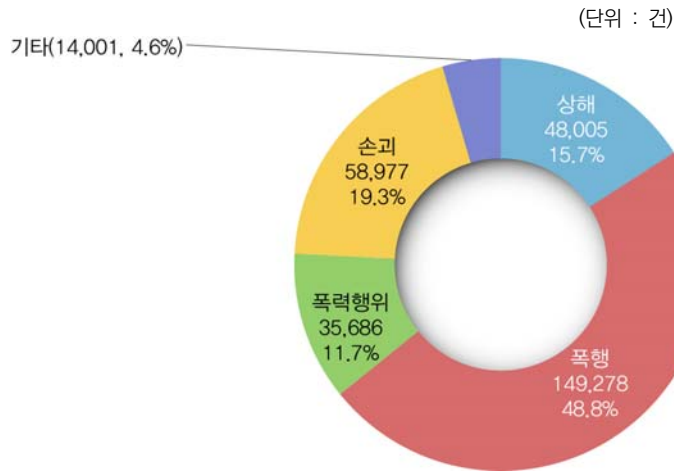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2016)

## 5. 폭력범죄의 발생 건수 유지 전망

폭력범죄의 경우 폭행죄, 상해죄, 폭력행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손괴죄, 기타 등의 범죄를 포함한다. 2015년을 기준으로 폭력범죄의 유형별로 비율을 확인한 결과 폭행이 48.8%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손괴 19.3%, 상해 15.7%, 폭력행위 11.7% 순으로 나타났다.

52) 검거율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검거비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에 인지된 범죄건수와 당해 연도에 검거된 범죄건수(당해 연도 이전에 발생한 범죄를 포함) 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100%를 넘어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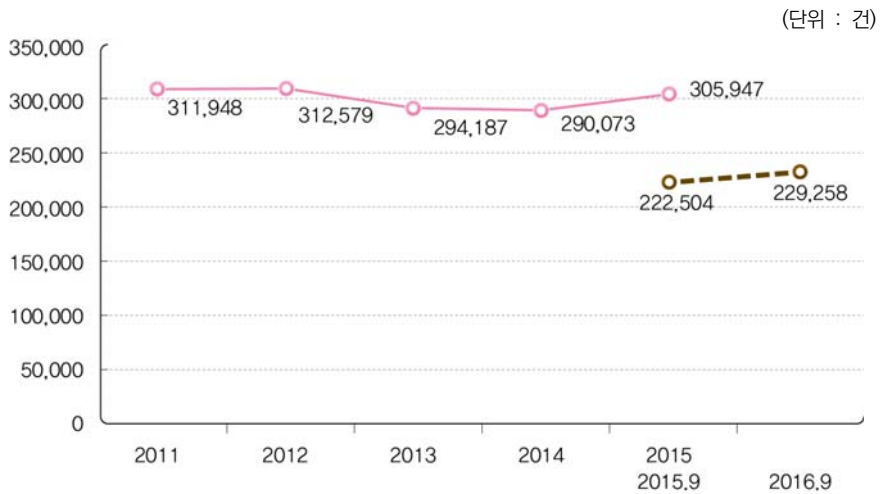
[그림 3-2-21] 폭력범죄의 유형별 분포



\* 기타: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공갈  
출처 : 경찰청, 2015 범죄통계, 2016

폭력범죄는 지난 10년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2년 31만 2579건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다시 30만 건 이상을 회복하였으며, 2016년 9월 기준 22만 9258건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3.0%가 증가하여 2016년 말까지 발생 건수는 2015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최근 폭력범죄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절대적인 발생 건수가 많기 때문에 증감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2017년에도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2-22] 폭력범죄 발생 추이



출처 : 경찰청(2016)

### Ⅲ. 보이스피싱 범죄 전망

#### 1.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감소 추세

세계경제의 경기회복 지연과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 속에 청년 실업률의 증가, 부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불법 사금융, 산업기술 불법유출 등 사회경제 각 부문에서 불법적 범죄수익을 겨냥한 다양한 형태의 지능형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대포물건 유통과 같이 정상적인 시장거래를 벗어난 명의도용 범죄 등 공공과 민간부문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하게 지능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sup>53)</sup>과 대출사기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능범죄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화금융사기는 금융, 통신 등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야 가능한 선진국형 범죄이다. 그동안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부유한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가정 주부, 노인 등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뱅킹 등에 능숙하지만 사회경험이 적은 젊은 층에서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된 이유는 휴대전화와 은행 자동화기기(ATM)의 보급이 잘 되어 있고, 은행에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중국과 대만 현지에서 조선족을 고용할 수 있어 언어문제 해결이 용이한 점도 주요 이유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사기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70세가 넘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젊은 대학생도<sup>54)</sup> 자살하는 사례가 있었고, 보이스피싱에 속아 급전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10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을 보면 총 발생 건수는 6만 715건에 피해액은 7295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53)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 범죄임. 이는 일반적으로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및 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이창운,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5, 30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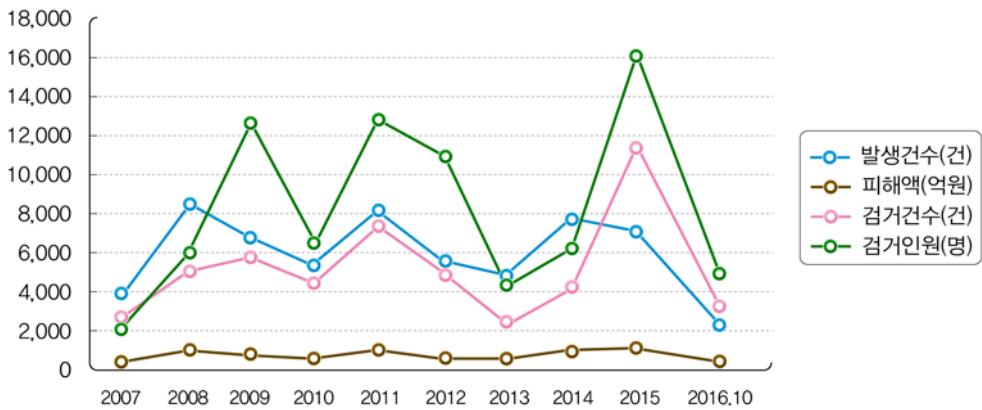
54) 2009. 3. 31 우체국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한 전화사기단이 피해자 20명을 현금지급기로 유인,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 여대생은 피해사실을 비관해 투신자살함(경남청 광수대, 상기 전화사기단 14명 검거)

〈표 3-2-13〉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발생·피해 및 검거 현황

구 분	발생건수(건)	피해액(억 원)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2007	3,981	434	2,757	2,221
2008	8,454	877	4,927	5,878
2009	6,720	621	5,742	12,523
2010	5,455	553	4,454	6,444
2011	8,244	1,019	7,336	12,853
2012	5,709	595	5,023	11,065
2013	4,765	552	2,386	4,336
2014	7,635	974	4,183	6,247
2015	7,239	1,070	11,537	16,183
2016.10	2,513	399	3,353	4,998
계	60,715	7,094	51,698	82,748

출처 : 경찰청(2016)

[그림 3-2-23]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발생·피해 및 검거 현황



출처 : 경찰청(2016)

연도별 추세를 보면, 2007년 발생 건수 3981건(피해액 434억 원) 수준이던 보이스 피싱은 2008년 8454건(피해액 877억 원)으로 2배 이상 폭증하였다. 그러나 2009년 5745건, 1만 2523명 검거실적에서 보여주듯 경찰의 지속적 단속과 함께 이루어진 휴대폰 국제전화 표시 서비스 시행,<sup>55)</sup> 피해 예방 광고 홍보, 대표통장 개설 방지 시스템 구축 등 피해 예방 노력으로 2009년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발생 건수가 5455건으로 2008년의 65%, 피해액 역시 63%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55) 2009. 5. 1부터 국제전화를 최초 접수한 통신업체 식별번호(001, 005 등)가 표시되고 있으며, 2009. 10. 1부터 국제전화가 올 경우 휴대전화 화면에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사칭 및 카드론 사기수법, 인터넷 전화상의 발신번호 변작수법 등 진화된 사기 수법에 의한 보이스피싱이 빈발하여 다시 2011년에 8244건(피해액 10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년대비 사건 수만 51.1%, 피해액은 무려 84.3% 증가하였다. 다만, 2011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듯하였으나, 2014년에 다시 사건 발생이 급증하여 전년 대비 60.2% 증가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가 재확산되는 조짐을 보였다.

〈표 3-2-14〉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피해 및 검거 현황

구 분	발생건수(건)	피해액(억 원)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2011	8,244	1,019	7,336	12,853
2012	5,709	595	5,023	11,065
2013	4,765	552	2,386	4,336
2014	7,635	974	4,183	6,247
2015	7,239	1,070	11,537	16,183
2015. 9	6,383	925	9,599	13,480
2016. 9	2,228	353	3,095	4,482
전년대비	-65.1%	-61.8%	-67.8%	-66.8%

출처 : 경찰청(2016)

2015년에는 전년대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검거건수는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약 2.8배 증가하였고, 검거인원은 약 2.6배 증가하였다.

이는 경찰청이 2015년을 전화금융사기 척결의 원년으로 삼아 본청에 전화금융사기 대응 T/F 설치 및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적극 운영<sup>56)</sup>한 결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큰 전화금융사기·중소상공인 대상 사기·노인 대상 사기를 ‘3대 악성 사기’로 선정하여 연중 상시단속한 점도 검거건수를 늘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월부터 지연인출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2015년 10월부터 지연이체제도를 시행한 점도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도 2015년에 이어 ‘3대 악성 사기’인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연중 상시단속(2015. 11~2016. 10)을 실시한 결과,<sup>57)</sup> 2016년(1~9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발생 건

56) 경찰청 지능범죄수사1과,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 편성(보도자료)”, 2015. 2

57) 경찰청은 ‘3대 악성사기범 근절’ 등 10개 과제에 대해 6개 분야로 그룹화하여 기획수사(2015. 11. 1~2016. 10. 31)를 하였음. 전화금융사기, 대출사기, 중소기업인 노인 대상사기 등 3대 악성사기 외에 부정부패 비리단속, 보험사기, 유사수신다단계 사범, 3대 대포물건 등 10개 과제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였다.

수(65.1%)와 피해액(61.8%)이 1/3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2016년도 금융범죄 척결 중점 협력사항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경찰청과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 112신고 및 현장에 방·검거 체계’를 구축<sup>58)</sup>(2016. 3. 15)하여 현장 검거체계를 강화한 것도 피해 발생 감소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 및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8 공포, 2016. 7. 28 시행) 시행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거나 대포통장의 양수 및 양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경찰청장, 검찰총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요청을 할 수 있어 피해발생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 신고활성화 방안으로 금융기관에서 피해 접수 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송금내역 등 피해사실만 확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수신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적극 신고토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SK, KT 등 이동통신사와 협조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T전화’ 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전화를 수신시 즉시 사기범 목소리와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sup>59)</sup> KT 자회사이자 악성 전화번호 차단 서비스 전문회사인 ‘후후앤컴퍼니<sup>60)</sup>’와도 업무협약을 체결(2016. 11. 18)하여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sup>61)</sup>

한편, 금융감독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16. 5. 19)하고 전화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기범의 목소리 DB를 구축하고 공개하였고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58) 시행 75일 간(3. 15~6. 30) 성과로 총 49억 원(217건)의 피해를 예방하고, 인출액 54명을 현장검거. 정부 3.0 국민체감 성과점검회의(7. 22)에서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됨.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2016년도 상반기 불법금융 척결 추진성과 및 향후대응(보도자료)”, 2016. 7. 22

59)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SK텔레콤 PR2팀, “금융감독원, SK텔레콤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사기 척결(보도자료)”, 2015. 11. 2 ; 금융감독원 불법대응단,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적극 신고하세요(보도자료)”, 2016. 10. 28

60) 2016년 5월 KT로부터 독립한 KT 자회사로 전화번호 검색, 스팸 및 보이스피싱 전화 차단 등 기능을 제공하는 ‘후후’ 어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다.

61)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스마트폰으로 보이스피싱 목소리 및 전화번호를 신고하세요(보도자료)”, 2016. 11. 18

있다.<sup>62)</sup> 이는 첨단 과학수사기법인 인공지능(AI) 성문분석을 통한 ‘바로 이 목소리’를 전격 공개(2016. 5)하였다.

경찰청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홈페이지를 운영, ‘바로 이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피해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2016년 8월 정부 R&D 예산안에 ‘성문분석을 통한 실시간 화자검색 기술 개발’을 반영하여 국회 심의 통과 시, 연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는 국내 인출책·통장모집책 등에 대한 수사 외에 내국인 콜센터의 원천봉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은 범인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식별하는 한편, 특정 화자와 대상 음성의 화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법정 증거능력을 갖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개발 시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의 경우 실시간 대응으로 현장 검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3-2-15〉 전화금융사기 국제공조 수사 현황(2016. 1~10)

국가	검거건수	검거인원	국내 송환인원
중국	2	6	4
필리핀	3	18	1
태국	1	2	2
계	6	26	7

출처 : 경찰청(2016)

최근 경찰청은 국제공조 강화의 일환으로 ‘제2차 한·일·중 경찰협력회의’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2016. 11. 22~23)하여, 국제범죄 공동대응과 동북아 역내 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해외도피사범 송환을 비롯, 보이스피싱·사이버·마약 등 국제성범죄 정보공유와 합동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sup>63)</sup>

2016년 들어 가시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억제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에도 예방홍

62)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2016년도 상반기 불법금융 척결 추진성과 및 향후대응(보도자료)”, 2016. 7. 25

63) 경찰청 외사기획과, “경찰청, 『제2차 한·일·중 경찰협력회의』 개최(보도자료)”, 2016. 1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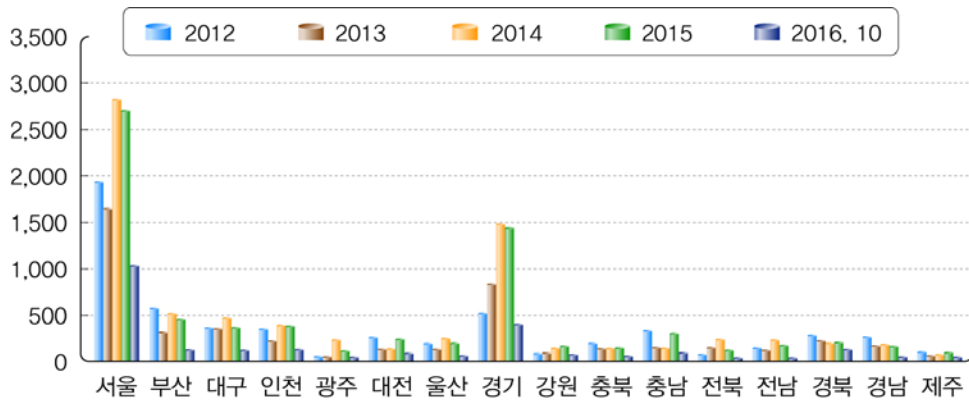
보 및 제도개선, 강력한 단속과 국제공조 등 종합적인 분야별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보이스피싱은 상당 폭 근절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 대도시 지역 젊은 층에 보이스피싱 피해 집중현상

지역별로 보이스피싱의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보이스피싱 사건은 지역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과 교통·통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서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5년(2012~2016. 10) 동안 지역별 발생 건수를 보면 서울이 1만 133건(연평균 2027건, 전체 발생 건수의 36%), 경기 4672건(연평균 934건, 전체 발생 건수의 17%), 부산 1975건(연평균 395건), 대구 1659건(연평균 332건), 인천 1459건(연평균 292건) 순으로, 주로 서울·수도권 지역(53%), 그리고 부산 및 대구와 인천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림 3-2-24] 최근 5년간 지역별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출처 : 경찰청(2016)

<표 3-2-16> 보이스피싱 피해자 성별·연령별 현황(2016. 1. 1~11. 7)

(단위 : 명)

발생 건수 (합계)	성별		연령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미상
2,544	660	1,884	1,023	471	228	235	316	268	3
100%	26%	74%	40.2%	18.5%	9.0%	9.2%	12.4%	10.5%	0.1%

출처 : 경찰청(2016)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가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보다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의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쉽게 당황하거나 타인의 말에 공감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30대 젊은 층에 피해가 집중(58.7%)되고 있다. 이는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자신은 속을 리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인터넷 및 모바일 banking에 익숙하여 즉시 피해금을 송금하기 때문이다. 그 외 연령대는 전체 발생 건수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7〉 현금수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현황(2016. 3. 15~4. 30)

(단위 : 명)

계	성별		연령대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89	41	48	5	4	6	5	69

출처 : 경찰청(2016)

한편, 경찰청과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수취형 보이스피싱의 예방 및 인출책 검거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노인층이 77.5%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에 취약하고 온라인 banking보다 창구거래에 익숙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sup>64)</sup>

### 3. 보이스피싱 범죄, 대출사기로 전환 추세

범정부적 보이스피싱 예방대책 시행 및 홍보강화로 경찰, 검찰, 국세청,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능력이 강화되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사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사기는 대출 진행을 위해서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편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고 고금리 대

64) 경찰청 수사1과,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합동 보도자료, “전화금융사기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 구축, 45일간 피해금 22억 원 예방(보도자료)”, 2016. 5. 4

출을 먼저 받게 하고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기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1인당 피해금액도 고액화되고 있다.

실제로 아래 표와 같이 2016년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월평균)은 123억 원으로 전기(146억 원)대비 16.4% 감소하였으나, 대출사기 피해액은 85억 원으로 전기(78억 원)대비 9.0% 증가하였다. 특히 8월 들어서는 131억 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sup>65)</sup>

〈표 3-2-18〉 전화금융사기 유형별 피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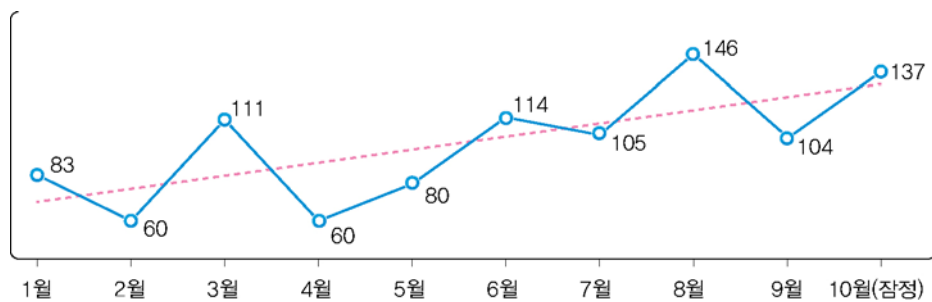
(단위 : 건)

구분 (월평균)	2015 상	2015 하	2016 상	2016 상반기						7월	8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피해액	정부기관 사칭형	165	68	38	47	23	50	35	30	41	42	57
	대출 빙자형	96	78	85	83	60	111	60	80	113	103	131
	합계	261	146	123	130	83	161	95	110	154	145	188
피해자 수	정부기관 사칭형	1,695	600	415	512	271	541	415	349	401	384	592
	대출 빙자형	1,691	1,475	1,482	1,575	982	1,855	1,055	1,574	1,852	1,544	2,404
	합계	3,386	2,075	1,897	2,087	1,253	2,396	1,470	1,923	2,253	1,928	2,996

\* 8.1~8.29 기간 중 금융사기 피해를 월간으로 환산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2016)

[그림 3-2-25] 2016년 대출빙자형 월별 피해금 추이



출처 : 금융감독원(2016)

65)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과), 금융감독원(불법금융대응단),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부처합동 보도자료)”, 2016. 9. 1

## IV.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전망

### 1. 저금리 시대,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

1997년 하반기부터 불어온 IMF 사태 이후 장기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서민들은 은행을 비롯한 제도·금융권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곳을 찾았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 유사수신 피해가 늘어났다. 결국, 1990년대 후반 ‘파이낸스 사태’로 유사수신행위가 규제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도 저금리 기조로 유사수신과 불법다단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유사수신 관련 신고 건수는 298건으로 전년 상반기(87건) 대비 대폭 증가(211건 ↑, 242.5%) 하였다.<sup>66)</sup>

〈표 3-2-19〉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 상	2016 상
신 고	-	181	83	133	253	87	298
수사통보	48	65	108	115	110	39	64

출처 : 금융감독원(2016)

이는 저성장·저금리 환경에서 서민들의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하는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등으로 신고가 급증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20〉 지역별 유사수신 혐의업체 현황

(단위 : 개)

구 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전북	충남	부산	울산	기타	계
2015	66	5	11	2	3	1	4	-	18	110
2016 상	37	2	2	2	1	-	2	1	17	64
소 계	103	7	13	4	4	1	6	1	35	174

출처 : 금융감독원(2016)

66)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최근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과 소비자 유의사항”(보도자료), 2016. 8. 9

2015년 이후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서울(103개), 경기(13개), 인천(7개) 등 주로 수도권(123개, 전국의 70.7%)에 집중해 있다. 서울 지역에서도 테헤란로 주변의 강남권(57개, 서울의 55.3%)에 상당수 업체가 위치하고 있다.<sup>67)</sup>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으로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투자, FX 마진 거래,<sup>68)</sup> 가상화폐,<sup>69)</sup> 협동조합 등을 사칭하면서 끈질기게 투자를 유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사수신 사기 수법으로는 비상장 주식 등 증권투자, 의료기기나 완구 등의 제조·판매를 가장한 경우가 다수(2015년 이후 69건, 전체의 39.7%)이다. 또한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수목장, 쇼핑몰 등을 이용한 형태도 많은 편(2015년 이후 64건, 전체의 36.8%)이다. 최근에는 해외 불법 다단계 업체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 새로운 금융기법 발달에 편승하여 P2P 금융,<sup>70)</sup> 클라우드 펀딩,<sup>71)</sup> 가상화폐(코인) 등을 위장한 신종 유사수신이 늘어나고 그 수법도 다양하고 교묘화되어 서민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유사수신 관련 서민 피해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형 근절대책과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2. 불법사금융 증가세는 계속되나 다각적 대응으로 점차 억제 기대

경찰청의 불법사금융 검거 현황을 보면, 2014년 대비 2015년 검거 건수가 급감하였으나, 2016년(1~9월)에는 전년 동기(2015년 1~9월) 대비 검거율이 33%로 다시 증가하였다.

67)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최근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과 소비자 유의사항”(보도자료), 2016. 8. 9

68) FX 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Contract)는 통화 간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외국 환 거래.

69)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Coin)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 및 거래되어 교환수단, 회계단위, 가치 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민간화폐로 법정통화와 교환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70) P2P금융은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돼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뜻하는 ‘Peer to Peer’ 개념을 금융에 접목,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말한다.

71) 클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군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와 모금이라는 뜻을 가진 ‘펀드’의 합성어이다. 특정 개인, 조직의 활동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목표액과 모금 기간을 정해놓고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모금 방법으로 SNS를 주로 사용해 ‘소셜펀딩’이라고도 한다.

〈표 3-2-21〉 최근 5년간 불법사금융 검거 현황

구분	계		불법대부업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2011	4,587	9,103	3,919	6,526	154	254	290	1,227	224	1,096
2012	7,298	12,798	5,987	9,713	796	1,361	363	1,127	152	597
2013	2,722	5,749	2,087	3,693	285	522	225	935	125	599
2014	1,802	4,209	1,259	2,330	216	387	232	1,089	95	403
2015	1,417	3,747	781	1,677	198	339	241	1,142	197	589
2015. 9	1,045	2,607	589	1,266	149	265	160	712	147	364
2016. 9	1,390	3,458	634	1,365	163	321	476	1,404	117	368
전년대비	33.0%	32.6%	7.6%	7.8%	9.4%	21.1%	197.5%	97.2%	-20.4	1.1%

출처 : 경찰청(2016)

경찰청은 민생경제를 무너뜨리는 유사수신과 불법다단계를 3대 악성사기 중 하나로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유사수신 검거 건수는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 3/4분기 기준으로 전년대비 검거 건수가 약 2배가량 증가하였고, 검거 인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대폭적인 검거율의 상승(197.5%)은 저금리 기조에 유사수신 피해 발생이 증가하는 측면과 더불어 경찰의 적극적인 집중단속의 결과로 압수범죄가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불법사금융 사건은 통상 인지사건으로 취급을 하여 적극적인 검거 활동으로 발생 건수와 검거 건수가 함께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불법다단계는 2011년 224건, 1096명을 검거했고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2012년에는 152건, 597명을 검거한 이후 그 수가 급감했다. 이후 불법다단계의 검거현황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지만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불법다단계 사기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다단계 판매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을 가장하여 오히려 불법을 마음껏 저지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 불법다단계 업체가 국내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에 근거를 둔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하면서 보석광산 개발,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마치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자코인, 쇼핑몰 분양, 통역 프로그램, 여행, 주식, 외환거래, 어플리케이션 등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신종 아이

템을 바꾸어 가며 해외 모기업이 있으니 투자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유사수신과 불법다단계를 행하고 있는 업체들은 관련자들이 수사 또는 재판 중임에도 투자자들에게는 개인적인 비리로 호도하거나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자금 모집을 계속하고 있다. 기존 직원들이 또 다른 업체를 만들어 종전과 비슷한 사기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FX마진거래 등 첨단금융기법이나 영농조합 사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치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초기에 높은 이자, 배당금,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이다.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sup>72)</sup>할 필요가 있다.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금융사기 등 불법사금융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이다.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조짐에 따라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016년 3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2016. 3. 3, 연 34.9% → 27.9%)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다시 성행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2달간(6. 1~7. 31) 경찰, 검찰, 지자체,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집중적인 수사 및 단속을 벌인 결과, 4405명의 불법 대부업자와 금융사기범 등을 검거하고 그 중 482명을 구속하였다.<sup>73)</sup>

최근 발의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2016. 11. 23, 이하 특경법)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 조달액이 5~50억 원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금액이 크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가중처벌이 가

72)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는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에서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를 조회할 수 있음.

73) 국무조정실, 경찰청, 법무부, 행자부, 미래부, 금융위, 금감위, 국세청, 법률구조공단, “정부,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4405명 검거(부처합동 보도자료)”, 2016. 8. 28

능해진 것이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처벌 수위가 약하였다. 최근 5년 동안 법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40% 가까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sup>74)</sup> 발의된 법안은 민생경제를 무너뜨리는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유사수신 범행에 대해 심리적으로 억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저금리·고령화·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국민들의 재산 증식 소망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이를 악용하는 고수의 보장 금융사기인 유사수신 피해가 각종 신종기법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경찰청은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금융감독원과 협조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종 금융기법에 의한 피해 예방활동에 주력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피해가 차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74) “유사수신 행위에 ‘무기징역’ 처벌 법안 발의”, 서울경제, 2016. 11. 23(<http://www.sedaily.com/NewsView/1L42Z2MMTE>, 2016. 11. 30 검색)

## V. 과학수사 환경의 변화와 전망

### 1. 과학수사에 대한 기대와 요구 지속 증대

최근 경찰청 중요 미제사건 수사팀은 1998년 서울 노원에서 발생한 ‘노원 주부 살인 사건’<sup>75)</sup>,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sup>76)</sup>, 2012년 ‘울산 70대 노인 살인사건’, 2001년 ‘용인 교수부인 살인사건’ 등의 장기 미제사건을 해결하였다. 1998년 10월 서울 노원의 ‘노원 주부 살인사건’은 1998년 확보해 두었던 범인의 DNA로 범인을 특정하였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몸속에서 발견된 DNA의 상태와 사망시점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과학적인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미제사건의 해결이 가능하였다. 이렇듯 장기 미제사건의 해결에 과학수사가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의 과학수사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DNA분석, 범죄 프로파일러,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3D몽타주 시스템의 도입, 체취(體臭)증거기법, 수증과학수사기법 뿐 아니라 걸음걸이 분석을 통해 범인을 검거하는 등 상상하지 못하던 기법이 과학수사에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 1) 과학수사에 대한 일반인의 기초 지식 증가

과학수사에 대한 일반의 기대수준은 2000년대 들어서 대단한 인기를 끈 CSI드라마에서 연유한다. 이는 ‘CSI 효과’<sup>77)</sup>를 발생시키며 국민들에게 과학수사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인 수사 사건의 검거 보도에서도 휴대폰 위치추적이라든지, 지문·족흔적·

75) 1998년 10월 서울 노원에서 범인 오 모 씨가 전세계약을 핑계로 집을 둘러보다가 집주인 여자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다.

76) 2001년 2월 전남 나주에서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드들강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목 졸라 물에 빠뜨려 살해한 사건이다.

77) 배심원들이 1)법과학 증거가 모든 범죄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해 법과학 증거를 요구하고, 2)법과학 증거를 증거의 “황금기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법과학 증거가 아닌 증거들(자백 또는 목격자 증언)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고, 3)법과학 증거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4)모든 법과학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이며 인간적인 실수, 즉 증거를 ‘조작’ 또는 ‘변형’하여 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며, 5)과학적 타당도가 의심스럽거나 확립되지 않은 증거 분석 기법들(예를 들면, 치은 분석, 탐지견 조사 등)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결점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김민지, “CSI 효과: 검사와 일반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 제25권 제1호, 2011. 2쪽.)

DNA 등 증거로 사용하는 수사 자료들에 대한 언급이 많아졌다. 범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과학수사에 대한 기초 지식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경찰로 하여금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형사사법적 증거의 제시를 요구하는 환경이 되었다.

## 2) 범죄의 지능화·전문화·광역화·국제화

범죄자는 보다 교활해지고 지능·전문화되며, 범죄는 광역·국제화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는 해외에 서버를 두어 경찰의 추적을 힘들게 하고 있다. CCTV가 있는 장소에서는 모자와 마스크를 사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범죄현장에는 유류지문을 남기는 숫자가 차츰 줄어들고 있다.<sup>78)</sup> 이러한 수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과학적 수사기법의 개발로 범죄자가 예상하지 못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 3) 선행적 방법에 의한 과학수사 기법 도입 필요

경찰의 현행 첨단 과학기법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법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단서를 찾아내고 증거를 분석하는 후행적 방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5T<sup>79)</sup>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사전에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범죄 발생시 즉각적 대처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선행적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2017년도에도 과학수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크게 높아지고, 범죄도 지능화·전문화·광역화·국제화 되어가면서 과학수사가 경찰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 2.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경찰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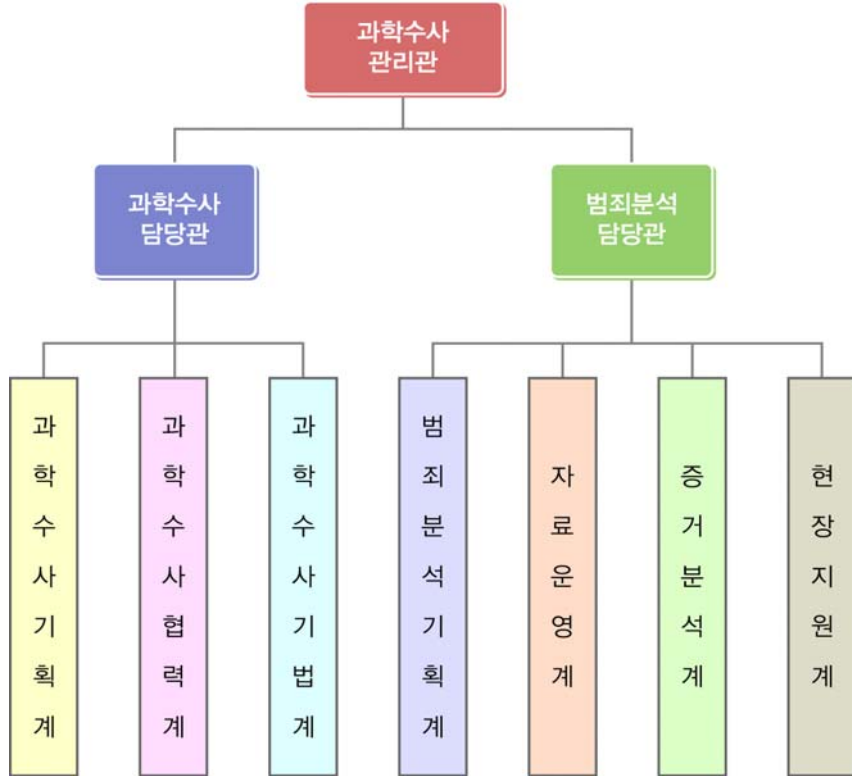
경찰은 기존의 과학수사센터를 2016년 5월 10일, 과학수사관리관실로 확대 개편하여 경찰의 과학수사 발전을 이끌고 있다. 경찰은 2017년에도 인력, 기법과 장비, 국민 체감형 과학수사 실현, 검시제도 개선을 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학수사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과학수사 능력의 보강 및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사기

78)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수사와 관련 유류지문 신원확인 접수건수는 2012년 2만 1798건에서 2013년 1만 8860건, 2014년 1만 7515건, 2015년 1만 7826건, 2016년(10월말) 1만 4161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79) 5T(IBARN): 미래 경찰에 큰 영향을 줄 정보(Information), 생명(Bio),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Robot), 나노(Nano) 등 5가지의 기술(Technology)을 의미한다.

술의 첨단화를 통해 과학수사의 전문성 제고와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림 3-2-26]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



출처 : 경찰청(2016)

### 1) 전문 인력 증원과 운영의 효율화로 과학수사 발전의 기반 마련 예상

전술한 바와 같이 과학수사에 대하여 일반 국민은 높은 기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과학수사 요원의 인력이 부족하다. 수사 요원 1인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경찰서가 있는 등 인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1인이 출동하는 경우에는 지문이나 족적 등 기본적인 감식 자료만을 활용하게 되어 과학적 증거자료의 수집이 어렵다. 동시에 과학수사 요원 개인의 관점에서도 전문적 분야의 활용이 어려워 업무가 몰리고 격무에 시달리게 되어 결국 해당 업무의 회피 등 과학수사 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검시조사관, 범죄분석요원, 과학수사 전공자 등 전문 인력의 특채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검시조사관은 2016년 11월 현재 107명, 2017년에는 144

명으로 확대·선발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과학수사인력의 30%를 과학수사 전공자로 충원하는 등 특채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2) 첨단기법을 도입한 수사 기법

현재도 우리나라에서는 첨단장비의 도입이나 과학수사 기법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CCTV 분석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법보행분석,<sup>80)</sup> 냄새를 추적하는 체취(體臭)증거기법, 수중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수중과학수사, 3D 몽타주 시스템, 범죄현장 스케치 프로그램 등 끊임없이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가고 있다.

〈표 3-2-22〉 첨단 과학수사 장비 현황

과학수사 장비		수량	과학수사 장비		수량
족·윤적	정전기 채취기(6,KV)	96	압흔채취기		29
	정전기 채취기(10,KV)	135	현미경	일반 현미경	37
	족·윤적감정장비	86		실체 현미경	55
카메라	파노라마3D카메라	2		휴대용영상현미경	287
	열화상 카메라	17	초음파세척기		65
법(가변) 광원 장비	가변광원기	31	이동식 현장증거분석실		11
	다기능증거물검색기	522	고압멸균기		15
	증거물검색영상증폭기	111	다목적 수법영상촬영기		154
	개인휴대용(코헬렛 블루)	522	영상증거물분석프로그램		13
	반사 자외선(루비스)	33	영상증거물 분석 장비		59
	기타 광원장비	769	GPS수신기		15
몽타주	고정용	17	미세증거물 채취기		111
	휴대용	23	레이저거리측정기		171
	태블릿모니터	12			

\* 기타 과학수사 장비(개인용 현장감식 가방, 현장 조명, 스텝 지문검색기 등) 1만 5689건 보유  
출처 : 경찰청(2016)

경찰청은 빅데이터 기반 범죄분석모형, 접친지문식별기술 및 장비, 시체섭식곤충활용 법과학 분석기법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R&D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첨단장비와 관련해 현장에서 바로 감정할 수 있는 DNA 감정 장비를 도입하였고, CA 챔버,<sup>81)</sup> 다

80) 법보행분석은 2014. 10. 15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CCTV 화면에 찍힌 용의자의 보행을 분석하며 정부살인사건의 범인을 특정하고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실제 현장수사에서도 효용성이 큰 것이 입증되었다.

81) Cyano Acrylate는 단어상으로 ‘접착제’를 뜻하나, 강력본드 가스를 이용한 지문채취 방법을 의미한다. CA 챔

파장가변광원장비<sup>82)</sup> 등 26종의 첨단장비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장비의 도입과 새로운 수사기법의 개발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이를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정기적인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첨단장비의 도입과 그와 병행한 수사 기법의 개발은 경찰과학 수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2-27] CA 챔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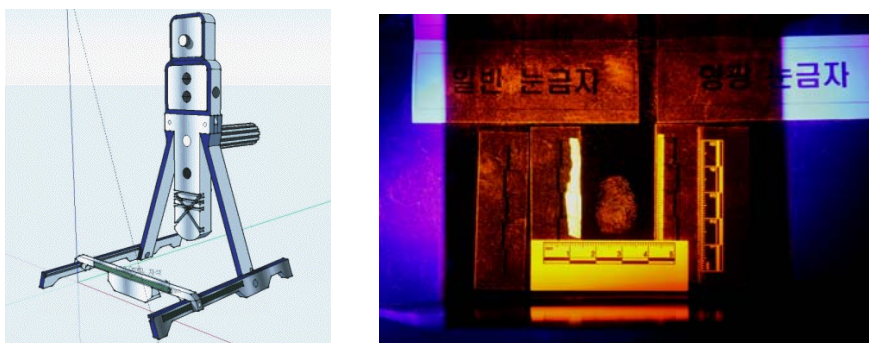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2016)

경찰청은 2016년 11월 9일부터 2일간 제5회 과학수사 기법·장비·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다.<sup>83)</sup> 여기서 8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현장지문촬영대, 형광눈금자, 루미놀 신(新)시약 등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경찰청은 현장지문촬영대<sup>84)</sup>와 형광눈금자<sup>85)</sup>는 시제품을 사용하여 현장 의견을 취합중이며, 루미놀 신시약<sup>86)</sup>은 TRL 8~9단계<sup>87)</sup>로 내년에 상용화할 예정이다.

버는 증거물 중 비다공성(非多孔性) 물질에 대하여 기체를 생성하여 지문을 현출하고, 생성된 유독성 가스로부터 과학수사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감식장비이다.

- 82)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지문을 특수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배경이미지 조절 등을 통해 현출해 내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장비이다.
- 83) 경찰청(과학수사관리관실)과 한국경찰과학수사학회는 2016. 11. 9~10 이틀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법률시장 개방과 CSI의 중요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영국의 법과학조정관실(Forensic Science Regulator) 수석고문 조나단 본(Jonathan Vaughan)이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증거물 연계관리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 84) 지문 등 미세증거 촬영을 위한 삼각대를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근접 촬영이 가능토록 하고 사용의 편리성과 증거 채취의 정확성을 높인다.
- 85) 형광지문 촬영 시 눈금자가 보이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 86) 루미놀 신시약은 기존 제품의 1/10의 제조비용으로 보다 높은 혈흔 민감성을 가진다.
- 87) TRL은 Technology Readiness Level(기술 성숙도)의 약자로 1~2단계(기초연구단계), 3~4단계(실험단계), 5~6단계(시작품 단계), 7~8단계(제품화 단계), 9단계(사업화단계)로 분류한다.

[그림 3-2-28] 현장지문촬영대와 형광눈금자



출처 : 경찰청(2016)

아울러,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은 2014년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 경찰청 R&D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 3-2-23>과 같이 2015년 10억 원의 R&D 예산을 확보하여 과학수사 소관 2개의 과제 수행을 시작하였다. 2016년에는 신규과제 2개, 9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이어 2017년에도 17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다부처 공동사업을 포함한 신규 과제 3개의 수행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lt;표 3-2-23&gt; 과학수사 소관 R&amp;D 과제 및 예산확보 현황

연도	R&D 과제	예산확보 현황
2015	'법광원', '법보행분석기법'	2015 신규(10억 원) 2016 계속(8.5억 원) 2017 계속(7.92억 원)
2016	'겹친지문식별', '법의곤충학기법'	2016 신규(9.38억 원) 2017 계속(11억 원)
2017	'성문분석', '혈흔분석', '기체분석(다부처 공동사업)'	2017 신규(16.13억 원)

출처 : 경찰청(2016)

또한 2015년 '안전사회 실현과 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경찰청-산업통상자원부 MOU 체결을 통해 치안분야 산업기술 공동개발 R&D과제로 아래 <표 3-2-24>와 같이 2016년 2개 신규 과제 수행을 시작하였다. 과학수사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R&D 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과학 수사기법·장비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표 3-2-24〉 과학수사 소관 경찰청-산업부 공동개발 R&D 과제 현황

연도	R&D 과제	예산확보 현황
2016	'영상조작 검출', '혈흔형태분석'	2016 신규(7.6억 원) 2017 계속(7.9억 원)

출처 : 경찰청(2016)

### 3. 법광원 분야의 발전과 전망

#### 1) 지문 등 채취의 필요성과 기술적 한계

법광원이란 빛을 활용하여 범죄현장에서 유류 흔적을 찾아내어 이를 현출·증강시키는데 사용되는 과학수사 장비이다. 일반 광원이 출력과 파장의 변화를 통하여 원하는 색상과 조도를 표현하는 것이 주목적인 조명용·장식용의 광원이라면, 법광원은 범죄현장에 유류되었거나 쉽게 보이지 않는 증거물을 탐색, 현출, 증강하기 위해 특화된 파장을 사용하는 과학수사 장비라고 볼 수 있다.

경찰은 홍성욱 교수(순천향대) 주관 팀에게 수사용 법광원 개발을 위한 R&D 과제를 발주하여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 동축조명 촬영 장치와 적외선 촬영장치 시제품을 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LED 광원이 내년에는 실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광원은 강력범죄 현장에 범인이 남기고 간 증거물 중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지문 및 족·윤적을 검색·채취하는 기법이다. 지문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면서 개인 식별의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범죄현장에 남겨진 지문의 채취는 어려우면서도 그 방법은 다양하다. 현재 보이지 않는 지문(잠재지문, Latent Fingerprint)을 채취하기 위하여 분말이나 시약 등 약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문을 채취하는 일부 시약이 단백질·아미노산 등에 반응하는 등 증거로써 채취 가능성 있는 범죄자의 DNA와도 함께 반응함에 따라 생체 시료의 분석이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수집하는 대표적인 '지문', '족·윤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표 3-2-25〉 현장지문 감정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총계	처리 총계	신원 확인				검색 불발건	동일지문 없음	감정불능
			소계	검색발견	용의자 지문	관계자 지문			
2014	17,515	17,179	9,899	4,816	837	4,246	5,459	291	1,530
2015	17,826	17,537	10,163	4,974	1,031	4,158	5,509	321	1,544
2016. 10	14,161	13,966	8,150	4,207	812	3,131	4,310	313	1,193

출처 : 경찰청(2016)

## 2) 법광원 분야의 발전 전망

2017년 법광원 분야에서는 LED 광원이 개발되어 실용화될 전망으로 탐색용·현출용·증강용 법광원이 있다. 탐색용 법광원은 넓은 범죄현장에서 지문이나 족적을 한 눈에 찾아낼 수 있도록 스캐닝 기능을 갖춘 비접촉 방식의 광원 기법을 말한다. 범죄 현장에서 과학수사 요원의 동선이 길어질수록 현장의 훼손이 심해지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탐색용 법광원의 활용으로 현장 훼손의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

현출용 법광원은 스캐닝 결과 발견한 지문이나 족적을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정밀 촬영 및 현출해 내는 과정에 사용되는 광원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말이나 시약의 경우 각기 형광·흡광반응을 보이는 파장이 다양하다.

〈표 3-2-26〉 광원 파장별 반응물질 및 대응필터 분류

광원파장(색상)	반응물질	대응필터
365nm(자외선)	미세섬유, 정액반	UV필터(자외선필터)
415nm(자색)	형광분말, 맑은혈흔	555nm 필터(주황색), 610nm 필터(적색)
450nm(청색)	형광분말, 소변, 정액반, 타액, 뱃조각, 명	555nm 필터(주황색), 610nm 필터(적색)
505nm(녹색)	닌히드린, 1,2-IND, 로다민6G, DMAC, DFO	555nm 필터(주황색)
적외선	압흔, 문서감정, 마른혈흔, 적외선분말, 부패시체 문신	IR필터(적외선필터)
백색광	닌히드린, CA, 족적, 아미도블랙, LCV, Hungarian RED	불필요

출처 : 경찰청(2016)

증강용 법광원은 희미하거나 배경에 의한 간섭현상이 발생한 지문을 실험실에서 보기 쉽도록 확대·강화시키는 데 이용되는 광원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법광원 기술의

개발로 인해 증거부족으로 검거에 실패할 사건이 감소하며, 강력범죄의 미제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기술·신장비 개발 이후 기술·가격 경쟁력을 이용하여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과학수사의 한류(韓流)도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 4. 법보행분석 분야의 발전과 전망

### 1) 법보행분석이란

법보행분석이란 범죄현장 등에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된 범죄 관련자의 걸음걸이 특이점이나 패턴을 의학·공학적으로 분석하여 발의 각도나 거리 등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기법이다. 이를 통하여 소아마비 등 병리적 특성도 알 수 있다.

### 2) 법보행의 도입 배경과 사용 경과

현재 우리나라에는 400만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50만 화소 이하의 저해상도 카메라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용의자가 고의로 얼굴을 숨기거나 야간에 촬영된 경우에는 얼굴 식별이 불가능하고, 신체의 측면이나 후면만 노출되어 촬영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보행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법정에서도 증언을 통하여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0년 7월 손더스(Saunders) 강도사건에서 법보행분석 결과 및 법정 증언으로 세계 최초로 법정 증거로써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유죄판결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2009년 1월 캐나다에서는 다니엘(Daniel) 총기살인 사건에서 법보행분석 결과를 통해 1급살인 유죄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5월 원세훈 전(前) 국정원장의 자택 화염병 투척사건 수사에 활용<sup>88)</sup>되었던 경우가 있다. 이후 2014년 2월에 국내 의학, 공학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법보행분석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하였다. 2014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강력사건 83건을 분석하는 등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다. 가장 획기적인 사례로는 2015년 4월 12일, 대구에서 발생한 윤모씨 살인사건의 범인을 법보행분석으로 검거한 경우가 있다.<sup>89)</sup>

88) 당시 법보행분석 자료는 구속영장 발부에 기여하였다.

### 3) 법보행분석의 활발한 활용 전망

현재 법보행분석은 일선 경찰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CCTV와 기대에 못 미치는 해상도로 인하여 인물 특정을 위한 법보행분석 의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의사, 공학자, 변호사 등 11명으로 출발한 전문가 협의체는 사단법인화를 준비하고 있다. 2017년에 사단법인화가 되고 나면 법보행분석 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고, 법인의 교육·홍보활동 강화에 따라 일반의 인지도 및 수사기관의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89) 동 사건은 2015. 11. 27 1심 및 2016. 5. 26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 Ⅵ. 사이버범죄 전망

경찰은 지난 2014년 사이버안전국 출범 이래 2016년에 들어서도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 2016년 9월까지 사이버범죄는 11만 5099건 발생하였고, 9만 6310건을 검거하였다(검거율 83.7%). 이는 작년 동기 간(2015년 1~9월) 사이버범죄가 10만 9381건 발생하고, 7만 8420건을 검거(검거율 71.7%)한 것과 비교할 때,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12.0%p 상승한 것이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검거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55.4%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으나 2014년에 65.3%, 2015년에는 다시 72.5%로 각각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2016년에도 9월까지 검거율이 이미 83.7%까지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3-2-27〉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2013~2016. 9)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2013	155,366	86,105	55.4%	92,621
2014	110,109	71,950	65.3%	59,220
2015	144,679	104,888	72.5%	75,250
2015. 9	109,381	78,420	71.7%	81,523
2016. 9	115,099	96,310	83.7%	56,756
전년대비	5.2%	22.8%	12.0%p	-30.4%

\* 2014년 7월부터 사이버 신범죄유형 통계를 적용. 2013년의 경우 세부 분류 기준 상이  
출처 : 경찰청(2016)

2016년 9월까지 사이버범죄의 발생유형을 보면 인터넷사기 및 저작권침해 죄종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가 9만 194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이버 도박 및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의 죄종을 위주로 한 불법콘텐츠 범죄가 2만 1100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범죄 유형을 보면 인터넷 사기(7만 5483건), 명예훼손·모욕(1만 1500건)을 필두로, 사이버 도박, 저작권침해, 사이버 금융범죄 등이 사이버범죄의 주종을 이루었다.

〈표 3-2-28〉 2016년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2016. 9 기준)

구분	유형	총 계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불법콘텐츠 범죄					
			소계	해킹	DDoS 등	악성 프로그램	기타	소계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스토킹	기타
발생(건)		115,099	2,052	1,372	155	89	436	21,100	2,335	7,092	11,500	48	125
검거(건)		96,310	646	393	28	61	164	17,291	2,106	7,043	8,006	43	93
검거인원(명)		56,756	820	432	39	101	239	23,637	1,758	10,625	11,089	32	133

구분	유형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소계	인터넷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위치 정보침해	사이버 저작권침해	기타
발생(건)		91,947	75,483	5,044	2,235	7,597	1,588
검거(건)		78,373	67,756	3,112	1,975	4,383	1,147
검거인원(명)		32,299	21,479	3,221	380	6,190	1,029

\* 2013년까지는 사이버범죄 통계유형을 '사이버테러형 범죄', '일반 사이버범죄'로만 구분하였으나, 다양해진 사이버범죄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 2014년부터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불법콘텐츠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로 구분

\*\* 2015년 7월 기준으로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중 스팸메일 유형 삭제

출처 : 경찰청(2016)

특히 경찰은 2015년 5~10월까지 6개월간 '5대 법질서 침해범죄'에 대한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총 1만 9594건(2만 2578명)을 검거하였다. 검거사범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역시 인터넷사기가 전체 검거 건수의 58%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도박 25%, (아동)음란물 8%, 금융사기 7%, 개인정보침해 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9〉 5대 법질서 침해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추진결과(2016. 5~10)

구분	계	인터넷사기	사이버도박	(아동)음란물	사이버금융사기	개인정보침해
건	19,594	11,451(58%)	4,899(25%)	1,515(8%)	1,331(7%)	398(2%)
명(구속)	22,578(788)	12,575(411)	5,981(244)	1,713(24)	1,646(65)	66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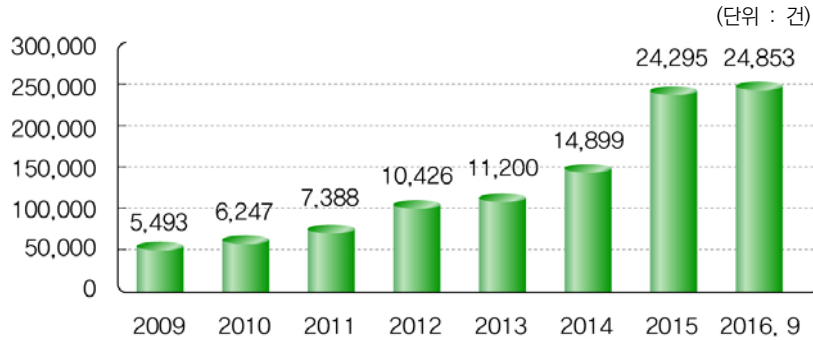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2016)

전체 사이버범죄의 약 72%를 차지하는 5대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 효과로 경찰은 2016년 1~10월간 4만 4592명의 사이버범죄사범을 검거하여, 전년 동기간의 3만 9916명 대비 4676명(12%) 증가된 단속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경찰은 특별단속과 함께 범죄수익금 275억 2000만 원을 몰수·압수하고, 탈세혐의자 642명을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이는 2015년 특별단속 시 몰수·압수액 70억 3000만 원, 국세청 통보 169명보다 각각 293%, 280% 증가한 것이다.<sup>90)</sup>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는 2009년 5493건, 2010년 6247건에서 2015년 2만 429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6년간 연평균 28.1%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들어 9월까지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는 2만 4853건으로 전년 동기 1만 8705건에 비해서 32.9% 증가하였고, 이러한 실적은 이미 2015년의 총 분석건수를 넘어선 것이다.

2017년에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범죄수사에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디지털 증거분석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 인력 증원, 첨단장비 확보, 분석기법 연구 및 개발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sup>91)</sup>

[그림 3-2-29] 연도별 디지털 증거분석 추이



출처 : 경찰청(2016)

90) 주요 검거·피해회복 사례를 보면, ▲(사이버도박) 2016. 4. 필리핀에 관리자·직원 등 조직을 구축, 3조 4000억 원 규모의 기업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140명 검거(구속 16명), 아울러 도박계좌 980개 추적·분석 후 국내 사무실 등지에서 범죄수익금 총 13억 원 압수 (인천·사이버팀), ▲(해킹) 2015. 4. ~ 2016. 4. 익명의 해커집단 '어니니머스'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3800여개 사이트를 해킹한 고교생 해커 검거, 아울러 국내·외 피해업체·사이트를 대상으로 취약점 통보하고 보안 조치 권고 (서울·사이버테러1팀)

91) 2015년도 디지털 증거분석관 1인당 분석 건수를 보면, 총 2만 4295건에 대해 61명의 분석관이 분석업무를 담당하여 1인당 평균 409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청은 본청과 달리 현장수사지원 분석업무에 집중하여 1인당 평균 분석 건수가 더욱 많아지는 추세이고(지방청 평균, 2014년 301건→2015년 496건), 그중에서도 충남청(913건), 대구청(777건), 인천청(748건)은 전체 평균 266건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0〉 연도별 디지털 증거분석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컴퓨터기기 (PC,노트북 등)	디지털기기 (CCTV,네비)	모바일기기 (스마트폰,휴대폰)	파일/기타 (해킹,암호,DB 등)
2009	5,493	3,820	187	658	828
2010	6,247	3,864	276	1,611	496
2011	7,388	3,356	479	3,352	201
2012	10,426	3,830	393	5,870	333
2013	11,200	3,138	483	7,332	247
2014	14,899	3,079	510	10,656	654
2015	24,295	3,357	712	19,526	700
2015. 9	18,705	2,622	554	14,889	640
2016. 9	24,853	2,971	629	20,265	988
전년대비	32.9%	13.3%	13.5%	36.1%	54.4%

출처 : 경찰청(2016)

## 1.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전망

### 1)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범죄위험 증가

2016년 상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해킹사고 건수는 3178건으로 2015년 상반기 5188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이하 IoT) 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를 이용한 보안 위협과 사이버 범죄 위험이 커지고 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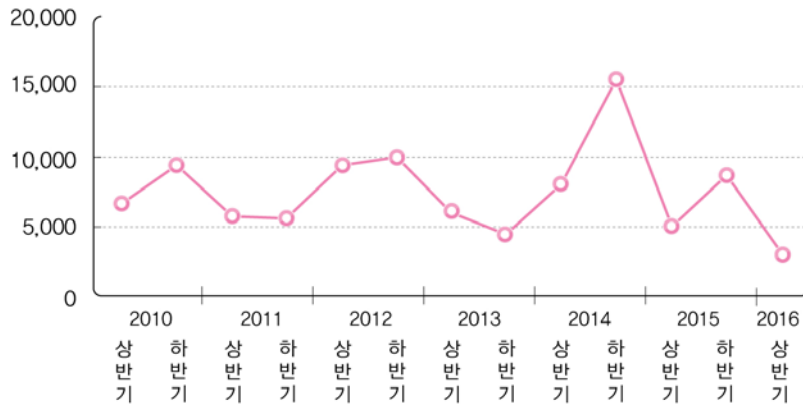
〈표 3-2-31〉 해킹사고 접수 처리건수 현황(2010~2016년 상반기)

구분	해킹사고 접수 처리건수
2010 상반기	6,717
2010 하반기	9,578
2011 상반기	5,898
2011 하반기	5,792
2012 상반기	9,549
2012 하반기	10,021
2013 상반기	6,146
2013 하반기	4,454
2014 상반기	8,078

구분	해킹사고 접수 처리건수
2014 하반기	15,545
2015 상반기	5,188
2015 하반기	8,702
2016 상반기	3,178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침해사고 동향 및 분석 월보; e-나라지표(www.index.go.kr)

[그림 3-2-30] 해킹사고 접수 처리건수 현황(2010~2016년 상반기)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침해사고 동향 및 분석 월보; e-나라지표(www.index.go.kr)

가정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해킹되면 사생활이 노출되고, 자동차가 해킹되면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며, 자동 진료 의료기기가 해킹되면 생명이 위험해 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이 IoT 기기에 보안 피해가 발생하면 단순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IoT 기기의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2014년 1월 미국에서 와이파이에 연결된 스마트TV와 냉장고가 해킹되어 스팸메일을 수십 만 건 보낸 사고가 있었다. 또한 2015년 8월, 인터넷에 연결되는 자동차를 보안전문가가 해킹하여 마음대로 조작한 동영상이 공개되자 해당 자동차 회사가 차량 140만 대를 리콜하게 된 사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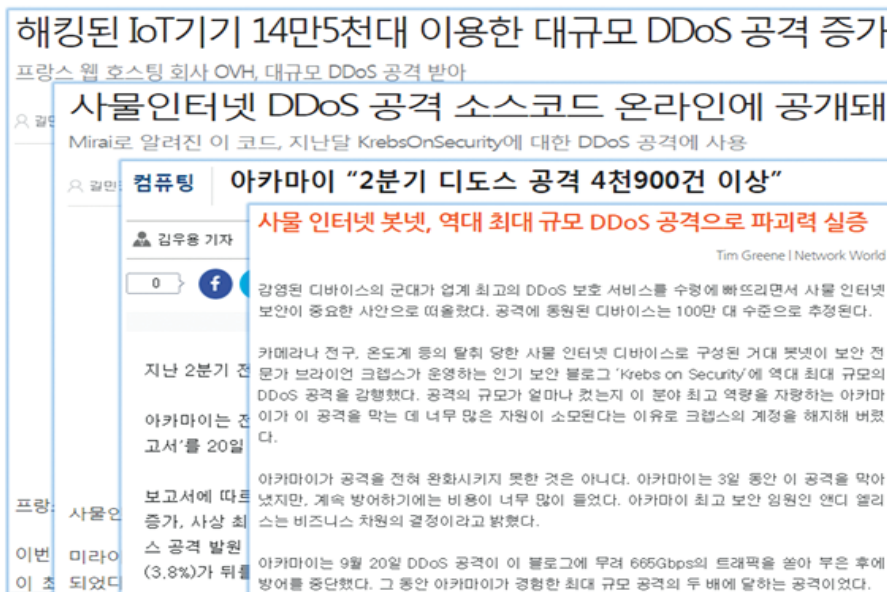
2017년에는 더 많은 IoT 기기가 보급되면서 IoT 기기에 대한 보안위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안이 취약한 가정이나 소형 사무실의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된 네트워크 카메라, 스마트 TV, NAS(Network-Attached Storage) 등 IoT 기기에 대한 해킹 피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17년에는 다양한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공공기관 DDoS 공격 등 공격대상

과 수법이 더욱 지능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DDoS 공격들은 과거와 달리 PC 대신 IoT를 주된 좀비 기기로 악용하여, 공격자는 기기를 하나로 한정하지 않고 카메라, 전구, 온도계 등 다양한 IoT 기기로 구성된 거대 봇넷(botnet)을 구성한 다음 이를 통해 DDoS 공격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예로, 2016년 9월 20일 미국의 인기 보안 블로거인 브라이언 크랩스 홈페이지에 100만 대 규모의 IoT 기기가 동원된 DDoS 공격이 있었고, 이밖에도 프랑스 웹 호스팅 회사 OVL에 대해 IoT 기기 14만 5000대를 이용하여 1.1 Tbps의 트래픽을 발생시킨 사건이 있었다.<sup>92)</sup>

[그림 3-2-31] 2016년 IoT 기기를 악용한 DDoS 사고 관련 보도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년 3분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2016. 10

그러나 IoT 기기의 빠른 보급에 비해 그에 대한 보안체계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정보보안업체 시만텍(Symantec)은 스마트 온도 조절 장치, 스마트 잠금 장치, 스마트 전구, 스마트 에너지 관리 기기 등 50가지 스마트홈 기기의 보안 상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IoT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약 20%가 암호화 통신(SSL)을 사용하지 않아 와이파이를 통해 집안 네트워크에 침입할 수 있다고

92)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년 3분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2016. 10쪽.

보고하였다. 또한 IoT 기기가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음에도 운영체제와 처리 능력의 한계로 인해 고급 보안기능을 갖추기 어려운 취약점이 공격자들의 표적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sup>93)</sup>

이처럼 IoT 기기 보급과 확산에 편승하여 개인적 보안위협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한 주요 공공·민간시스템에 대한 정보유출, 시스템 장악 등 사이버테러 형태의 범죄들이 더욱 지능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악성코드 위협 증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악성코드도 증가하였다. 2016년 들어 9월까지 모바일 악성코드 발견 건수는 285만 5940건으로 2015년 같은 기간 183만 407건에 비해 56.0% 증가하였다. 특히 모바일 랜섬웨어가 등장하여 사용자를 위협하고 있다.

〈표 3-2-32〉 모바일 악성코드 발견 건수(2011~2016. 9)

(단위 : 건)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9	2016.9
발견건수	8,290	262,699	1,251,586	1,430,247	3,210,992	1,830,407	2,855,940

출처 : AhnLab, ASEC REPORT, 2015~2016

납치된 사람에 대한 몸값을 뜻하는 랜섬(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결합한 용어인 랜섬웨어(Ransomware)는 사용자의 컴퓨터 파일을 암호화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한 후 암호화된 파일을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해킹수법이다.

국내에서도 2015년 4월 국내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글화된 랜섬웨어가 최초 유포되었다. 이후, 2015년 12월 현재 랜섬웨어 사건 16건을 경찰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감염 및 피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랜섬웨어는 다양한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될 뿐만 아니라, 회사문서나 윈도우 업데이트 등으로 위장한 이메일로도 유포되어 피해를 주고 있다.

랜섬웨어 추적에 대한 우회기술의 개발 및 가상화폐(비트코인)의 사용 확대에 따라 랜섬웨어 추적 및 수사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반면,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는 쉬워 앞

93) Symantec, Insecurity in the Internet of Things, 2015. 3. 12; Symantec, "IoT devices being increasingly used for DDoS attacks", 2016. 9. 22

으로도 랜섬웨어의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7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나 선거예측 등으로 일반인들을 현혹하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악성코드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침체된 경제와 대외무역 상황을 악용하여 보안의식 및 보안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이메일 무역사기 등 피해사례가 급증할 우려가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예방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2. 불법콘텐츠 범죄 전망

### 1) 사이버도박의 증가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2년 불법도박 실태조사(2차)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불법 도박 시장을 75조 1474억 원 정도로 추정한 바 있었으며, 2016년 조사(3차)에서는 이전 조사보다 더욱 커진 83조 7822억 원 규모로 추정하였다.<sup>94)</sup>

이 중 불법 인터넷도박은 25조 355억 원, 사설 스포츠도박은 21조 8119억 원, 사설 경마·경륜·경정은 12조 734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2016년 불법 인터넷도박 규모(25조 355억 원)는 2012년도 당시 추정 금액(17조 985억 원)보다 무려 46.6%가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전체 불법도박 금액의 평균 증가율 11.5%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3〉 불법도박 규모 추정

(단위 : 억 원)

종류	불법 인터넷도박*	사설 스포츠도박	불법 하우스도박	불법사행성 게임장	경주 게임**	사설 카지노	계
2차 조사 (2012)	170,985	76,103	193,165	187,488	99,250	24,484	751,474
3차 조사 (2016)	250,355	218,119	62,700	145,152	127,342	34,155	837,822

\* 온라인카지노, 웹보드, 릴게임

\*\* 사설 경마, 경륜, 경정

출처 : 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2016. 150쪽.

94) 2008년도 불법도박 실태조사(1차)에서의 불법도박 추정규모는 53조 7028억 원이었다.

이러한 불법도박 시장의 급속한 확대 속에 최근 사이버 불법도박 사건의 발생 건수 및 경찰에 의한 검거 건수도 급증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6년 들어 9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사이버 도박사건 수는 총 7043건(검거 인원 1만 6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도박사건 검거 건수 총 4047건(검거 인원 5950명), 2015년 도박사건 검거 건수 총 3365건(검거 인원 5459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며, 전년 동기 검거 건수 총 2267건(검거 인원 3746명)에 비하면 검거 건수는 무려 219.3%, 검거 인원은 183.6% 증가한 것이다.

〈표 3-2-34〉 사이버 도박 발생 및 검거 현황(2014~2016. 9)

연 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2014	4,271	4,047	94.8%	5,950
2015	3,352	3,365	100.4%	5,459
2015. 9	2,221	2,267	102.1%	3,746
2016. 9	7,092	7,043	99.3%	10,625
전년대비	219.3%	210.7%	-2.8%p	183.6%

\* 2013년 이전 범죄 유형은 도박사이트 유형만 존재하였으나, 2014년부터 도입된 신범죄 유형에는 스포츠토트, 경마·경륜·경정, 기타 사이버도박 등으로 세분화되어 범죄를 넓게 포괄

출처 : 경찰청(2016)

2017년에도 국내에서는 WBC 야구 대회(3월)를 시작으로 국제 보트쇼(4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5월), 해쉬 국제대회(10월) 등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예상되는 경기 결과를 사용한 각종 불법도박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사람은 단기간 내 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몰입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스포츠 행사 일정과 병행하여 불법도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에도 불법 스포츠 도박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불법도박은 경찰의 강력한 단속 활동에 의해 현재까지 매우 높은 검거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도박 사이트는 대부분 외국에 서버를 두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검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국내적으로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민·경 협력 차원의 누리캡스<sup>95)</sup>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 2)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증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불법 콘텐츠 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로 지난 2015년 기준 전체 불법 콘텐츠 범죄 발생 건수(2만 3163건)의 약 2/3인 64.9%(1만 5043건)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9월까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1만 1500건으로 전년 동기 1만 913건과 비교하여 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그 발생 규모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발생 건수 규모의 증가는 이미 2014년 8880건에서 2015년 1만 5043건으로 큰 폭의 증가(69.4%)를 보인 바 있다.

〈표 3-2-35〉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및 검거 현황(2014~2016. 9)

연 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2014	8,880	6,241	70.3%	8,899
2015	15,043	10,202	67.8%	14,017
2015. 9	10,913	7,392	67.7%	10,287
2016. 9	11,500	8,006	69.6%	11,089
전년대비	5.4%	8.3%	1.9%p	7.8%

출처 : 경찰청(2016)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방송인을 비롯한 유명인의 인터넷 악성댓글 피해에 대한 고소 사례가 늘어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고소가 대중화하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2017년에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고소사건이 여전히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과거와 달리 악성댓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여 대량 고소로 연결되고 있다. 일반인들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성 사실이 실시간으로 확산되어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비난성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노출되어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 상에서의 분쟁이 사실상 합의금 취득을 목적으로 한 고소 남발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2017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 선거운

95) 누리꾼의 ‘누리’와 ‘cops(경찰)’의 합성어로, ‘사이버 명예경찰’을 의미한다. 인터넷상의 각종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민·경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07년 발족하였으며, 2016년 11월 현재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총 818명이 활동하고 있다.

동이 시작되면 지지후보·정당 간 경쟁, 지역감정 등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악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고소 사건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전망

#### 1) 신종 사이버 금융범죄 위협 증가

사이버 금융범죄는 경찰의 적극적인 악성 금융범죄 척결 활동과 피해 예방 노력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세에 있다. 2015년의 경우 파밍이 30.0%, 기타 사이버 금융범죄가 63.0%로 크게 증가하기는 했으나, 스미싱이 77.2% 급감하고 피싱 및 메모리해킹 등도 감소하여 한 해 동안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5.8%)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들어 9월까지 사이버 금융범죄는 더욱 크게 줄어든 5044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60.1% 감소하였다. 유형별로는 대표적으로 메모리해킹이 89.2%, 피싱이 80.4%, 파밍이 74.4% 등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밖에 스미싱이 46.4% 줄어들었고 기타 사이버 금융범죄 또한 32.7% 감소되었다. 이는 경찰을 비롯한 관련기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스마트폰 사용자 등 시민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 인식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새로운 범죄 위협으로써 음란 화상 채팅 등을 유도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몸캠 피싱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6년 9월, 몸캠피싱은 894건 발생하여 전년 동기대비 3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몸캠피싱은 과거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높은 만큼, 그 증가 추세를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2-36〉 사이버 금융범죄 발생 건수(2014 ~ 2016. 9)

연 도	계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기타
2014	15,596	1,962	7,101	4,917	155	-	1,461
2015	14,686	1,726	9,233	1,120	124	102	2,381
2015. 9	12,647	1,550	8,201	869	118	26	1,883
2016. 9	5,044	304	2,103	464	12	894	1,267
전년대비	-60.1%	-80.4%	-74.4%	-46.4%	-89.2%	3338.5%	-32.7%

\* 2015년 7월부터 사이버범죄 유형 분류가 개선되어 금융범죄 내 '몸캠피싱' 추가.

출처 : 경찰청(2016)

이처럼 신종 금융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해 가고 있다. 이 가운데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K뱅크)의 출범과 운영 과정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및 대출심사 등 보안 취약점을 노린 새로운 금융범죄가 등장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이용에 따라 거래상의 편의성은 기대되나, 신분 도용에 의한 계좌개설 및 대여 또는 유사 문자에 의한 스미싱(악성코드 설치) 등 피해 발생 우려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해외의 범죄 사례 및 예상 범죄 유형에 대한 연구와 수사 매뉴얼 준비 등 세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2) 저작권 합의금 목적 남(濫)고소 양상의 지속

2016년 9월 사이버 저작권 침해 건수는 7597건으로, 전년 동기 1만 5389건에 비해 50.6%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 2014년 전체 사이버 저작권 침해 건수 1만 4168건(검거 건수 7198건, 검거 인원 9851명), 2015년 침해 건수 1만 8770건(검거 건수 8832건, 검거 인원 1만 2533명) 등으로 증가해 온 추세를 고려할 때, 감소 의미가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된다.

〈표 3-2-37〉 사이버 저작권 침해 발생 및 검거 현황(2014~2016. 9)

연 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2014	14,168	7,198	50.8%	9,851
2015	18,770	8,832	47.1%	12,533
2015. 9	15,389	7,231	47.0%	10,354
2016. 9	7,597	4,383	57.7%	6,190
전년 대비	-50.6%	-39.4%	10.7%p	-40.2%

출처 : 경찰청(2016)

고소 대상 저작물은 음원, 사진, 동영상, 폰트(글꼴),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인터넷 소설 등 다양하다. 문제는 침해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친고죄’라는 점을 이용해 당사자 간 합의금을 노린 저작권 관련 대량 고소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이버 저작권 침해는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의 12.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형사처분 단계에서 기소율은 35%(2015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7년에도 사실상 민사적 성격의 저작권 침해 사안에 대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고소인들이 현행의 손쉬운 고소 접수 절차를 이용한 남고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는 악성 고소인 사건에 대하여 ‘남고소인 사건 각하지침’ 또는 ‘남고소 판단 기준’의 마련과 엄정한 집행 등 남고소 대책 추진이 절실하다.



## 제3절 생활안전 분야 전망

I. 112신고 추이와 전망 .....	120
II. 성폭력범죄 전망 .....	125
III. 학교폭력 전망 .....	131

## I. 112신고 추이와 전망

### 1. 112신고의 완만한 증가

〈표 3-3-1〉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 8월까지 112신고 건수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 112신고는 과거 10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 2007년 620만 건이던 접수건수는 2012년에는 1170만 건이 되었으며, 2013년에는 1900만 건으로 급증하였다. 이후 증가 추세는 한풀 꺾였으며 최근에는 1900만 건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112신고의 증가는 휴대폰 등 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누구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게 112신고가 가능해졌으며, 경찰활동을 규제보다는 서비스로 보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sup>96)</sup>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는 과거 경찰의 업무로 인식되지 않았던 다양한 일들에 경찰이 도움을 주길 바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며, 이는 112신고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표 3-3-1〉 과거 10년간 112신고 접수 현황

(단위 : 천 건)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8
총 접수	6,227	7,007	7,788	8,549	9,951	11,771	19,115	18,778	19,104	12,936
경찰관련	3,632	3,903	4,155	5,872	6,016	8,119	9,685	10,677	10,980	7,220
기타민원	2,595	3,104	3,633	2,692	3,934	3,652	9,430	8,101	8,124	5,716
민원비중 (%)	41.7	44.3	46.7	31.4	39.5	31.0	49.3	43.1	42.5	44.2

출처 : 경찰청(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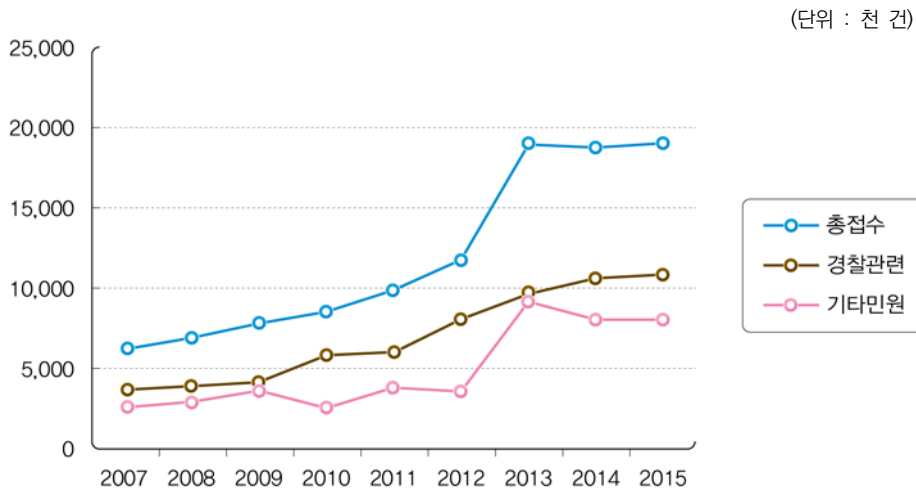
[그림 3-3-1]과 같이, 112신고 변화추이를 그래프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112신고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3년을 정점으로 그 증가 추세는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112신고 중 기타민원(범죄, 질서유지, 교통 등 경찰기본업무 외의 업무) 또한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sup>97)</sup> 즉, 기타민원은 2007년부터

96) “치안전망 2013”, 치안정책연구소, 2013. 136쪽.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 급증하여 정점을 찍은 이후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경찰관련 신고(범죄, 질서유지, 교통 등 경찰기본업무)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향후 112신고 건수 및 기타민원 접수 건수는 큰 증감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3-1] 과거 10년간 112신고 변화추이



## 2. 112신고에 따른 현장출동 관련 전망

최근 8년간 112신고에 따른 현장출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8년간 급증하고 있는 112신고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010년부터 112 신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112신고 대응시스템’<sup>98)</sup>으로 인해 112 현장출동은 112신고 증가 속도에 비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8년간 출동률은 급격히 감소(2009년 91%에서 2015년 56%)하였으며, 최근에는 55%대의 안정된 출동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 출동시간은 2009년 5분 49초에서 매년 증감을 반복하다 2015년에는 5분 09초가 되었다.

97) 기타민원의 감소추세는 범죄신고 외 경찰민원처리를 위해 2012년 11월 개소된 182경찰민원콜센터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98) 112신고 시 필요성·긴급성을 판단하여 차별적으로 조치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Code 1: 최우선 출동, Code 2: 일반 출동, Code 3: 비출동으로 나누어진다. 2016. 4. 1부터 5단계로 (Code 0, 1, 2, 3, 4) 확대 시행되었다.

〈표 3-3-2〉 112신고 차별적 대응 관련 접수·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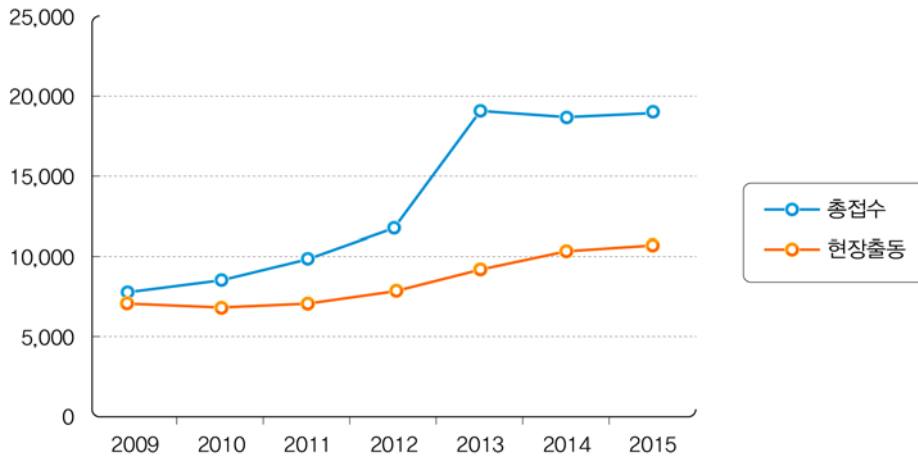
(단위 : 천 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8
총 접수	7,788	8,549	9,951	11,771	19,115	18,778	19,104	12,936
현장출동 (출동률)	7,053 (91%)	6,736 (79%)	7,116 (72%)	7,882 (67%)	9,341 (49%)	10,387 (55%)	10,719 (56%)	7,057 (55%)
평균출동 시간	5분 49초	4분 28초	3분 53초	3분 34초	4분 32초	3분 55초	5분 09초	5분 24초

\* 2009년 평균 출동시간은 112신고 대응시스템 시범운영 지방청인 인천·대구·충북·경남청 통계  
출처 : 경찰청(2016)

[그림 3-3-2] 112신고 차별적 대응 관련 접수·출동 추이

(단위 : 천 건)



[그림 3-3-2]는 112신고 접수 건수와 현장출동 건수의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출동은 112신고 건수에 비해 큰 폭의 증가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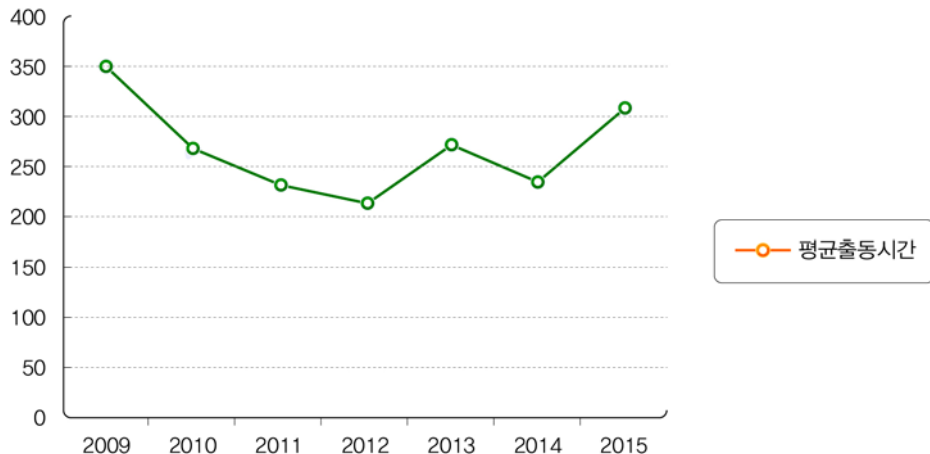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향후 112신고 현장출동건수는 큰 폭의 변동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2 평균출동시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12 평균출동시간의 지속적 감소는 차별적 ‘112 신고대응시스템’과 함께 ‘112 신속출동’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증감은 ‘112 신속출동’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최근 8년간의 112 평균출동시간과 증감의 원인을 함께 고려해 볼 때, 향후 112 신고 평균출동시간은 2015년과 비슷한 5분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3-3] 112신고 평균출동시간 추이

(단위 : 초)



### 3. 112신고 유형별 전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8년간 112 현장출동(과거 Code 1, 2; 현재 Code 0, 1, 2, 3)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표 3-3-3>에서 보듯, 최근 5년간 112 현장출동 처리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검거, 현장출동,<sup>99)</sup> 계속수사, 인계종결,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는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미처리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3> Code 0·1·2·3 처리 현황

(단위 : 천 건)

구분	계	검거	현장출동	계속수사	인계종결	미처리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	기타
2012	7,882	294	4,226	862	577	1,574	345	-
2013	9,341	258	5,336	977	515	995	312	935
2014	10,387	295	6,220	1,024	473	911	293	1,167
2015	10,719	392	5,921	912	485	773	405	1,828
2016. 8	7,057	288	3,439	590	303	441	549	1,443

출처 : 경찰청(2016)

99) 112 현장출동 후, 현장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검거, 현장출동, 계속수사, 인계종결,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는 특별한 양상의 추세를 보이지 않고 증감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처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3-3-4〉에서 보듯, 최근 5년간 112 비출동(과거 Code 3; 현재 Code 4)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2012년 388만 9000건이던 112 비출동이 2013년에는 977만 건으로 급증하였다가 이후 800만 건대로 감소하였다. 112 비출동 유형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중요범죄, 기타범죄, 질서유지, 교통, 타기관·기타업무는 2013년 급증했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경찰 업무는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3-4〉 Code 4 처리 현황

(단위 : 천 건)

구 분	계	중요범죄	기타범죄	질서유지	교 통	기타경찰업무	타기관, 기타
2012	3,889	4	98	53	79	2,198	1,453
2013	9,770	12	134	81	110	1,994	7,436
2014	8,390	10	120	72	85	2,503	5,598
2015	8,385	8	93	73	86	2,941	5,183
2016. 8	5,878	5	47	47	61	2,197	3,519

\* 중요범죄(살인, 강도, 치기,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도 민원실·타기관 연결, 상담 후 종결한 경우 비출동

출처 : 경찰청(2016)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중요범죄, 기타범죄, 질서유지, 교통, 타기관·기타업무는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타경찰 업무는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II. 성폭력범죄 전망

### 1. 전체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현상 유지되거나 소폭 감소, 강간·강제 추행 등 심각한 성폭력은 감소 추세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관련 언어나 행동을 일방적으로 표출하여 상대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규정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성폭력의 범위에는 강간과 추행 등 직접적인 성적 행위 외에도 성기노출이나 성희롱 등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적 행위, 전화나 문자 등 매체를 통한 성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도 성폭력범죄에는 강간과 추행 범죄 유형 외에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은 공식 범죄통계와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추정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공식 범죄통계는 성폭력범죄 발생 추이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고 있으나, 성범죄 피해 암수범죄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실제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발생 추이를 파악하는 데에는 공식 범죄통계 외에도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로서 여성가족부에서 매 3년마다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는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와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전국 범죄피해자 조사가 있다.

〈표 3-3-5〉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성폭력 피해 경험률 비교

(단위 : %)

구분		2007	2010	2013
지난 1년간 신체적 접촉이 수반된 성폭력 피해 경험률(%)	여성	2.9	4.7	2.7
	전체	1.8	2.9	1.6

출처 :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2007, 2010, 2013)

지난 2007년, 2010년, 2013년 등 3차례에 걸친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각각 지난 1년 동안 강간, 강간미수,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 등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피해 경험을 조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2007년에는 조사대상 여성의 2.9%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010년에는 4.7%로 높아졌으나 2013년에는 2.7%로 낮아진 상태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 경험을 주변에 알린 응답자의 비율은 2010년 23.2%에서 2013년 33.4%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과 2013년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이 기간 동안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감소한 반면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의식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전국 범죄피해 조사-성폭력범죄 피해 비교

(단위 : %, 건)

구분	2012	2014
범죄피해건수	21건(0.2%)	18건(0.1%)
추정피해건수	74,482건(0.2%)	56,890건(0.1%)
인구10만 명당 피해율	173.5건/10만 명	129.2건/10만 명

\* 괄호 안은 범죄피해율

출처 : 전국 범죄피해조사(2012, 2014)

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 범죄피해 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지난 2010년, 2012년, 2014년 등 3차에 걸쳐서 조사가 이뤄졌다. 두 번째 조사인 2012년에는 조사방식의 큰 변화를 거쳤고 2014년에는 2012년과 동일한 질문지를 통해 조사가 이뤄졌다. 따라서 2012년과 2014년 조사 결과는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다. 이 조사에서 성폭력범죄는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지난 1년 동안 신체적 접촉이 수반된 성폭력범죄로 강간과 추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2년과 2014년 조사를 비교하면, 가구원 가중치를 부여한 추정피해건수는 2012년 7만 4482건(0.2%)에서 2014년 5만 6890건(0.1%)으로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구 10만 명당 피해율로 계산하면, 2012년 인구 10만 명당 173.5건에서 2014년 129.2건으로 감소되었다.

최근의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와 전국 범죄 피해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강간·추행 등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율은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3-7〉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단위 : 건, 명, %)

구분	합계	강간·강제추행 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
2011	21,912	19,479	1,523	910	-
2012	22,933	19,619	2,400	914	-
2013	28,786	22,342	4,823	1,411	210
2014	29,517	21,172	6,623	1,257	465
2015	30,651	21,352	7,623	1,135	541
2015. 1~10	26,476	18,076	6,999	953	448
2016. 1~10	24,548 (-7.3%)	18,680 (3.3%)	4,531 (-35.3%)	929 (-2.5%)	408 (-9.0%)

\*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되는 2013. 6. 19 시행됨.

출처 : 경찰청(2016)

성폭력범죄 발생 추이는 공식 범죄통계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는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공식 범죄통계를 통해 성폭력범죄 발생 규모를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sup>100)</sup> 그러나 범죄 발생 추이, 즉 범죄 발생의 증감추이를 파악하는 데 기초자료가 된다. 경찰의 공식 범죄통계에 의하면,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2만 1912건이던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2015년에는 3만 651건이 발생하여 지난 5년 사이 40% 가까운 증가를 나타냈다.

그런데 2016년 10월 현재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2만 6476건)대비 7.3% 감소한 2만 4548건을 기록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유형별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 등이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는 전년 동기 대비 35.3%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3-3-8〉 강간·추행범죄 발생 및 검거 추이

(단위 : 건, 명)

연도	발생건수	발생비	검거건수	검거인원
2011	19,498	39.2	16,404	17,492
2012	19,670	39.4	16,630	18,012
2013	22,310	44.5	19,774	20,375
2014	21,055	41.8	20,031	20,499
2015	21,286	42.2	20,525	21,330

출처 : 경찰청(2016)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간·추행 등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범죄는 이와 다른 추세를 나타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강간·추행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3년 2만 2310건으로 최고 발생 건수를 기록한 이후 2년 동안 감소했다. 인구 10만 명 당 발생비는 지난 2011년 39.2건에서 2013년 44.5건으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41.8건과 42.2건을 기록함으로써 최근 몇 년 사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강간과 추행범죄 피해율을 조사한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와 전국 범죄피해조사의 최근 추세와 맥락을 같이 한다. 경찰 공식범죄통계상의 강간·추행범죄 발생추이와 최근 범죄피해조사의 동 범죄 피해율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강간·추행 등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범죄는 최근의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00) 성폭력범죄 암수율은 87.5%로서 실제 성폭력범죄는 6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황지태,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간의 비교분석”, 형사정책연구, 83권, 2010).

성폭력범죄는 범죄분류상 강력범죄에 속한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강간·강제추행 외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 등 비접촉형 성범죄에 속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공식적 성폭력범죄 통계는 이러한 비접촉형 성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집계되고 있다. 일반인의 인식을 따라 강간 발생 건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보면 2013년에 5753건이 발생했으나 2015년 5151건으로 감소했다. 강간을 심각한 성폭력범죄로 구분한다면, 이는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3-9〉 성폭력범죄 검거율 추이

(단위 : 건, %, 명)

구 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2011	21,912	18,499	84.4	20,189
2012	22,933	19,386	84.5	21,259
2013	28,786	25,591	88.9	24,835
2014	29,517	28,034	95.0	25,306
2015	30,651	29,539	96.4	27,166
2016. 1~10	24,548	23,683	96.5	24,690

출처 : 경찰청(2016)

강간·추행 등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의 감소세는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성폭력범죄 검거율 향상과 재범률 억제를 통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폭력범죄 검거율은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1년 성폭력범죄 검거율은 84.4%를 나타냈는데, 2013년에는 88.9%, 2015년에는 96.4%로 높아졌다. 96%를 넘는 높은 검거율은 경찰의 성폭력범죄 대응력과 척결의지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표 3-3-10〉 성폭력범죄 재범률 추이

(단위 : 명, %)

구 분	검거인원(명)	동종재범자(명)	재범률(%)
2011	20,189	1,629	8.1
2012	21,259	1,684	7.9
2013	24,835	1,599	6.4
2014	25,305	1,377	5.4
2015	27,166	1,357	5.0
2016. 1~10	24,690	1,040	4.2

\* 재범률= 동종재범인원/검거인원×100

출처 : 경찰청(2016)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1년 이후 최근까지 성폭력범죄 재범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1년 8.1% 수준이던 동종 재범률은 2013년에는 6.4%, 2015년에는 5.0%로 낮아졌고, 2016년 10월 현재 4.2%로서 전년 동기 대비 0.6%p 낮아진 수치이다.

향후 성폭력범죄를 전망해 보면, 2016년에 나타난 성폭력범죄 감소 수치가 추세적 전환점이 될지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 다만 지난 5년 동안 지속된 증가 추세가 멈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성폭력범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간·강제추행 행위의 경우에도 2016년 10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수치이기는 하나, 2013년 이후 두 해 동안 발생 건수가 감소해 왔다는 점이다. 거기다가 강간·추행 등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범죄 피해조사 결과가 최근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식범죄통계상 2013년 이후 강간·강제추행 행위의 감소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단기적으로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현상 유지 내지는 소폭 감소가 예상된다.

## 2. 아동 대상 강간·강제추행 증가 추세

〈표 3-3-11〉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강제추행 범죄발생 추이

(단위 : 건, %)

연도	강간·강제추행 발생건수	아동 대상 발생건수	구성비(%)	아동 10만 명당 발생비
2011	19,498	1,034	5.3	16.0
2012	19,670	1,086	5.5	17.2
2013	22,310	1,125	5.0	18.3
2014	21,055	1,144	5.4	19.0
2015	21,286	1,188	5.6	20.0

\* 10만 명당 발생비 :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12세 이하 추계인구×10만 명  
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2011~2015) 재구성

경찰이 집계한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강제추행 범죄 건수는 2011년 1034건이 발생한 이후 매년 소폭 증가하여 2015년에는 1188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강간·강제추행 발생건수에서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5%~5.6%수준으로 2013년 5.0%를 차지한 이후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 구조상 아동인구가 줄

어드는 추세를 감안하여 인구 10만 명 당 발생비를 산출하면, 2011년 13세 미만 아동 강간·강제추행 범죄 발생비는 10만 명 당 16.0명 수준인데, 소폭이나마 지난 5년 동안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어 2015년에는 20.0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범죄 발생 건수 추이와 발생비 추이로 판단할 때, 아동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지난 5년 동안 소폭이나마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3.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완화

〈표 3-3-12〉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 1~10	2016. 1~10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21,912	22,933	28,786	29,517	30,651	26,476	24,548
장애인대상 발생건수	494	656	852	927	857	722	627
구성비(%)	2.2	2.8	2.9	3.1	2.8	2.7	2.6

출처 : 경찰청(2016)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1년 494건이 발생한 이후 2014년 92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857건으로 감소하였고 2016년 10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약 13% 감소한 상태이다. 전체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에서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의 비율도 지난 2011년 2.2%에서 2014년 3.1%까지 높아졌으나, 2015년에는 2.8%로 낮아졌고 2016년 10월 현재 2.6%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 추이로 볼 때,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는 2014년을 정점으로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Ⅲ. 학교폭력 전망

#### 1.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감소 추세 지속

법률적 의미에서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유형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추세이다. 지난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정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행위유형으로서 ‘폭행, 협박, 따돌림’을 포함했다.

그러나 2009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상해, 감금,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피해 행위’가 포함되고, 2012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강요·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이 확대되어 가는 것은 학교폭력이 그만큼 다양한 형태를 띠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의 확대, 매체의 확대, 학교폭력 양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학교폭력 실태는 교육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국적 규모의 실태조사 결과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그리고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현황 통계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공식적으로 학교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학교폭력 피해를 포함하여 실제 학교폭력 피해 규모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는 학교당국에 파악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편, 경찰에서 집계한 학교폭력 검거 현황 통계는 형사사법기관의 공식적 집계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가 지난 1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경험 여부에 응답한 결과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로 학교폭력 피해규모 추정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 응답률 추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둔화 혹은 악화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이다.

교육부에서 2012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대책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조사로 조사방법 및 절차와 관련

하여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뤄지고 있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전수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공신력 있는 지표를 제공한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교 전체이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지난 2012년 이후 5년 동안 이뤄지고 있는데, 2012년 1차 조사 이후 매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감소하고 있다. 즉 2012년(1차)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2.3%로 나타났으나, 2013년(1차) 조사에서는 2.2%로 크게 감소했고,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2016년 1차 조사에서는 0.9%를 기록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의 감소 추세는 바로 학교폭력이 완화되는 추세를 반영한다.

〈표 3-3-13〉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추이

(단위 : %)

조사 시기	2012(1차)	2013(1차)	2014(1차)	2015(1차)	2016(1차)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12.3	2.2	1.4	1.0	0.9

\* 연도와 병기된 차수는 해마다 두 차례 실시되는 학교폭력실태조사 차수임.  
출처 : 교육부(2016)

여성가족부에서는 1999년 이후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 청소년 폭력에 관한 조사를 포함해 오고 있다. 지난 4차에 걸친 조사에서도 폭력 피해 응답률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욕설·협박’, ‘폭행’, ‘돈·물건 갈취’, ‘집단 따돌림(왕따)’ 피해경험을 조사하고 있다. 학교 안팎에서의 폭력 피해 응답률이 2010년에는 7.1%를 나타냈으나, 2012년에는 5.6%, 2014년에는 2.3%까지 낮아지는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3-3-14〉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폭력 피해 응답률 추이

(단위 : %)

조사 시기	2010	2011	2012	2014
폭력 피해 응답률	7.1	6.7	5.6	2.3

출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2010 ~ 2014)

민간단체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도 전국적 규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표집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서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2.0%로 나타났는데, 2013년에는 6.3%, 2014년에는 3.8%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 조사에서는 4.6%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 조사결과는 전년대비 0.8%p 증가한 수치이지만, 오차범위 내에 있어서 피해 응답률 감소추세를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15〉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조사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추이

(단위 : %)

조사 시기	2012	2013	2014	2015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12.0	6.3	3.8	4.6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6)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각각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연례 조사를 통해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감소 추세는 바로 학교폭력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 이러한 추세는 형사사법기관의 공식 범죄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3-3-16〉 학교폭력 검거 현황

(단위 : 명)

조사 시기	2011	2012	2013	2014	2015
검거인원	21,957	23,877	17,385	13,268	12,495

출처 : 경찰청(2016)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2012년 2만 3877명을 기록한 이후, 매해 감소하여 2015년에는 1만 2495명으로 집계되었다. 검거인원의 감소는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등 경찰의 개입이 요구되는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의 감소를 의미한다.

〈표 3-3-17〉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신고·도움 응답 추이

(단위 : %)

조사 시기	2014(1차)	2015(1차)	2016(1차)
피해 후 알림·신고 비율	78.3	79.6	80.3
목격 후 알림·도움 비율	79.1	85.2	87.3

출처 : 교육부(2016)

최근 몇 년 동안의 학교폭력 감소 추세는 학교폭력 신고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통해

강화되고 있다. 교육부와 경찰청에서는 학교폭력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 신고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은 2014년(1차) 조사에서 78.3%를 나타냈으나, 2016년(1차) 조사에서는 80.3%로 높아졌다. 학교폭력을 목격하고 주변에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비율은 2014년(1차) 조사에서 79.1%로 나타났으나, 2016년(1차) 조사에서는 87.3%로 상승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 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학교폭력 감소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교폭력 연구자들은 학교폭력 피해 당사자나 주변사람들의 신고의식이 학교폭력을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피해 응답률 감소 추세와 경찰청에서 집계한 학교폭력 검거인원 감소 추이, 학교폭력 신고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에 근거하여 학교폭력은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경향은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학교폭력 집단화 완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학교폭력의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양상에도 기인한다. 학교 내 폭력서클의 존재는 학교폭력의 집단화와 폭력성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켜왔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학교폭력 집단화 경향이 완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 한 지표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집단가해 경험률 조사결과이다.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집단가해 경험률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3년 1차 조사에서는 집단가해 경험률이 64.6%였는데, 2013년 2차 조사에서는 64.2%, 2014년 1차 조사에서는 60.2%, 2014년 2차 조사에서는 53.8%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표 3-3-18〉 가해 경험자 대상 집단가해 경험률 추이

(단위 : %)

조사 시기	2013(1차)	2013(2차)	2014(1차)	2014(2차)
집단가해 경험률	64.6	64.2	60.2	53.8

출처 : 교육부(2015)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심의건당 가해학생 수 추이이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개별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심의건당 가해학생 수는 한 사건에 몇 명의 가해학생이 연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집단화 경향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표 3-3-19〉 연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당 가해학생 수

(단위 : 건, 명)

연도	심의건수	가해학생 수	심의건당 가해학생 수
2011	7,443	27,021	3.63
2012	24,709	42,232	1.71
2013	17,749	29,325	1.65
2014	19,521	28,949	1.48
2015	19,968	28,393	1.42

출처 : 교육부 2013 국감자료; 교육부 2016 국감자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동 위원회 심의 사건 당 가해학생 수 평균 수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1년 심의 사건 당 가해학생 수는 평균 3.63명이었는데, 이후 4년 동안 매년 감소하여 2015년에는 1.42명으로 낮아졌다. 최근 5년 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당 가해학생 수는 60% 이상 감소한 셈이다. 심의 건당 가해학생 수의 감소 추세는 학교폭력 집단화 경향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집단가해 경험률 추이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당 가해학생 수 추이를 통해 볼 때, 최근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집단화 경향은 완화되고 있다. 2017년에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집단화 경향은 완화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학교폭력의 폭력성 감소세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 외에도 폭력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자살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일진으로 지칭되는 학교 내 폭력 서클의 존재가 부각되면서 그러한 우려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최근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로서 학생 천 명당 신체폭행 피해응답 건수를 들 수 있다.

〈표 3-3-20〉 조사시기별 학생 천 명당 신체폭행 피해 건수

(단위 : 건)

조사 시기	2013(1차)	2013(2차)	2014(1차)	2014(2차)	2015(1차)	2015(2차)	2016(1차)
신체폭행	4.7	4.1	3.1	2.7	2.4	2.1	2.2

출처 : 교육부(2016)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 천 명당 신체폭행 피해건수는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3년(1차) 조사에서 학생 천 명당 신체폭행 피해건수는 4.7건으로 조사되었는데, 2014년(1차) 조사에서는 3.1건, 2015년(1차) 조사에서는 2.4건, 2016년(1차) 조사에서는 2.2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3-3-21〉 연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단위 : 건, %)

연도	심의건수	전학 및 퇴학 조치 가해학생 비율
2011	7,443	9.6
2012	24,709	5.2
2013	17,749	4.1
2014	19,521	3.9
2015	19,968	3.5

출처 : 교육부 2013 국감자료; 교육부 2016 국감자료

이러한 경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조치현황에서도 확인된다. 학교폭력의 폭력성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조치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는 ‘전학 및 퇴학처분’ 대상 가해자 비율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전학 및 퇴학처분’ 대상 가해자 비율은 9.6%로 나타났으나, 2012년에는 5.2%, 2013년 4.1%, 2014년에는 3.9%, 2015년에는 3.5%로 낮아지고 있다. ‘전학 및 퇴학처분’ 대상 가해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조치상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되는 ‘매우 폭력적이고 심각한’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볼 때,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의 폭력성은 2011년을 정점으로 정부의 강력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에는 크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던 시기에 큰 우려를 낳았던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과 폭력성은 각종 지표들이 완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을 통해 학교 내 폭력서클에 대한 경찰의 관리·감독 강화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2017년에도 학교폭력의 폭력성은 완화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학교폭력 저연령화 추세 지속

최근 학교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피해자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가장 높은 학교급은 초등학교이고, 학교급별로 피해 응답률 감소폭이 가장 낮은 학교급도 초등학교이다.

〈표 3-3-22〉 조사시기별-학교급별 피해 응답률

(단위 : %)

학교급 \ 조사 시기	2012(1차)	2013(1차)	2014(1차)	2015(1차)	2016(1차)
초	15.2	3.8	2.7	2.0	2.1
중	13.4	2.4	2.0	0.7	0.5
고	5.7	0.9	0.9	0.4	0.3

출처 : 교육부(2016)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2년 이후 학교급별로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모두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2016년(1차) 조사의 경우,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년대비 0.1%p 증가한 상태이다. 지난 5년 동안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 추이로 볼 때,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5. 학교폭력 유형 중 성폭력 증가 추세 지속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학교폭력의 폭력성과 집단성이 완화되는 추세는 학교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지표는 학생 간 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표 3-3-2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성폭력 심의 건수

(단위 : 건)

조사 시기	2012	2013	2014	2015
성폭력 심의건수(건)	652	878	1,429	1,842

출처 : 교육부(2016)

학교폭력의 유형으로서 학생 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성폭력 심의 건수 추이를 통해 나타난다. 동 위원회의 성폭력 심의 건수는 2012년 652건으로 집계되었는데,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성폭력 심의 건수는 2.8배 증가한 셈이다.

〈표 3-3-24〉 학교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

(단위 : 명)

연 도	계	유형별				조치별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구속	불구속	소년부송치	기타
2011	21,957	14,837	3,902	444	2,774	103	16,228	1,473	4,153
2012	23,877	14,637	5,912	509	2,819	333	15,615	2,657	5,272
2013	17,385	11,048	2,603	1,067	2,667	294	11,016	1,824	4,251
2014	13,268	8,974	1,582	1,295	1,417	167	8,586	1,191	3,324
2015	12,495	9,188	1,153	1,253	901	93	9,157	1,059	2,186
2015. 9	8,900	6,508	840	905	647	72	6,498	783	1,547
2016. 9	9,214	6,751	840	989	634	52	7,083	781	1,298
대비(%)	3.5	3.7	0.0	9.3	-2.0	-27.8	9.0	-0.3	-16.1

출처 : 경찰청(2016)

경찰에서 집계한 학교폭력 범죄통계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확인된다. 경찰이 개입하는 학교폭력 사건은 유형별로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으로 구분되는데, 폭행·상해와 금품갈취 사건이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성폭력 사건은 증가하고 있다. 2011년 444건이던 성폭력사건은 2015년 1253건으로 증가했고, 2016년 9월 현재 989건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대비 9.3% 증가한 상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성폭력 심의 건수 추이와 경찰의 학교폭력 범죄 유형별로 성폭력사건 검거 추이는 학생 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통계와 경찰의 통계에서 성폭력사건은 법률적 성폭력범죄 개념을 따라, 강간·강제추행 행위 외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 등을 포함한 것이다. 즉, 이 통계에서 어떠한 하위 유형의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경찰의 범죄통계는 범죄 분류상 강간·강제추행 행위는 강력범죄로 분류하는 한편,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 등 비접촉형 성범죄는 성폭속범죄로 분류한다.

〈표 3-3-25〉 미성년 학생범죄자 비접촉형 성범죄 발생 추이

(단위 : 명)

조사 시기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접촉형 성범죄 인원	528	644	697	688	791

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2011~2015)

경찰의 범죄통계에 의하면, 18세 이하 미성년 학생 비접촉형 성범죄 인원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1년 비접촉형 성범죄 인원은 528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791명으로 늘어났다.

미성년 학생범죄자 비접촉형 성범죄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 간 성폭력범죄의 증가 추세에는 성폭력범죄 유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등 비접촉형 성범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SNS)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학생 간 성폭력 증가 추세를 강화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외적 환경과 범죄 발생 추이 통계에 근거하여 학생 간 성폭력은 증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4절 교통안전 분야 전망

I. 교통 환경의 변화와 전망 .....	142
II. 교통사고의 진단과 전망 .....	145

## I. 교통 환경의 변화와 전망

### 1. 교통 관련 지표의 변화

최근 교통 여건을 설명하는 교통 관련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인구 5080만 1000명, 도로연장 10만 7527km, 자동차 등록대수 2475만 5497대, 운전면허 소지자 3029만 3621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20만 3769명, 교통사고 발생건수 23만 2035건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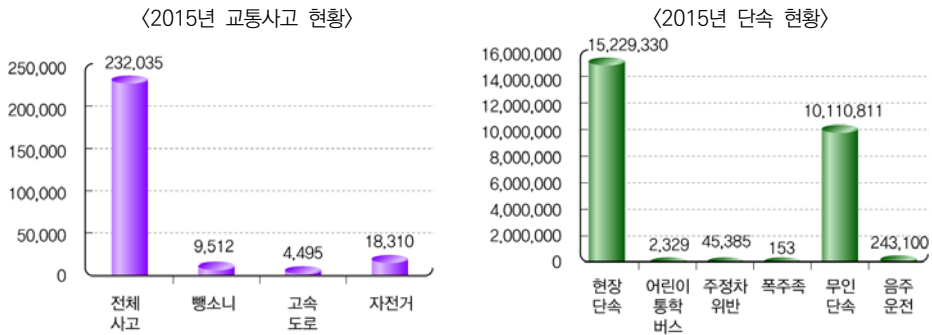
〈표 3-4-1〉 주요 교통 지표의 변화

연도	인구 <sup>1)</sup> (천 명)	도로연장 <sup>2)</sup> (km)	자동차등록대수 <sup>3)</sup> (천 대)	교통사고 발생건수 <sup>4)</sup>	운전면허 소지자 <sup>5)</sup> (천 명)
2006	48,497	102,061	15,895	213,745	24,088
2007	48,456	103,019	16,428	211,662	24,681
2008	48,607	104,236	16,794	215,822	25,268
2009	48,747	104,983	17,325	231,990	25,822
2010	48,875	105,565	17,941	226,878	26,402
2011	48,989	105,931	18,437	221,711	27,251
2012	50,004	105,703	18,870	223,656	28,263
2013	50,219	106,414	19,401	215,354	28,848
2014	50,423	105,673	20,117	223,552	29,544
2015	50,801	107,527	24,755	232,035	30,293

출처 : 1), 2), 3) 통계청, e-나라지표(kosis.kr), 2016. 11

4), 5) 경찰청(2016)

[그림 3-4-1] 2015년 교통사고와 단속 통계



세부적으로 보면, 교통사고 부문에서 뺑소니 교통사고 9512건, 고속도로 교통사고 4495건, 자전거 교통사고 1만 8310건이 발생하였다. 교통단속 부문에서는 현장교통 단속 1522만 9330건,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단속 2329건, 주정차 위반 단속 4만 5385건, 폭주족 단속 153건, 무인교통단속 1011만 811건, 음주운전 단속 24만 310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교통단속 범칙금이 497만 9875건에 1760억 1700만 원, 과태료가 1111만 7089건에 5670억 2800만 원이 부과되었다. 또한 민간에서 교통경찰과 함께 활동하는 민간단체는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가 있으며 현재 각각 2만 5218명과 74만 4293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교통 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

교통 환경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교통 관련 주요 지표는 인구, 도로연장, 자동차 등록대수, 운전면허 소지자 수 등이다. 교통의 변화요인은 이들 각 주요지표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유발요인과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지표상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구의 증감과 가족구성의 변화, 평균수명의 변화, 생산활동 인구의 증감, 직장과 가정의 이동패턴 등이다. 특징적인 변화는 최근 10년간 ‘노인인구 > 세대수 > 인구증가율’ 순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의 증가는 생산활동 인구의 고령화로 이어지며 자동차 등록대수, 운전면허 소지자의 증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수요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고령화, 1인 가족화 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대수,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늘고 있어 교통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이를 처리할 도로연장 증가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증가(1.7%)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도로용량

증가에 의한 교통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교통 여건은 계속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2015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23% 이상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운행하는 자동차의 실질증가율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운전면허 소지자도 전년 대비 2.5% 증가하여 교통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통 여건을 악화시키는 교통 유발요인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교통 정책과 첨단 교통기술 개발에 의한 효과로 교통시스템의 효율성, 안전성, 편의성은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으로 4621명을 기록하고 있고, 이를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로 환산하면 2.2명으로 OECD 평균 1.1명에 비해 2배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OECD 평균수준의 진입과 중·장기적으로는 OECD 최상위 그룹을 목표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 수립과 실천이 중요하다.

따라서 2017년에는 이러한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자율주행 및 C-ITS<sup>101)</sup> 기술 등 첨단교통기술의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비혼잡 교통신호제어기법 도입, 고속도로 운영관리 효율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연계 강화, 교통경찰 특채인력 활용, 고령자 및 중증환자 운전면허 관리, 도로교통법 현실화 등 정책과 기술의 상호의존성이 강화되고 선순환 구조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1)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차량과 차량, 차량과 교통시설, 차량과 사람이 실시간으로 교통상황 및 위험정보를 주고받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교통시스템이다.

## II. 교통사고의 진단과 전망

### 1. 2017년 전체 교통사고는 소폭 감소 예상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연평균 변화율은 0.82%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교통사고 발생 사망자와 부상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연평균 사망자는 3.09% 감소하였으며, 부상자는 0.29% 증가하였다.

〈표 3-4-2〉 전체 교통사고 현황

연 도	발 생 건 수			사 망 자 수			부 상 자 수		
	건 수	인구 10만 명	자동차 1만 대	사망자수	인구 10만 명	자동차 1만 대	부상자수	인구 10만 명	자동차 1만 대
2006	213,745	440	110	6,327	13.1	3.2	340,229	702	175
2007	211,662	437	106	6,166	12.7	3.1	335,906	693	168
2008	215,822	444	106	5,870	12.1	2.9	338,962	697	166
2009	231,990	476	111	5,838	12.0	2.8	361,875	742	174
2010	226,878	464	106	5,505	11.3	2.6	352,458	721	164
2011	221,711	453	120	5,229	10.7	2.8	341,391	697	185
2012	223,656	447	119	5,392	10.8	2.4	344,565	689	152
2013	215,354	428	93	5,092	10.1	2.2	328,711	654	142
2014	223,552	444	96	4,762	9.3	2.0	337,497	661	143
2015	232,035	455	111	4,621	9.0	2.2	350,400	687	167

출처 : 1) 경찰청(2016)  
2) 통계청, e-나라지표

2016년도 9월말 기준 경찰통계(잠정)에 의하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6만 2915건으로 2015년보다 4.2% 감소하였다. 사망자도 3007명으로 9.9% 감소하였으며, 부상자 역시 24만 3346명으로 5.4% 감소하였다.

〈표 3-4-3〉 전년대비 전체 교통사고 현황

연 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5. 9	169,988	3,339	257,254
2016. 9	162,915	3,007	243,346
전년대비(%)	-4.2%	-9.9%	-5.4%

출처 : 경찰청(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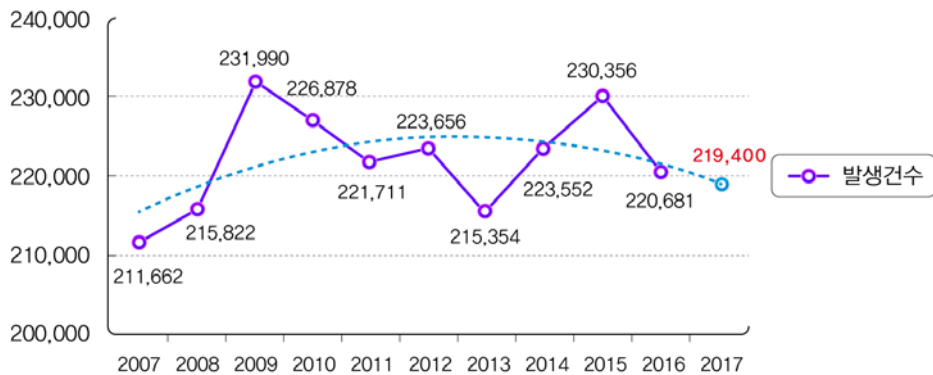
2015년과 2016년 9월말까지의 통계를 이용해 연말 통계를 예상하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2만 600건, 사망자 4100명, 부상자 32만 6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3-4-4〉 2016년 전체 교통사고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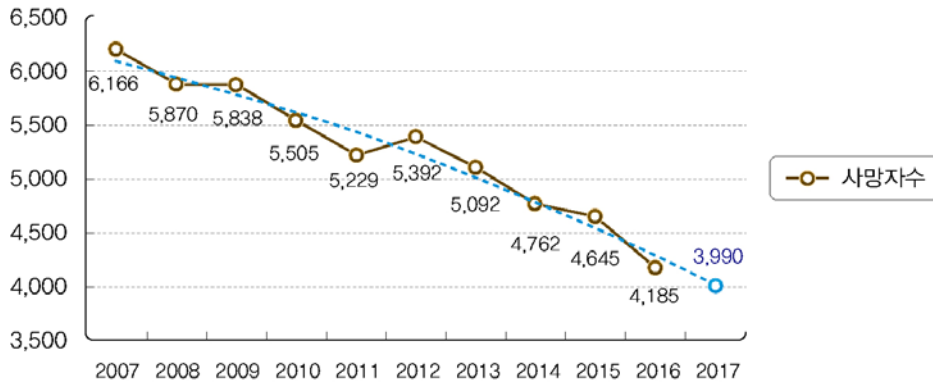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건수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부상자수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2016 (추정)	220,681	433	105	4,185	8.0	2.0	326,134	639	155

2017년도 전체 교통사고 발생을 전망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의 교통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트렌드 분석 및 시계열 분석을 통해 예측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및 부상자 수를 예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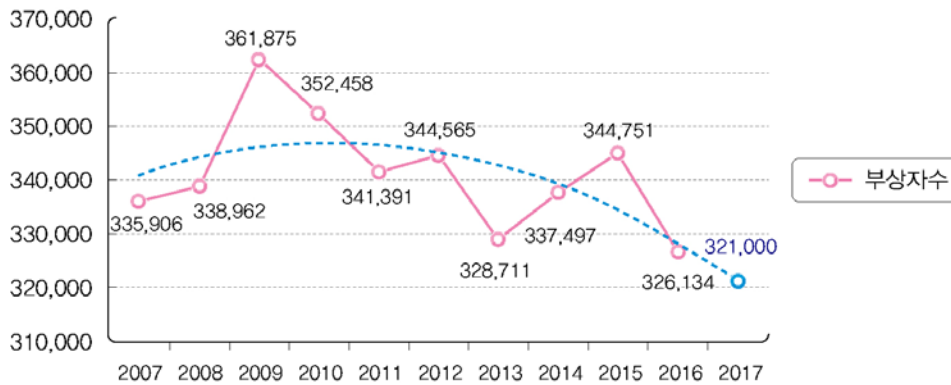
[그림 3-4-2] 2017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예측결과



[그림 3-4-3] 2017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예측결과



[그림 3-4-4] 2017년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 수 예측결과



<표 3-4-5> 2017년 전체 교통사고 예측 결과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건수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부상자수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2017 (예측)	219,400	430	105	3,990	8.0	1.9	321,000	629	153

예측 결과를 분석해 보면 2017년도 교통사고는 전체적으로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모두 감소하는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6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약 22만 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역시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 더불어 2017년에는 4000명 선이 붕괴되어 3990명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부상자 수 역시 32만 명 선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유의미한 감소세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 건수는 연평균 0.30% 감소하여 전체 교통사고가 0.82% 증가한데 비해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음주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행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데이터라고 분석된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음주운전 사고 점유율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2년을 기점으로 전체 교통사고 점유율 약 12% 선을 정점으로 전환되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만 439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0.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아직도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대비 41% 감소하여 괄목할 만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율이 아직도 12.6%나 차지하고 있고, 다른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30% 이상 높아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신규 단속방법 개발과 엄격한 처벌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동일 기간 동안 부상자 수 역시 전년대비 22.7%로 매우 큰 감소폭을 보였다. 전체 부상자 수에서 차지하는 음주운전 부상자의 비율도 12.2%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3-4-6〉 음주운전 교통사고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건수	점유율(%)	명	점유율(%)	명	점유율(%)
2006	29,990	14.0	920	14.5	54,255	15.9
2007	28,416	13.4	991	16.1	51,370	15.3
2008	26,873	12.5	969	16.5	48,497	14.3
2009	28,207	12.2	898	15.4	50,797	14.0
2010	28,641	12.6	781	14.2	51,364	14.6
2011	28,461	12.8	733	14.0	51,135	15.0
2012	29,093	13.0	815	15.1	52,345	15.2
2013	26,589	12.3	727	14.3	47,711	14.5
2014	24,043	10.7	592	12.4	42,772	12.6
2015	24,399	10.5	583	12.6	42,880	12.2

출처 : 경찰청(2016), 본 통계는 잠정통계로써 경찰청의 확정통계 발표 시 변경될 수 있음

2016년 9월 기준으로 경찰청이 잠정 집계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가 각각 21.8%, 41.0%, 22.7%의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3-4-7〉 전년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5. 9	18,018	458	31,694
2016. 9	14,092	270	24,491
전년대비(%)	-21.8%	-41.0%	-22.7%

출처 : 경찰청(2016), 본 통계는 잠정통계로써 경찰청의 확정통계 발표 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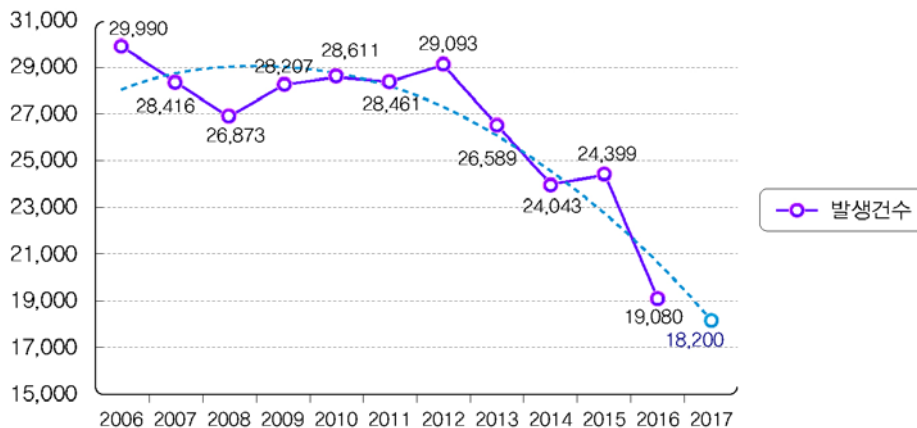
2015년과 2016년 9월 말까지의 통계를 이용해 연말 통계를 예상하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만 80건, 사망자 481명, 부상자 4만 463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3-4-8〉 2016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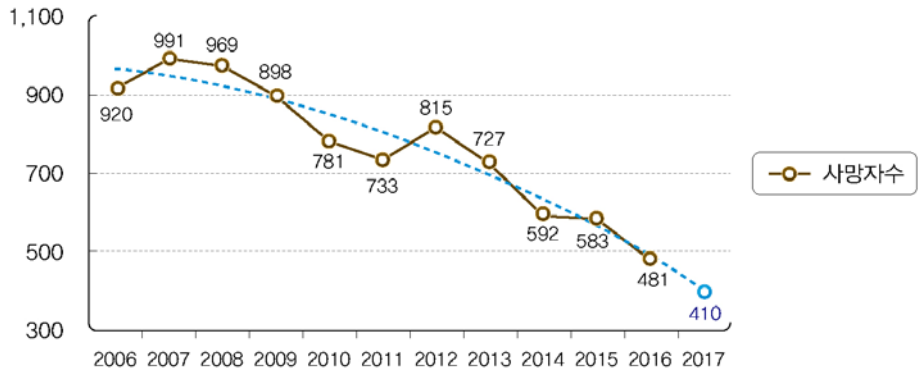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건수	점유율(%)	명	점유율(%)	명	점유율(%)
2016 (추정)	19,080	10.5	481	12.6	40,463	12.2

2017년도에 발생할 음주교통사고를 전망하기 위해, 과거의 사고데이터 트렌드와 시계열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음주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및 부상자 수를 예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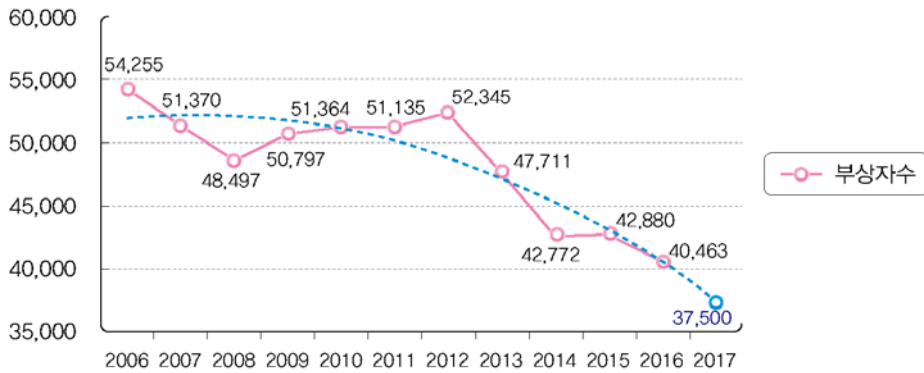
[그림 3-4-5] 2017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예측 결과



[그림 3-4-6] 2017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예측 결과



[그림 3-4-7] 2017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 수 예측 결과



<표 3-4-9> 2017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측 결과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건수	점유율(%)	명	점유율(%)	명	점유율(%)
2017 (예측)	18,200	9.5	410	10.4	37,500	11.3

예측 결과를 분석해 보면 2017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체적으로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모두 급격히 감소하는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6년에 비해 매우 감소한 약 1만 8000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더욱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7년에는 410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부상자 수 역시 감소하여 3만 7500명 선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그동안 교통안전 기술개발, 교통경찰의 단속활동 및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 근절 홍보 등 경찰의 노력과 국민인식 변화로 인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음주문화가 점차 저알콜 주류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교통안전 의식과 결합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음주교통사고의 폐해는 앞으로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증가 요인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인구 구조변화, 고령화 등의 사회적 영향요인으로 여성 및 고령 운전자의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며 특히 전체 음주운전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고령층 교통사고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

65세 이상 고령층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던 점유율은 2006년 27.4%에서 2015년에는 39.1%로 약 11.7%p 상승하였다(경찰통계 기준). 2015년 말 기준으로 경찰청 집계 결과 발생 건수 3만 6053건, 사망자 1814명으로 전년의 같은 시기와 비교해 보면 발생은 8% 증가, 사망자 수는 정체 현상을 보였다. 고령층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5%에 불과하지만, 사망자는 4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고령자 교통사고는 일반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2.6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OECD국가 중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3-4-10〉 고령층 교통사고 현황(경찰 기준)

(단위 : 명, %)

연 도	65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					
	발생건수	점유율 (%)	사망자수	점유율 (%)	부상자수	점유율 (%)
2006	19,557	9.1	1,731	27.4	20,218	5.9
2007	21,134	10.0	1,786	29.0	22,013	6.6
2008	23,012	10.7	1,735	29.6	24,168	7.1
2009	25,983	11.2	1,826	31.3	27,409	7.6
2010	25,810	11.4	1,752	31.8	27,394	7.8
2011	26,483	12.0	1,724	33.0	27,999	8.2
2012	28,185	12.6	1,864	34.6	29,699	8.6
2013	30,283	14.0	1,833	35.9	32,178	9.8
2014	33,170	14.8	1,815	37.8	35,352	10.5
2015	36,053	15.7	1,814	39.1	38,582	11.2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자료(2015년 통계), (2016. 1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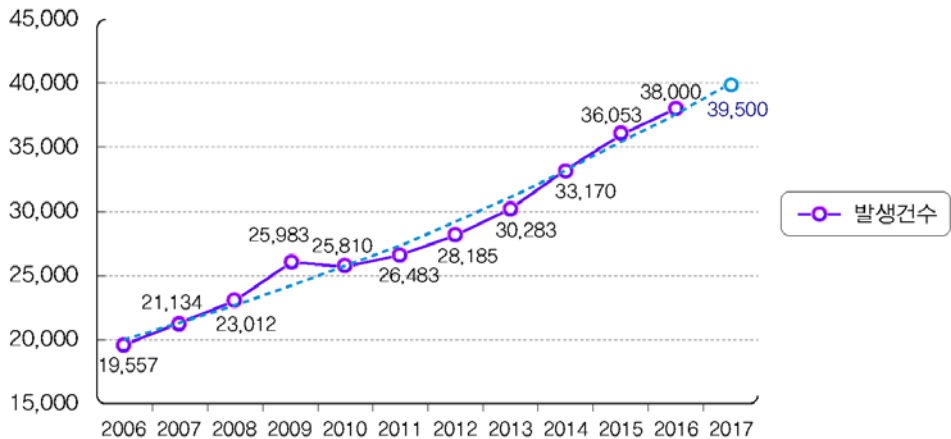
2015년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Time Series)과 데이터 트렌드 분석으로 2016년과 2017년을 예측해 볼 때, 2017년에는 발생 건수 3만 9500건, 사망자 수 1825명, 부상자 수 4만 4000명 선으로 예측되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는 급격한 증가세가 예측되며, 사망자 수는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미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3-4-11〉 2017년 고령층 교통사고 예측 결과

연도	65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					
	발생건수	점유율 (%)	사망자수	점유율 (%)	부상자수	점유율 (%)
2016 (예측)	38,000	17.2	1,820	43.5	41,000	12.6
2017 (예측)	39,500	18.0	1,825	45.7	44,000	13.7

고령층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약 2만 건이었던 교통사고는 2012년 3만 건을 돌파하여 6년 만에 50%나 증가하였다. 2015년에는 3만 6000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84%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세는 2017년에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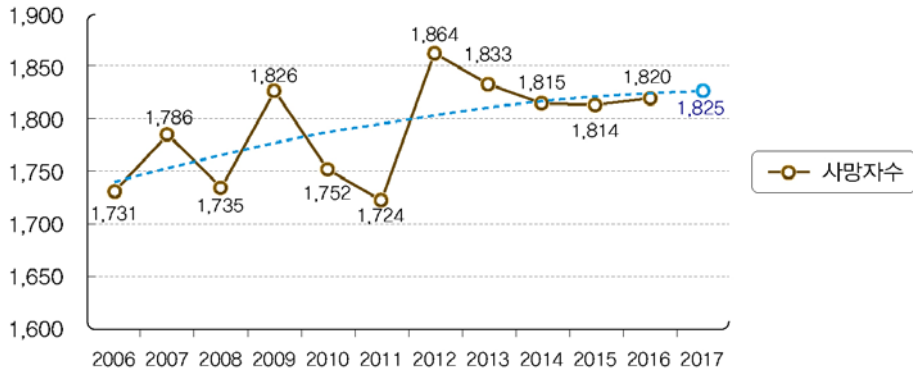
〔그림 3-4-8〕 2017년 고령층 교통사고 발생 건수 예측 결과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고령층 사망자 수는 2006년에서 2012년까지 6년간 주기적 변동 속에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가, 2013년부터는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고령층 사망자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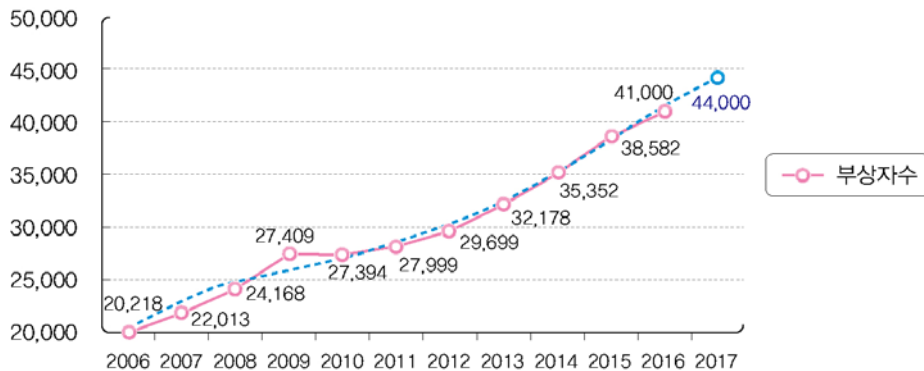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고령층의 교통사고 발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고령화 속도와도 관련성이 깊으며 2017년에도 고령층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미미한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4-9] 2017년 고령층 교통사고 사망자 수 예측 결과



그리고 고령층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발생 건수의 증가에 따라 2017년에도 급격한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4-10] 2017년 고령층 교통사고 부상자 수 예측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고령층<sup>102)</sup>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교통사고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sup>103)</sup>

102)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고령층은 청·장년층에 비해 시각 및 청각능력의 저하, 판단능력과 반사동작 저하 등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하므로, 고령층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교통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층 교통사고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는 고령층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행태분석을 통한 교차로와 횡단보도의 설계 및 시설보완과 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 고령층의 이동이 빈번한 곳의 교통운영방법 및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 및 보행자에 특화된 정책시행, 교통안전, 교통운영, 정보제공, 운전면허 관리체계 등 경찰의 교통 활동에서 고령층에 대한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이에 적합한 제도 정비와 신기술 개발의 필요성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103)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 제5절 사회안정 분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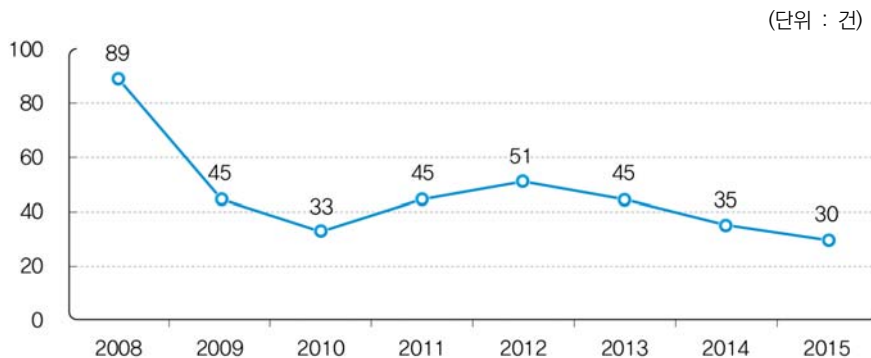
I. 집회시위 전망 .....	156
II. 테러 위협 전망 .....	159

## I. 집회시위 전망

## 1.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 전망

불법 폭력집회 시위 건수는 2008년 ‘美 쇠퇴기 수입반대’ 집회 당시 89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최근 7년간은 30여건에서 50여건 사이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불법 폭력집회 건수가 감소하는 등 평화집회,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해가는 단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3-5-1] 불법 폭력집회 시위 발생건수



출처 : 경찰청(2016)

특히 2016년 9월 기준 불법 폭력집회 발생건수는 14건으로 전년 동기(17건)대비 약 18% 감소하였다. 최근의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고려할 때, 2016년 전체 건수도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집회 참가자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평화적인 집회를 통해 그들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경찰 또한 과거와는 달리 강경한 집회시위 관리 방침에서 벗어난 것도 집회 참가자와의 갈등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과 집회 참가자가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성숙한 집회 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적·준법 집회시위 문화는 2017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일부 폭력집회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나 감소 전망

불법 폭력집회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폭력집회라고 분류할 수 있는 화염병 시위, 투석, 쇠파이프·각목 등을 이용한 시위건수는 소수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화염병 시위의 경우 지난 6년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통계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어 보인다. 또한 2016년 9월 기준으로 쇠파이프·각목을 이용한 집회시위 역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일부 집회는 여전히 폭력양상을 보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1〉 불법 폭력시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화염병 시 위	투 석	쇠파이프 각 목	도 로 철로점거	시 설 기습시위	기타
2011	45	-	1	2	30	12	-
2012	51	-	-	1	19	31	-
2013	45	-	1	-	21	23	-
2014	35	-	-	1	14	20	-
2015	30	-	4	6	12	8	-
2015. 1~9	17	-	1	3	9	4	-
2016. 1~9	14	-	-	-	10	4	-
전년대비	-17.6%	-	-100%	-100%	11%	-	-

출처 : 경찰청(2016)

이러한 추세는 경찰 부상자 발생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집회가 줄어들고 경찰 부상자 수가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상호 신뢰 하에 각각 평화적인 집회시위, 유연한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7년에도 폭력집회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5-2〉 경찰부상자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경찰관			전의경		
	계	중상	경상	계	중상	경상	계	중상	경상
2011	179	-	179	80	-	80	99	-	99
2012	57	-	57	47	-	47	10	-	10
2013	92	4	88	55	4	51	37	-	37
2014	78	1	77	35	1	34	43	-	43
2015	302	10	292	129	7	122	173	3	170
2015. 1~9	189	8	181	64	6	58	125	2	123
2016. 1~9	38	3	35	27	1	26	11	2	9
전년대비	-79.9%	-	-	-57.8%	-	-	-91.2%	-	-

출처 : 경찰청(2016)

### 3. 집시법 적용 관련 기본권 보장 요구 예상

헌법상으로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다. 국민은 집회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대표자를 의회에 보내지 못한 소수자들에게는 집회가 자신들의 의사를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즉 헌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차지하는 집회의 중요성을 고려,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집시법에 의거하여 금지통고, 제한통고, 해산, 채증 등을 할 때에 헌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적용을 하여야 한다.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16년 한 해 국민들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집시법 적용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요청을 하였다. 그 예로 경찰의 금지통고 조치에 대해 집회 주최자들이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집회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 혹은 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집회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원은 경찰에게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한 해에도 집회 소음제한, 차벽설치, 살수차 투입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집회 참가자의 법적대응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찰은 집회관리를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 II. 테러 위협 전망

### 1. 국내 테러 정세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발생한 국내 테러는 주로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북한의 테러가 주요 원인이었고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되었다. 이에 비해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개인 혹은 집단의 불만에 의한 테러 유사 사건, 북한이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2015년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테러와 유사한 사건은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혼합되어 발생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테러리즘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혼합된 복합적 신종 테러리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양성이 논의된 배경은 국제화로 인해 전 세계 지역과 서로간의 긴밀한 상호의존성이 증가되면서부터이다. 상호의존성의 증대는 긍정적인 요인도 발생하지만 다양한 계층의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분열, 문화적 갈등 등 부정적인 요인도 동시에 발생시키게 된다. 그 결과 국내의 사회 분위기는 사회에 대한 불만,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차별,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배제 등 테러 발생 가능성의 요인들이 증가되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네트워크의 발달은 국내·외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성을 촉발시키는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표 3-5-3〉 국내 테러 유사 사건(2000년 이후)

구분	내용
대구 지하철 참사(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 3월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방화로 일어난 화재사건</li> <li>• 이 사건으로 192명이 사망하고, 21명 실종, 151명 부상</li> </ul>
송레문 방화사건(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2월 서울의 송레문이 방화로 인해 소실된 사건</li> </ul>
농협전산망 디도스(DDos)공격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11월 농협 전산망에 있는 대규모 자료가 손상되어 일부 서비스 이용이 마비되는 사건</li> <li>• 이 사건의 주범을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함</li> </ul>
방송사·금융기관 전산망 마비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3월 국내 언론·금융 6개사에 악성코드의 공격으로 업무시스템이 마비되는 디도스(DDos) 공격이 발생</li> </ul>
신은미 북콘서트 테러사건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12월 재미교포 신은미가 주최한 북콘서트장에서 고등학생이 고체 연료를 이용한 사제폭탄을 투척하여 3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li> </ul>
한국 청소년의 ISIL 가입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1월 터키 여행을 하던 한국인 청소년 1명이 터키와 시리아 접경 지역을 벗어나 자발적으로 ISIL에 가입한 사건</li> </ul>
리퍼트(Mark Lippert) 미국대사 습격사건(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3월 주한 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찬행사에서 「우리마당통일문화연구소」 김○○에게 피습당하여 부상을 입은 사건</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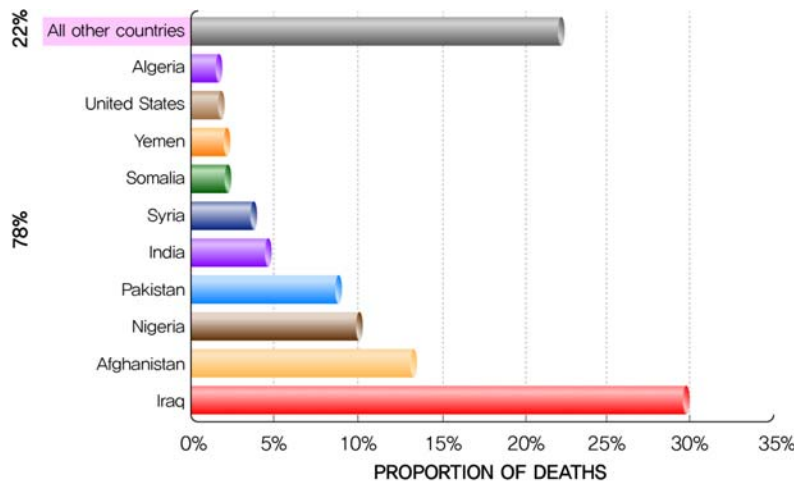
## 2. 국제 테러 정세

2015년 파리 테러 이후, 2016년에도 벨기에 브뤼셀, 독일 뮌헨·베를린, 터키 이스탄불, 프랑스 니스 등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였다. 브뤼셀 테러 이후 EU 28개 회원국 정상과 EU 기구 수장들은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테러는 개방된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유엔은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도 테러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시하는 한편 테러에 단호하게 맞설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경제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에서 작성한 보고서 『GLOBAL TERRORISM INDEX 2016』에는 2000년부터 2015년 사이의 국제테러의 동향이 분석되어 있다.<sup>104)</sup>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를 테러활동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는 테러로 인한 민간인의 사망자 수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사망한 민간인의 수는 약 2000여 명이고, 2015년도에 1만 2500여 명으로, 지난 16년간 550%나 증가하였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0년 이후 16년 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그리고 파키스탄 등 4개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은 전 세계 테러사건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6년 동안 이라크에서 테러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은 전 세계의 30%이고, 그 중 절반이 2012~2015년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그림 3-5-2] 테러에 의한 사망자 비율(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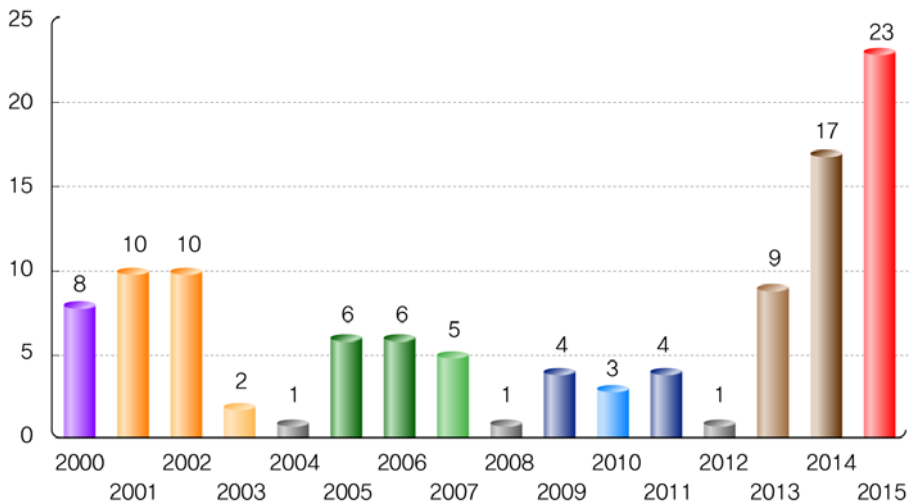


출처 : START GTD, IEP calculations; GLOBAL TERRORISM INDEX 2016, 2016. 36쪽 재인용.

104)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Global Terrorism Index 2016, 2016. 35-47쪽.

아래의 [그림 3-5-3]을 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공격 수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근거로는 테러를 경험한 국가가 극적으로 증가하였고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한 것을 들 수 있다. 2015년 OECD 국가 중에서 테러 경험 국가는 23개국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은 2015년에 테러리즘에 의해 사망한 사람의 절반이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림 3-5-3] 테러가 발생한 국가(2000~2015)



출처 : START GTD, IEP calculations; GLOBAL TERRORISM INDEX 2016, 2016. 38쪽 재수정.

2015년 이후 OECD 국가들은 통일된 테러리스트 유형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몇 가지 유형의 테러리스트를 분류하고 있다. 특히 OECD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러리스트 유형은 ‘외로운 악당(Lone Actor)’<sup>105)</sup>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로운 악당’은 테러 단체의 지원 없이 홀로 테러 활동을 행하는 개인을 의미한다.<sup>106)</sup>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최근 “각국이 ISIL 등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의 테러 방지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유럽 각지에 산재한 이른바 ‘외로운 악당을 비롯한 극우 세력의 테러도 치명적이다”라고 다국적 보고서를 인용 보도하였다.<sup>107)</sup>

105) lone actor는 lone wolf의 또 다른 용어로, 주로 미국의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lone wolf와 lone actor의 차이에 대하여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106) ‘외로운 악당’은 1980년대 러시아의 무정부주의자를 시작으로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실천하기 위해 존재해 왔다. ‘외로운 악당’의 특징은 성별, 교육, 사회적 고립 등 일반적인 특징은 없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단순히 가해자일 뿐이다. 단지 현재 연구에서 이들은 테러단체조직에서 조직원들의 평균 나이보다 높고, 교육 수준에서 편차가 크며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가 일반인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7) “The Sydney siege fits the new, confusing global norm: the ‘lone actor’ attack”, the guardian, 2014. 12.

‘외로운 악당’의 테러 공격이 위협한 이유는 일반적인 테러리스트의 전략 외에도 다른 사람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감염효과(contagion effect)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외로운 악당’은 1969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테러 사건에서 언급되어 왔다. 그리고 2014년 이후, ‘외로운 악당’은 ISIL의 요청에 의해 개인이 독립적으로 테러 사건을 발생시켰다는 보고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OECD는 2015년에 ‘외로운 악당’에 의한 테러 공격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체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영국의 3개 연구기관과 네덜란드 라이덴대 전문가들은 2014년 12월까지 최근 15년간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슬람 지하디스트들보다 오히려 자생적인 극우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훨씬 더 잔혹하고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sup>108)</sup>

### 3. 국내 테러 가능성과 테러 위협 지속

경제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가 2014년 발표한 세계 테러리즘 지수(Global Terrorism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테러 위험(risk)지수는 일본(121위)보다 낮은 124위로 뉴질랜드, 핀란드, 폴란드 등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인식되었지만 국내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복합적 형태의 신종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1) 정치와 사회에 불만을 가진 개인 테러 유사 사건 증가

2016년 10월에 발생한 오패산 터널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테러는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보통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사제 총기와 같은 위험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개인이 사회나 어떤 조직에 대한 불만을 살상무기를 통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잠재될 수 있는 두려움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

2016년은 국내 정치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었다. 이처럼 복잡해진 정치 이해관계에서 상호협력하지 못하고 각자 자신들의 의견만 주장한다면 이에 반감을 가지고

17(<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4/dec/17/the-sydney-siege-fits-the-new-confusing-global-norm-the-lone-actor-attack>) (2016. 12. 1 검색)

108) 국정원, [http://www.nis.go.kr/AF/1\\_6\\_2\\_4/view.doseq=4634](http://www.nis.go.kr/AF/1_6_2_4/view.doseq=4634) (2016. 12. 1 검색)

행하는 백색·적색 테러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점차 사회가 개인화되고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테러의 발생 원인도 다양해지고 있다.

2017년에는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이 개인에 의한 테러 유사 사건은 점차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여성혐오와 무동기 범죄와 같은 테러 가능성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사회에서 소외된 개인들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나 증오 표출 등의 이유로 표현적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국제 테러 단체와 연계된 테러 가능성 높아져

최근 수년간 국내 체류외국인 중 수 명이 ISIL에 가담하였고 테러 단체 지지 외국인 50여명이 국내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ISIL이 전 세계 추종자들에게 국내 주한미군 시설 두 곳과 우리 국민 한 명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하는 등 우리나라에서의 테러위협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ISIL 추종세력 확산, ISIL과 알 카에다 간 경쟁 격화, 무슬림과 비(非)무슬림간 대립 조짐 등으로 테러 정세가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ISIL은 본거지에서 미국 등 서방국의 공습과 러시아·시리아·이라크 정부군과의 무장대결을 지속하는 한편, FTF(Foreign Terrorist Fighters : 외국인 테러전투원)와 위장난민을 활용한 직접 침투와 온라인 선전전을 통한 간접 테러 선동으로 반(反)서방 보복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주도의 대(對)ISIL전(戰)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ISIL이 ‘십자군 동맹국’, ‘악마의 연합군’ 등으로 지칭하며 테러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들 나라의 잠재적 테러 위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SIL과 알 카에다의 테러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이들의 활동 반경이 중동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이 이미 자생테러범의 공격을 경험한 바 있어, 2017년에는 수백 명의 귀환 FTF가 존재하는 동남아 지역은 물론 동북아 지역도 ISIL의 테러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동남아 출신 FTF 잠입 가능성이 대두되고 사회적 차별에 불만을 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과격사상에 동조하여 ISIL추종 및 모방테러를 자행할 위험성도 점증하고 있다. 또한 내국인 중에서도 SNS를 통해 ISIL을 찬양한 인물이 10여 명에 달하고 있어, 사회 부적응자·청소년 등이 호기심에 이끌려 돌발행위를 자행할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

### 3) 북한의 사이버테러 증가 예상

북한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일주일 뒤 청와대와 외교부·통일부를 사칭해 ‘북핵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수신자가 이에 대한 회신을 보내면 악성코드가 담긴 이메일을 다시 보내는 이른바 ‘투트랙 스피어피싱’ 방식을 썼다. 공격자는 2015년 6월부터 약 7개월 간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해 18개 이메일 계정으로 759명에게 악성메일을 보냈다. 직업이 확인된 악성메일 수신자는 460명이며, 이중 북한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87%(404명)에 달했다.<sup>109)</sup>

2016년 3월 북한은 군 장성 등 우리 정부 주요 인사 50여명의 스마트폰에 악성링크가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스마트폰의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를 가로챘다.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스미싱 수법에 20% 가까이 감염됐다. 해킹 당한 정부 인사들은 주로 외교안보 라인이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확인하여 후속도발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2016년 5월에는 국내 방위산업체와 무기 중개상들을 대상으로 방위사업청을 사칭한 악성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

2016년 6월 북한으로 추정되는 공격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사이버테러 수준의 공격을 장기간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이뤄진 지난 1월 이후 지능형지속위협(Advanced Persistent Threat) 수준의 대기업 대상 사이버공격, 청와대 등 국가기관과 방송사 등을 사칭한 악성 메일 무더기 발송, 금융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금융보안 프로그램 코드서명 탈취와 해당 업체 전산망 해킹 등 그 수법과 대상이 다양하다.<sup>110)</sup>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북한이 국내 다수의 대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용 PC관리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해 두 그룹사 전산망을 해킹, 전산망 통제권과 문서를 탈취한 후 전산망 마비 공격 등을 준비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간 동안 북한이 제작한 33종의 악성코드를 확보해 분석하고, 16대의 공격서버를 확인했다. 피해 그룹사의 문서를 탈취한 후 삭제한 흔적을 발견해 유출된 문서 4만 2608개를 복원했다. 유출된 문서는

109) “북한의 사이버테러 진화, 가족으로 위장공격”, 중앙일보, 2016. 10. 7(<http://news.joins.com/article/20691224>, 2016. 12. 1 검색)

110) “2년간 대기업 대상 지속공격 수행...속속 드러나는 ‘사이버테러’ 정황”, BYLINE NETWORK, 2016. 6. 13 (<http://byline.network/2016/06/1-197/>, 2016. 12. 1 검색)

방위산업 관련 정보 등 4만 187건, 통신 설비 등 관련 자료 2421건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평양 류경동 소재 IP에서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용 파일 탈취 등의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 IP는 지난 2013년 ‘3.20 방송·금융 전산망 사이버테러’ 때 사용했던 공격 IP와 동일하다.<sup>111)</sup>

[그림 3-5-4] 북한의 사이버테러 단계별 절차



출처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2016)

북한은 핵실험과 함께 끊임없이 사이버도발을 감행해 왔다. 대외적으로 대북 제재가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사이버작전은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견잡을 수 없이 변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속도에 휘둘러 통제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주요 기반시설에 사이버공격을 가해 물리적 피해를 입히거나 사회혼란을 야기하면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를 염두에 두고 기술적·심리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사이버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sup>112)</sup> 2017년에도 북한은 사이버테러와 같은 사이버 상의 공격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이다.

111) BYLINE NETWORK, 앞의 신문, 2016. 6. 13

112) 중앙일보, 앞의 신문, 2016. 10. 7





## 제6절 안보 · 외사 분야 전망

I. 북한의 대남전략 전망 .....	168
II.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활동 전망 .....	192
III. 탈북민 관련 전망 .....	201
IV. 외사 분야 전망 .....	220

## I. 북한의 대남전략 전망

## 1. 대남전략 기초불변: 전(全) 한반도의 사회주의화

모든 국가는 사회를 통제하는 독자적인 법·규범 체제를 갖고 있다. 북한은 자유민주체제의 법·규범과 달리 ‘수령의 교시’ → ‘유일영도(유일사상) 10대 원칙’ → ‘당규약’ → ‘헌법’ → ‘법률’ 등의 순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있다. 북한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여 당 규약의 하위 규범임을 적시하고 있다.

〈표 3-6-1〉 북한 신구헌법 비교

구분	구헌법(2012. 4. 13)	신헌법(2016. 6. 29)	비고
서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영원한 주석,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 문구 삭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다.	김정일 이상화 수준을 김일성과 동일하게 통일
6장 2절	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 국무위원회 위원장
	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6장 3절	106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다.	최고국방지도기관 ➔ 최고정책지도기관

2016년 6월 개정헌법에서 김정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헌법 제100조)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헌법 제102조)인 국무위원장에 추대됨에 따라 국무위원회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는데 집중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헌법 103조에 따라 △국가 전반사업 지도 △국무위원회 사업 직접 지도 △국가의 중요간부 임명 또는 해임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 비준 또는 폐기 △특사권 행사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 선포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갖는 것으로 규정했다. 특히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는 권한이 추가됐다. 이 밖에도 이전 헌법에서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규정됐던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그 표현이 수정됐다.

한편, 당규약 제5조 3항에서는 “당원은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지도체계에 어긋날 때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 유일영도 10대 원칙에 구속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일영도체계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sup>113)</sup> 아울러 “김일성 동지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여, 수령의 교시가 그 어떤 법·규범보다 상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6-2〉 유일영도 10대 원칙

	유일사상 10대 원칙(1974)	유일영도 10대 원칙(2013)	비고
서문	김일성이 筆을 세우고 이끌어 일당백의 무력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에 의하여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군사	핵무력 명시
1조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一色)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김정일주의화 추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고…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공산주의 표현 삭제
3조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	김정일, 당(김정은 지칭) 추가
4조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사상조류	부르주아 사상, 사대주의 사상 등 온갖 반당적 사상조류	경계대상에 부르주아 사상 추가
6조	개별적 간부들에 대해 환상을 가지거나 아부아첨하며 우상화하는 현상에 철저히 반대	개별적 간부들에 대한 환상, 아부아첨, 우상화를 배격하며 개별적 간부의 직권에 놀려 맹종맹동하거나 비원칙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특정 간부에 대한 맹목적 추종 금지 추가
8조	김일성의 정치적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	당과 수령의 신임과 배려에 정치적 자각과 사업실적으로 보답하는 …	간부의 책무로 사업실적 추가
10조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	우리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백두혈통 추가

113) 1974년 4월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최고 통치규범 역할을 했던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제정 39년 만인 2013년 6월에 개정했다. 명칭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바꾸고, 내용도 서문 및 10조 65개 항에서 서문 및 10조 60개 항으로 축소·통합했다. 서문에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군사력과 특정한 자립경제를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령의 교시는 여러 언술 속에 산재되어 표명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당규약에 집약되어 있다. 따라서 당 우위 국가인 북한의 국가전략의 기본 방향은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출발한다. 노동당 규약은 1948년 8월 28일 최초로 채택되었고,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수정·보완 되었다.

북한정권 창립 이전에 개최된 제1~2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당규약은 당의 이념을 명시하지 않은 채, 독립국가 건설과 인민대중의 정치·경제·문화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제3차 당대회에서는 당규약 제1조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당 활동의 최고지침으로 규정했다. 또한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의 과업완수를 당면 목표로, 최종 목표는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내세웠다.

제4차 당대회에서는 당규약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고, 1970년 제5차 당대회를 통해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추가했다. 김정일이 공식 등극한 제6차 당대회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하는 대신 주체사상만을 당의 유일 지도이념으로 규정했다.

〈표 3-6-3〉 북한 노동당 규약 주요 내용 변화

당 최고지도기관 회의	당 지도이념	최종 목표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 (1946. 8. 28)	-	독립국가 건설
북조선노동당 2차 대회 (1948. 3. 27)	-	독립국가 건설
조선노동당 3차 대회 (1956. 4. 23)	마르크스 - 레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
조선노동당 4차 대회 (1961. 9. 11)	마르크스 - 레닌주의 항일무장투쟁 전통	공산주의 사회건설
조선노동당 5차 대회 (1970. 11. 2)	마르크스 - 레닌주의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회건설
조선노동당 6차 대회 (1980. 10. 10)	김일성 주체사상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공산주의 사회건설
조선노동당 7차 대회 (2016. 5. 6)	김일성 주체사상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여 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

2016년 5월,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는 당의 목표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여 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을 제시했다. 또한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조선노동당은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역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했다.

결국 당규약에 따른 북한의 대남 국가전략 목표는 ‘무력해방노선’(1950년대 초반) →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혁명 노선’(1950년대 중반)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노선’(1970년대 이후) 등으로 변화 해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대남전략은 1970년 11월 제5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다만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인민’이란 단어가 빠지고 제1단계 당면목표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고, 2단계 최종목표로 남북합작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2. 대남전략 방향: 선행후경(先核後經)에 기초한 대남압박과 평화공세 추진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김정은이 12월 30일에 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어 군권을 장악했다.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마침내 2016년 5월, 36년 만에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식승계 절차를 마무리 하는 동시에 앞으로 자신이 이끌어 갈 북한의 미래방향을 대내·외에 공식 천명했다.<sup>1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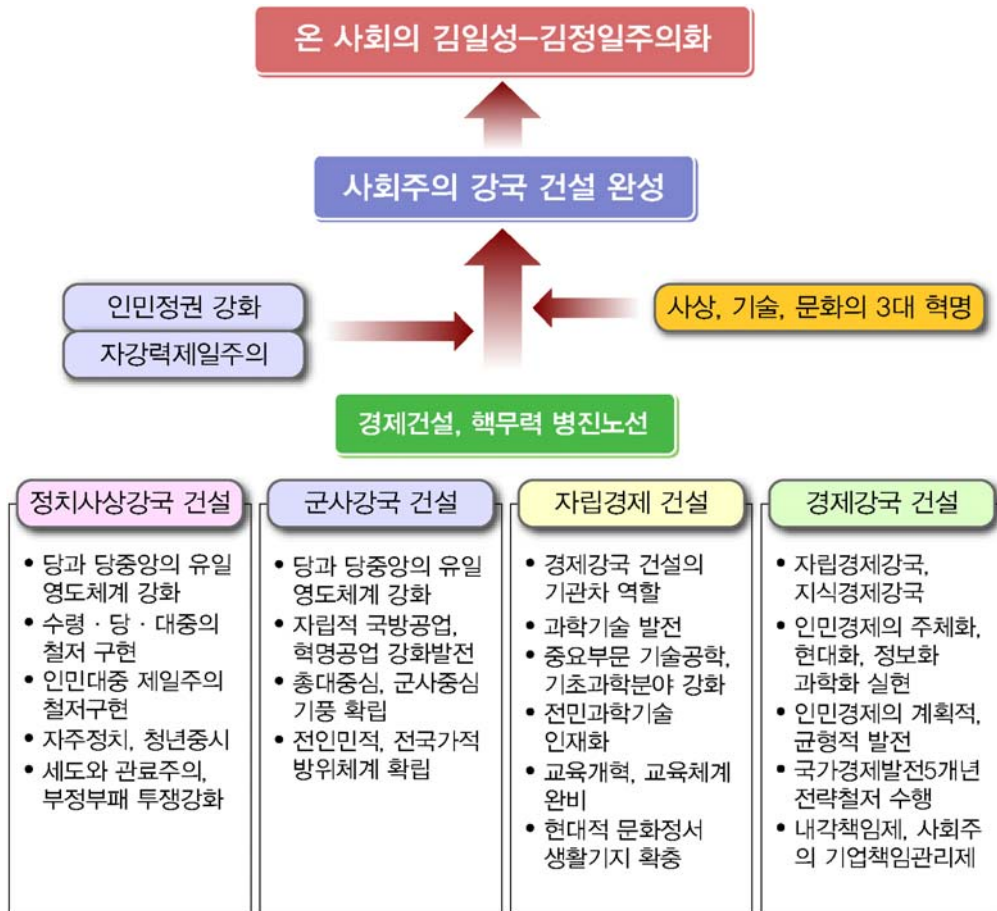
김정은은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제7차 당 대회에서 ‘휘황한 설계도’가 제시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70일·200일 전투’라는 주민 노력 동원 외 그 어떠한 희망적인 국가비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지도이념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화’, 국가전략으로서 2핵·경제 병진노선<sup>115)</sup>이 재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가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선행후경

114)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정국 위원의 30%가 교체되었고, 200명 내외의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중 약 55%가 교체됐다. 지도부 보다는 실무자급의 세대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115)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3기 제9차 전원회의(2016. 3. 30)를 통해 2016년 국가예산을 확정하였는데, 2015년 대비 공업부문은 4.8%, 농업 4.3%, 수산 6.9%, 기본건설 13.7%, 산림 7.5% 씩 늘렸고, 과학기

(先核後經)'이란 용어로 탈바꿈 되었을 뿐이다.

[그림 3-6-1] 제7차 당대회 국가목표



출처 : 제7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주요노선 요약

김정은 지시로 강행했던 3차 핵실험(2013년)과 4~5차 핵실험(2016년) 또한 후계 체제의 조기안착과 대외협상용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북한은 고립된 현 상황을 타개하고 유리한 지위에서 외교적 협상을 전개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 및 군사력 증강이라는 이른바 돌파전략(breakthrough strategy)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술 분야 5.2%, 교육 8.1%, 보건 3.8%, 체육 4.1%, 문화 7.4%를 각각 증액하였다. 국가예산 중에서 국방비중은 15.8%를 차지하나, 실제로는 숨겨진 국방비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 올해 국가예산지출 5.6% 증액…국방비 15.8% 차지”, 연합뉴스, 2016. 3. 31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가 염원하는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핵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권력 교체 시 혹시 모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사회에 대한 억압과 회유정책을 동시에 실시했다. 대서면 조치, 시장 활동 허용, 평양에 문화 봉사시설 및 상업시설 확충 등은 회유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북한의 도발은 우리 정부의 정권출범 초기(1993년, 1998년, 2003년, 2008년)에 도발을 감행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예외 없이 박근혜 정부 출범 시에도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그동안 핵과 미사일실험에서 보듯 우리 정부의 대북유화정책 또는 강경정책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또는 내부적 일정에 따라 대남도발을 자행해 온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하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17년에도 북한은 핵실험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6-2] 북 핵실험과 한미 선거 시기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러한 도발을 전개하고 있는가? 그것은 가용한 국가적 수단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체제·정권유지 방법으로 공세적 위기관리 전술(offensive crisis management)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위기조성 전략은 약소국이 극단적 위기를 조성하여 강대국을 공갈·협박함으로써 양보와 타협을 얻어내는 전략에 기초한다.

북한은 이러한 자신들의 위기조성 전략에 대해 “남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고 자주적인 외교이며, 배짱과 담력으로 맞받아 나가는 강경한 외교”라고 천명하면서 그 간의 외교적 업적에 대해 ‘선군외교 전법’으로 명명했다.<sup>116)</sup> 결과적으로 북한은 이 협상카드를 잘 활용했다. 이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어 적어도 2000년대까지는 성공적으로 협상을 유도할 수 있었다.

2016년 제4차 핵실험 직후 북한은 미국과는 ‘양자대화’를, 남한과는 ‘대결’이라는 2중 전략을 취하였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의 기본원칙에 따라 先핵포기, 後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기존 노선을 고수했다.<sup>117)</sup> 이에 북한은 제5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미국 신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북미협상을 중단하는 관망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sup>118)</sup>

〈표 3-6-4〉 북한의 대외전략에 따른 협상 형태

구분	내 용		조 건
대결	직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력도발</li> <li>• 핵·미사일 실험</li> <li>• 군사적 위협, 협박</li> <li>• 각종 비방, 비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남전략의 주도권 확보</li> <li>• 출구전략(경색국면 탈피)</li> </ul>
	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러, 요인납치</li> <li>• 지하당 구축</li> <li>• 간첩 침투</li> <li>• 스파이 공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개선 차원</li> <li>• 내부단결 및 결속 차원</li> </ul>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공세, 대화, 접촉제의</li> <li>• 민·관 차원의 회담요청</li> <li>• 각종 교류협력 및 경협사업 제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사회의 비난 회피 차원</li> <li>• 대화 과정에서 경제적 보상 차원</li> <li>• 협상의 주도권 달성 차원</li> </ul>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결과 대화의 병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의 주도권 확보 차원</li> </ul>
관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결과 대화 거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숨고르기 차원</li> <li>• 다른 주요 정치일정 수행 차원</li> </ul>

그러나 2017년에 북한은 국제정세 및 동북아 정세변화를 감안하고, 한국의 국내정세에 유의하여 평화공세에 입각한 ‘대화’와 대남전략 주도권 확보차원에서 ‘대결’이라

116) “선군정치는 우리시대 반제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다.”, 노동신문, 2002. 4. 1  
 117) 북한과 미국은 2016년 공식-비공식 대화채널을 유지해 왔다. 미국은 비핵화를 전제로 ‘9·19성명’으로의 복귀를 요구했고,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2016년 7월 11일 북-미 뉴욕채널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은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핵동결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논란을 불러왔다.  
 118)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 “미국의 대조선 제재 압살 책동은 파산을 면할 수 없다”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미국의 새 행정부는 핵강국과 상대해야하며, 향후 더 큰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 2016. 11. 10

는 ‘병행’ 협상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는 핵과 미사일실험을 통해 ①핵능력을 현 수준에서 동결, ②핵기술과 물자의 비확산 선언, ③공개된 핵시설의 가동 중단, ④영변 핵시설에 대한 IAEA사찰 수용 등의 카드를 제시하는 공갈위협 외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한 점에서 북한정권의 생존전략은 ①비대칭 살상무기의 보유 → ②국제사회 인정 → ③체제생존 보장 → ④대규모 경제 지원 → ⑤국내 정치안정을 통한 강성국가 건설 등의 단계를 밟아 나가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가 북미협상이므로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적 울타리가 되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기를 희망할 것이다.

2017년 미국에서는 트럼프 공화당 신 행정부가 들어 설 예정이고, 한국에서는 대선 이 있는 해이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을 대상으로는 평화공세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측되며, 미국에게는 양자대화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안정화되고, 한반도 정책이 정초되는 7월 이전까지 미국은 북한의 각종 접촉이나 대화 제의를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 대선에 영향을 주고자 민간차원의 회담제의를 비롯한 적극적인 평화공세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 3. 2017년 이슈별 대남전략 전망

#### 1) 제6차 핵실험과 3월 미사일 발사 실험 예고

북한은 2016년 10월 이후 전개된 한국 내 불안한 정치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해 왔기 때문에 2017년 초반부터 적절한 시점을 골라 제6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한 권력 공백기를 그냥 보낼 북한이 아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 내 정치상황 변화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할 개연성이 크다.

2016년 1월 6일 조선중앙TV와 평양방송은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첫 수소탄 시험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강조하며, 자신들의 핵개발 이유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과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붕괴한 것은 미국과 서방압력에 굴복하여 핵개발을 포기한 결과”로 간주했다.<sup>119)</sup> 다시 말해 북한은 결코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

119) “정의의 수소탄은 우리의 긍지이다”, 조선중앙통신, 2016. 1. 8

에 선언한 것이다.<sup>120)</sup> 또한 제4차 핵실험을 통해 노동신문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조선의 지위는 단번에 바뀌었다”고 강조했다.<sup>121)</sup>

김정은은 군심을 다잡기 위해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인민군위원회의 연합·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인민군대는 오직 최고사령관이 가리키는 한 방향으로만 나가야 한다”고<sup>122)</sup> 주문했다. 나아가 “핵탄두를 임의의 순간에 쓸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sup>123)</sup> 강조했다. 미·중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핵실험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북한은 “체제안보를 보장해 준다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유화책을 보여주는 동시에 김정은은 “핵폭발 실험과 핵공격 능력 향상시험을 계속 추진할 것을 지시”하는 등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sup>124)</sup>

북한은 노동당 7차 당대회가 끝나고 정권수립 기념일(9. 9)에 맞춰 기습적으로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하고는 핵무장은 국가노선이며 정당한 자위조치라고 강변했다. 핵실험 하루 만에 총 60개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대북규탄 성명을 내고,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68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북한을 규탄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은 “북한은 10~20기의 우라늄, 플루토늄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2020년까지 최대 50기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sup>125)</sup>

2016년 북한은 핵실험 이외 미사일 도발도 수시로 감행해 왔다. 2015년 5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비롯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분류되는 사거리 1만 km이상의 KN-08을 실전배치를 위해 여러 차례의 발사실험을 해 왔다. 북한은 이미 유사시 전략 목적에 따라 전방과 중앙, 후방지역에 각각 스커드미사일 여단, 노동미사일 여단, 무수단미사일 여단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놓고 있다.<sup>126)</sup>

120) “구태의연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2016. 3. 22

121) “세계는 보게 될 것이다.”, 노동신문, 2016. 1. 19

122) “인민군, 오직 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조선중앙통신, 2016. 2. 4

123) “국제적인 핵주범 미국의 정체는 감출 수 없다”, 노동신문, 2016. 10. 5; 조선중앙통신, 2016. 3. 4

124)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보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16. 3. 11

125) “북, 2020년까지 핵무기 최대 50개 보유”, 연합뉴스, 2016. 6. 17

126) “북 이동식 ICBM ‘KN-08’ 배치하면 3개 미사일벨트 완성”, 연합뉴스, 2016. 2. 14

〈표 3-6-5〉 북한의 주요 도발 사례

일 시	사 례
2016. 1. 6	4차 핵실험(북 수소탄 실험 성공 발표)
2016. 3. 3	동해상으로 300mm 방사포 6발 발사
2016. 3. 10	동해상으로 스커드 계열 중거리 미사일 2발 발사
2016. 3. 18	동해상으로 노동계열 2발 발사
2016. 3. 21	동해상으로 300mm 방사포 5발 발사
2016. 3. 29	300mm 방사포 추정 발사체 1발 발사
2016. 4. 1	동해상으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1발 발사
2016. 4. 15	무수단 계열 미사일 1발 발사
2016. 4. 23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 시험 발사
2016. 4. 28	무수단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2016. 5. 31	무수단 계열 미사일 1발 발사
2016. 6. 22	무수단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2016. 7. 9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 시험발사
2016. 7. 19	동해상으로 노동 2발, 스커드 계열 1발 발사
2016. 8. 3	동해상으로 노동미사일 2발 발사
2016. 8. 24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 시험발사
2016. 9. 5	동해상으로 노동계열 추정 미사일 3발 발사
2016. 9. 9	5차 핵실험(북 핵탄두 표준화, 규격화)

북한은 공교롭게도 지난 3년 동안 매년 3월초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2014년 3월 3일에는 스커드-C형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2015년 3월 2일에는 스커드-C형 미사일 2발을, 그리고 2016년 3월 3일에는 300mm 방사포 6발을 동해상으로 각각 발사했다.<sup>127)</sup> 따라서 2017년 3월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2016년 3월 ICBM재진입체 추정 사진을 공개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했음을 대·내외에 선전하기 위한 의도였다. 국제사회가 이 기술을 인정하지 않자 북한은 7월 19일 스커드 2발·노동 1발 발사를 실시했는데,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고각발사를 단행했다. 여러 정황상 북한은 불안전하나마 중거리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2016년 10월 23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핵무기를 소형화한다는 것은 핵탄의 폭발력이 10kt 이하인 무기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그 지향점을 밝힌바 있다.<sup>128)</sup>

127) 300mm 신형방사포는 한국의 수도권이남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최신 무기로 2015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전격 공개되었다. 군 당국은 300mm 방사포의 사거리가 170km이며 최대 200km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3-6-3] 국가별 핵탄두 소형화 기간



출처 : 연합뉴스, 2016. 10. 6

한편, 2016년 11월 1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연평도 인근 서해 최전방에 있는 갈리도 전초기지와 장재도 방어대를 잇달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연평도 포격도발(2010. 11. 23) 6주기를 앞두고 이뤄진 김정은의 최전방 부대 시찰은 이 지역에 또 다른 도발을 준비하는 사전징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017년에도 군을 비롯한 공안 당국은 면밀한 감시와 주의태세가 요구된다.

2017년 초부터 김정은은 제6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예고하면서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요구조건을 내걸 수도 있다. 즉,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승인할 것과 6·15와 10·4선언의 준수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최고준엄의 비방·중상 중단, 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북한정권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요구·수용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7년 보안경찰은 관계부처와의 협조아래 북한의 대남전략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상호 역할 공조체계를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

## 2)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외화 획득 사업에 주력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을 사전에 예견하고, 자립경제에 기초한 먹는 문제는 자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sup>129)</sup> 외부 지원 없이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음을 공언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대북제재를 받아 왔으나, 이를 견뎌 냈다는 일종의 자신감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다.<sup>130)</sup>

128) “핵무기의 고품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노동신문, 2016. 10. 23

129) “천만 가지 국사중의 제일 국사”, 노동신문, 2016. 1. 24

130) 2015년 북한 1인당 명목 GDP는 1천 13달러로 2014년 930달러 보다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의 1

그러나 제4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되어 전방위 봉쇄 조치가 이뤄졌다.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이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해 단체 32개와 개인 28명 등 총 60곳으로 제재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2016년 10월 20일까지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66개국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722호를 승인했다. 이로써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8년 6월의 13466호, 2010년 8월의 13551호, 2011년 4월의 13570호, 2015년 1월의 13687호에 이어 모두 5개로 늘어났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다. 또한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sectoral ban)이 적용됐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포함되었다. 미국은 실제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홍상실업발전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초강력 제재를 가했다. 라오닝홍상(遼寧鴻祥)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홍상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홍(馬曉紅) 등 이 회사 수뇌부 4명을 제재 리스트에 공식 등재했다.<sup>131)</sup>

한편, 우리 정부가 파악 중인 북한의 해외식당은 중국, 동남아시아 등 12개국 소재 130여 곳으로 이 가운데 100여 곳이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한국 관광객들이 주요 고객이었으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국인들이 찾지 않아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더욱이 종업원 집단탈출이 발생하자 일부 국가의 식당을 중심으로 철수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2017년에도 북한의 해외식당은 경영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외화가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외화 수입원인 해외식당을 전면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당 명목 GDP가 1천 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처음으로 1인당 GDP 1천 달러 넘겨”, 연합뉴스, 2016. 9. 29

131) 미국은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 생산기술을 제공한 혐의로 3개 러시아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 북에 대량살상무기 기술 제공 러 기업 3곳 제재”, 연합뉴스, 2016. 7. 4

북한은 부족한 외화자원 확보를 위해 지난 5년(2011~2015)간 혈값으로 자원을 수출함에 따라 발생된 기회손실이 5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연탄을 비롯한 6종의 주요 광물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총 75억 2800만 달러(한화 8조 5254억 원 상당)을 벌어들였으나, 국제 거래가격으로 수출했다면 총 126억 3000만 달러(한화 14조 3034억 원 상당)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된다.<sup>132)</sup> 자원수출은 국제가격의 등락폭에 큰 영향을 받기에 북한의 외화수입은 한층 더 국제경제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석탄값이 떨어지거나 대중국 수출이 봉쇄될 경우, 북한 내 에너지수급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출에 주력하므로 자체 에너지수급은 줄어들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늘어나는 구조를 띄게 된다. 따라서 경·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발달한 북한경제는 2017년에도 전력난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탄광 동력 부족 → 석탄생산 감소 → 석탄 부족 → 연료부족 → 화력발전소 가동률 저하’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반복할 것으로 예견된다.

2016년 11월 30일 UN 안보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2016. 9. 9)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더 확대·강화한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sup>133)</sup> 이번 결의는 과거 4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에 이은 핵실험 관련 5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이다.

특히 이번 결의에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북한의 수출 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 수출금지 조치가 포함돼 약 8억 달러(9390억 원) 이상의 북한 외화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는 연간 30억 달러(약 3조 5000억 원) 수준인 북한의 수출규모를 22억 달러(약 2조 5700억 원)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조치를 담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34)</sup>

또한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북한 공관 및 공관원의 은행계좌 제한, 북한 공관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등 외교활동 제한 조치를 결의했다. 또한 북한인 수하물과 철도·도로 화물 검색 의무 명시, 북한 소유·운영·통제 선박에 대한 보험·재보험 금지 등 검색·차단 및 운송 제한 조치, 북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 지시 아래 또는 대리해 일하는 개인의 추방,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활동 금지, 90

132) 최경수, “북한지하자원 수출가격 구조분석”, 북한자원연구소(www.nokori.or.kr).

133) 북한 핵실험 후 안보리 결의에 걸린 시간은 1차 핵실험 5일, 2차 핵실험 18일, 3차 핵실험 23일, 4차 핵실험 56일, 5차 핵실험 82일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134) “북 수출, 연간 30억 달러 → 22억 달러로 쪼그라들 듯”, 조선일보, 2016. 12. 1

일 내 기존 사무소·계좌 폐쇄, 대북 무역 관련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 등 금융통제 조치 등이 있다. 결국 북한의 WMD 개발 관련 자금원 및 조달 채널을 차단하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새롭게 도입됐다.

〈표 3-6-6〉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2321호) 주요 내용

	주요 내용
WMD 및 재래식 무기 관련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래식 무기 관련 이중용도 품목 이전금지(7항) ※ 구체목록은 제재위가 15일 내 결정</li> <li>■ 북한에 대한 특별 교육훈련 금지분야(고등산업공학, 고등전기공학, 고등기계공학, 고등화학공학, 고등재료공학) 추가(10항)</li> <li>■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금지(핵과학, 우주공학, 첨단제조공학 분야는 제재위 사전 승인 시, 여타 분야는 제재위 사전 통보 시 예외) (11항)</li> </ul>
검색 및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재위가 의심선박의 기국취소, 특정항구 입항명령, 입항금지, 자산동결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12항)</li> <li>■ 북한인의 여행용 수하물도 검색 의무 대상임을 명확화(13항)</li> <li>■ 철도, 도로 화물을 검색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21항)</li> <li>■ 제재 대상 개인의 공항 경유 금지 명시(25항)</li> </ul>
외교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국내 북한 공관인력 규모 감축 촉구(14항)</li> <li>■ 회원국이 WMD프로그램 또는 불법 활동에 연루되어 있다고 결정한 북한 관료, 정부인사, 군인의 입국 또는 경유 거부(15항)</li> <li>■ 북한 공관 및 공관원당 은행 계좌를 1개로 제한(16항)</li> <li>■ 북한 공관원이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임무 이외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됨을 강조(17항)</li> <li>■ 북한 공관 소유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창출 금지(18항)</li> <li>■ 안보리에 의해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받고 있는 유엔회원국의 경우 권리·특권의 정지가 가능함을 상기(19항)</li> </ul>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대한 항공기, 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금지(민생목적 예외 삭제, 제재위 건별 사전 승인 시 예외)(8항)</li> <li>■ 북한내 선박등록, 북한기 사용, 북한선박에 대한 인종·선급·보험 서비스 제공금지(민생목적 예외 삭제, 제재위 건별 사전 승인 시 예외)(9항)</li> <li>■ 북한 항공기 이착륙 시 화물 검색의무 강조 및 북한 행·발 제3국 기착 민간 항공기에 필요 이상의 항공유를 제공치 않도록 주의 촉구(20항)</li> <li>■ 북한이 소유, 운영, 통제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금지(제재위가 건별로 민생 및 인도 지원 목적 종사로 결정시 예외)(22항)</li> <li>■ 회원국 선박, 항공기에 북한 승무원 고용금지(23항)</li> <li>■ 북한 선박의 회원국 등록취소 및 등록취소 선박의 재등록 금지 의무화(24항)</li> </ul>
대외 교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석탄 수출 상한선 설정(수출액 4억불, 수출량 750만 톤 중 적은 쪽)(26/27항)</li> <li>■ 수출금지 광물추가, 은, 동, 아연, 니켈(28항)</li> <li>■ 북한의 조형물, 공금·판매 이전 금지(제재위 건별 사전 승인 시 예외)(29항)</li> <li>■ 북한에 신규 헬리콥터, 선박 공금판매·이전금지(제재위 건별 사전 승인 시 예외)(30항)</li> </ul>

	주요 내용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사무소, 은행계좌 개설 등 활동금지, 90일내 기존 사무소계좌폐쇄(WMD 연관성 조건 삭제)(31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WMD 연관성 조건삭제, 제재위 건별 사전 승인 시 예외)(3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지시 하에 또는 대리하여 일하는 개인을 적용 가능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북한 송환 목적으로 추방토록 결정(33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MD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를 벌기 위해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 파견되는데 대해 우려 표명 및 회원국들의 주의 요청(34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ulk-cash 금지의무 재강조(35항)</li> </ul>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주민의 고통에 우려 표명, 주민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 핵·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을 규탄, 주민의 복지와 존엄성 보장 필요강조(45항)</li> </ul>
제재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패널에게 보고서 연2회 제출요청(43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재위가 UN대북제재 이행 관련 특별회의를 개최할 것을 지시(44항)</li> </ul>

북한은 외화 원천 확보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관광산업 및 수산물 수출, 외국 어선에 해양조업권 판매, 위폐 제조<sup>135)</sup>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3천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평년의 3배에 달하는 1천 500여 척에 해양조업권을 판매했다.<sup>136)</sup> 따라서 경찰은 해경과의 협조 하에 중국 어선의 동서해상에서 벌어지는 불법 조업을 차단하고, 해외동포들의 대북 관광 또한 주의 깊게 관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 탈북자 인권문제의 국제 이슈화: 김정은 외 지배그룹 국제사법 재판소 제소 가능성 증대

김정은의 집권 이후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에 파견한 근로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김정은 집권 1년 차인 2012년 7만 9600명에서 2013년 9만 3300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2014년 8만 9100명으로 약간 감소했다가 2015년 9만 420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sup>137)</sup>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등 20여 개 나라에서 한 해 약 2억 5천

135) NK 지식인연대는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시에 특수인쇄공장을 차려 놓고 중국 위안화 위조지폐를 대량으로 찍어 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남아를 중심으로 위원화를 많이 쓰는 나라에 불법 유통해 김정은의 통치자 금에 총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 단체, 평양 부근 공장서 中 위안화 위폐 대량제조”, 연합뉴스, 2016. 6. 27

136) “국정원 북, 중에 올해 어업조업권 팔아 3천만불 수입”, 연합뉴스, 2016. 7. 1

137) 한국개발연구원, 『북한 경제리뷰』, 2016년 1월호.

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90% 가량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치품 구매 등에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해외 근로자들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무려 17시간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런 중노동과 악조건을 견딘 끝에 이들이 손에 쥐게 되는 월수입은 50~100달러에 불과하다. 원래 받는 돈은 약 500달러이지만, 북한 당국이 이 가운데 70%를 챙기고 숙박료와 식비 명목으로 10~20%를 추가로 떼어가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북한 해외노동자 수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모두 112명에 달한다. 한 달에 평균 7명이 숨지고 있다. 주요 사망원인으로는 뇌출혈과 심장마비 등 질병이 가장 많았고 추락사 등 안전사고와 풍토병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현장보다 사고위험이 더 높은 해외 원양어선 송출선원 등 파악이 힘들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자 사망관련 자료(2013년)와 비교하면 영국의 320배, 미국의 53배, 중국과 러시아의 16배,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8배나 높은 수치이다.

북한은 부족한 외화확보 차원에서 해외 파견 근로자를 늘리려고 모집 요건을 완화 중이다. 즉,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해외근로자 파견 금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그동안 신원이 확실한 당원 위주의 해외파견에서 비당원과 미혼자(여성)을 대거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통과된 신규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에 따라 2017년부터는 해외 노동자 파견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17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 내 주민들의 노동력 착취도 한층 더 가혹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이 국가차원에서 조직·운영하고 있는 돌격대인 이른바 현대판 노예 노동자는 약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sup>138)</sup>

대남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우리의 대령)가 2015년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했으며,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의 집단 망명에 이어 또 다른 외화벌이 일꾼과 보위부원이 가족들과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에 대해 김정은은 국가안전보위부에 긴급지시를 내려, “탈북자의 송환을 요구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몇 천배의 복수를 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sup>139)</sup>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조용한 국경을 선물하겠다’는 충성편지를 보내고 결의대회를 여는 등 북·중 국경지역에 대한

138) 열린북한, 『북한 강제노동실태 보고서: 거대한 노예 노동국가, 북한』, 2016. 25쪽.

139) “북 김정은 식당종업원 탈북 관련 남에 보복 지시”, 데일리 NK, 2016. 5. 17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보위부는 탈북과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독일산 첨단 감청장비를 국경지역에 배치·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북·중 월경비용이 1만 달러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sup>140)</sup>

김정은 체제에 접어들어 국가안전보위부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인민보안부가 관할하던 일반경제사범 업무마저 보위부로 넘어가고 있다.<sup>141)</sup> 왜냐하면 경제사범 검거 과정에서 각종 이권과 뇌물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6-7〉 북한 형법에 의한 범죄유형

대분류	중분류	범죄명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반국가범죄	국가전복음모죄, 조국반역죄, 간첩죄,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반민족범죄	민족반역죄, 조선민족해방운동 탄압죄, 조선민족적 대죄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은닉죄, 반국가범죄 불신고죄
경제침해범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 침해범죄	훔친죄, 빼앗은죄, 공갈죄, 속여가진죄, 횡령죄, 강도죄, 공동탐오죄, 고의적 파손죄, 과실적 파손죄
	경제관리질서 침해범죄	화폐위조죄, 증권위조죄, 외국화폐매매죄, 탈세죄, 개인의 상행위죄, 상표권침해죄, 밀수죄, 고리대죄, 비법적 외화벌이죄, 주체농업대로 지도하지 않은 죄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 질서 침해 범죄	토지남용죄, 토지유실죄, 산림 남도벌죄, 산을 개간한죄, 과실산불죄
	노동행정질서 침해범죄	교통사고죄, 해직죄, 분배질서위반죄
문화 침해범죄		퇴폐적 문화반입·유포죄, 적대방송청취죄, 역사유적 도굴죄, 마약밀수·밀매죄
행정관리질서 침해 범죄	일반행정질서 침해범죄	집단적 소요죄, 비법국경출입죄, 뇌물죄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	직권남용죄, 직무태만죄
공동생활질서 침해범죄		패싸움죄, 매음죄, 직권참용죄, 거짓행세죄, 비법혼인죄, 사례금·이득금을 바치지 않은죄
생명재산 침해범죄	생명, 건강, 인격 침해범죄	살인죄, 중상해죄, 폭행죄, 유괴죄, 명예훼손죄, 강간죄, 미성인 성교죄
	개인소유 침해범죄	훔친죄, 빼앗은죄, 공갈죄, 속여가진죄, 횡령죄, 강도죄, 파괴죄

출처 : 2016 북한이해, 통일교육원, 2016. 330쪽.

인민보안부는 핵심 경제이권이 보위부로 빼앗기자 자체 건설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교통단속을 비롯한 뇌물 축적에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단련

140) “탈북자 북중 월경비용, 1만 달러 이상 치솟아”, VOA(미국의 소리), 2016. 5. 16(www.voakorea.com/a/3331985 2016. 10. 14 검색)

141) 국가안전보위부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담보로 한 금전거래를 엄중히 처벌한다”고 선포했다. 원래 이권한은 인민보안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이었고, 인민보안부 내에 조직됐던 ‘109상무’와 ‘대부무역회사’도 2015년 국가보위부로 넘겨졌다. “보위부, 고리대업자 단속 선포”, 자유아시아방송(RFA), 2016. 3. 25

대를 비롯한 정치범죄 사범 또한 증가 추세다.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평안남도 개천의 14호, 함경남도 요덕의 15호, 함경북도 명간의 16호, 함경북도 청진의 25호 등이지만, 그동안 해체된 것으로 알려진 평안남도 북창군의 '18호 수용소' 운영이 재개된 것으로 추정된다.<sup>142)</sup>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부각에 따라 지난 2005년 첫 발의된 지 11년 만인 2016년 2월 북한인권법이 마침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되는 북한인권재단에 매년 200여억 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관련 예산을 조사·연구, 정책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인권단체(NGO)는 33곳에 이른다.

북한인권재단은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며 북한인권단체가 참여하는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북한인권단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들의 전수조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운영함으로써 향후 통일될 경우 법적 책임을 부과할 근거자료로 삼을 계획이다.<sup>143)</sup> 유엔인권 결의안 및 한국의 인권법 제정에 따라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내 인권 유린자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3-6-8〉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입장

구분	유엔 인권이사회							
	2008 (7차)	2009 (10차)	2010 (13차)	2011 (16차)	2012 (19차)	2013 (22차)	2014 (25차)	2015 (28차)
연도	2008 (7차)	2009 (10차)	2010 (13차)	2011 (16차)	2012 (19차)	2013 (22차)	2014 (25차)	2015 (28차)
표결결과 (찬:반:기권)	22:7:18	26:6:15	28:5:13	30:3:11	무투표	무투표	30:6:11	27:6:14
정부입장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공동제안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출처 : 통일백서, 2016, 128쪽.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국제 동향 보고서 2015」에 의하면, 2015년 말까지 난민 자격으로 사는 탈북자 수는 무려 110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탈북 난민 가운데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74명에 불과하다. 2006년 이후

142) “‘18호 정치범 수용소’ 자리에 새 수용소?”, RFA(자유아시아방송), 2016. 9. 29(www.rfa.org/korean 2016. 10. 4 검색)

143) 2003년 설립된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서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전수조사를 통해 3만 명의 인물파일과 5만 6000여 건에 이르는 인권침해 관련 자료를 축적, 관리 운영해 오고 있다.

2016년 11월 3일까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총 204명이며, 2007년부터 2015년 말까지 캐나다에 입국한 난민은 총 46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44)</sup> 국제사회에 탈북난민들이 정치 없이 떠돌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해외거주 탈북 난민도 우리 국민이라는 인식하에 여러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히 보안경찰은 해외거주 탈북자들 중 일부가 국내 중북주의자들과 연계하여 안보위해 물품반입, 마약, 금괴밀수, 침투공작 기도 등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저지함으로써 국가안보 확립과 안정적 국가운영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 4) 2017년 6월 이전까지 대남 전단지(‘삐라’) 살포 지속

우리 군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2016년 1월 8일 최전방 10여 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군도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 아울러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은 300여 종의 대남전단지를 집중 살포하였고, 경찰은 265만 여장을 수거하여 대남전단지 여부를 군경합동분석 후 군에 인계하였다. 서울이 77만 여 장, 경기 142만여 장, 인천 23만여 장으로 가장 많이 살포되었고, 충청 11만여 장, 경상도 3000여 장이 발견되었다.

북한의 대남전단지 살포는 바람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는 바, 2017년에도 북에서 남으로 바람이 부는 6월까지 전단지 살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경찰은 국민들과 협조 하에 발견 즉시, 전단지를 회수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수거된 김정은 일가의 이상화와 관련된 전단지는 26종이나, 김정은을 직접 거론한 전단지는 14종이다. 특이점은 제7차 전당대회 이후 7월에 김정은 이상화 전단지가 대규모로 살포되었다는 점과 김정은의 연설문을 게재한 전단지도 살포되었다는 사실이다. 김정은을 지칭한 표현으로 ‘선군령장’, ‘백두산 장군,’ ‘희세의 정치가,’ ‘불세출의 명장,’ ‘천출명장,’ ‘경애하는 원수님,’ ‘절세의 위인’ 등 다양한 존칭어가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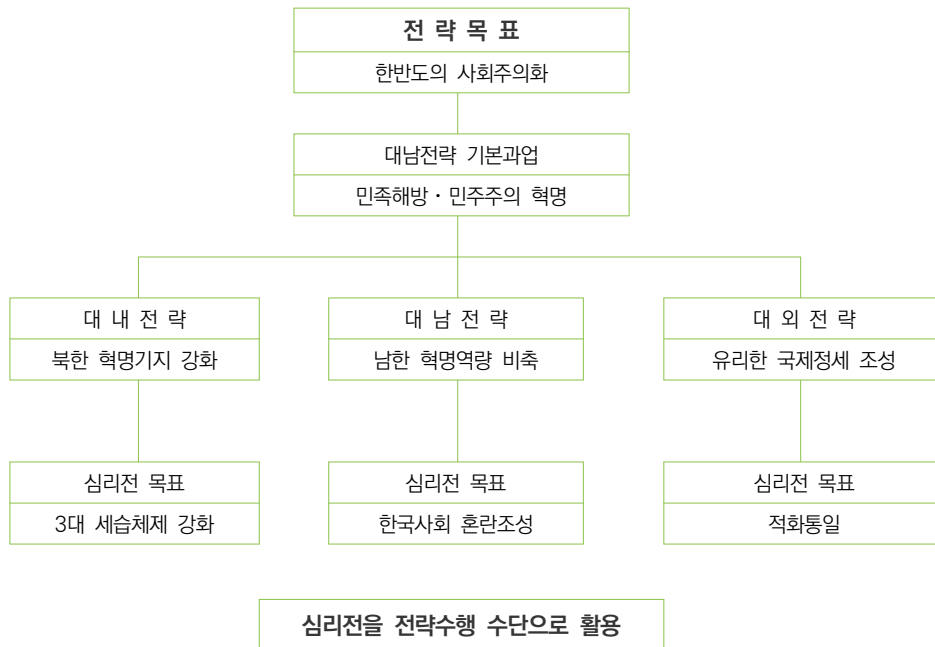
144) “탈북난민, 미 193·캐나다 465명”, RFA(자유아시아방송), 2016. 2. 4([www.rfa.org/korean](http://www.rfa.org/korean), 2016. 10. 11 검색)

〈표 3-6-9〉 대남전단지 내용별 분석

	북한 선전			남한 비방·투쟁선동					
	우상화	체제 선전	정책 선전	대통령 비방	반정부 투쟁	반군 투쟁	반외세 투쟁	정책 비난	갈등분열 조장
총	26	44	53	77	31	12	60	6	31
비율 (%)	7.6	12.9	15.6	5	9.1	3.5	17.6	1.8	9.1

전단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단지가 162종(47.6%), 지식·종교인 117종(34.7%), 청년·학생 39종(11.5%), 군인과 노동자·농민이 각각 11종(3.2%)을 차지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를 비교해 볼 때, 일반국민들과 지식·종교인에 대한 대남 선전·선동 비율이 확연히 늘어나는 추세다.

〈표 3-6-10〉 북한의 대남 심리전 전략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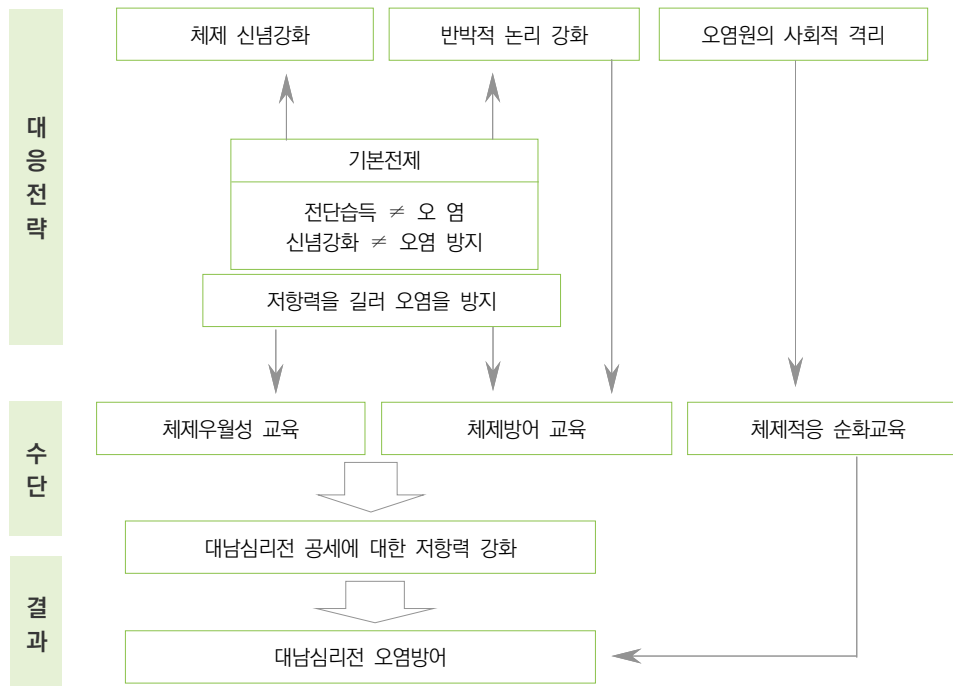
북한의 대남 심리전 운영 수단 중 하나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심리전이다.<sup>145)</sup> 북한은 2016년 1월 27일 국내 방송사의 메일계정을 사칭하여 “핵은 우리민족의 핵이

145) 이외 북한은 인공위성위치정보(GPS) 전파교란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북한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100여 회에 달하는 교란전파를 발사했으며, 최대 출력은 45dB 이상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북한의 이 같은 GPS 교란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ICAO, 북 GPS 교란행위에 심각한 우려”, 연합뉴스, 2016. 6. 23

고 힘입니다”라는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담은 이메일을 3만 8988명에게 발송(사이버 뼈라)하는 신종기법을 구사하였다.

또한 2016년 1월 11일 대학 교수를 사칭해 악성 프로그램이 첨부된 이메일을 방송사 기자 등 83명에게 발송한 바 있다. 같은 해, 2월 18일 현직 경찰청 사이버수사관을 사칭한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이메일을 대북 관련 인사 48명에게 발송하였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행에 사용된 경유서버 및 악성코드 제어서버 등을 분석한 결과 2013년 「3.20 사이버테러」 당시 북한에서 접속한 IP 대역과 일치함을 밝혀냈다.

〈표 3-6-11〉 북한 심리전에 대한 대응 전략



월남 패망의 원인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심리전에 진 것이다. 특히 방어 심리전에서 실패한데 기인한다. 월맹이나 베트남은 심리전에 이기기 위해 이른바 통일전선 전술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월남 내부를 분열시켰다. 북한 역시 남한 혁명역량 강화 논리에 따라 통일전선의 형성, 주한미군 철수, 남남갈등 조성 등 반혁명역량 약화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보안경찰은 3만 명에 달하는 탈북민 신변보호를 보안경찰이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한 면이 있다. 안보위해사범 검거를 위해서는 수사의 특성상 장기적 시

간을 요구한다. 통일 준비와 튼튼한 국가안보를 구축하려면 보안경찰 인력을 증대시키  
 되, 최근 사이버 안보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보안 인력을 지  
 속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집요한 선전선동 및 위장평화 공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부  
 처의 심리전 기구간의 업무협조와 정보교환이 원활해야 하며, 전단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sup>146)</sup>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청 보안국은 인적 제한에 따라 전문분석  
 요원이 부족하다. 반심리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리전 대응요원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사명감 있게 대응해 나가는가가 중요하다.

둘째, 일반 국민들이 대남심리전에 현혹되지 않도록 국가정체성 및 안보교육이 일  
 상생활 속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청은 대남전단지를 수거하여 군  
 에 인계만하지 말고, 그 일부를 안보교육의 교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이다. 이 과정을 통해 북한의 통일전선 선술이 갖는 위해성을 일반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다.

〈표 3-6-12〉 주요 안보위해단체 현황

단 체 명	내 용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 (1990. 8. 28 대법원)	• 주체사상 전파, 국가보안법 철폐 • 미군철수, 과격투쟁 선동
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1993. 9. 28 대법원)	• 한총련의 반미투쟁 배후조종 • 이적표현물 제작, 폭력시위 주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1997. 5. 16 대법원)	• 북한 공작금 수수 • 간첩활동, 적화통일 선동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1998. 7. 28 대법원)	• 적화통일 노선 찬양·동조 • 반정부 폭력시위 자행
한국청년단체 협의회 (2009. 1. 30 대법원)	• 북한 사회주의 청년동맹과 회합 • 불법 폭력시위 주도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2009. 7. 23 대법원)	• 반미·친북논리 개발·보급 • 대남적화 통일노선 추종
청주통일청년회 (2011. 12. 8 대법원)	• 대남혁명 전략에 동조, 대중의식화 교육 • 통일전선체 구성, 반미투쟁 활동 전개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2012.1. 27 대법원)	• 북한과 연계, 강령·규약 제정 • 국보법 철폐 후 고려연방제 통일실현 활동
사회주의노동자연합 (2014. 8. 20 대법원)	• 자본가 정부 타도, 미제축출 • 사회주의노동당 건설, 과격폭력투쟁 선동

출처 : 국가정보원(www.nis.go.kr)

146) 최진규,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4. 58쪽.

셋째, 북한이 주장하는 남남갈등의 주요 기제는 ‘우리민족끼리’의 구호 아래 민족제일주의, 민족대단결, 민족공조, 반외세 등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단일민족을 내세워 반외세 전선을 구축하는 동시에 한국사회의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여기에 앞장서는 것이 대법원에 이적단체로 판정받은 친북단체들이다. 이들 단체에 대한 보안경찰의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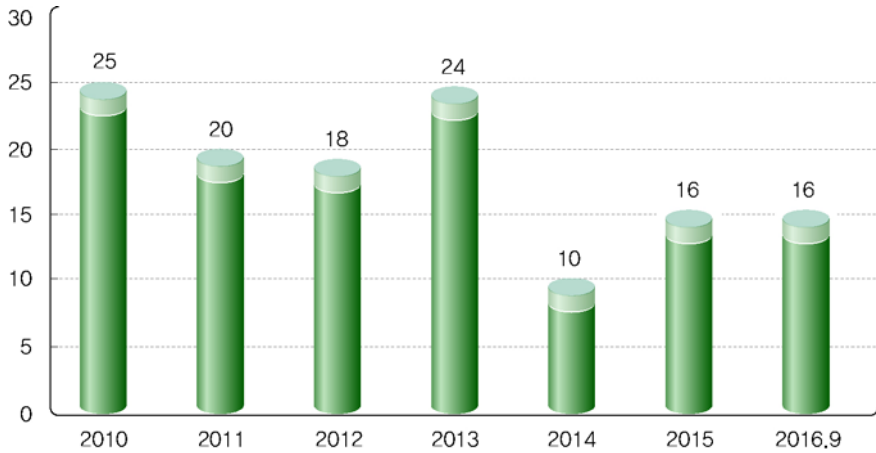
넷째, 우리 사회는 본질적으로 개방사회이다. 학문·사상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폐쇄적 북한 사회에 비해 심리적 공세에 취약성을 갖고 있다. 북한의 심리전 메시지를 폄하하여 방치하면 우리 국민의 대북인식에 혼선이 유발될 수 있다. 북한의 선전선동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안보도전이므로 국가공권력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만약 북한의 선전선동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반복되는 감정적 언어와 표현, 슬로건, 그리고 시각적 매체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대중이 김정은 정권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언론관은 “뉴스는 조작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건을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뉴스라 할 수 없다. …뉴스는 사실이나 사건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규정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뉴스는 사실을 통한 선동이다”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다섯째, 북한은 국내 현안 이슈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개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권퇴진, 반정부 투쟁 등을 선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의 사주를 받는 국내외의 단체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대응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2016년 보안경찰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보안경찰의 역량강화와 튼튼한 안보구축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안보 위해 세력들의 조직 및 활동기반을 와해·약화시키는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다. 안보 위해 사범의 감소 추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3년 121명에서 2014년 66명, 2015년 45명, 2016년 38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림 3-6-4]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구속 현황

(단위 : 명)



출처 : 경찰청(2016)

한편, 우리 군의 정보와 동향을 캐내기 위해 북한은 최근 5년 동안 남파한 간첩이 13명에 달했다. 2013년 3명의 탈북자를 가장한 간첩이 침투했으며, 2014년에는 2명의 간첩이 침투했다. 2015년에는 해외를 통한 침투가 1명, 탈북자를 가장한 간첩이 1명이었다.

2016년 숨죽였던 안보 위해 세력들은 북한의 대남투쟁 노선에 입각, ‘우리민족끼리’를 표방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북한인권 결의안 및 대북제재 반대 등을 내세우고 각계·각층과의 연대·연합 전선을 펼쳐왔다. 특히, 2017년은 대통령 선거개입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찰은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II.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활동 전망

### 1. 2017년 대선을 전후한 대남 사이버심리전 본격화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인 ‘통일전선부’ 전위 조직인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은<sup>147)</sup> 웹사이트 ‘구국전선’을 통해 한국의 대선과 총선 등 각종 선거 시기를 이용해 선거투쟁 구호를<sup>148)</sup> 하달하는 등의 선거투쟁 전술을 구사해 왔다.

반제민전은 웹사이트 ‘구국전선’을 통해 한국의 18대 대선을 ‘전쟁세력’ 대 ‘반전쟁세력’,<sup>149)</sup> 20대 총선을 “동족대결과 파쇼독제”<sup>150)</sup> 등으로 규정해 특정 정당 후보 ‘낙선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대남 심리전을 자행한 바 있다.

북한은 한국의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대남 사이버공작 기관을<sup>151)</sup> 총 동원해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를 확대·재생산하는<sup>152)</sup> 특정후보 낙천·낙선 투쟁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철폐’, ‘공안기관 폐지’, ‘연방제통일’ 등의 주요 현안 이슈 선전·선동을 통한 국론분열 조장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147) 북한은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의 대남혁명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 한민전)을 2005년 3월 23일 ‘반제민족민주전선’(약칭 반제민전; The Anti-Imperialist National Democratic Front: AINDF)으로 개칭하였다. 반제민전은 홈페이지 ‘구국전선’을 개설하여 한국 내에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반제민전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위해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수행하며, 주로 ‘반제투쟁(반미자주화투쟁)’에 주력하고 있다.

148) “○○○정권의 반민생, 반민주, 반통일 최악의 하수인인 ○○○을 표로써 박살내지!”, “모든 선거장을 ○○○와 ○○○ 후보들의 만고죄악을 단죄하는 성토장으로 만들자!”(“전체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선전국, 노동신문, 2016. 3. 26)

149) 반제민전은 2012년 11월 17일 “○○○○의 재집권 야망을 단호히 분쇄하자”는 격문을 통해 “○○○○이 또다시 정권을 장악한다면 남북관계 악화는 더 말할 것 없고 기필코 제2의 6.25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150) 반제민전은 “전체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 패당은 악랄한 동족대결과 파쇼독재, 극도의 타락과 무능으로 우리 민중에게 전대미문의 불행과 희생을 강요한다.”(노동신문, 2016. 3. 26)고 주장했다.

151) 북한은 국방위원회 직속 정찰총국,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통일전선부 등에 사이버공작 부서를 신설해 대남 정보수집, 사이버심리전, 해킹, 전산망 무력화와 공격 등 대남 사이버공작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사이버 공격은 핵·미사일과 함께 군의 타격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2013. 8)이자 “인터넷을 우리 사상·문화의 선전마당으로 만들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마련하라”(2014. 2. 당 사상일꾼대회)고 지시했다.

152) “北, 대남조직에 ‘댓글전담팀’ 운영…사이버심리전 혈안”, 연합뉴스, 2016. 10. 24

## 2. 대남 사이버심리전 매체 지속 개설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은 해외에 다양한 웹사이트를 개설해 북한체제 선전과 국내 안보환경을 무력화시키고자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sup>153)</sup> 최근 ‘사드’ 관련 이슈가 발생하자, 북한은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인터넷 등 대남 사이버심리전 매체를 동원해 2016년 3~5월 중 매달 200여 건의 ‘사드’ 배치 비난 심리전을 자행하다, 우리 정부가 7월 13일 사드 배치지역을 발표하자, 7월 한 달 동안 1만 여건의 ‘사드배치’ 비난·비방 선전·선동 글을 집중적으로 게재한 바 있다.

그런가하면 ‘우리민족끼리’는 동영상과 사진 기반 SNS인 ‘텀블러’에 계정을 만들어 노동당 창건일 기념행사·김일성 동상 참배객·평양야경(‘당을 노래하며 행복 속에 깊어가는 수도의 밤’) 등의 사진을 대량 게재해 북한체제 찬양에 열을 올리고 있다.<sup>154)</sup> SNS를 통한 북한체제 찬양 선전물은 차단이 어렵고 네티즌 간의 급속한 전파력을 가진다.

북한의 통일전선부는 사이버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8월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독일, 싱가포르, 태국, 스페인, 캐나다 등 20개 국가에 서버를 둔 구국전선(반제민전 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조평통 홈페이지),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민족통신, 범민련 등의 직영 및 친북 웹사이트 183여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2000년 이후 매년 급증했고, 2015년 동기간 171건 대비 7.0%p(12건)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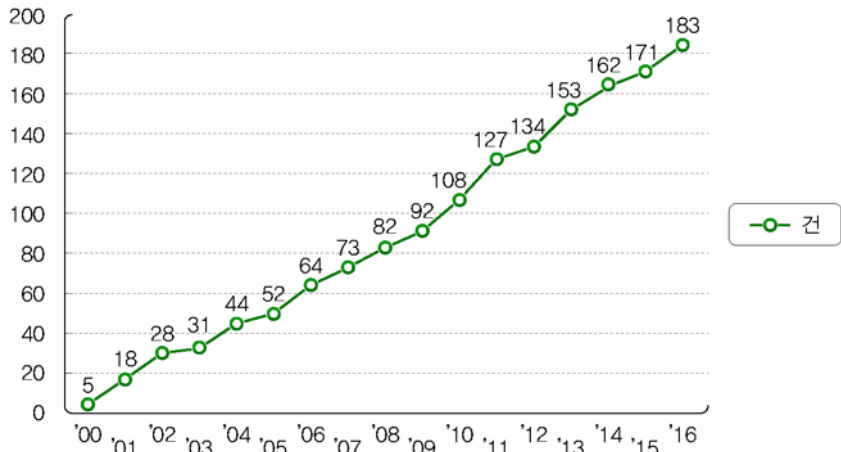
북한의 직영 및 해외 친북사이트 대남 선전물은 2016년 8월말 현재 4607건으로 2015년 동기간(4304건) 대비 7.0%p(30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공안당국은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선전매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차단하고 있다. 2016년 8월말 현재까지 북한의 해외 친북 사이트(11개)와 SNS 계정을 차단(937개)하고, 불법 카페 폐쇄(43개)와 불법문건 삭제(6770건) 등을 한 바 있다.<sup>155)</sup>

153) 북한은 1996년 12월 일본 동경-평양 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다.

154) “북한 사이버 선전·선동 현황”,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 2016. 10; “北 사이버 선동 月 1만 건 육박… 작년 보다 2배 늘어”,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4/2016101400310.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4/2016101400310.html), 2016. 11. 20 검색), 2016. 10. 14 재인용.

155) 경찰청 자료, 2016. 8

[그림 3-6-5] 북한 직영 및 해외 친북사이트 개설 추이(20개국)



출처 : 경찰청(2016. 8)

이와 같이, 2017년에도 북한은 직영 및 해외친북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개설해 김정은 체제의 찬양·선전은 물론 국내 주요 이슈를 선점해 각종 유언비어를 조작·유포하여 반미·반정부 여론을 조성하는 대남 사이버심리전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특히 우리 공안당국의 북한 직영 및 해외 친북 웹사이트 차단 조치에 맞서, 북한은 위장명칭 사이트, 유사 사이트, 제2·제3의 대체 사이트, 미러사이트 등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대남 사이버공격 강화 예상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기관은 청와대, 국회, 포털 사이트 전산망을 마비시켰던 2009년 '7.7 DDos' 공격을 기점으로 사이버 테러를 본격화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버금가는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09년 7월부터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관 등 총 35개의 웹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이후, 국가기관(청와대·국회·국가정보원 등), 금융기관(은행 등), 포털(네이버 등) 등 국가 중요 기관 망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sup>156)</sup>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기관이 국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4만 여건의 문서를 해킹한 것으로 경찰청은 2016년 6월 밝힌 바 있다.<sup>157)</sup> 미래창조과학부(2016. 7. 22)에

156)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16. 8. 335쪽.

157) "정부 북한 사이버공격 급증...경계 강화", 조선비즈([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2/](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2/))

의하면, 최근 북한이 해킹조직을 증·개편해 국내 스마트폰 해킹과 정부 주요 인사에게 해킹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2016년 상반기 정찰총국 등이 주도한 사이버공격은 2015년 동기간 보다 2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58)</sup>

북한은 대남 공작원을 남파하지 않고서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한국의 국가기관 망, 금융망, 포털, 스마트폰, 정부 주요 인사 대상 해킹메일 유포, 정보보호 업체 등 중요 기관 망과 인사를 대상으로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고자 실시간 사이버공격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 대응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이 보안의식을 가지고 해킹 대비 백신 설치, 의심스러운 메일 회피와 차단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4. 불특정 다수인 대상 악성 해킹 메일 유포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형태가 홈페이지 해킹에서 악성 해킹 메일로 변화하고 있다. 2016년 군사법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 건수는 2014년 96건에서 2015년 86건, 2016년 7월 현재 43건으로 총 225건이다. 이 가운데 2015년의 경우 86건 중 해킹 메일이 86.0%(74건), 악성 코드 14.0%(12건)으로 나타났고, 2016년의 경우는 43건 중 해킹 메일이 62.8%(27건), 악성 코드가 34.9%(15건), 홈페이지 공격이 2.3%(1건)으로<sup>159)</sup> 확인되었다. 이같이 최근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 방식이 악성 해킹 메일을 유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기관의 해킹 메일 유포는 2016년 하반기 국내 국정 이슈와 관련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11월 교수와 기업인 등 국내 특정인을 대상으로 “우려되는 대한민국”이라는 한글파일 속에 악성코드를 첨부한 해킹 메일, “카카오 앱 보호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라는 카카오톡을 사칭한 해킹 메일 등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사이버공격을 자행한 바 있다. 이러한 악성 해킹 메일 유포는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대남 심리전과 사이버공격을 동시에 노린 것으로 보인다.

2016072201232.html, 2016. 11. 22 검색), 2017. 7. 22

158)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16. 8. 335쪽.

159) 이와 관련해 육·해·공군에서 군사비밀 누설과 유출 그리고 보안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2013년 2526명, 2014년 3353명, 2015년 4662명, 2016년 6월까지 2462명이 징계를 받았다(“북한군 사이버공격, 10건 중 9건꼴 해킹 시도”,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nk/2016/09/21/4807080000AKR20160921184100001.HT, 2016. 11. 22 검색)

북한은 2017년에도 정교화·고도화된 사이버 공격 기법을 개발해 수신자의 관심을 끄는 ‘○○행사 초청장’, ‘○○○ 선생님’, ‘○○○○ 대한민국’, ‘신년 대북정책’ 등의 악성 메일을 특정인과 특정단체를 중심으로 유포하는 사이버심리전과 사이버 공격을 동시에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메일 사용자는 의심 메일에 대한 열람을 자제하고 신고와 폐기하는 습관과 함께 민·관 차원 사이버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 5. SNS를 통한 사이버심리전 강화 예상

우리 사회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사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북한은 SNS상에 유포된 불법정보에 대한 차단이 어렵고 신속한 전파력과 신분은닉이 용이하다는 점 등을 악용하여 SNS 계정을 개설해 대남 사이버심리전 공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기관은 2016년 6월 현재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1000여개의 SNS 계정을<sup>160)</sup> 개설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2013년 300여개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sup>161)</sup> 북한의 SNS 계정 개설은 주로 ‘우리는 하나’, ‘만세 북한’, ‘금일북조선’, ‘우리민족끼리’, ‘민족통신’, ‘조선민주주의’ 등 북한이 개설한 183개의 직영 및 친북 해외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경찰총국(군), 통일전선부(당) 문화교류국(구 225국),<sup>162)</sup> ‘조선 6·15편집사’<sup>163)</sup> 등은 국내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괴담과 유언비어를 SNS 등에 유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sup>164)</sup>

160) “북한 대남심리전 이대로 둘 것인가”, 2016 북한연구소 학술회의, 2016. 6.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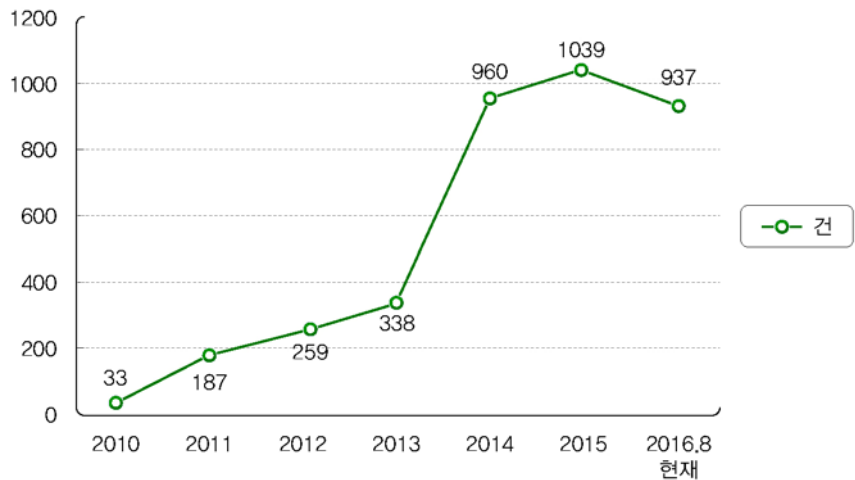
161) 2013년 10월 28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장(서상기)에게 제출한 “트위터 상(上) 북한의 대선개입 선전 선동 실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위해 △‘우리는 하나’ 등 페이스북 100여 개 △‘만세 북한’ 등 유튜브 100여 개 △‘금일북조선’ 등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80여 개 △‘우리민족끼리’ 등 트위터 15개 △‘김정은 우상화’ 등 플리커(사진공유 사이트) 5개 등의 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北 ‘대남 선전선동’ SNS계정 300여개 운영”,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70542>), 2016. 11. 20 검색, 2013. 10. 29)

162) 북한의 대남혁명 공작기관인 225국(구 대외연락부)은 2012년 말경(김정은 시대) 통일전선부로 흡수 통합된 후 2015년 초 문화교류국으로 개칭했다. ‘남조선혁명을 위한 대남 공작원 양성’과 남파, 공작원과의 교신(간첩 지령·대북보고)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163) ‘조선 6·15편집사’는 중국 선양에서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끼리 TV’, ‘우리민족강당’, ‘려명’, ‘류경’ 등 선전 사이트와 ‘민족통신’ 등의 친북사이트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4) “北, 대남조직에 ‘댓글전담팀’ 운영…사이버심리전 혈안”, 연합뉴스, 2016. 10. 24

[그림 3-6-6] 친북 SNS 등 차단 현황



출처 : 경찰청(2016. 8)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기관이 SNS 계정을 늘리는 주된 목적은 SNS를 통해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강화하는데 있다. 우리 공안당국의 친북 SNS 계정 등에 대한 차단 결과를 보면, 2010년 처음으로 33건을 차단한데 이어 매년 급증해 2016년 8월 말 현재까지 총 3573건을 차단했다. 특히 2015년은 1039건을 차단한 바 있는데, 이는 지난 5년간 31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2016년 8월말 현재만 해도 937건을 차단해 2015년 동기간 대비 51.9%p(320건)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기관은 사이버공간을 ‘대남 선전·선동의 해방구’로 이용하고자 국내 정세와 2017년 대선을 겨냥해 SNS 계정을 지속적으로 개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봇계정’,<sup>165)</sup> 자동 ‘리트윗(재전송)’ 등을 적극 활용해 유언비어와 흑색선전 등을 유포·확산시켜 국론분열과 시위선동 등의 사이버심리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통해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남조선혁명’을 완수하는데 있다.

## 6. 국내 사이버범죄 조직과 결탁한 외화별이 공작 예상

최근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은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하게 진화되고 있다. 북한이 해외로 파견한 사이버전사(전문해커)들은 국내 범죄조직과 공조해 국내 유명 온라인

165) ‘봇계정’이란 여러 개의 계정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 전송하는 계정을 의미한다. ‘봇’은 트위터(Twitter)와 로봇(robot)의 줄임말(봇: bot)인 합성어다.

게임을 해킹하는 프로그램을 불법 제작·유통해 외화벌이도 한다. 북한 경찰총국의 사이버부대는 6000여명(지원조직+해킹조직)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능력은 세계 6위, 사이버 정보 평가능력은 세계 7위로 추정되고 있다.<sup>166)</sup>

2011년 8월 초 경찰은 북한 해커 조직원 30여 명과 결탁한 국내 범죄조직원 15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 사건에 가담한 북한 해커요원 30여 명은 북한 대남 공작기관이 양성한 ‘사이버전사’로 확인되었다.<sup>167)</sup> 2016년 5월 이○○과 김○○은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경찰총국의 민간위장업체 소속인 대남 공작원과 ‘스카이프<sup>168)</sup> 메신저’를 이용해 불법 도박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의뢰하여 수수한 후, 대남 공작원의 요구에 의해 국내 온라인 서버와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의 송금(1억 50만 원)을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6년 6월 불구속된 바 있다. 이외에도 2016년 5월 경찰총국은 외화벌이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 회원 1030만 명의 정보를 해킹해, 7월 4일부터 13일까지 인터파크 임원에게 총 34통의 악성 메일을 보내 회원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30억 원의 비트코인을 요구하기도 했다.<sup>169)</sup>

[그림 3-6-7] 북한과 연계한 오토프로그램 제작 개요 및 유통 과정



출처 : 북한 ‘해커부대’의 위험한 거래, [http://www.jeongrakin.com/1825\(2016. 11. 23 검색\), 2011. 8. 27](http://www.jeongrakin.com/1825(2016. 11. 23 검색), 2011. 8. 27)

최근 북한은 핵개발에 따른 유엔 등 국제기구의 대북송금 제재조치가 강화되자, ‘사이버전사’를 해외에 파견하여 사이버 불법도박, 화상채팅, 해킹 등을 통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1000여 명의 IT인력을 중국, 동남아 등에 ‘외화벌이 일꾼’으로

166) 2016년 국정감사 자료: “북한 사이버테러 대비 강화해야”, 중도일보, 2016. 10. 22 재인용.

167) “[사설]南에 ‘사이버 땅굴’까지 파는 北”, 동아일보, 2011. 8. 5

168) ‘스카이프(Skype)’는 에스토니아의 스카이프 테크놀로지사가 개발한 무료 VoIP 소프트웨어이다.

169) “비트코인 30억 요구한 해커는 北정찰총국”, 조선일보, 2016. 7. 29

위장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소에는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벌이를 하다가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지시하면 곧 바로 실행한 후 해산 및 도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sup>170)</sup>

국내 범죄 조직과 북한 해커가 돈벌이라는 이권이 맞아 떨어져 국내 범죄조직이 북한 해커에게 필요한 정보, 장비(노트북 등), 자금(주로 현금 지급) 등을 제공해 오토프로그램과 스팸메일 발송용 프록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유포한다면, 국가 기관망은 물론 민간단체와 개인 망까지 해킹 당해 사회 전체가 혼란 상태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sup>171)</sup> 북한 해커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 P2P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수십만 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sup>172)</sup>

북한 해외파견 전문해커들은 생활비와 임대료,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충성자금'을 마련하고자 국내 범죄조직을 포섭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국내 범죄조직 또한 돈벌이를 위해 북한 해커에게 오토프로그램 개발 등을 의뢰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당국은 국내 범죄조직이 북한의 해외 파견 해커에게 제공하는 자금원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 7. 대남공작 사이트 차단 무력화 시도

북한은 2016년 8월 현재 20여 국가에 183개의 직영 및 친북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반미·반정부 투쟁을 선전·선동하는 사이버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공안당국은 이들 웹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들 웹사이트의 주소·IP·사이트 이름 변경, 미러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개설하고 있다.

우리 공안당국은 지난 11년(2005~2015)간 128개의 친북사이트를 발견해 104개를 차단한 바 있다. 2016년 들어 8월 말 현재까지 11개의 친북사이트를 발견해 차단했다.<sup>173)</sup> 이는 2015년 동기간(7개) 대비 57.1%p(4개) 증가한 것이다. 북한은 웹사이트 운

170) “북한 사이버 테러위협과 대응전략”,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국가안보기술연구소 학술회의, 2016. 3. 31; “국정원 산하 INSS, 北사이버테러 세미나서 北해커 현황 공개”,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41026>, 2016. 11. 23 검색), 2016. 3. 31 재인용.

171) 특히, 북한 해커와 국내범죄 조직이 결탁해 국내 서버를 통해 사이버공격을 자행할 경우 일괄적인 IP(internet protocol) 차단이 어려워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

172) “사실 북 해커와 공조한 국내조직 발본색원하라”, 서울신문, 2011. 8. 6

173) 경찰청 자료, 2016. 8

영자가 새 인터넷 주소 사용이나 IP를 변경해 운영할 경우, 이의 접속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결국, 현행 관련 법령(정통방법 등)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기관은 법령과 심의절차 등의 약점을 악용해 직영 및 해외친북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개설할 것으로 보인다.

## 8. 사이버 공간을 ‘남조선혁명’의 교두보로 활용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은 과거 간첩을 직접 납파해 요인인물 납치·암살, 주요시설물 폭파 등의 지령을 해왔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사이버 심리전,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정보수집 및 해킹, 사이버 간첩교신, ‘사이버 지하당 및 통일전선 구축’, ‘반혁명역량<sup>174)</sup> 제거’ 등에 주력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은 사이버 공간을 적극 활용해 국내 고정 간첩 등에 대한 지령 하달과 교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기관은 보안 유지를 위해 사이버 드보크(Cyber Dvoke),<sup>175)</sup>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y) 등과 같은 첨단화되고 정교한 프로그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과 납파 간첩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보안이 강화된 텔레그램(독일), 바이버(미국), 아이메시지(미국) 등의 외국계 메신저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프록시(proxy), 토르(Tor)<sup>176)</sup> 등을 사용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은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통일전선구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통일전선구축’은 문화교류국이 ‘사이버 전사’를 통해 김정은 체제 미화·찬양 및 반미·반정부 선전·선동 글들을 직영 및 해외 친북사이트에 게재하거나 국내 포털, 개인블로그, 웹사이트, SNS 등에 유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기관은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제일주의’, ‘민족대단결’, ‘민족공조’, ‘반미자주화’, ‘파쇼정권’, ‘연방제통일’ 등의 통일전선 구호를 내세워 반미·반정부·친북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174) 이른바 ‘남한혁명’을 방해하는 역량으로 국군, 대공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등을 의미한다.

175) 대남공작기관은 사이버 공간의 광범위성과 추적의 어려움을 이용해 이메일을 드보크로 활용하고 있다.

176) 사생활 보호와 익명의 인터넷 통신을 위해서 이용자와 인터넷 서버 사이에 다수의 프록시 서버를 경유하도록 구성된 서비스로서 사실상 근원지 추적이 어렵다(경찰청, 사이버 수사 용어집, 2015. 71쪽).

### Ⅲ. 탈북민 관련 전망

#### 1. 북한 주민의 지속적인 탈북 예상

##### 1) 이주형 탈북민 지속화 예상

최근 북한 주민들의 탈북 요인이 변화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정치·개인적 이유로 휴전선을 통해 직접 남하하거나 유학생들이 국내로 입국하는 형태를 보였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가장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던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등 국경지역 주민들이 식량구입을 위해 중국으로 탈출한 후, 몽골, 태국 등 제3국을 거쳐 국내로 입국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탈북 형태는 당장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경제형)’ 탈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체제의 공포정치에 대한 불안과 불만, 보다 나은 환경 하에서의 자녀교육, 장마당 활성화와 한류 유입 등의 영향으로 ‘이주형’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 즉, 오늘날 북한 주민의 탈북 형태는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이주형’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가 2016년 8월 21일 발표한 「최근 탈북 동향 및 북한 태도 평가·전망」에<sup>177)</sup> 따르면, 탈북민의 탈북 동기는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이 2001년 이전 66.7%에서 2002~2005년 57.9%, 2006~2009년 47.3%, 2010~2013년 40.1%, 2014~2016년 12.1%로 급감하고 있다. 반면, “자유 동경”,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 “가족 상봉” 등의 비율은 2001년 이전 33.3%에서 2002~2005년 42.1%, 2006~2009년 52.8%, 2010~2013년 59.8%, 2014~2016년 87.8%로 급증하고 있다.<sup>178)</sup> 그리고 재북 당시 “소득 충분·보통”이란 응답이 2001년 이전 19.4%에서 2002~2005년 14.6%, 2006~2009년 34.9%, 2010~2013년 36.8%, 2014~2016년 55.9%로 증가했다. 재북 당시 생활수준 또한 “상·중급이었다”는 응답도 2001년 이전 23.5%에서 2002~2005년 13.7%, 2006~2009년 37.5%, 2010~2013년 39.6%, 2014~2016년 66.8%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177)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수료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이다.

178) <탈북민 3만 명 시대> ①‘생계형’에서 ‘이주형’으로 전환’,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1>, 2016. 11. 15 검색), 2016. 10. 9 재인용.

이와 같이,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었던 2000년 이전에는 당장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탈북’을 선택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북 당시 소득과 생활수준이 중·상류층 인사들이 자유와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과 불만,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 등에 의한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한 ‘이주형 탈북’으로 변화되고 있다. 2016년 중국의 북한 식당종업원 및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 등 북한 중산층과 엘리트층의 ‘이주형 탈북’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2017년에도 북한 주민들 중 중·상류층이 ‘보다 나은 삶’과 ‘자유’를 찾는 ‘이주형 탈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김정은의 공포정치, 내부혼란 등의 사회 불안정에 따른 집단탈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3-6-13〉 탈북민 재북 당시 소득과 탈북 사유 비교

구분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	자유 동경·정치체제에 대한 불만·가족상봉	재북 당시 소득 충분·보통	재북 당시 소득 상·중급
2001 이전	66.7%	33.3%	19.4%	23.5%
2002~2005	57.9%	42.1%	14.6%	13.7%
2006~2009	47.5%	52.8%	34.9%	37.5%
2010~2013	40.1%	59.8%	36.8%	39.6%
2014~2016	12.1%	87.8%	55.9%	66.8%

출처 : 통일부, 최근 탈북 동향 및 북한 태도 평가·전망, 2016. 8. 21; “〈탈북민 3만 명 시대〉 ①‘생계형’에서 ‘이주형’으로 전환”, 연합뉴스, 2016. 10. 9 재정리.

## 2) 국경 탈출 경로 변화 모색

북한 주민들은 1990년 초반까지만 해도 김일성 1인 독재체제에 대한 염증과 개인적 문제 등을 이유로 휴전선이나 해상·강 등을 탈북 경로로 이용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기점으로 식량과 생필품 구입을 위해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 지역의 북·중 및 북·러 국경선을 이용해 탈북하기 시작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수심이 얇고 강폭이 좁아 비교적 도강하기 쉬웠던 압록강 상류지역 및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민가 강제철거, 북·중 접경지역 3개 사단 추가배치, 휴대전화 전파 교란 장비 및 적외선 감시 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탈북 감시를 강화하자, 179) 북한 주민들은 압록강 하류지역을 도강과 탈북 루트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탈북한 후, 중국 내륙 지방과 동남아 등 제3국을 거쳐 국내로 입국하고 있다.

179) “北, 탈북 감시 강화…카메라에 전파 교란 장비까지”, MBC 뉴스, 2016. 12. 4

북한 주민들의 탈북 경로 선택은 신변안전에 가장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경로에 매달리기보다는 북한의 주민통제, 북한과 중국의 국경경비 상황 등의 시·공간을 고려하여 신변위해 요인 가능성이 낮은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아 탈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민 위장간첩과 재입북 탈북민 또한 최근 변화되는 탈북민의 국경선 및 국내 입국 루트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 3-6-14〉 북한 주민 탈출 요인 및 경로

구분	탈북 요인	탈출 경로	탈북 빈도
1990 초반	정치적, 개인적 문제	휴전선, 해상, 강	휴전선을 통해 가장 많이 탈출
1990 중반	식량난, 생존권 차원	두만강, 백두산, 압록강, 휴전선, 해상, 강	두만강 → 백두산 → 압록강 순으로 탈출
2015 이후	정치적, 개인적, 자본주의 문화 동경	북한당국 해외취업을 위해 합법적 파견	항공기를 이용한 합법적 이동
		압록강 하류 지역	도강 → 중국

출처 : 김윤영,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청소년 보호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0. 26쪽 보완.

## 2. 탈북민 국내 입국 형태의 다변화

### 1) 탈북민 국내 입국 증가 예상

북한 주민들의 탈북 행렬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내 입국 탈북민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국내입국 탈북민이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9년 2914명 이후 북한 당국의 북·중 국경선 통제와 탈북민 처벌 강화 등으로 2011년 2706명,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5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9월 말까지 1036명의 탈북민이 입국해, 2015년 동기간 대비 857명보다 20.9%p 증가했다. 이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신 이후 처음으로 국내 입국 탈북민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6년 연말까지 국내 입국 탈북민은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016년 국내 입국 탈북민의 증가 추세를 감안한다면 2017년에도 북한 당국의 탈북민 단속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신규 탈북민과 함께 중국 등 제3국 체류 중인 탈북민의 국내 입국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3-6-15〉 탈북민 국내 입국 현황 (~ 2016. 9 기준)

구분	~199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남(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여(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합계(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여성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9 (잠정)	2015. 9 (잠정)	합계
662	591	795	404	369	305	251	213	167	8,716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823	690	21,114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036	857	29,830
77%	75%	71%	73%	76%	78%	80%	80%	80.5	71%

출처 : 통일부, 2016. 10

## 2) 해외파견 노동자의 국내 입국 예상

북한 주민들의 국내 입국은 1990년 초반까지만 해도 개별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탈북민의 국내 입국이 본격화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개인 또는 소수의 가족을 동반(1~2명 내외)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후 가족 단위로 입국하거나 동남아 난민 수용소에 대기 중인 탈북민이 집단 입국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이 근로현장을 이탈한 후, 여권을 가지고 제3국을 통해 집단 입국하고 있다.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식당(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입국한 것은 2004년 468명이 집단 입국한 후, 최대 규모이자 여권을 가지고 입국한 사례이다.<sup>180)</sup>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내<sup>181)</sup>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해외식당이 경영난을 겪는 과정에서, 종업원들은 북한당국의 무리한 상납금 요구에 대한 부담감과 한국 드라마와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 실상을 접하고 북한체제의 허구성을 알게 되면서 근로 현장을 탈출해 국내 입국을 결심했다고 한다. 2016년 5월 중순에도 중국 산시(陝西)성 웨이난(渭南)시에 있는 식당(해루오 샵브샵브) 종업원 3명은 여권이 없어 육로를 통해 중국 내륙지역과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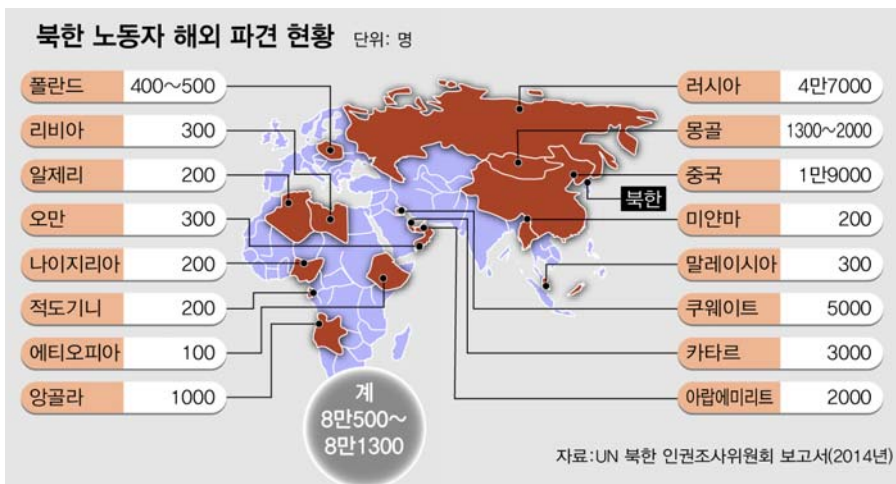
180) 2004년 정부는 동남아 국가 난민수용소에 머물던 탈북민 468명을 집단 입국시켰다. 북한은 “남조선 당국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유인납치행위이자 백주의 테러행위”라고 비난했다.

181) 정부는 해외 동포 및 여행객을 대상으로 북한식당 출입 자제를 요청했다.

후, 국내 입국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sup>182)</sup>

북한은 ‘외화벌이 노동자’를 항공기나 열차,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해외로 파견하고 있다. 세계 40~50여 개 국가에 5~10만 여명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sup>183)</sup> 최근 북한 총참모부는 외화벌이를 위해서 일반 건설 노동자들보다 통제가 쉽고 현지이탈 가능성이 낮은 공병·도로건설군단 산하 군인을 선발해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시켜 아프리카, 러시아 등지에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열악한 생활과 힘든 노동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집단 탈출한 후 국내 입국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림 3-6-8]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 현황



출처 : “자본주의 물들 위험에도, 달러벌이 8만 명 내보낸 북한”, 중앙일보, 2015. 11. 10, 18면 재인용.

최근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내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직영업체의 경영난과 무리한 상납금 부담, 열악한 생활 및 근로 환경, 임금 착취(90% 이상 상납), 감시(보위부원)와 규제 강화(외부인과 접촉 금지 등), 강도 높은 노동(하루 12~16시간 강제노동), 자본주의 문화 체

182)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동남아, 중동 등 12개 국가에 약 2000여 명의 종업원을 파견해 130여개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90% 이상이 중국에 있다. 동남아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에 있다. 북한 해외 식당에서 연간 1000만 달러(120억 원) 정도의 외화 벌이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83) 영국 가디언은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를 40여 개국 6만 5000명으로 추산했고, 북한 인권관련 단체는 중국에만 9만 여명이 넘는 등 총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해외 北근로자 15만 명(北인권단체 추정)… 北외화조달 위한 현대판 노예”, 조선일보, 2014. 11. 13).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2016. 9. 20)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규모에 대해 통일부는 중국, 러시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에 5~6만 명, 통일연구원은 20~40여 개국에 11만~12만 3000여 명으로 각기 달리 추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인력 송출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득,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 등의 요인에 의해 근로 현장을 탈출한 후 국내 입국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중·상류 및 엘리트 계층 탈북민의 국내 입국

최근 북한 외교관, 고위급, 엘리트층 등이 해외체류 현지국을 탈출하거나 탈북해 국내로 입국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연이은 국내입국은 김정은 공포정치에 따른 숙청의 두려움과 북한체제의 미래에 대한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sup>184)</sup>

북한의 태○○ 주영공사 외에 고위 외교관, 대좌급 이상 ‘인민군’ 간부와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등 엘리트 탈북민 100여 명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85)</sup> 고위급 탈북민 중에는 2016년 4월 탈북한 북한 경찰총국 대좌, 7월 홍콩에서 열린 국제 수학올림피아드 참석 도중 탈북한 수학 영재, 보위부 산하기관 무역회사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sup>186)</sup> 이러한 고위급 탈북민의 잦은 발생은 김정은 체제 붕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sup>187)</sup>

[그림 3-6-9] 북한 재외공관 및 탈북 현황



출처 : 채널 A, 2016. 11. 10 캡처.

- 184) 국정원은 2016년 10월 19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이 2015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공개 처형한데 이어서, 2016년 4(1. 6)·5차(9. 9)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안보리 제재가 강화되자 공개 처형과 숙청을 재개하여 2016년 9월까지 64명을 공개처형했다고 밝혔다.
- 185)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 자료, 2016. 10; 국가정보원이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해외 북한 주재원들의 탈북 동향을 보면 2013년 8명에 그쳤던 탈북 해외 주재원은 2014년 18명으로 급증했다. 2015년 10월까지 북한 해외 주재원 20명이 국내로 입국했다.
- 186) 고위급 탈북민 100여 명은 하나원의 입소를 거치지 않고 국정원이 특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187) 탈북민 단체인 'NK 지식인연대'가 2016년 12월 5일 밝힌 "400명 탈북민 대북 및 통일정책 설문조사 결과 언론 설명회"에 따르면, "북한 해외공관원들의 탈북이 체제 붕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314명(78.5%)이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반면, '영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81명(20.2%)에 불과했다 ("탈북민 79% 北 해외공관원 탈북, 체제붕괴에 영향 줄 것", 연합뉴스, 2016. 12. 5 재인용)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조사한 「2015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I」에 따르면, 재북 당시 직업이 교원, 연구원, 의사 등 전문직 출신 탈북민 중 한국 거주 기간이 5~10년인 경우 2.5%였지만, 1~3년 미만인 경우에는 4.7%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엘리트층 탈북민의 국내 입국이 2배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2016년 6월 중국 파견 보위부 김열단 통역요원(북한 대사관 직원)이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8월은 북한 양강도 혜산 세관원 통역요원이 각각 탈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sup>188)</sup> 최근 북한 엘리트 계층들이 세계 각국에 망명 희망 의사를 타진했지만, 북한 가족 때문에 망명을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3-6-16〉 탈북민 재북 당시 직업 현황

구분	사례 수	노동자		사무원		장사		농장원		군인		부양		전문직(교원, 연구원, 의사 등)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2015	2,419	715	32.2	180	7.6	115	6.6	153	6.3	137	5.2	91	4.7	85	3.7	
남한 거주 기간	1~3년 미만	417	126	35.3	33	9.3	33	9.9	23	5.4	21	3.7	16	5.6	16	4.7
	3~5년 미만	523	159	34.3	36	7.9	22	6.2	32	6.8	33	5.8	24	5.6	18	4.3
	5~10년 미만	1,032	328	29.9	72	6.3	51	6.2	75	6.9	61	6.1	34	3.7	32	2.5
	10년 이상	447	138	26.2	39	7.3	9	2.3	23	5.5	22	4.1	17	3.5	19	2.8

출처 : 2015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I, 남북하나재단, 2015, 117쪽 재정리

결국,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고위급 및 엘리트 계층의 탈북 영향을 받은 고위급·엘리트·해외주재관 등은 가족을 동반해 생존권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해외망명과 국내 입국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탈북민 단체인 ‘NK 지식인연대’가 2016년 12월 5일 개최한 “400명 탈북민 대북 및 통일정책 설문조사 결과 언론 설명회”에 의하면, 북한 핵심간부들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①본인과 자녀의 취업 등 진로보장(40.5%), ②고급정보 제공 시 보상금 지급(27.3%), ③북한에서의 범죄행위 처벌 면제(15%), ④통일 후 고위직 보장(8%) 등을 꼽았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sup>189)</sup> 따라서 정부는 탈북민 관련 정보가 도청되어 고위급 탈북이 무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신변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위급 탈북민의 입국 루트인 중국, 영국, 태국 등의 한국 대사관에 대한 도청 방지시스템을<sup>190)</sup> 강화해야 할 것이다.

188) “탈북 감시단 통역도 탈북”, 동아일보(<http://news.donga.com/rel/3/all/20161013/80764386/1>, 2016. 11. 10 검색), 2016. 10. 13

189) “탈북민 79% 北 해외공관원 탈북, 체제붕괴에 영향 줄 것”, 연합뉴스, 2016. 12. 5 재인용.

190) 2016년 9월 외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영국, 태국 등의 한국대사관 일부 공간(대사실 등)에는 기본적 도청방지시스템이 있지만, 실무진이 일하는 공간들은 도청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탈북

#### 4) 탈북민 국내입국 경로의 다양화

북한 및 국내의 정세 변화에 따라 탈북민의 국내 입국 형태도 변화되어 왔다. 1990년대 이전만 해도 군사분계선, 강, 해상을 통한 직접 남하를 선택했다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식량난 해결을 위해 중국으로 밀입북 했던 탈북민이 몽골이나 태국·라오스 등 동남아를 거쳐 국내로 입국했다. 이들의 국내 입국은 한국대사관이 해당 국가와 협조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해외 공관원, 노동자 등이 체류 중인 현지국가를 탈출한 후, 항공기를 통해 곧바로 국내로 입국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이 선박을 이용해서 국내로 밀입국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부족한 경화(硬貨)를 마련하고자 외화벌이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체류 중인 현지 국가의 근로 현장을 이탈한 후 항공편 등을 이용한 국내 입국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이나 중국 체류 탈북민이 해상을 이용한 밀입국도 예상된다.

〈표 3-6-17〉 탈북민 국내 입국 경로

구분	북한 탈출 경로	제3국 이동 경로	국내 입국 경로
~ 1990 초반	휴전선, 해상, 강	육상, 해상(배), 강(배, 장비)	육로, 배 등 이용 직접 남하
1990 중반	두만강, 백두산, 압록강, 휴전선, 해상, 강	육로 이용 중국 내륙 육로 이용 제3국으로 이동	중국(육로) → 제3국(육로) → 국내입국(항공)
2015 이후	중국 등지에 취업을 위해 합법적 파견(항공편, 선박) 외교관 등 고위급 인사 현지 국가 탈출 후 항공편 이용	여권을 통한 항공기 이용 (중국 등 현지국가 공항 → 제3국 공항)	중국 등 현지국가(항공) → 제3국(항공) → 국내입국(항공)

### 3. 북한의 탈북민 대상 공작활동 가능성 높아

#### 1) 탈북민 포섭 후 위장 간첩 남파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은 탈북민을 체포·납치하여 회유와 협박을 통해 소정의 공작원 교육을 시켜 남파한 후 대남 공작활동을 수행토록 하거나, 대남 공작기관이 직접

감시단 통역도 탈북”, 동아일보, 2016. 10. 13).

양성한 공작원을 탈북민으로 위장시켜 납파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제출한 국감자료(2016. 9. 26)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간 우리 공안당국이 검거한 간첩 13명 중 92%인 12명이 위장 탈북민 간첩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우리 군의 정보와 동향자료를 수집하던 중 검거되었다. 북한은 2012년의 경우만 해도 6명의 위장 탈북민 간첩을 납파시키는 등 지속적인 위장 탈북민 간첩 납파공작을 진행하고 있다.<sup>191)</sup> 위장 탈북민 간첩은 신변보호경찰관의 치안 수요를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첫째,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이 직접 양성한 간첩을 탈북민으로 위장시켜 납파시킨 후, 합법적 신분을 취득하면 대남공작 활동을 지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북한이 탈주민보호센터의 행정조사를 통과하기 위한 사전 보위 교육을 받는다. 국내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일반 탈북민으로 위장 자수하지만, 행정조사 과정에서 대다수가 적발되고 일부 공작원은 행정조사를 무사히 통과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사회정착 생활을 하면서 간첩활동을 수행하다 검거되고 있다.

동○○·김○○ 간첩사건(2010)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찰국(현 정찰총국) 전투원(소좌)인 동○○·김○○은 717부대에서 대남 공작원 교육을 받은 후, 2009년 11월 황○○ 암살지령을 받고 탈북민으로 위장하여 중국 → 라오스 → 태국을 거쳐 국내잠입에 성공했으나 2010년 8월 행정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김○○(2010)의 경우는 행정조사 과정을 통과한 후, 사회 정착과정에서 대남공작원으로 활동하다 검거된 사례이다.

둘째, 국내 정착 탈북민 중에서 사업 목적상 중국을 오가는 과정에서 재중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된 후, 회유와 협박을 통해 소정의 공작원 기본교육을 받고 재입국한 후 대남공작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들은 주로 한국인 대북사업과 대북교류 희망자 등을 중국으로 유인·포섭, 전략물자의 은밀한 구입, 대북교류 희망자를 유인해 재중 공작원을 접촉하도록 하는 등의 지령을 받고 활동할 것이다.

1989년 체포된 보위사령부 소속 납파간첩 한○○은 전향 후, 상당한 부를 쌓고 생활하다가 수십 차례의 중국 관광 과정에서 1996년 정찰국 소속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밀입북했다. 그는 공작원 교육을 받은 후 다시 납파되어 간첩활동을 하던 중 2010년

191) 합동참모부, “북한 침투·국지 도발”, 2016 국정감사 자료, 2016. 9. 26; “軍 침투 간첩 92%가 위장 탈북자”,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7/2016092700320.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7/2016092700320.html), 2016. 11. 23 검색), 2016. 9. 27

체포되었다. 2011년 9월 체포된 위장 탈북민 간첩 안○○은 2010년 몽골을 왕래하며 대북사업 논의 과정에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공작원 교육을 받고 남파되었다.

셋째, 강제복송 탈북민 중에서 정보적 가치가 있는 자의 가족을 볼모로 하거나 처벌 면책을 미끼로 포섭해 대남공작원 교육을 시킨 후 탈북민으로 위장시켜 남파할 것이다. 위장 탈북민 간첩 김○○(2010)은 보위부 재중 공작원 활동 과정에서 3차에 걸쳐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강제 복송되었으나, 신분세탁을 통해 중국으로 다시 밀입국해 공작원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 2) 탈북민 대상 재입북 포섭

최근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은 김정은의 ‘인민애’ 이미지 연출과 김정은 체제의 찬양, 대남 적개심 고취 등 내부결속을 다지고 주민들의 탈북을 방지하고자, 국내 정착 탈북민 중에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상자의 어려움을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재입북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 탈북민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등을 자극해 재입북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은 국내 정착 탈북민 중에서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사회정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포섭해 자진 입북을 선택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공작원과 연계된 탈북 브로커에게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의 소식을 듣고 재입북을 선택하고 있다.

둘째, 국내 입국 탈북민 중에서 사회부적응 불만 자를 포섭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은 국내 정착 탈북민 중에서 사회적응에 실패하거나, 일정한 직업 없이 부채로 인해 사회적 불만이 많은 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가족을 볼모로 재입북을 유도하는 공작활동을 하고 있다. 2013년 3월 연평도에서 배를 타고 재입북한 리○○의 경우 아버지와 형의 갈등관계, 임대주택을 둘러싼 돈 문제 등에 의한 부적응으로 재입북 했다.<sup>192)</sup> 탈북민 박○○은 2011년 10월 국내입국 후 홀로 정착생활을 하다가 북한 보위부의 회유로 2013년 7월 재입북한 사례이다.

셋째, 북한의 가족을 볼모로 한 탈북민 포섭공작이 예상된다. 국내 정착 탈북민 박

192) 자유아시아 방송, 2014. 8. 19; “北 당국, “보위부원, 올해 탈북자 1명씩 재입북시켜야”, NK조선(<http://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735>, 2016. 6. 10 검색), 2014. 8. 19

○○(2012. 6)의 경우,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을 볼모로 한 북한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재입북한 대표적인 사례이다.<sup>193)</sup> 탈북민 김○○(2013)은 북한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중국 체류 중 재중 보위부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재입북했다.

넷째,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상봉이나 사업 목적상 중국에 방문한 탈북민을 강제 납치해 재입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민 강○의 경우, 2005년 중국을 방문 중 북한 보위부에 납치되어 강제 복송된 사례이다.

다섯째, 국내정착 탈북민이 재입북한 후 재탈북하여 재입국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입국 후 사회 정착에 어느 정도 성공하여 금전적인 여유가 생긴 탈북민 가운데,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그들을 데리러 재입북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들 중에서는 재입북 후 북한의 보위부 등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북한체제 선전도구로 활용되다 재탈북해 재입국한다. 2010년 10월 검거된 탈북민 박○○은 국내정착 과정에서 재입북한 후 다시 탈북하여 재입국한 사례이다.

여섯째, 중국 등 해외체류 탈북민을 납치해 강제복송한 후 회유와 협박을 통해 ‘납한 간첩’이라는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체제 유지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입국 후 무역과 여행 등을 위해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을 납치해 강제복송 시킨 후, 한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간첩이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사회 비방과 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7월 15일 탈북민 고○○을 납치해 강제복송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보기관이 주도한 아동 납치에 연루된 탈북자를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고○○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 납치 미수라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강변하기도 했다.<sup>194)</sup>

## 4. 신변보호를 위한 치안 수요 증가 예상

### 1) 범죄 늪에 빠져들 가능성 높아

2016년 9월 20일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인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도 탈북민의 범죄는 지속화되어 치안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193) 박○○은 평양 음악무용대학 교원이었던 아들 가족을 강제 추방하고, 또 가족을 죽이겠다는 북한의 협박에 시달리다 재입북한 것으로 전해졌다.

194) “북한 韓간첩으로 활동한 탈북자 체포…아동 납치 연루”, 연합뉴스, 2016. 7. 16

〈표 3-6-18〉 북한이탈주민 수용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남자	여자	비고
2011	51	47	4	
2012	68	65	3	
2013	87	78	9	
2014	99	87	12	
2015	112	97	15	
2016	129	111	18	2016. 8. 26 기준
연평균 증가율	20%	19%	35%	
지난 5년 대비 증가율	153%	136%	350%	

출처 :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2016. 9. 20); 강창일 의원, “국감 보도자료”, 2016. 9. 21 재인용.

첫째, 여성 탈북민의 범죄율이 남성 탈북민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탈북민은 2011년 51명에서 2016년 8월 26일 기준 129명으로 153%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지난 5년간 136% 증가한 반면, 여성은 350%가 증가해 탈북여성의 수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정착 탈북민 중 여성의 비율이 71%인 점에서 찾을 수 있다. 2016년 1~9월의 경우 국내입국 탈북여성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국내 입국 여성 탈북민이 늘어날수록 탈북여성의 사회일탈에 따른 범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폭력과 마약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2011년 대비 2016년 8월 말 현재 폭력 400%, 마약류 153%, 사기·횡령 117%, 강도 100%, 절도 67%, 살인 38% 순으로 증가했다. 2016년 8월 말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탈북민 수는 마약류(38명) 범죄가 가장 많은데 이어서 폭력(15명), 사기·횡령(13명), 살인(11명), 절도(5명), 강도(4명)순으로 나타났다.

〈표 3-6-19〉에서와 같이, 탈북민의 범죄 중 2011년 대비 2016년을 보면 폭력과 마약 범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폭력범죄가 높은 것은 탈북민 중 개인 간의 문제가 발생하면 북한에서 체득한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하에<sup>195)</sup> 사법기관보다는 폭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195) 북한 사회에서는 폭력은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다.

〈표 3-6-19〉 북한이탈주민 수용자 범죄 유형별 증가율 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절도	사기형령	강도	살인	폭력	마약류	기타
2011	51	3	6	2	8	3	15	14
2012	68	2	16	2	10	4	11	23
2013	87	3	16	3	9	13	12	31
2014	99	7	13	3	11	11	17	37
2015	112	5	12	6	12	14	28	35
2016	129	5	13	4	11	15	38	43
2011 대비 2016. 8월 말 증가율	153%	67%	117%	100%	38%	400%	153%	207%

출처 : 국정감사 자료(2016. 9. 20); 강창일 의원, “국감 보도자료”, 2016. 9. 21

마약범죄는 재북 당시 의료시설 낙후와 의약품 부족에 의한 아편과 같은 마약류를 대체 의약품용으로 각종 질환 치료에 사용했던 경험과 마약밀매를 통해 쉽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한탕주의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sup>196)</sup> 이러한 범죄 통계가 2016년 8월 말 현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탈북민의 폭력·마약 범죄 등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탈북민의 범죄는 북한에서 체득한 잘못된 습관과 남북문화 차이, 사회 정착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생활고와 향수병에 의한 사회 부적응 등이 중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때문에 사회 부적응 탈북민이 증가할수록 범죄의 늪에 빠져드는 탈북민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해 탈북민의 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법률 교육과 애로사항 상담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2) 탈북여성의 사회정착 어려움

2016년 9월 말 현재 국내 입국 탈북민 3만여 명 중 탈북여성이 71%(2만 821명)에 이르고 있다. 탈북여성의 평균 나이는 40세이며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0~40대가 78.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육아와 가사, 학업, 취업, 경제 등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동시에 안고 있다.

196) 탈북민의 재북 당시 마약접촉 경험에 대한 탈북민 설문조사 연도별 교차 분석 결과를 보면, 1990년대 4.7%, 2000년대 7.0%에 불과하였으나 2010~2012년 13.6%, 2013년 26.8%, 2014년 25.0%, 2015년 36.7%로 상당히 빠른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최근 탈북민의 경우 북한 주민들의 마약사용이 높은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양옥경, “북한의 마약 사용 현황과 과제”, 북한 주민의 마약 사용 실태 현황과 과제,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마약감시기구 세미나 자료집, 2016. 12. 1, 9쪽).

〈표 3-6-20〉 탈북여성 연령대별 입국 현황 (2016. 9 기준)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명	619	1,901	5,972	6,585	3,701	1,127	916	20,821
%	3.0%	9.1%	28.7%	31.6%	17.8%	5.4%	4.4%	100%
			78.1%					

※ 입국 당시 연령 기준이며,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일부 인원은 제외된 수치로 입국인원과 차이가 있다.

출처 : 통일부, 2016. 9

2015년 기준 탈북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5.6%, 고용률은 50.6%로 탈북남성의 69.7%, 65.5%보다 낮아 탈북여성의 경제활동 상태가 탈북남성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97)</sup> 또한 탈북여성은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답한 것이 89.8%로 탈북남성(73.3%)보다 높게 나타났다.<sup>198)</sup>

탈북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은 가정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회정착 탈북여성의 평균 월급은 136만 4000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 229만 7000원의 59%, 탈북민 평균 154만 6000원의 88%에 머물고 있다.<sup>199)</sup> 탈북여성의 평균 직장 근속기간도 15.9개월로 탈북남성의 17.8개월에 미치지 못하고,<sup>200)</sup> 일반국민 평균 68개월의<sup>201)</sup> 20%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태이다.

탈북여성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겪는 어려움은 ‘육아 부담’(36.9%),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적 관행’(17.7%), ‘가사 부담’(12.7%) 순으로 나타났다.<sup>202)</sup> 탈북여성의 육아 부담(30대의 경우 48.8%)과 사회 편견 및 차별적 관행 때문에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해 탈북여성의 취업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결국, 국내 정착 탈북여성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취업 욕구가 강하지만 육아 부담,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취업이 쉽지 않고 취업을 하더라도 적은 보수, 짧은 근속기간 등에 의한 고용불안 등이 중첩되어 사회정착 생활이 어려워지

197) 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2015. 136쪽.

198) 탈북여성은 일반국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52.1%, 고용률 50.4%보다 높게 나타났다(2015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I, 남북하나재단, 2015. 348쪽)

199) 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186쪽.

200) 위의 보고서, 189쪽.

201) “〈표 IV-4〉 근로형태별 평균 근속기간 추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2015. 8

202) 2015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I, 354쪽.

는 과정에서 범죄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들 또한 경제적 빈곤이 악순환되는 과정에서 학교 및 사회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여 사회일탈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30~40대 탈북여성의 사회정착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 3) 탈북민 재입북 기도자 발생

2017년 한 해에도 국내 정착 탈북민 중에서 재입북을 시도하다 검거되는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 정착 탈북민 중에서 재입북을 기도하다 탈출 예비 혐의로 검거되는 탈북민이 2013년부터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13명에 이르고 있다. 2016년의 경우 6월 말까지 4명이 검거되었다.<sup>203)</sup> 이들은 국내 정착에 실패하고 일용직 또는 유흥업소(종업원) 등을 전전하거나 절도죄 등을 저질러 도피생활 등을 하다가 주요 시설을 탐지한 정보를 가지고 재입북을 기도하다 검거되었다.

공안당국은 2015년 9월 8일 채무에 시달리던 끝에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로 탈북민 이○○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그는 2008년 태국을 통해 입국한 후, 2015년 6월 모스크바행 항공권을 구입한 뒤 러시아를 거쳐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이다. 2016년 3월 17일 김○○은 직업 없이 유흥업소의 종업원 생활을 하다가 재입북을 위해 인천공항을 거쳐 중국으로 가기 위해 항공권 구입 과정에서 검거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 입국 탈북민 증가와 사회 부적응 탈북민이 증가하면 할수록 재입북 기도 탈북민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최근 재입북 기도 혐의자의 잦은 검거는 신변보호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신변보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4) 북한 대남 공작기관의 탈북민 강제 납치 및 테러

최근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이 중국 단둥과 선양을 비롯해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지에 10여개 이상의 테러조직을 파견해 우리 국민을 겨냥한 납치 공작을 기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해외 파견 테러요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한국공관과 한인회 사무실을 테러 목표로 할당한 것으로 전해졌다.<sup>204)</sup>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

203) 경찰청 자료, 2016. 6

204) “北 테러조 10여 개 파견…납치 공작 기도”, KBS 북한 뉴스, KBS 통일방송연구, 2016. 7. 26

사 등에 의해 북·중관계가 악화되어 중국 공안당국의 협조 하에 탈북민 검거가 어려워지자, 현지 폭력조직을 동원해 납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하면, 탈북민과 탈북단체의 김정은 일가 및 체제에 대한 지탄과 실상 폭로 등의 반복 선전물 살포 등에 대해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성명’, ‘공개통첩장’ 등을 동원하여 ‘보복’ 등의 신변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부터 반복활동 탈북민 대상 비난 선전물을 ‘우리민족끼리’<sup>205)</sup> 등에 시리즈 형식으로 반복 게재해 살해협박 등의 신변위협을 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의 경우, “쓰레기는 제때에 쓸어 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10편의 기획물(2015. 3. 31~4. 27)을 보도하며, 박○○, 리○○, 조○○, 강○○, 정○○, 김○○, 장○○, 강○○ 등에 대한 실명을 거론하며 신변위협을 했다.

2016년 4월 중국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국내로 입국하자, 김정은이 북·중 접경도시 한국인 납치, ‘엘리트 탈북민 유인’, ‘탈북민 100명 체포’ 등을 지시하자, 보위부는 북·중 접경도시에 보위부 요원들을 대거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sup>206)</sup> 결국, 북한이 최근 탈북민에 대한 보복테러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어 탈북민의 신변보호를 위한 치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북한의 남파 공작원에 의해 발생한 탈북민 살해, 테러 등의 사례들은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없다.

〈표 3-6-21〉 탈북민 테러 및 신변위협 사례

북한의 테러 기도		국내의 신변위협	
이○○ 피 살	1997년 2월 거주지 아파트에서 대외 연락부 공작원 ‘순호조(組)’ 총격을 받고 사망	황○○ 소포협박	2006년 12월 김○○이 황○○ 사무실로 손도끼 등의 협박소포 배달
황○○ 암살기도	2010년 암살지령을 받은 간첩 김○○, 동○○(4월) 및 이○○(10월)은 탈북민으로 위장해 입국하다 적발	김○○ 협박문건	2013년 10월 ‘자유북한방송’ 사무실로 김○○을 협박하는 팩스문건 발송
		박○○ 협박소포	2013년 11월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로 죽은 쥐 3마리가 들어있는 협박소포 배달
박○○ 암살기도	2011년 9월 3일 ‘정찰총국’ 지령을 받은 탈북민 안○○이 박○○ 살해 기도하다 검거	강○○ 협박소포	2015년 3월 23일 북한전략센터 대표 강○○에게 협박 물품(편지, 손도끼) 택배 발송

205) 북한 선전 사이트(2003 개설)로 통일전선부 산하 ‘조평통(조국통일평화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김정은 등 수뇌부 찬양, 선군정치 선전, 반제국주의 및 반정부 성향 선전을 게재, 해킹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206) “김정은 13명 납치한 남에 보복 지시”, 문화일보, 2016. 5. 17

## 5) 대북 송금의 일반화 예상

국내 입국 탈북민이 사회에 정착하면,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등을 달래고자 북한 가족에게 ‘대북 송금 브로커’를 통해 송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의 재북 가족 대상 송금 규모는 연간 최소 100억 원에서<sup>207)</sup> 최대 300억 원(월 평균 2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08)</sup>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발행한 「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에 의하면 국내 정착 탈북민 중 64%가 재북 가족에게 송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09)</sup>

탈북민의 대북 송금은 양강도 해산사시를 거쳐 접경지역 시·군 및 평양·남포·원산·개성 거주의 북한 가족에게 전달되고 있다. 송금은 주로 탈북민 자신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착지원금을 아끼거나 월급 등을 모아서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대출 등의 빚을 내어 송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sup>210)</sup>

그동안 탈북민의 대북 송금 과정은 재북 화교나 방북 중국동포(조선족) 등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은 국내 정착 탈북민에 의한 대북 송금이 주민동요 등 체제유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sup>211)</sup> 2015년 초 ‘검은 돈(송금) 차단’을 지시하는 등 대북송금을 차단했다. 그러자 북한인 돈 주와 중국인 송금브로커가 연계한 송금형태로 변화되고 있다.<sup>212)</sup> 탈북민이 송금 브로커에게 송금을 의뢰하면, 송금 브로커는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액의 30% 이상을 공제한 후 북한

207)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16년 4월 1일 “탈북자가 북한 가족에게 보내는 돈은 연간 약 1000만 달러로 파악되었다”고 주장했다(“北, 탈북자 송금 전면 차단... 연 1000만 달러 규모”, 국민일보, 2016. 4. 1 재인용).

208) 2015년 국내 탈북민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한 결과 재북 가족에 대한 송금비율이 2012년 47.4%에서 2015년은 64%로 높아졌다. 송금 횟수는 연평균 1.56회, 1회 송금 시 평균 2000달러 정도로 나타났다. 국내 정착 탈북민 2만 9000여 명 중 성인 1만 명이 연간 2000달러를 재북 가족에게 송금한다면 연간 2000만 달러 이상이 송금되고 있다(윤여상·임순희, 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북한인권정보센터·NK소셜리서치, 2016).

209) 탈북민은 연평균 1000달러(116만 원)를 송금한 경우(47.8%)가 가장 많았고, 2000달러(26.5%)와 3000달러(14.2%), 4000달러(7%)가 뒤를 이었다. 북한 가족들에게 송금된 자금은 생계비(67%)와 장사 밀천(20.8%), 주택구매(4%), 탈북자금(4.2%)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응답자들은 추정했다(“400명 탈북민 대북 및 통일정책 설문조사 결과 언론 설명회”, NK 지식인연대, 2016. 12. 5; “탈북민 79% 北 해외공관원 탈북, 체제붕괴에 영향 줄 것”, 연합뉴스, 2016. 12. 5 재인용).

210) 임순희의 경우 2016년 6월 17일 19시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약칭 VOA) 방송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조금 더 힘들고 어렵지만 일하면서 저축했다 모아 둔 돈을, 혹은 가끔 빚을 내더라도 가족에게 보내는 케이스들은 여전히 많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211)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16년 7월 5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안전보위부가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간첩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300여명의 주민을 체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212) 탈북민의 증언에 의하면, 최근 국경 접경지역 대자본 돈주가 중국 대방(거래 상대방의 북한식 표현)·전환거간꾼·송금브로커·돈장사꾼(북에서 지역 간 송금을 대행하는 업자)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가족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형식이다.

결국, 국내 정착 탈북민들의 재북 가족에 대한 경쟁적인 송금 형태가 이루어는 과정에서 사회 정착지원금마저 대북송금으로 전용될 경우, 경제적 빈곤의 악순환에 의한 범죄, 재입북, 해외 위장 망명, 북한의 대남공작원 포섭 등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어 치안수요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6) 신변보호경찰관 수요 증가 예상

2016년 9월 말 현재 신변보호경찰관 841명이 2만 9830명의 탈북민 신변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탈북민은 2007년(8855명, 2007. 1. 31) 이후 10년간 233.6% 급증한 반면, 신변보호경찰관은 2007년(704명) 이후 10년간 19.5%(137명)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7년의 경우 신변보호경찰관 1명이 12.6명의 탈북민을 보호했다면 2016년은 35.5명을 담당하고 있어 신변보호대상자가 2.8배 이상 증가해 탈북민 증가에 비하면 신변보호경찰관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이 또한 2015년부터 시험을 통한 보안경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현재 수준으로 충원된 것이다.

신변보호경찰관 1인당 담당 탈북민은 서울 ○○경찰서의 경우 50여명, 인천 ○○경찰서의 경우는 90여명을 담당하고 있다. 심지어 충북 ○○경찰서의 경우 신변보호경찰관 1명이 107명을 보호하기도 한다. 이는 전국 251개 경찰서 중 보안과가 있는 곳은 41개 경찰서에 불과하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sup>213)</sup> 신변보호대상자 ‘가급’의 경우 신변보호경찰관 1명 이상이 직접·상시 보호하고, ‘나’급 또한 신변보호경찰관 1명을 지정하여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변보호경찰관의 수요는 더 필요하다. 또한 최근 북한의 탈북민 대상 보복테러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어 신변보호경찰관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이외에도 신변보호경찰관은 보안 경찰관으로서의 안보와 관련한 업무를 병행해야하기 때문에 탈북민의 신변보호 업무에 전종할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신변보호경찰관은 탈북민과 접촉이 잦은 과정에서 탈북민의 신변보호 임무 외에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취업알선, 장학금 지급, 교육기회 제공, 문화 체험, 민·형사상 상담 등 그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정착지원 활동까지 담당한다. 이로 인해 신변보호경찰관은 보안경찰

213) 경찰청, 2015 경찰백서, 2015. 346쪽.

관으로서의 광범위한 업무 수행과 함께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탈북민의 신변보호가 형식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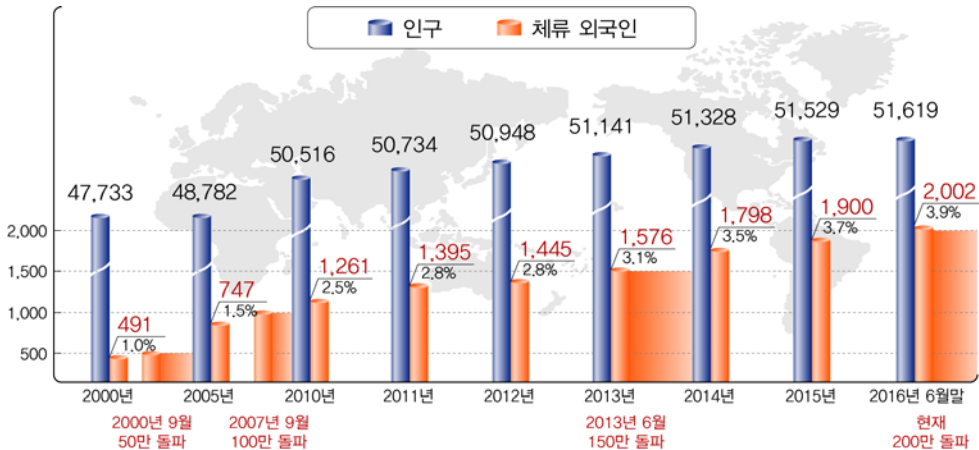
결국, 신변보호경찰관은 1인당 신변보호 대상자 증가와 보안 경찰관으로 기본적인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위장 탈북민 간첩 색출, 재입북 탈북민의 예후 확인 및 차단, 해외망명 등을 비롯해 탈북민의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찾아 예방하는데 필요한 치안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IV. 외사 분야 전망

### 1. 2021년 체류외국인 300만 명 증가 전망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체류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sup>214)</sup> 인구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2013년 약 3.1%, 2014년 3.5%, 2015년 3.6%를 차지하였다.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최초로 2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하고, 2000년 50만 명, 2007년에 1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불과 9년 만에 그 두 배인 2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3-6-10] 국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현황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

위와 같은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체류외국인이 연평균 8%씩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향후 5년 후인 2021년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서고,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OECD 평균인 5.7%에 가까운 수치이다.<sup>215)</sup> 이와 더불어 2012년 이후, 외국인 범죄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14) 체류 외국인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 및 90일 미만 체류할 목적의 단기체류자를 포함한 총 국내 체류 외국인을 의미한다.

215) OECD 국가의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프랑스(6%), 캐나다(6%), 영국(8%) 등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 진입, 향후 5년 내 300만 명 전망(법무부 보도자료)", 2016. 7. 27

〈표 3-6-22〉 체류외국인 및 외국인 범죄자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9
체류외국인	1,261,415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2,034,878
외국인범죄	22,543	26,915	24,379	26,663	30,684	38,355	32,893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 경찰청(2016)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50.6%), 미국(7.8%), 베트남(7.2%), 태국(4.6%), 필리핀(2.7%), 우즈베키스탄(2.6%)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해 볼 때 미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비중은 감소한 대신 중국의 비중이 대폭 높아졌으며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의 비중도 증가하였다.<sup>216)</sup>

특히, 국내에서 91일 이상 거주하는 장기 체류외국인은 2000년 21만 9962명에서 2016년 6월 말 기준, 148만 1603명으로 그 수는 약 7배 증가하였다. 전체 체류외국인 중 장기 체류 외국인의 비중도 44.8%에서 74.0%로 단기 체류 외국인을 훨씬 초과하였다.

장기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의 경우, 중국(54.5%), 베트남(8.8%), 미국(4.7%), 우즈베키스탄(3.1%), 필리핀(3.0%), 캄보디아(2.9%) 순으로 나타나 중국과 베트남의 비중이 커진 반면, 미국과 대만의 비중은 작아졌다.<sup>217)</sup>

216) 2000년의 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32.5%), 미국 (17.8%), 필리핀 (5.7%), 일본 (5.3%), 대만 (4.9%), 인도네시아 (4.1%) 순이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 진입, 향후 5년 내 300만 명 전망(법무부 보도자료)”, 2016. 7. 27

217) 2000년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26.8%), 미국(13.9%), 대만(10.5%), 인도네시아(7.6%), 필리핀 (7.3%), 베트남(7.1%) 순이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 진입, 향후 5년 내 300만 명 전망(법무부 보도자료)”, 2016. 7. 27

[그림 3-6-11]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

## 2. 한류에 따른 유학과 취업 등 체류외국인 지속 증가 예상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원인은 다양하다. 그 중 중국인 체류자의 증가, 중국동포들의 취업 등 취업 외국인의 증가, 결혼을 통한 이민자의 증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0년 중국인 장기 체류자는 5만 8984명이었으나, 2016년 6월 기준 80만 7076명으로 약 14배 증가하였다. 이는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와 함께 점차 증가하였고, 2007년 3월 4일부터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중국 동포의 국내 체류가 급속히 증가한 것이 중국인 장기 체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 취업을 통한 체류 외국인인 2000년 2만 538명에서 2016년 6월 기준, 60만 8867명으로 약 30배 증가하였다. 2004년 8월 시행된 고용허가제<sup>218)</sup> 도입으로 비전문 취업이 27만 4493명, 2007년 3월 시행된 방문 취업 도입으로 27만 1112명이 체류하고 있어 취업을 통한 체류외국인 증가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교수, 연구, 기술지도, 예술 등 전문 인력 자격은 2000년 1만 8470명에서 2016년 6월 기준, 4만 8273명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는 2001년 2만 5182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6월 기준 15만

218) 외국인 고용허가제라 함은 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로 2004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취업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고, 표준근로계약 체결, 보증보험, 귀국비용·상해보험(근로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1820명으로 약 6배 증가하였다. 2001년 결혼이민자는 중국 50.5%, 일본 23.3%, 필리핀 12.1% 순으로 89개 국가에서 온 2만 5182명이었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중국이 37.9%로 가장 많고, 베트남 27.2%, 일본 8.5% 등의 순으로 145개국에서 15만 182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19)</sup>

외국인 유학생 수도 2000년 4015명에서 2015년 9만 6357명에서 2016년 9월 12만 2082명으로 30배 증가하였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은 학위과정 뿐 아니라 어학연수원 등 비학위과정 유학생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유학생은 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 등 순으로 172개국에서 오고 있다.

〈표 3-6-23〉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 9	2016. 9
합 계	88,468	84,711	81,847	86,410	96,357	102,117	122,082
유 학(D-2)	68,039	64,030	60,466	61,257	66,334	73,909	85,473
한국어연수(D-4·1)	20,429	20,681	21,381	25,138	30,017	28,202	36,597
외국어연수(D-4·7)	-	-	-	15	6	6	12
전년대비 증감률	1.1%	-4.2%	-3.4%	5.6%	11.5%	-	19.6%

출처 : 경찰청 (201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

장기 체류외국인의 거주 지역은 경기도, 서울, 경상남도, 인천 등의 순으로 수도권에 전체 장기 체류외국인의 65.1%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0일 이내 체류하는 단기 체류외국인은 52만 225명으로 중국 39.4%, 미국 16.6%, 태국 12.5%, 몽골 2.8%, 일본 2.7%, 베트남 2.5% 순으로 나타났다. 단기 체류외국인의 주요 증가 원인은 중국 관광객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sup>220)</sup>

이러한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는 외국 관광객 유치 등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장기 체류외국인의 증가로 국가와 기업이 필요한 해외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를 통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

219) 2016년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는 11만 683명이다.

220) 단기체류 중국인은 2000년 10만 491명에서 현재 20만 5197명으로 약 2배 증가하였고, 연간 중국인 입국자 수도 2000년 27만 9572명에서 2015년 615만 4730명으로 약 22배 증가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 진입, 향후 5년 내 300만 명 전망(법무부 보도자료)”, 2016. 7. 27

그러나 단기 체류외국인의 경우 제주도를 비롯한 대표적 관광지에서의 일탈 범죄 행위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최근 사례로 2016년 9월 17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60대 여성의 피습사건으로 체류외국인에 의한 범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sup>221)</sup>

장기 체류외국인들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외국인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소득층에 속하고 있어 언제든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 3. 지역에 따른 외국인 범죄 추세

체류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대구 및 울산을 제외한 전국에서 외국인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 및 대전, 광주에서 외국인 범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표 3-6-24〉 체류외국인 지역별 범죄 발생 증감 추이

(단위 : 명)

구분 기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4	9,245	1,045	934	1,675	368	300	858	10,069	359	816	1,247	484	491	850	1,597	333
2015	11,257	1,171	937	2,010	467	412	1,174	12,620	383	990	1,601	512	778	1,562	2,079	393
2015.8	7,388	761	658	1,294	291	273	747	8,164	230	605	1,012	351	504	955	1,344	258
2016.8	7,663	867	622	1,311	406	395	681	10,846	282	770	1,015	473	577	1,136	1,708	397
전년대비 (%)	3.7	13.9	-5.5	1.3	39.5	44.7	-8.8	32.9	22.6	27.3	0.3	34.8	14.5	19.0	27.1	53.9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 경찰청(2016)

제주의 경우 단기 체류외국인 여행객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고, 그 밖에 지역에서의 범죄율은 취업을 통한 장기 체류외국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의 외국인 범죄 통계에 의하면, 2015년 제주도의 외국인 범죄는 393건으로 인구수 대비 범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sup>222)</sup> 제주도의 경우 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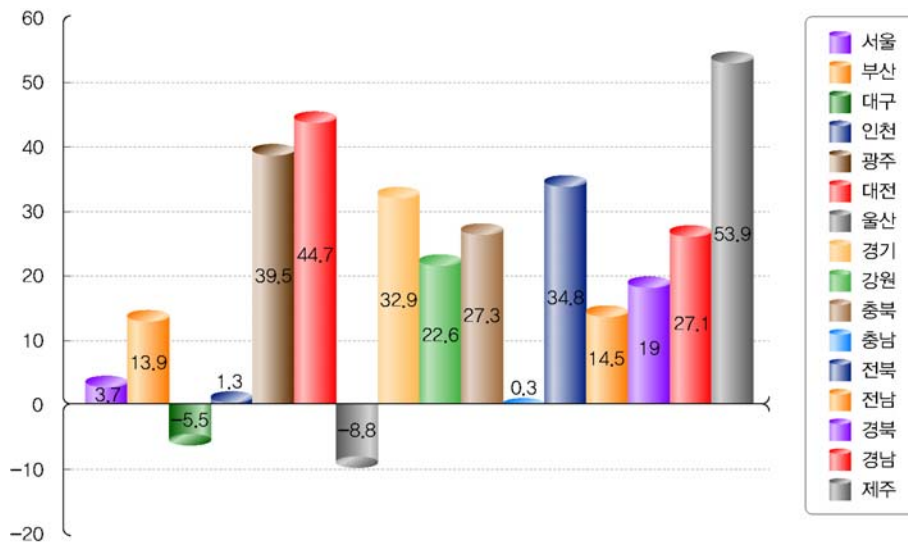
221) 제주지방경찰청에 의하면, 2016년 7월말 기준으로 제주의 외국인범죄는 총 347명으로 그중 중국인이 69.2%, 기타 외국인이 30.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1년 무비자 입국자는 2011년 15만 3000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62만 9000명으로 4.2배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인 범죄의 경우, 2011년 58건에서 2015년에는 260건으로 405배나 증가하였다.

자 입국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는 2002년부터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적의 외국인은 관광 및 통관 등의 목적으로 제주지역으로 직접 도착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증을 가지지 않고 30일의 체류기간 동안 제주도에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는 62만 9724명으로, 중국인이 62만 3521명(99.0%)에 달했다. 최근 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국인 범죄가 끊이지 않자, 무비자(무사증)입국 제도의 폐지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sup>223)</sup>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 중 상당수가 교통위반 등의 경범죄에 해당하고 있으나, 점차살인 등 강력범죄와 지능범죄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7월까지 제주도에 들어온 무비자 외국인인 54만 8205명으로 이중 54만 4775명(99.4%)이 중국인이었다.

[그림 3-6-12] 체류 외국인 지역별 범죄 발생 증감 추이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 경찰청(2016)

222) “아름다운 우리 제주도가 ‘위험’하다”, 노컷뉴스 2016. 1. 13 (<http://v.media.daum.net/v/20160113111609456> 2016. 11. 23 검색)

223)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99%는 중국인.. 연간 60만명”, 헤럴드 경제, 2016. 9. 19 (<http://v.media.daum.net/v/20160919152906182> 2016. 11. 23 검색)

## 4. 치안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강도·도박·지능범죄 감소 전망

외국인 범죄 중 강도 발생 원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sup>224)</sup> 강도와 같은 유형의 재산범죄는 불법체류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의 실업률과 많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8월 98건 대비 29.6% 감소하여 2016년 8월에는 69건으로 줄어든 원인으로 법무부가 올해 9월까지 시행한 ‘자진출국자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제도’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자 비중이 10.6%까지 감소한 것이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감소 추세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변화에 불과하고, 나아가 재산범죄는 외국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 비율보다 내국민을 대상으로 할 우려가 높은 범죄이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표 3-6-25] 체류 외국인 강도·도박·지능범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 도	강도	도박	지능범
2011	157	2,936	3,549
2012	188	1,000	3,187
2013	139	809	3,353
2014	87	791	4,045
2015	139	961	5,465
<b>2015.9</b>	<b>110</b>	<b>771</b>	<b>4,039</b>
<b>2016.9</b>	<b>77</b>	<b>542</b>	<b>3,747</b>
<b>전년대비(%)</b>	<b>-30.0</b>	<b>-29.7</b>	<b>-7.2</b>

출처 : 경찰청(2016)

지난 몇 년간 피해자가 급증하고 사회 문제화 된 보이스피싱 범죄 때문에 2015년까지 해마다 지능범죄가 급증하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 및 예방 홍보 활동으로 올해부터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등의 지능범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첨단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내용의 메일 속에 악성코드를 담아 사용자가 메일을 확인하게 되면 랜섬웨어<sup>225)</sup>에 감염되어 사용자 컴퓨터를 장악하여 금

224) “해고된 뒤 생활고 불법체류자 강도·살인”, 연합뉴스, 2016. 7. 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3/0200000000AKR20160713156300053.HTML?from=search>, 2016. 11. 23 검색)

225)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잠입해 내부 문서나 스프레드시트, 그림파일 등을 암호화해 열지 못하도록 만든 후 돈을 보내주면 해독용 열쇠 프로그램을 전송해 준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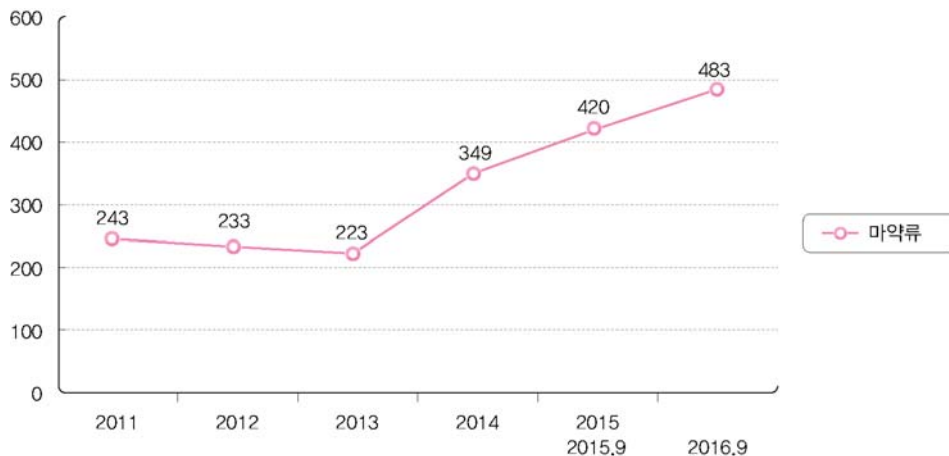
품을 요구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범죄의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검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므로,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대처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이 중요하다.

체류외국인에 의한 도박범죄는 2011년 이후 감소세에 있으나 이는 특별검거기간 운용 등 경찰의 집중단속 여부에 따라 좌우된 결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간의 검거자수의 감소 결과를 가지고 체류외국인 불법도박이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2015년 9월 771건에서 올해 9월 기준 542건으로 28.7%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 5. 마약류 범죄 증가에 따른 대책 필요

2016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는 해가 거듭될수록 마약 종류, 밀반입 수법, 유통 경로 등이 점차 다양화, 조직화되고 있다. 그 동안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2010년 700여명 이상 검거된 이후 대폭 감소하여 매년 200여 명만이 검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발이 매우 어려운 마약 수사의 특성상 외국인 마약범죄가 실제 대폭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3-6-13] 체류 외국인 마약류 범죄 증감 추이



출처 : 경찰청(2016)

최근 국내 마약 사범의 증가로 인하여 외국인 마약 사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증가가 예상된다. 2015년 420명이었던 외국인 마약류 범죄자는 2016년 9월 기준, 486명으로 전년도의 인원을 초과하였으며, 2015년 9월 303명으로 전년 같은 달과 대비하여도 60.4%나 급증하였다.

외국인 마약 사범의 경우 같은 국적을 가진 이들에게 유통시켜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적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필로폰 등 국내 유통 위험이 높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국내 마약 유통 조직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유통 경로를 개척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마약 단속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정보공유로 마약 유통 경로의 감시와 단속을 비롯해 국제 공조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 6. 비자 면제 협정을 활용한 체류 외국인 범죄 증가 예상

최근 체류 외국인 범죄 국적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과 비자(사증) 면제 협정을 맺은 태국 및 러시아 국적의 범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sup>226)</sup> 태국 국적의 범죄자는 2016년 8월 2151명으로 2015년 8월 1199명에서 불과 1년 사이에 79.4%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4년(1362명)부터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국적의 범죄자도 2015년 8월 303명에서 2016년 8월 544명으로 79.5%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3-6-26〉 체류외국인 범죄 국적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 도	중국	미국	일본	필리핀	태국	러시아	파키스탄
2011	15,677	1,788	130	535	944	227	246
2012	13,646	1,832	206	317	620	250	227
2013	15,121	1,947	211	387	656	257	249
2014	17,870	1,916	208	461	1,362	387	243
2015	22,898	1,884	279	520	1,869	470	279
2015. 8	14,932	1,243	173	358	1,199	303	193
2016. 8	15,802	1,309	152	523	2,151	544	256
전년대비(%)	5.8	5.3	-12.1	46.1	79.4	79.5	32.6

출처 : 경찰청(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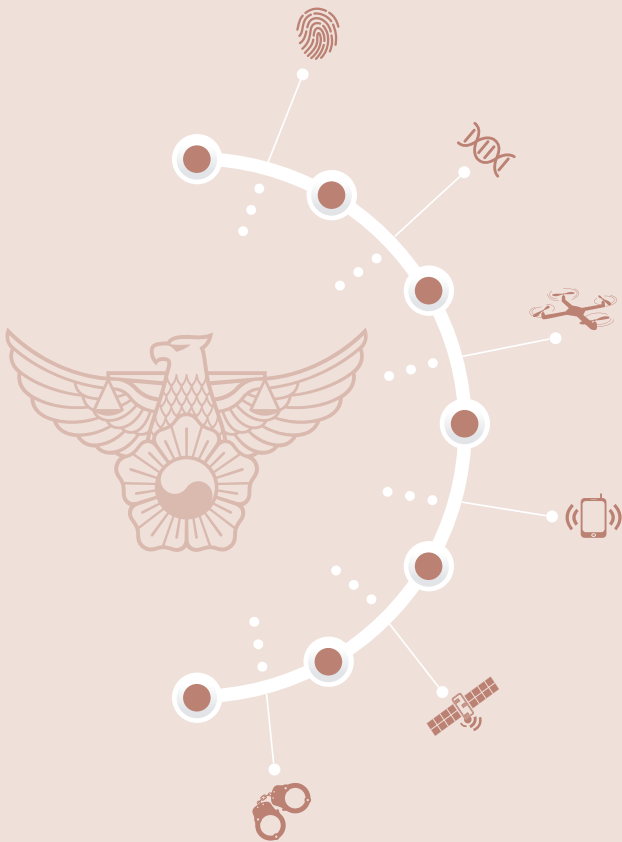
226) 아주지역 22개 국가 중 일반여권 소지자가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대만, 마카오, 말레이시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 홍콩 9개 국가만이 가능하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www.0404.go.kr/consulate/visa.jsp>) 참조.

태국과 러시아 국적의 범죄자 증가의 원인은 비자면제협정 체결에 있다고 분석된다. 특히 2017년에 주목할 점은 러시아 국적의 범죄자 증가에 대하여 신중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2014년 1월 1일부터 한국과 러시아간 무비자 제도가 도입되어, 일반 관광객들이 180일 중 90일을 무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11월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급락함과 동시에 국민소득 감소로 인하여 무비자제도를 악용해 불법 체류하는 사람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검거율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태국 국적의 피의자 역시 2014년 1362명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5년 8월 1199명이었으나 2016년 8월 2151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태국 역시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아시아에 몇 안 되는 국가이다. 양국 간 협정에 따라 태국인들은 한국에 올 때 여권만 갖고 비행기를 타면 90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특히,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자로 취업을 하는 등 태국 국적자의 범죄 추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 치안전망 2017

P O L I C E   S C I E N C E   I N S T I T U T E



제4장  
2017년  
경찰의  
대응

I. 범죄별 맞춤형 대응역량 강화 .....	232
II. 112신고의 효율적 대응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 .....	236
III. 교통 환경 변화와 경찰의 대응 .....	238
IV. 사회안정 확보 .....	241
V. 단호한 법 집행으로 굳건한 안보 유지 .....	243

## I. 범죄별 맞춤형 대응역량 강화

### 1. 범죄별 전망에 맞춘 대응역량 강화 필요

먼저 교통범죄, 지능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 등 4가지 유형의 범죄들이 전체 범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 추세의 변화를 떠나서 간과할 수 없으며, 치안 역량을 집중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범죄의 감소를 위해 범죄 유형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여 대책 수립을 하여야 한다.

전체범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고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교통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자동차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현실화 되는 등 새로운 교통현실에 직면해 있는 만큼,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교통시스템의 구축은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범죄의 경우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확충하고 수사기법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에 힘입어 지능범죄가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나눔트리’와 같은 수사관련 정보 공유지를 만들어서 신종 범죄수법의 전파, 관련 법령과 지침, 그리고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팁(tip)을 공유한 것도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단속을 위해서는 마약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공급자 없이는 마약범죄가 발생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약의 공급루트를 조기에 발견하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의 공급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상에서의 마약거래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사이버 안전국과의 연계 하에 온라인상의 공개출처정보(OSINT)로부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는

크롤링(crawling) 등의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의 강구도 고려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발생률은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정신 질환에 의한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2015년 기준 65.6%로 높은 편이므로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형사절차에서 조기에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질환에 대한 비전문가인 경찰들이 1차적인 접촉자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명확한 기준과 개입범위, 그리고 치료기관으로의 연계절차 수립이 필요하다.

## 2. 5대 범죄의 변화와 그 대응

자녀살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살인범죄의 경우 친족, 친구·애인, 이웃·지인 등 접촉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악화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가정에서 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재발 가능성이나 심각성을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강도범죄가 최근 급감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셉테드(CPTED)의 도입, 방범용 CCTV의 증설, 편의점과 영세사업장에 사설경비와 방범인증제 등 방범시스템 강화 등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중이 큰 정도는 아니지만 마취강도·약취유인강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아동이나 여성들의 보호를 위해 CCTV 설치 지역을 확대하여 방범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

강간·강제추행과 관련해서는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촬영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의 전파 등을 통해서 범죄의 재발 방지에도 힘써야 하겠다. 또한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을 공유하는 사이트 등의 단속을 통해서 불법촬영에 대한 욕구와 동기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절도나 폭력 등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범죄기록(발생시간·장소 등 구체적인 발생 사실 정보)과 범죄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범죄 발생 확률을 예측하여 제공하는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등을 활용하여 시간대별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3. 보이스포싱 실시간 대응력 향상과 국제 공조 강화

보이스포싱은 피해금 회수가 매우 어렵고 특히 발생 사건은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검거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인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의 관점에서 경찰의 보이스포싱 예방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

경찰청은 2016년 3월 금감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경찰청과 금융기관 간 ‘보이스포싱 112신고 및 현장 예방·검거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7년에는 ‘성문분석을 통한 실시간 화자검색 기술’ 연구개발(R&D)을 통해 보이스포싱에 대한 실시간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보이스포싱 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2016년 11월 ‘제2차 한·일·중 경찰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보이스포싱, 사이버 범죄, 마약 등 국제 성 범죄 공동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인접한 동북아 3국의 보이스포싱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사실상 보이스포싱의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4. 불법 사금융 예방 활동과 금융범죄 수사 역량 강화

저금리 시대에 재산 증식을 소망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나 유사수신 행위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나날이 지능화되고 국제화되는 이러한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의 제도 개선 등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 외에도, 불법 사금융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갖추고 대응하고 있다.

경찰청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신종 금융범죄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장기적으로 경찰 수사관들의 금융범죄 전문지식의 함양과 금융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5.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과학 수사 발전 노력의 가속화

국민 일반의 과학 수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높아짐에 따라 수사 기관에 대한 기대 수준도 같이 높아졌다. 범죄자들도 완전 범죄를 기도하며 현장에 눈에 띄는 증거를 남기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어 수사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과학수사는 2016년 5월 10일, 과학수사관리관실을 발족하면서 관련 연구개발과 첨단 장비의 도입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빅데이터 기반 범죄분석모형 개발, 지문·족흔적 채취용 법광원 개발, CCTV 영상검색 고도화 및 신원기술 개발, 겹친지문 식별기술 및 장비개발, 시체 섭식곤충 활용 법과학 분석기법 개발 등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전기 채취기, 3D 카메라, 법(가변)광원 장비, 3D 몽타주 시스템 등 장비의 첨단화도 갖출 예정으로 이러한 연구개발과 장비의 첨단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6. 불법 사이버도박 대응 및 인터넷전문은행 범죄 수사 역량 강화

2017년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등 각종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가 국내에서 열릴 예정으로, 행사기간 경기 예상결과를 사용한 각종 불법 도박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도박 사이트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외국 수사 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불법 도박의 조기 차단을 위해 민·경 협력 차원에서 누리캡스<sup>227)</sup>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에 따라 비대면 계좌개설 등 보안 취약점을 노린 신종 금융범죄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으로 거래의 편의성은 기대되나, 신분 도용에 의한 피해 발생 우려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해외의 범죄 사례 및 예상 범죄 유형에 대한 연구와 수사 매뉴얼 준비 등 세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27) 누리캡스는 누리꾼(네티즌의 순우리말)과 캡스(cops, 경찰관을 이르는 구어체 영어)의 합성어로,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각종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경찰에서 위촉된 사이버 명예경찰을 말한다.

## Ⅱ. 112신고의 효율적 대응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

### 1. 차별적 112신고 대응으로 경찰력의 효율적 사용

112신고는 과거 10년 동안 급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112신고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 경찰의 증원과 112 순찰차 증차 등 인적·물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늘어나는 상당수의 112신고가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지 않는 민원업무이므로, 경찰의 차별적 대응을 잘 정착시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찰력의 효율적 사용이 요구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대로 최근 112 평균 출동시간은 약간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실제 출동시간이 지연된 것이 아니라 신속한 112 출동을 강조하다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신속한 112 출동에만 몰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즉, 112신고 출동 시 신속 출동 외에 다른 가치들(친절성, 공정성, 정확성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sup>228)</sup>

### 2.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필요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책은 피해자 보호와 함께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전자감독, 성충동 약물치료 등 강력한 대책들이 총동원되고 있다. 성범죄 고위험군 관리 감독 강화 차원에서 법무부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재추진키로 하고 2016년 10월 말 동법 제정을 입법 예고하고 있는가 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 및 확인 주기를 차등화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보호수용법」 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검사는 법원에 보호수용 청구를 할 수 있다. 성범죄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법 제·개정 노력과 더불어 성범죄 고위험군 선별을 위한 과학적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228) 김상호, “112 신고 대응 전략 변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0호, 2010. 112쪽.

경찰도 이러한 법안 제정 움직임에 맞추어 성범죄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차원에서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서 벽지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성폭력 취약 지역 대상 예방교육과 더불어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예방교육과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3. 학교내 성폭력 증가에 따른 대응 필요

최근 교육부·여가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학생 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성폭력 유형·수준 및 피해·가해 학생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 인권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 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성폭력 유형과 수준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유형에는 신체적 접촉이 수반된 성폭력범죄 외에도 성희롱 등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적 행위, 전화나 문자 등 매체를 통한 성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 매체를 통한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학생 간 성폭력은 유형별로 ‘매체를 통한 성적 행위’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 단속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음란물 전시나 배포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을 추진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학교폭력 저연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경찰에서도 최근 학교폭력의 추세와 경향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활동은 학교 급별로 여전히 피해 응답률이 높은 초등학생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피해 유형별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 신체폭행에 주목하며, 학교폭력 유형별로 증가 추세에 있는 성폭력을 중심으로 한 예방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 Ⅲ. 교통 환경 변화와 경찰의 대응

#### 1. 비혼잡 상황에 적합한 교통신호 제어기법 도입 필요

우리의 일상에서 도로는 하루의 대부분을 비혼잡 상태를 유지하다가 출·퇴근 등으로 인한 일부 시간대에서 정체 상황이 발생한다. 전국적으로도 하루 종일 막히는 도로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호운영체계는 주로 혼잡 상태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혼잡 상태에서 감소 가능한 지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첨단교통신호는 상습 정체의 비율이 높은 도시부에 적합한 고비용 구조로 되어 있고, 이를 모든 도시부에 적용하는 것은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는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저비용 구조의 고정식 신호제어(TOD ; Time of Day) 방식으로 연동을 고려한 신호제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229)</sup>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신호 제어 기법은 고정식(TOD), 감응식(Actuated), 반감응식(Semi-Actuated), 대응식(Responsive) 등 여러 가지 운영기법이 있고 교통 상황과 지역 여건, 교차로와 네트워크(Network) 구조에 따라 적절한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혼잡하지 않은 신호 교차로에서 불필요한 지체 현상을 최소화하고 교통 신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호운영기법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차로 현황에 따라 신호주기 및 신호현시 조정이 가능한 감응식 신호제어(Actuated Signal Control)<sup>230)</sup>와 반감응식 신호제어(Semi-Actuated Signal Control) 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적용 조건과 효과를 명확히 확인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 검증을 거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229) 고정식 신호제어(TOD ; Time of Day) 방식은 신호제어기에 신호계획을 미리 입력하여 정해진 시간이 되면 신호계획표 대로 신호등을 표출하는 교통신호 제어방식이다.

230) 감응식 신호제어(Actuated Signal Control)는 교통검지기를 통하여 수집된 실제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현시와 신호주기를 가변적으로 실시간 제어하는 기법이다.

## 2. 사회변화에 따른 운전면허제도의 적정성 검토 필요

최근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 ‘봉평터널 졸음운전 사고’, ‘여수터널 10중 추돌사고’ 등 중증질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 증가 및 교통사고 위험성을 국가안전망 차원으로 보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뇌질환·당뇨·치매·약물중독·마약중독 등 중증질환 운전면허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첫째, 2종 면허 적성검사 부활 및 기존 적성검사 강화이다. 운전면허제도의 정책 방향은 문제운전자의 적발 및 면허취소 관점보다는 정부가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면허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중증질환자 관리를 위한 2종 면허 적성검사 부활과 의료진 참여 등 이미 실시중인 적성검사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중증질환자 사고 통계 집적 및 위험군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3020만 명 중 16.5%(잠재적 당뇨환자 500만 명 기준) 이상이 중증질환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 관리대상이 되어 엄격한 관리는 현실적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위험군에 대한 정확한 사고 통계 집적 및 이를 기반으로 위험운전자 분류하고 특성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중증질환 자진신고 및 자가판단 지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중증질환 운전자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경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정밀적성검사 및 의사의 정밀진단을 위한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운전이 적정한 신체·정신적 상태인지를 의료적으로 판단하고 운전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등 위험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건강보험공단 정보 연계 및 국민건강검진 시 운전판단 항목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수시적성검사 대상 기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및 의료 기관과의 의료 정보 연계는 타법과의 상충 문제, 개인정보 및 인권침해의 위험 때문에 직접 연계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관점에서 운전자 본인 및 타인의 권익침해 방지차원의 운전면허의 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의 정보 연계와 2년마다 시행되는 국민건강검진에서 운전 가능 여부의 의료적 판단 항목 추가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중증질환에 대한 위험군 관리, 자진신고 및 자가판단 지원, 의료정보 연계 및 국민건강검진 운전 판단 항목 도입 등 제도적 개선 및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운전면허 관리체계에서 운전자의 운전능력 평가 적정성을 조사하고 개선 필요 사항이 도출된다면 이를 교통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 3. 도로환경 변화에 따른 고속도로 교통 운영

자동차 등록대수, 운전면허 소지자, 고령화로 인한 생산활동 인구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고속도로 교통 수요의 확대는 실제로 도로의 차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은 상시정체에 가까운 도로 상태를 보이고 있어, 고속도로 갓길차로제를 확대·시행하여 지·정체 구간을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서울외곽 고속도로와 같은 도시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혼잡 구간에 고속도로 유·출입 램프미터링(Ramp Metering) 기법과 일반 도로의 신호제어를 연계하여 지·정체를 해소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건설되는 고속도로는 토목·건설기술의 발달로 터널과 교량 구간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기존의 차선 운영방법으로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교량과 터널 구간은 실선으로 도색하도록 되어 있어 차로 변경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된 고속도로(용인~서울, 서울~춘천 등)는 터널과 교량 길이가 길고, 전체 구간에서 터널과 교량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16년 12월에 개통되는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107.6km)도 전체 연장의 50% 가량이 터널 및 교량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7년 6월 개통 예정인 동홍천~양양(71.7km) 고속도로는 70%가 넘는다. 이는 현실적으로 저속차량의 뒤에 계속 따라가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운전자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지키며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설 노선이나 교통량이 적은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점단속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과속단속 방식을 구간단속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된 지점을 통과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캐ਂ거루 현상’을 보이거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점단속 장비 설치 이후에도 사고 개선효과가 미미한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단속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IV. 사회안정 확보

### 1. 집회 참가자와 경찰의 상호신뢰 속에 선진 집회문화 정착

집회 참가자와 경찰 모두 상호 신뢰 속에 선진 집회문화를 이루고자 노력한 결과 최근 수년간 낮은 수준의 불법 폭력집회가 유지되고 있다. 물론 일부 과격·폭력집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집회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경찰은 선진 집회문화를 이루기 위해 현재의 유연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헌법에 부합하는 집시법 적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경찰은 금지통고, 집회소음 관리, 차벽설치, 살수차 투입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며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회시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2. 소외 계층에 관심을 갖는 근원적 테러 대비 활동

테러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파급력은 매우 크므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가 테러 단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까지 제정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경찰은 테러 발생 시 가장 먼저 초동조치를 행하는 수단이며 조직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에게 각종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경찰이 테러를 예방하기에는 많은 고민과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경찰은 테러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테러 환경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중점을 맞추어 경찰 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국내에서 일반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대한민국이 테러 청정국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국내의 정치·사회 환경에서 점점 더 개인의 불만 표출이나 해소에 의한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테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 테러 단체와 연계를 목적으로 혹은 테러 조장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잠입한 경우,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에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경찰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산을 하라과 고령화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점점 심화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유입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주 무슬림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중앙일보 2015년 2월 28일 기사는 한국인 무슬림은 4만 명, 외국인 무슬림은 16만 45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이주 무슬림의 유입과 이슬람 세력의 확장에 대한 반감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의견이 일부 대두함에 따라 향후 종교·문화적 대립이 사회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예측되고 있다.<sup>231)</sup> 우리나라도 더 이상 단일민족, 단일문화의 사회가 아닌 만큼 경찰은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체류자 등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하게 다가가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맞춤형 경찰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북한은 다수의 사이버 테러 대상을 폭넓게 확보한 후 동시에 공격을 가해 국가 규모의 혼란을 노린 것 외에도 산업·군사기밀에 관한 주요 문서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탈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경찰은 북의 사이버 공격 대상이 주요 기업까지 확대되는 사실에 주목, 앞으로도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한 북의 사이버 공격을 조기에 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경제·정치·사회 환경은 자국중심주의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 수록 민족·지역·세대·종교·국가·정치 간 갈등은 한층 더 커져갈 것이고, 개인이나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과 신념을 위하여 더욱 과격하고 파급력 있는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테러는 발생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평온을 빼앗아 버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생활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다. 경찰은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내·외의 미세한 변화나 흐름, 정세를 확인하며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테러 예방을 위하여 개인과 집단의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정책을 펼치고, 소외된 계층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며 그들을 위한 맞춤형 경찰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231) 안정국, 한국 이슬람의 현황과 종파 분화: 아시아 무슬림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6권 3호, 2015. 156~158쪽.

## V. 단호한 법 집행으로 굳건한 안보 유지

### 1. 북한 도발행위 및 위장 평화 공세 적극 대응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가 염원하는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핵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북한의 도발은 우리 정부의 정권출범 초기(1993, 1998, 2003, 2008, 2013)에 도발을 감행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예외 없이 박근혜 정부 출범 시에도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따라서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하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17년에도 북한은 핵실험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은 한국을 대상으로는 평화 공세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측되며, 미국에게는 양자대화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안정화되고, 한반도 정책이 정초되는 7월 이전까지 미국은 북한의 각종 접촉이나 대화 제의를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 대선에 영향을 주고자 민간 차원의 회담과 적극적인 평화 공세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경찰을 포함 안보 기관은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에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그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 해석과 단호한 법 집행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 2. UN 대북 경제제재 조치에 따른 대응 강화

UN 안보리는 2016년 11월 30일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더 확대·강화한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수출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 수출금지 조치가 포함돼 약 8억 달러(9390억 원) 이상의 북한 외화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부족한 외화원천 확보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관광산업 및 수산물 수출, 외국 어선에 해양조업권 판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경찰은 해경과의 협조 하에 중국 어선의 동서해상에서 벌어지는 불법 조업을 차단하고, 해외동포들의 대북관광 또한 안보적 관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북 제재 이행 조치에 따른 안보기관 간 적극적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

북한은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356종의 대남 전단지를 집중 살포하였고, 경찰은 265만여 장을 수거하여 군에 인계하였다. 2017년에도 북에서 남으로 바람이 부는 6월까지 전단지 살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서해 해류와 임진강을 통한 전단지 살포도 예상되는 만큼 공안당국은 국민들과 협조 하에 발견 즉시, 전단지를 회수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월남 패망의 원인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심리전에 진 것이다. 특히 방어 심리전에서 실패한데 기인한다. 따라서 경찰은 북한의 집요한 선전선동 및 위장평화 공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북한 대남 사이버 공작 활동에 선제적 대응

최근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해방구’이자 대남혁명의 교두보인 ‘남조선혁명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 기관은 ‘사이버 전사’를 동원해 지능화·고도화된 기법으로 대남 정보수집, 사이버 심리전·해킹·테러, 대남흑색선전 등의 사이버 공격을 우리의 주요 기관 망에서부터 민간 망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안보가 좌우될 수 있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 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 IT인력 양성과 증원, 첨단 장비 및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 북한의 직영 및 해외 친북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나 관련 법령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외에도 북한의 첨단화, 정교화되는 사이버 공작 기법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보 연구기관’의 신설도 필요하다.

결국, 북한의 2017년 대남 공작기관은 ‘사이버 공격거점’ 확보에 주력하면서, 국내 ‘정치적 이슈’의 변화에 따른 공세적인 사이버 공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차단·무력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신속한 제정과 ‘민·관·군 합동 공조체제 유지’, 공세적 대북 사이버 심리전 전개 등의 선제적 대응 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 4. 탈북민 3만 명 시대 고려한 맞춤형 신변보호 대책 필요

최근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이 탈북민 대상 위장 탈북민 간첩 및 재입북 공작을 본격화하고, 탈북민의 범죄, 해외 망명, 사회 부적응 등에 따른 사회 일탈 증가로 치안 수요를 촉진시키고 있다.

탈북민의 효율적인 신변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탈북민 해외 출국 등 거주지 이동에 관한 신고 법규 마련, 대남 공작원 신분세탁 차단, 탈북민 재검증 시스템 및 거주지 보호 통합시스템 도입, 폭력 및 마약범죄 대책, 신변보호 경찰관 1인당 신변보호 인원 현실화와 신변보호경찰관 재배치, 행정조사관 양성, 탈북민 체류국에의 보안경찰 주재관 파견, 탈북민 대상 대남 공작 관련 ‘신변보호 체크리스트’ 현장 활용, 협력적 지역 네트워크 구축, ‘탈북민 심리상담’ 교육의 확대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탈북민 중 탈북여성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신변보호와 사회 정착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 5.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한 외국인 범죄 대응

2016년 6월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3.9%로 최초로 200만 명을 돌파하여 200만 1828명이 되었다. 이는 2007년에 1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불과 9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체류외국인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이들에 의한 다양한 범죄가 발생, 그 수법도 교묘하고 지능적이며 잔혹해지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범죄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어 정부와 경찰에 안전하게 외국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치안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부가 보유한 외국인 지문 정보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후 2016년 9월 21일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하는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외국인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실시간 지문 대조를 통한 신원확인이 가능하여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외국인 변호사의 신원확인, 외국인 미제사건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에 취약한 시간대 및 장소에 지역 경찰과 국제범죄수사대 등을 통한 현장 순찰은 물론 외국인 범죄 발생 가능 지역에 CCTV의 확대 설치로 선제적인 치안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 치안전망 2017 집필진

목차	내용과 집필진	
발간사	『치안전망 2017』을 발간하며	
제1장 2016 치안활동의 회고	2016년 치안활동의 회고(이춘삼)	
제2장 치안환경 변화의 개관	I. 치안환경의 변화요인(강용길) II. 인구구조의 변동(강용길) III. 사회·문화의 변화(박재풍) IV. 경제환경 변화(박원규) V. 재난·재해 변화(박재풍) VI. 국내외 안보정세 변화(권오국)	
제3장 2017년 분야별 치안전망	제1절	2017년 치안정세의 개괄전망(이춘삼 정리)
	제2절 범죄수사 분야	I. 2017년 범죄발생전망(윤상연)
		II. 5대 범죄의 변화와 전망(윤상연)
		III. 보이스피싱 범죄 전망(장성수)
		IV.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전망(장성수)
		V. 과학수사 환경의 변화와 전망(김기현)
		VI. 사이버범죄 전망(정웅)
	제3절 생활안전 분야	I. 112신고 추이와 전망(임형진)
		II. 성폭력범죄 전망(유지웅)
		III. 학교폭력 전망(유지웅)
	제4절 교통안전 분야	I. 교통 환경의 변화와 전망(김남선)
		II. 교통 사고의 진단과 전망(김남선)
제5절 사회 안정 분야	I. 집회시위 전망(박원규)	
	II. 테러위협 전망(박재풍)	
제6절 보안·외사 분야	I. 북한의 대남전략 전망(권오국)	
	II.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활동 전망(김윤영)	
	III. 탈북민 관련 전망(김윤영)	
	IV. 외사 분야 전망(김학신)	
제4장 경찰의 대응	1. 2017년 경찰의 대응(김기현 정리)	

## 치안전망 2017 발간팀

● 팀 장: **강용길**(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 팀 원: **박원규**(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 집필자문: **손영태**(명지대학교 교수)

**조한선**(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정지웅**(통일미래사회연구소 소장)

**박준휘**(형사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창배**(동국대학교 교수)

**이민식**(경기대학교 교수)

**김택수**(계명대학교 교수)

**박현호**(용인대학교 교수)

**신성일**(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승준**(한국도로공사 책임연구원)

**신종대**(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서유석**(북한연구소 연구위원)

**장현석**(경기대학교 교수)

**김지선**(형사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상훈**(대전대학교 교수)

**김상호**(대구대학교 교수)

**임창호**(대전대학교 교수)

● 편찬자문: **민갑룡**(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배순일**(치안정책연구소 과학기술연구부장)

● 발행총괄: **김영수**(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부장)

● 행정업무지원: 치안정책연구소 기획운영과

발행인: **진교훈**(치안정책연구소장)

편집인: **김영수**(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부장)

인쇄일: 2016. 12. 31

발행일: 2016. 12. 31

발행처: 치안정책연구소

인쇄처: (주)범신사 (02-720-9786~9)